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14호

토릭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롤즈 『정의론』

장동익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14호

토론팩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 롤즈 『정의론』

장 동 익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편집위원 : 백종현(위원장)  
김남두  
이남인  
이태수  
정원재  
김상현(주간)

## 발 간 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의 전임연구단은 한국학 술진홍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비를 받아 앞서 2년 간(2002.8-2004.7)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을 수행한 데 이어, 그 후속으로 다시금 2년 동안(2004.9-2006.8) <토론패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사업을 펴고 있다. 그 첫 번째 성과물을 이제 『철학사상』 별책 제5권으로 엮어낸다.

이 연구 작업은 중요한 철학 문헌들의 내용을 개념 체계도를 세워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 지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지식정보 사회에 있어 철학이 지식 산업과 지식 경제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지식 자원을 생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연구라 할 것이다.

우리 연구단은 긴 논의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 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동서양의 철학 고전들을 선정하고 이를 연구자의 전공별로 나누어, 각각 먼저 분담한 저작의 개요를 작성한 후, 개념들의 관계를 밝혀 개념 지도를 만들고, 그 틀에 맞춰 주요 개념들을 상술했다. 이 같은 문헌 분석 작업만으로써도 대표적인 철학 저술의 독해 작업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목표는 이에서 더 나아가 이 작업의 성과물을 디지털화된 철학 텍스트들에 접목시켜 누구나 각자의 수준에서 철학 고전의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는 철학 고전들은 모두 외국어나 한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를 지식 자원으로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앞서 현대 한국어로의 번역이 불가피하다. 그러

나 적절한 한국어 번역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원전의 사상을 이루는 개념 체계를 소상히 안다면 원전에 대한 접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 연구 작업의 성과는 1차적으로는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장차 한국어 철학 텍스트들이 확보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 연구 사업의 이 성과물이 인류 사회 문화의 자산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초석이 되고, 한국의 철학 문화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바 있기를 바란다.

2005년 4월 15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화정보센터장 / <토론팩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지식지도 구축> 연구책임자

백 종 현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14호

토론팩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 롤즈 『정의론』

장 동 익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 머리말

롤즈가 『정의론』의 기본 구상이 발표되기 시작할 무렵인 1950년대에, 도덕 철학의 영역은 정서주의(emotivism)가 대세였으며, 이에 따라 도덕은 주관적 견해나 감정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사회 철학 및 정치 철학의 영역은 사회 복지 극대화 원리를 내세우는 공리주의 영향 하에 있었다.

롤즈의 『정의론』에 의해 정치 철학 및 사회 철학계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먼저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옹호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재화의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정치 이론에 있어서 공리주의 영향은 쇠퇴하고 권리론자들이 대표적인 입장에 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롤즈의 『정의론』이 현대의 사회 철학 및 정치 철학에 미친 영향이다.

롤즈가 『정의론』이 사회 철학 및 정치 철학의 한 획을 그은 중요한 고전으로서, 이 책에 대한 철저한 탐구는 사회 철학 및 정치 철학에 뜻을 둔 탐구자뿐만 아니라, 윤리적 영역의 탐구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의론』은 다루고 있는 주제의 성격상 정치 경제학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해하기 쉬운 책이 아니며, 그 분량 또한 방대하여, 접근하기 편한 책은 아니다. 보다 솔직히 말하면, 『정의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서의 일차적 목적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의론』을 해설하고, 재구성하여 보다 쉽고 편리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것이다. 물론 본 연구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철학 고전 텍스트들을 디지털 지식으로 구축하는 연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말할 필요 없이 본 연구서의 일차적 목적과 위의 사업의 목적은 정확히 일치한다.

본 연구서는 전문적인 철학자를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는 비전문가를 위한 입문서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에게도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서가 지나치게 세분된 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에게 혼란을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의론』에 관심을 가진 독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서를 위한 작업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정의론』이 너무도 방대한 저작이기 때문에, 롤즈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담아 낼 수 없었다. 『정의론』에서 롤즈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전제와 결론의 형식으로 담아내고 싶었지만, 즉 정의의 두 원칙의 도출을 위한 조건들을 전제로, 정의의 두 원칙과 그 적용을 결론의 형식으로 제시하려 했으나, 필자의 부족한 능력은 차치하고라도, 이 경우 많은 연관성 있는 개념들이 뒤섞이거나, 멀리 동떨어져 그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이 생겨났다. 따라서 아쉽지만 이러한 형식의 서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 좀 더 철저한 탐구가 이루어진 후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체계적인 형식에 따라, 그리고 더 이해하기 쉽고, 더 풍부한 내용을 담은 좀 더 나은 연구서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디지털 자료에 익숙한 세대들이 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서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서가 철학 지식에 대한 욕구를 싹틔우고, 지적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서가 나오기 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충고가 도움이 있었다. 연구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이해하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해준 연구 책임자 백종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많은 연구원들의 연락과 의견을 조정하느라 애써주신 김상현 선생님, 디지털 지식이라는 개념 이

해에 도움을 주신 최병일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본 연구서 작업은 『정의론』에 대한 선 연구 작업들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황경식 교수님의 『정의론』에 대한 연구 업적물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2005년 4월  
장동익



## 목 차

제 1 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	1
1. 롤즈의 생애 및 저작 .....	1
1.1 생애 요약 .....	1
1.2 생애 해설 .....	2
1.3 생애 연보 .....	8
1.4 저작 .....	8
1.4.1 정의론 .....	8
1.4.2 정치적 자유주의 .....	8
2. 『정의론』 해제 .....	9
2.1 『정의론』 요약 .....	9
2.2 『정의론』 해설 .....	10
2.3 『정의론』 상세 목차 .....	16
2.4 주요 용어 .....	20
2.4.1 정의 .....	20
2.4.2 사회 .....	21
2.4.3 공리주의 .....	21
2.4.4 직관주의 .....	22
2.4.5 자유 .....	23
2.4.6 원초적 입장 .....	24

제 2 부 철학 지식지도 .....	25
1. 철학자 지식지도 .....	25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	26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	27
3.1 정의 .....	27
3.2 사회 .....	28
3.3 공리주의 .....	28
3.4 직관주의 .....	29
3.5 자유 .....	30
3.6 원초적 입장 .....	31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	32
 제 3 부 『정의론』 내용 분석 연구 .....	55
1. 공정으로서의 정의 .....	55
1.1 정의의 역할 .....	56
1.1.1 사회제도의 제1덕목으로서 정의 .....	56
1.1.2 정의의 우위성 .....	56
1.1.3 정의의 원칙들의 역할 .....	57
1.1.3.1 사회 .....	57
1.1.3.1.1.1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이유 .....	58
1.1.3.1.1.2 분배의 뜻을 결정해주는 사회 정의의 원칙 .....	58
1.1.3.1.2 질서정연한 사회 .....	59
1.1.3.1.2.1 질서정연한 사회의 조건 .....	59
1.1.3.1.2.2 질서정연한 사회에서의 공공적인 정의관의 역할 .....	60
1.1.3.2 상이한 원칙과 견해들의 공통적 역할로서 정의 개념 .....	61
1.1.3.3 정의의 원칙의 합의 가능성 .....	61

1.1.3.3.1 정의의 문제로서 조정, 효율, 안정 .....	62
1.1.3.3.2 정의관이 갖는 역할 .....	63
1.1.4 형식적 정의 .....	64
1.1.4.1 법과 제도의 평등한 적용을 요구하는 형식적 정의 .....	65
1.1.4.1.1 실질적 정의를 보장하지 못하는 형식적 정의 .....	65
1.1.4.1.2 큰 부정의를 해소할 수 있는 형식적 정의 .....	66
1.1.4.2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 정의를 보장한다는 한 견해 .....	67
1.1.5 정의의 두 원칙 .....	68
1.1.5.1 정의의 두 원칙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 .....	69
1.1.5.2 제1원칙 .....	69
1.1.5.2.1 제1원칙의 평등한 자유의 의미 .....	70
1.1.5.2.2 제1원칙의 우선성 .....	70
1.1.5.2.3 기본적 자유의 제한 조건 .....	71
1.1.5.2.4 기본적 자유들의 목록 .....	71
1.1.5.3 제2원칙 .....	72
1.1.5.3.1 제2원칙의 적용 .....	73
1.1.5.3.2 제2원칙의 해석 .....	74
1.1.5.3.2.1 제2원칙의 해석에 있어서 전제 .....	75
1.1.5.3.2.2 제2원칙에 대한 자연적 자유체제의 입장 .....	75
1.1.5.3.2.2.1 자연적 자유체제에 있어서 최초의 분배 .....	76
1.1.5.3.2.2.2 자연적 자유체제에 있어서 최초의 분배에 의한 부정의 .....	77
1.1.5.3.2.3 제2원칙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 .....	77
1.1.5.3.2.3.1 제2원칙에 대한 자유주의 해석의 사회적 우연성 경감 .....	78
1.1.5.3.2.3.2 제2원칙에 대한 자유주의 해석의 결점 .....	79
1.1.5.3.2.4 제2원칙에 대한 자연적 귀족주의 입장 .....	80
1.1.5.3.2.5 제2원칙에 대한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 .....	81
1.1.5.3.3 효율성의 원칙 .....	82

1.1.5.3.3.1 효율성 원칙의 도표 .....	83
1.1.5.3.3.2 효율성 원칙의 정의 원칙 필요성 .....	84
1.1.5.3.3.2.1 서열을 매길 수 없는 효율적인 점들의 집합 .....	84
1.1.5.3.3.2.2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한 효율적인 점들에 대한 평가 .....	85
1.1.5.3.4 복지 함수의 무차별 곡선 .....	86
1.1.5.3.5 공리주의자의 분배에 있어서 무차별 곡선과 최상의 분배	
87	
1.1.5.3.6 차등의 원칙 .....	88
1.1.5.3.6.1 차등 원칙의 무차별 곡선 .....	88
1.1.5.3.6.2 차등 원칙에 있어서 분배의 완전한 만족 상태 .....	89
1.1.5.3.6.3 차등 원칙에 있어서 기여 곡선의 전제 사항 .....	90
1.1.5.3.6.4 차등의 원칙에 따른 최초의 불평등 정당화 .....	91
1.1.5.3.6.5 차등의 원칙에 있어서 두 종류의 정의로운 체제 구분 .....	92
1.1.5.3.6.5.1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 .....	93
1.1.5.3.6.5.2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 .....	93
1.1.5.3.6.6 차등의 원칙과 효율성 원칙의 양립 가능성 .....	93
1.1.5.3.6.7 모든 사람에 이익이라는 차등의 원칙의 의미 .....	94
1.1.5.3.6.7.1 연쇄 관계를 통한 차등의 원칙의 만족의 의미 .....	95
1.1.5.3.6.7.2 연쇄 관계 .....	96
1.1.5.3.6.7.3 최소 수혜자의 이익 향상에 의한 시민 전반의 이익 향상 .....	98
1.1.5.3.6.8 축차적 차등의 원칙 .....	98
1.1.5.3.6.8.1 축차적 차등의 원칙이 요구되는 이유 .....	99
1.1.5.3.6.8.2 축차적 차등의 원칙의 내용 .....	100
1.1.5.3.6.8.3 축차적 차등의 원칙의 실제적 적용의 부적합 .....	100
1.1.5.3.7 공정한 기회균등의 자유주의적 원칙으로서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 .....	101

1.1.5.3.7.1 제2원칙에서 직위 개방을 요구하는 이유 .....	101
1.1.5.3.7.2 개방된 직위의 원칙이 표현하는 신념 .....	102
1.1.5.3.8 분배의 뜻을 결정하는 절차적 정의 .....	102
1.1.5.3.8.1 완전한 절차적 정의 .....	103
1.1.5.3.8.2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	104
1.1.5.3.8.3 순수한 절차적 정의 .....	105
1.1.5.3.8.3.1 순수 절차적 정의의 이점 .....	106
1.1.5.3.8.3.2 협동 체제의 정의에 기초한 순수 절차적 정의의 분배 .....	107
1.1.5.4 제1원칙과 제 2원칙의 서열적 순서 .....	108
1.1.5.5 기본적 자유에 속하지 않는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	108
1.1.5.6 일반적 정의관 .....	109
1.1.5.6.1 일반적 정의관의 내용 .....	109
1.1.5.6.2 일반적 정의관과 정의의 두 원칙의 차이점 .....	109
1.1.5.7 정의의 두 원칙을 확정해 주는 주요 논거 .....	110
1.1.5.7.1 정의의 두 원칙을 확정해 부는 주요 논거로서 공약의 부담 .....	110
1.1.5.7.1.1 공약의 부담의 입장에서 정의의 두 원칙의 장점 · ..	111
1.1.5.7.1.2 정의의 두 원칙을 확정해 주는 주요 논거로서 합의의 제한 조건들 .....	112
1.1.5.7.2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효용의 원칙 .....	113
1.1.5.7.2.1.1 개인의 기대치를 희생시키는 효용의 원칙 .....	113
1.1.5.7.2.1.2 원초적 입장에서의 효용의 원칙 거부 .....	114
1.1.5.7.2.2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정의의 두 원칙 .....	115
1.1.5.7.2.3 인간의 상호 존중을 표현하는 정의의 두 원칙 .....	116
1.1.5.7.2.3.1 자존감을 중대시켜 주는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공공적인 인정 .....	116
1.1.5.7.2.3.2 자존감에 의한 타인 존중 .....	117

1.1.5.7.2.3.3 평등한 자유와 차등의 원칙에 의한 인간의 상호 존중	117
1.1.5.7.3 정의의 두 원칙에 함축된 칸트적 이념	118
1.1.5.7.4 정의의 두 원칙이 합리적 이익을 보장한다는 논거	119
1.1.5.8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되는 방식	120
1.1.5.8.1 시민이 내리게 될 세 종류의 판단	120
1.1.5.8.1.1 입법과 사회 정책의 정의 여부 판단	120
1.1.5.8.1.2 정의로운 입헌 체제에 대한 판단	121
1.1.5.8.1.3 정치적 의무 및 책무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판단	121
1.1.5.8.2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되는 단계	122
1.1.5.8.2.1 제헌 위원회의 단계	122
1.1.5.8.2.1.1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로서 정의로운 헌법 구성	123
1.1.5.8.2.1.1.1 정의로운 절차로서 정치 체제의 시민의 자유 구현	124
1.1.5.8.2.1.1.2 정의로운 법적 질서를 보장하는 절차적 체계 선정	125
1.1.5.8.2.1.2 정의로운 헌법을 위한 독립적인 기준으로서 정의의 두 원칙	125
1.1.5.8.2.1.3 제헌 위원회의 1차적 기준인 평등한 자유의 제1원칙	126
1.1.5.8.2.2 입법의 단계	126
1.1.5.8.2.2.1 차등의 원칙 적용의 어려움	127
1.1.5.8.2.2.2 입법의 단계에 적용되는 제2원칙	127
1.1.5.8.2.2.3 입법의 단계에 대한 제헌 위원회의 우선성	128
1.1.5.8.2.3 법규 적용과 법규 준수의 단계	128
1.1.5.8.3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되는 각 단계에 있어서 지식의 이용 가능성	129

1.1.5.8.3.1 정의의 원칙의 적용 단계에서 이용될 수 있는 세 종류의 지식 .....	129
1.1.5.8.3.2 정의의 원칙의 적용 단계에서 이용될 수 있는 지식 제한의 완화 .....	130
1.2 정의의 주제 .....	131
1.2.1 제도 .....	131
1.2.1.1 제도의 두 측면 .....	132
1.2.1.1.1 정의 여부와 관련한 제도의 두 측면 .....	132
1.2.1.1.2 제도의 존재 방식 .....	132
1.2.1.2 주요 제도의 의미 .....	133
1.2.1.3 구성적 규칙과 전략이나 대책 간의 구분 .....	134
1.2.1.3.1 합리적 대책이나 전략 .....	134
1.2.1.3.2 제도에 관한 이론의 성격 .....	134
1.2.1.3.3 바람직한 목적을 통해 조정되는 개인의 이익 추구 ..	135
1.2.1.4 단일한 규칙 및 제도와 전체로서 사회 제도의 기본 구조 구분 .....	135
1.2.1.4.1 단일한 규칙과 전체로서 사회 제도의 부정의와 관련한 상호 영향 .....	136
1.2.1.4.2 정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들 .....	137
1.2.2 사회정의의 일차적 주제로서 사회의 기본 구조 .....	138
1.2.2.1 한 제도의 규칙들이 갖는 공지성 .....	138
1.2.2.2 공지성의 의의 .....	139
1.2.3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 있는 뿌리 깊은 불평등 .....	140
1.3 고전적 공리주의 .....	140
1.3.1 고전적 공리주의의 주요 사상 .....	141
1.3.1.1 롤즈가 의미하는 고전적 공리주의 .....	141
1.3.1.1.1 고전적 견해의 장점과 문제점 .....	142
1.3.1.1.2 로크 계약론에 대한 흡의 논박 .....	142

1.3.1.1.2.1 흡이 의미하는 공리 개념 .....	142
1.3.1.1.2.2 흡의 공리주의와 로크 계약론의 양립가능성 .....	143
1.3.1.2 윤리설의 구조를 결정하는 두 옳음과 좋음 .....	143
1.3.1.3 목적론에 있어서 옳음과 좋음을 관련짓는 방식 .....	144
1.3.1.3.1 목적론에서 좋음이 옳음과 상관없이 규정된다는 견해의 두 의미 .....	144
1.3.1.3.2 선의 규정에 따른 목적론의 구분 .....	145
1.3.1.4 합리성을 구현하는 목적론 .....	146
1.3.2 공리주의적 정의관을 가장 합리적으로 보는 사회관 .....	146
1.3.2.1 공리주의에서 최대의 만족과 옳은 분배 .....	147
1.3.2.2 정의에 대한 상식적인 신조와 공리주의 관점의 상충 .....	148
1.3.2.3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확대로서 사회적 선택 .....	149
1.3.2.3.1 개인에서 사회로 인도하는 지침으로서 공평한 관망자와 공감적 동일시 .....	149
1.3.2.3.2 개인들의 차이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는 공리주의 .....	150
1.3.3 공리주의적 정의관과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비교 .....	151
1.3.3.1 공리주의적 정의관 .....	151
1.3.3.1.1 상식적 신념에 있어서 자유와 권리의 우선성 .....	151
1.3.3.1.2 정의의 우선성에 대한 공리주의적 설명 .....	152
1.3.3.1.3 만족의 최대량과 사회의 복지 .....	153
1.3.3.2 계약론적 입장에서 사회적 선택 원칙 .....	154
1.3.3.2.1 계약론적 입장의 의무론적 특성 .....	155
1.3.3.2.1.1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의무론 .....	156
1.3.3.2.1.2 우연의 일치에 의한 정의의 최대선 산출 .....	156
1.3.3.2.2 정의의 원칙으로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 도출 .....	157
1.3.3.2.2.1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좋음에 선행하는 옳음 .....	157
1.3.3.2.2.2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침해할 수 없는 정의의 요구 .....	158

1.3.3.2.2.3 옳음의 우선성에 따른 사회의 기본 구조의 영향	158
1.3.3.3 공리 원칙과 대비되는 자연권적 입장	159
1.3.3.4 고전적 공리주의와 공정으로서 정의의 사회관	160
1.4 직관주의	160
1.4.1 직관주의의 정의	161
1.4.2 직관주의의 두 가지 특징	161
1.4.3 다원주의적 직관주의	162
1.4.3.1 상식적인 직관주의	162
1.4.3.2 정의의 문제와 관련한 상식적인 직관주의의 신조들	163
1.4.3.2.1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상식적 직관주의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	163
1.4.3.2.2 신조들의 우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64
1.4.3.3 신조들의 우열을 가려주지 못하는 일상적 정의관	164
1.4.4 사회적 목적들의 우선순위 결정	165
1.4.4.1 사회적 목적들의 우선순위 결정의 두 방법	166
1.4.4.1.1 공리주의에 의한 사회적 목적들의 우선순위 결정	167
1.4.4.1.2 직관주의에 의한 사회적 목적들의 우선순위 결정	167
1.4.4.2 사회적 목표 순위 결정의 직관주의적 특성으로서 평등성 증진	168
1.4.4.2.1 평등성 증진을 해명하는 경제학자의 방식	168
1.4.4.2.1.1 평등성 증진을 해명하기 위한 무차별 곡선의 도식	169
1.4.4.2.1.2 무차별 곡선을 통한 평등성 증진 해명	170
1.4.4.2.2 상이한 두 견해를 허용하는 무차별 곡선의 원칙	170
1.4.4.2.3 무차별 곡선과 관련한 직관주의의 이해	171
1.5 원초적 입장	171
1.5.1 원초적 입장에서의 가정들	172
1.5.1.1 정의의 여건이 성립한다는 가정	172
1.5.1.2 가족의 가장으로서 직계 후손의 복리 증진을 욕구한다는 가정	173

1.5.1.3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무관심하다는 가정	173
1.5.2	정의의 여건	174
1.5.2.1	정의의 객관적 여건	175
1.5.2.2	정의의 주관적 여건	176
1.5.2.3	롤즈의 정의의 여건과 흡의 정의의 여건의 유사성	176
1.5.3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반영하는 형식적 제한 조건들	177
1.5.3.1	원칙들의 형식적 조건의 적합성 여부의 근거	177
1.5.3.2	원칙의 형식적 조건의 특성	178
1.5.3.2.1	원칙들의 일반성	179
1.5.3.2.1.1	원초적 상태에서 일반적 원칙의 도출	179
1.5.3.2.1.2	원칙들의 일반성 조건이 합당한 이유	179
1.5.3.2.2	원칙들의 보편성	180
1.5.3.2.3	원칙들의 공지성	181
1.5.3.2.3.1	원칙들의 공지성에 대한 칸트적 이해	181
1.5.3.2.4	원칙들의 정당성	182
1.5.3.2.5	원칙들의 최종성	182
1.5.3.3	형식적 조건들의 상호 관계와 그 함축 사항	183
1.5.3.3.1	원칙들의 일반성과 보편성의 상이함	183
1.5.3.3.2	원칙들의 공지성과 보편성의 상이함	184
1.5.3.3.3	원칙들의 형식적 조건에 의한 이기주의 배제	184
1.5.4	무지의 베일	185
1.5.4.1	공정한 절차 설정으로서 원초적 입장의 의의	186
1.5.4.2	우연성의 결과를 무효화하는 조건으로서 무지의 베일	186
1.5.4.3	무지의 베일의 내용	187
1.5.4.3.1	무지의 베일에 의해 가려져야 하는 것들	187
1.5.4.3.2	무지의 베일 속의 당사자들에게 알려져 있어야 하는 것들	188
1.5.4.4	무지의 베일에 대한 옹호 논변	189

1.5.4.4.1 무지의 베일이 원초적 입장 과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에 대한 응호	189
1.5.4.4.2 원초적 입장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한 응호	190
1.5.4.4.3 무지의 베일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에 대한 응호	191
1.5.4.5 원초적 입장에서 특정 지식에 대한 제한이 갖는 근본적 중요성	191
1.5.5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의 합리성	192
1.5.5.1 원초적 입장에 있어서 합의 당사자들의 조건	192
1.5.5.1.1 합의 당사자들의 합리성	193
1.5.5.1.1.1 시기심 없는 합리성	194
1.5.5.1.1.2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	194
1.5.5.1.1.2.1 이기주의를 함축하지 않은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	194
1.5.5.1.1.2.2 상호 무관심과 무지의 베일의 결합에 의한 이타심 성취	196
1.5.5.1.2 정의감을 행사할 능력	197
1.5.5.2 이론적으로 규정된 개인으로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	198
1.5.6 원초적 입장에서의 정의의 두 원칙에 이르는 추론	199
1.5.6.1 평등한 분배의 원칙을 정의의 제1원칙으로 인정하는 과정	199
1.5.6.2 차등의 원칙 도출	199
1.5.6.2.1 불평등 인정 가능성	199
1.5.6.2.2 불평등을 허용하는 조건	200
1.5.6.3 제2원칙에 우선하는 제1원칙	201
1.5.6.3.1 자유의 우선성의 의미	201
1.5.6.3.2 자유의 권리가 제한되는 조건	202
1.5.6.4 최소 극대화 규칙	202
1.5.6.4.1 최소 극대화 규칙의 내용	203

1.5.6.4.2 정의의 두 원칙과 최소 극대화 규칙의 유사성 .....	204
1.5.6.4.3 최소 극대화 규칙의 적용 상황이 갖는 세 가지 주요 특징 .....	205
1.5.6.4.3.1 상황 발생 확률 평가를 고려하지 않는 최소 극대화 규칙 .....	206
1.5.6.4.3.2 최소한의 이득 이상에는 관심이 없는 최소 극대화 규칙의 선택자 .....	206
1.5.6.4.3.3 최소 극대화 규칙에 대한 다른 대안들 배제 .....	207
1.5.6.4.4 원초적 입장의 성격과 관련한 최소 극대화 규칙의 세 특징 .....	207
1.5.6.4.4.1 무지의 베일에 의한 확률 계산 배제의 타당성 .....	208
1.5.6.4.4.2 원초적 입장에서의 최소한의 만족 보장 .....	209
1.5.6.4.4.3 배제된 최소 극대화의 다른 대안들이 갖는 결과의 부당함 .....	209
1.5.6.5 차등의 원칙에 대한 반론 .....	210
1.5.6.5.1 차등의 원칙에 대한 반론의 내용 .....	211
1.5.6.5.2 차등의 원칙에 대한 반론에 대한 롤즈의 답변 .....	212
1.5.7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공리주의적 대안으로서 평균 효용의 원칙 .....	212
1.5.7.1 효용의 의미에 대한 전통적인 가정들 .....	212
1.5.7.2 효용의 원칙의 두 형태 .....	213
1.5.7.2.1 효용의 고전적 원칙 .....	213
1.5.7.2.1.1 인구의 무제한 증가 .....	213
1.5.7.2.1.2 인구수의 변동에 따른 고전적 원칙의 결과 .....	214
1.5.7.2.2 평균 효용의 원칙 .....	214
1.5.7.3 효용의 고전적 원칙과 평균 효용의 원칙의 비교 .....	215
1.5.7.4 평균적 원칙에 도달하는 과정 .....	216
1.5.7.4.1 사회와 개인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는	

상태 .....	217
1.5.7.4.2 자신의 재능으로 하게 될 역할이 불확실한 상태 .....	217
1.5.7.4.3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 .....	218
1.5.7.4.4 사회 성원이나 결정자의 특정 선호에 대해서조차 모르는 상태 .....	218
1.5.7.5 경제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무기력한 효용 관념 .....	219
1.5.7.6 평균 효용의 원칙의 난점들 .....	220
1.5.7.6.1 사회 구성원의 모험심을 전제하는 평균 효용의 원칙 .....	220
1.5.7.6.1.1 노예와 노예 소유주의 논법을 통한 평균 효용의 원칙의 난점 .....	220
1.5.7.6.1.2 노예 소유주의 논법에 대한 계약론적 타당성과 해결 방법 .....	221
1.5.7.6.2 확률성의 평가하는 방식과 관련된 평균 효용의 원칙의 난점 .....	222
1.5.7.6.3 확률의 합리적 판단의 객관적 근거와 관련된 효용의 원칙의 난점 .....	223
1.5.7.6.4 추론의 기대치가 갖는 특유성과 관련된 효용 원칙의 난점 .....	223
1.5.7.6.5 평균 효용의 원칙의 결함에 대한 롤즈의 논변 .....	224
1.6 자유 .....	225
1.6.1 자유에 대한 세 주제 .....	225
1.6.2 평등한 자유의 제한 .....	225
1.6.2.1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두 가지 방식 .....	226
1.6.2.2 자유가 제한되는 두 가지 경우 .....	226
1.6.2.2.1 덜 광범위한 자유와 관련된 자유의 제한 .....	227
1.6.2.2.2 불평등한 자유와 관련된 자유의 제한 .....	227
1.6.2.3 자유의 제한이 정당하게 변호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 .....	228
1.6.2.3.1 자연적 제약이나 우연성에 의한 자유의 제한 상황 .....	228
1.6.2.3.2 기준에 존재하는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제한 사항 .....	229

1.6.2.4 자유의 제한과 관련된 부권주의 .....	230
1.6.2.4.1 자기보호를 위한 규제원칙 채택 .....	230
1.6.2.4.2 부권주의 권한이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 .....	231
1.6.2.4.3 부권주의의 정당화 조건 .....	232
1.6.2.4.4 부권주의 해석의 한계 .....	232
1.6.3 평등한 양심의 자유 .....	232
1.6.3.1 원초적 입장에서 평등한 양심의 자유를 선택하는 개인들의 특성 .....	232
1.6.3.2 원초적 입장에서 평등한 양심의 자유 선택 .....	233
1.6.3.3 양심의 자유 제한 .....	234
1.6.3.3.1 제헌 위원회에서 양심의 자유 보장 .....	234
1.6.3.3.2 공동 이익을 위한 양심의 자유의 제한 .....	235
1.6.3.3.2.1 양심의 자유와 공동 이익의 우선성 문제 .....	235
1.6.3.3.2.2 공공질서에 대한 국가적 이익을 위한 양심의 자유 통제 .....	235
1.6.4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 .....	235
1.6.4.1 불관용적인 종파의 불관용에 대한 불평의 권한 .....	235
1.6.4.2 불관용적인 종파에 대한 관용적인 종파의 관용 거부 권한 .....	236
1.6.4.3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 거부의 시기와 목적 .....	236
1.6.4.4 타인에 위험을 주지 않는 불관용자를 구속할 권리의 존재 여부 .....	237
1.6.5 개정된 정의의 제1원칙 .....	237
1.6.6 개정된 정의의 제1원칙에 부가되는 우선성 규칙 .....	238
1.7 공정으로서 정의에 대한 칸트적 해석 .....	239
1.7.1 합리적 선택의 대상으로서의 칸트의 도덕 원칙 .....	239
1.7.2 인간의 자율적 행동에 대한 칸트 주장의 의미 .....	239
1.7.3 정의의 원칙과 정언 명령의 유사성 .....	240
1.7.4 칸트의 자율성 개념과 병행 가능한 상호 무관심성 .....	240

1.7.5 자율성 개념과 정언 명령에 대한 절차적 해석으로서 원초적 입장 .....	241
1.7.6 칸트의 견해와 차이를 보이는 롤즈의 두 가지 견해 .....	242
1.7.6.1 사람의 선택을 집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의 차이점	242
1.7.6.2 인간적 생활조건에 처해 있음을 안다는 가정에서의 차이점 .....	242
1.8 분배의 둑 .....	243
1.8.1 정치 경제학적 입장에서 정의의 두 원칙 .....	243
1.8.2 사회 체제의 역할 .....	243
1.8.2.1 경제 체제의 의의 .....	243
1.8.2.2 경제 체제에서의 제도 선택의 의의 .....	244
1.8.2.3 경제 체제에 의해 규제되는 것 .....	244
1.8.3 정치 경제학의 관심 대상 .....	244
1.8.3.1 공공 부문의 두 측면 .....	245
1.8.3.1.1 생산 수단의 소유와 관련된 측면 .....	245
1.8.3.1.2 공공선에 투여된 전체 사회 자원의 비율 .....	245
1.8.3.1.2.1 공공선의 두 특징으로서 불가분성과 공공성 .....	245
1.8.3.1.2.1.1 공공선의 무임승차 문제 .....	246
1.8.3.1.2.1.2 공공선을 위한 자금 조달 문제 .....	247
1.8.3.1.2.1.3 공공선의 외부성 .....	248
1.8.3.2 경제 체제가 의존하는 시장 체제 .....	249
1.8.3.2.1 자유 시장 이용과 관련 없는 생산 수단의 사유 .....	249
1.8.3.2.2 시장 체제의 이점으로서 효율성 .....	250
1.8.3.2.3 평등한 자유 그리고 기회균등과 부합하는 시장 체제	250
1.8.3.2.4 가격의 할당적 기능과 분배적 기능의 구분 .....	251
1.8.3.2.4.1 사회주의 체제와 시장 체제의 부합 가능성 .....	252
1.8.3.2.4.2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가격의 분배적 기능 제한 .....	252
1.8.4 민주국가 제도의 양식 .....	253
1.8.4.1 민주국가의 기본 구조 .....	253

1.8.4.2 민주국가 정부의 네 개의 부처 .....	254
1.8.4.2.1 민주국가 정부의 네 개의 부처 중 하나인 할당처 .....	254
1.8.4.2.2 민주국가 정부의 네 개의 부처 중 하나인 안정처 .....	254
1.8.4.2.3 민주국가 정부의 네 개의 부처 중 하나인 양도처 .....	254
1.8.4.2.4 민주국가 정부의 네 개의 부처 중 하나인 분배처 .....	255
1.8.4.2.4.1 분배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와 유산권 제한 .....	255
1.8.4.2.4.2 분배처에 의한 세입의 증대를 위한 조세 체제 .....	256
1.8.4.2.4.3 정의의 두 원칙에서의 분배처의 두 기능 도출 .....	256
1.8.4.3 이해관계와 공공선에 대한 선호를 배려하는 교환처 .....	257
1.8.4.3.1 효율성 원리를 활동 원리로 삼고 있는 교환처 .....	257
1.8.4.3.2 이익의 원칙을 기초로 삼는 교환처 .....	257
1.8.5 세대들 간의 정의 .....	258
1.8.5.1 타당한 수준의 사회적 최소치 .....	259
1.8.5.1.1 평균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최소치 결정 .....	259
1.8.5.1.2 관례적인 기대치에 의한 사회적 최소치 결정 .....	260
1.8.5.1.3 차등의 원칙에 의한 사회적 최소치 결정 .....	260
1.8.5.1.3.1 차등의 원칙이 매우 높은 최소치를 요구한다는 주장의 오류 .....	260
1.8.5.1.3.2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에 의한 차등 원칙의 사회적 최소치 결정 .....	261
1.8.5.2 정의로운 저축 원칙의 발견 .....	262
1.8.5.2.1 공리 원칙이 제시하는 그릇된 방향의 세대들 간의 정의 .....	263
1.8.5.2.2 계약론에서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 .....	264
1.8.5.2.2.1 계약론에서 저축 원칙 채택에 있어서 연대기적 불공정 .....	264
1.8.5.2.2.1.1 연대기적 불공정의 정의의 문제 적용불가능 .....	264
1.8.5.2.2.1.2 연대기적 불공정의 보상으로서 세대 간의 경제적	

교환 .....	265
1.8.5.2.2.2 원초적 입장에서의 저축의 원칙 합의 .....	265
1.8.5.2.2.2.1 원초적 입장에서 저축의 원칙 합의를 위한 가정들 .....	266
1.8.5.2.2.2.2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저축 원칙의 특성 .....	266
1.8.5.2.3 정의로운 저축 원칙에 대한 계약론적 방식의 특성 .....	267
1.8.5.2.3.1 저축 원칙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채택해주는 원초적 입장 .....	267
1.8.5.2.3.2 저축의 전 과정으로서 정의로운 사회를 규정하는 계약론적 특성 .....	268
1.8.5.2.3.3 정의로운 제도와 평등한 자유를 구현하는 조건으로서 저축 원칙 .....	268
1.8.5.3 정의의 두 원칙과 정의로운 저축 원칙의 관계 .....	269
1.8.5.3.1 정의로운 저축 원칙의 차등 원칙 제한 .....	269
1.8.5.3.2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 .....	270
1.8.5.4 정의로운 저축 원칙의 주요 특성 .....	271
참고문헌 .....	272



## 일 러 두 기

2. 이 책의 장, 절 표시는 그 내용의 위계에 따라 예를 들어 1.공정으로서의 정의, 1.1 정의의 역할, 1.1.1 사회제도의 제1덕목으로서 정의 순으로 표시하였다.
3. 3부 각 단락의 맨 앞에 있는 '(q1.1)' 또는 '(e1.2)' 등은 철학지식지도의 웹 구현을 위한 표시일 뿐, 책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책을 읽을 때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q'는 인용을 의미하고, 'e'는 해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숫자, 예를 들어 '(q1.1)'은 제 1장의 첫 단락을 그리고 '(e1.2)'는 제 1장의 두 번째 단락을 의미한다. 그리고 'q'와 'e'를 통해서 첫 단락은 인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해설임을 알 수 있다.



## 제 1 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 1. 롤즈의 생애 및 저작

#### 1.1 생애 요약

존 롤즈는 1921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태어났다. 1950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후 코넬 대학교와 메사추세츠 공대(MIT) 교수를 지냈다. 1962년에는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되었으며, 그 후에 대학에서 명예교수를 지냈다.

롤즈는 계약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사회 정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롤즈는 1958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논문을 발표 한 이후로, 정의의 문제를 다룬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의 연구는 1971년 정의론을 발표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93년엔 정치적 자유주의, 1999년에 만민법, 2001년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발표하고 2002년에 사망하였다.

롤즈의 관심사는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원초적 입장의 한 조건인 무지의 베일이다. 롤즈에게 있어서 자신에 대한 특수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합의하게 될 원칙을 찾는 것이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타고난 소질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합의할 원칙들이 우연적 불평등에 의해 왜곡되지 않게 된다. 자신에 대한 특수한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 도출할 원칙의 타당성을 부여해 주는 셈이다. 롤즈의 『정의

론』에서 무지의 베일은 우리가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두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한 정의의 두 원칙 중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 즉 사상, 양심, 언론, 집회, 선거, 공직, 재산 소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다.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해 주는 원칙으로 차등의 원칙에 의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시켜주는 조건을 제시하고, 공정한 기회균등에 의해 직위나 직책에 대한 기회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회까지도 평등하게 보장해 주고 있다.

## 1.2 생애 해설

존 롤즈는 1921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태어났다. 1950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코넬 대학과 메사추세츠 공대(MIT) 교수를 지냈다. 1962년에는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되었으며, 그 후 이 대학에서 명예교수를 지냈다.

롤즈는 계약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사회 정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롤즈는 1958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논문을 발표 한 이후로, 정의의 문제를 다룬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의 연구는 1971년 정의론을 발표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93년엔 정치적 자유주의, 1999년에 만민법, 2001년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발표하고 2002년에 사망하였다. 롤즈는 자신의 대표적인 저작인 정의론의 기본적 사유를 담고 있는 최초의 논문인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1950년대에 발표했는데, 이 시기의 철학적 분위기는 논리 실증주의에 의해 경험되지 않는 학문 영역에 그 학문적 지위가 의심받고 있었다. 윤리학 영역 역시 그 학문적 지위를 의심받았는데, 그 이유는 윤리학은 그 특성상 존재하는 것이 아닌 존재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탐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윤리학적 분위기는 도덕이 단지 감정 표현이나 주관적 견해를 주

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정서주의(emotivism)가 만연되어 있었다. 정치 철학에 있어서도 사회 복지를 주장하는 공리주의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규범학에 대한 시대적 불신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공리주의가 어려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 가능한 간편한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는 여러 정치적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롤즈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방식이 전체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공리주의는 최대의 선을 산출하기 위해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롤즈는 먼저 자신의 정의론을 제시하면서 공리주의의 실질적 내용과 그 방법론적 함축을 비판하고 있다. 롤즈는 공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권리론을 그리고 정의론의 기초로 계약 이론을 발전시켜 하나의 합리적 의사 결정론과 관련시켜 자신의 정의론을 제시하고 있다. 롤즈 정의론의 방법론적 특징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다. 이러한 정의관은 순수 절차적 정의관으로서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직접 답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주장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의 정당성은 원초적 입장이 보장해 주고 있다. 이 원초적 입장은 근대의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서의 자연상태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원초적 입장은 역사적 현실로 실제하는 상황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가 될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기 위해 구성된 가상적인 입장에 불과하다. 즉 원초적 입장은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근거이다.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근거인 원초적 입장은 두 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무지의 베일이다. 무지의 베일에 의해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는 인간 사회에 관한 일반적 지식은 알 수 있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실, 즉 자연적 재능, 사회적 지위, 인생 계획,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속한 세대 등을 알 수 없다. 자신에 대한 특수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인지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무지의 베일은 객관적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의 내적 조건이 아닌 외부에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조건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이며, 더구나 타인의 이익에는 무관심하여 타인에 대해 시기심과 동정심을 갖지 않는 상호 무관심한 존재라는 조건을 갖는다. 이것은 동기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건은 주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당사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인데, 당사자들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은 합의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대안들의 결과 중 최악의 것 중에서 최선을 보장하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택이 그 행위자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목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자유와 최소한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침해받을 수 있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보다 큰 이익을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원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은 최대의 이익은 누리지 못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인생 계획을 위한 기본적 조건은 확보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롤즈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 도출된 정의의 원칙이 정의에 대한 우리의 통상적 신념과 합치할 것이며, 우리의 윤리적 판단과도 부합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은 도덕적 관점인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논증에 의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이 정의의 원칙으로 두 개의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한다.

제1원칙 :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원칙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 1)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 2)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원리이다. 이런 기본적인 자유는 언론 및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인신의 자유, 사유 재산 소유의 자유,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공직을 가질 자유 등이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인 제1원칙은 제2원칙에 항상 우선한다. 즉 많은 이익이 주어진다고 해도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롤즈는 자유주의 사상가이면서도 이러한 기본적 자유의 목록에 생산수단 소유의 자유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점을 통해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된 정의의 원칙에 의해 구성된 정의로운 사회로 자유 시장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롤즈의 기본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물론 롤즈는 사회주의 체제 역시 시장 체제와 부합하며, 모든 체제가 시장에 의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제2원칙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차등의 원칙이라고 말하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시켜주는 조건을 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이다. 그렇지 못하면 평등한 분배가 정의롭다. 정의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은 공정한 기회의 균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위와 직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단순히 기회만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기회마저도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능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 체제의 기회 보장과는 다르다.

정의의 제1원칙은 자유주의 신념의 핵심을 보여주는 원칙으로, 평등한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할 수 없다는 정신을 드러내 주고 있다. 제2 원칙은 제1원칙에 의한 기본적 자유 실현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의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의 자유 행사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롤즈는 그의 두 번째 저서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정치 철학의 성격과 임무에 대해 매우 특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보편적인 도덕 이론이 아니라, 다원주의 현실 속에서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확립하는, 현대적 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정치 이론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합당한 종교적, 철학적, 그리고 도덕적 견해(롤즈는 이를 포괄적 교설이라 부름)에 있어 심각하게 이견을 보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로 이루어진 안정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오랜 기간 유지하는 방도를 찾는 현대적 문제를 다루는 정치 이론이라는 것이다.

롤즈에 따르면, 인간이 가진 이성적 능력과 그에 의거한 판단력은 올바르고 양심적으로 행사한다 할지라도, 개입될 갖가지 한계, 즉 이성의 부담들로 인해 우리는 철학적, 도덕적 종교적인 포괄적 견해에 있어 합리적인 사람들 간에도 합당한 의견의 불일치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포괄적 교설들과 인간 이성이 갖는 한계로 인해 합당한 안정성이 달성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자유주의 자체가 합의되기 어려운 포괄적 교설들로부터 분리되어 그 적용 범위를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 한정하는 일, 즉 정치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일이라고 한다.

바로 이 같이 삶 전체와 관련되는 철학으로서의 넓은 의미의 자유주의(칸트나 밀의 포괄적 자유주의)로부터 오직 정치적 삶과 관련되는 철학으로서의 협의의 자유주의로 이행하는 것이 최대의 수용 가능성 to 위한 최소화 전략에 의거한 정치적 자유주의의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공적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 한정될 경우, 자유주의는 더 이상 이견의 여지가 분분한 교설이 아니라, 가장 포괄적인 견해들 간의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롤즈의 생각이다. 이러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경우, 자유주의는 특정한 교설들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을 성취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상이한 포괄적 교설들에 의해서도 동일한 지지 기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포괄적인 도덕 교설과 정치적 정의 간의 구분이다. 그에 따르면, 포괄적 교설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가치관, 인간의 성품에 대한 이상, 그리고 우정을 위시해서 가족적 사회적 인간관계의 이상 등을 포함하는 바, 다양한 철학, 가치관, 형이상학 등을 말한다. 주요 종교들 또한 포괄적 교설의 사례들 중 하나이며, 칸트나 밀의 자유주의를 포함한 철학적 도덕 이론 역시 또 다른 하나의 사례이다. 포괄적 교설은 공적인 정치적 문화라기보다는 시민社会의 배경적 문화로서 비-공적인 (non-public) 사회적 문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롤즈는 이 같이 포괄적 견해와 정치적 정의관을 세 가지 측면에서 대조한다. 우선 정치적 정의관은 정치적, 경제적 주요 제도들, 즉 사회의 기본 구조와 관련된 최소한의 도덕이지 삶의 전반과 관련되는 포괄적 가치관이 아니다. 둘째, 정치적 정의관은 하나 이상의 포괄적 가치관에 의해 정당화될 수는 있으나, 특정한 교설로부터 도출되거나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정치적 정의관은 그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 속에 존속하는 다양한 포괄적 교설들에 의해 지지 될 수 있고, 그들과 양립 가능한 핵심적 구성 요소이며, 동시에 특정 교설들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서 정치적 정의관의 내용은 민주 사회의 공공문화를 구성하는 기본 이념들에 의해 표현될 수가 있다. 여기에서 롤즈는 가치관의 다원주의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문화와 제도적 측면들이 존재하며, 그 같은 공통 이념과 가치관이 체계화되어 하나의 정의론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포괄적 교설들 간의 중첩적 합의의 초점을 이루는 정치적 정의관은 여러 상이한 철학적, 종교적, 도덕적 논변을 통로로 해서 이를 수가 있으며, 절대적으로 우월한

통로나 모두가 위해야 할 단일한 통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경식, “세기의 정의론자 존 롤즈”, 『정의론』, 존 롤즈, 760-762)

### 1.3 생애 연보

- 1921년도 :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출생.
- 1950년도 :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
- 1958년도 : “공정으로서의 정의” 논문 발표
- 1962년도 : 하버드 대학교 교수
- 1971년도 : 『정의론』 출판
- 1993년도 : 『정치적 자유주의』 출판
- 1999년도 : 『만민법』 출판
- 2001년도 : 『공정으로서의 정의』 출판
- 2002년도 : 사망

### 1.4 저작

#### 1.4.1 정의론

- 한국어표준본 : 존 롤즈, 『정의론』, 이학사(2002)
- 영어표준본 :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Belknap Harvard(2004)

#### 1.4.2 정치적 자유주의

- 한국어표준본 : 존 롤즈, 『정치적 자유주의』,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1993)

## 2. 『정의론』 해제

### 2.1 『정의론』 요약

『정의론』은 자연권 이론의 바탕이 된 고전적 사회 계약 이론을 일반적 논변 형식으로 발전시켜 정의관을 제시하고 있다. 롤즈는 정의의 원칙들을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의 합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롤즈는 이러한 방식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르고 있다. 원초적 입장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이다. 원초적 입장이 가진 본질적 특징은 1)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특수한 사실을 알지 못하며, 2) 각각의 개인은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특수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며, 이러한 특징은 원초적 입장을 공정하게 만들어 준다. 이 때문에 순수 절차적 정의로서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말이 성립한다. 결국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는 공정한 것이 된다.

각각의 개인이 합리적이며 상호 무관심하다는 것은 서로 타인의 이해 관계에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개개인은 타인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두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 제1원칙은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할당을 평등하게 요구하는 원칙이며, 제2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허용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어떤 불평등이 불운한 사람의 처지를 개선한다면, 그로 인해 소수의 사람이 더 큰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정당하게 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선을 증대시킨다고 해도 평등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는 부당하다. 왜냐하면 정의의 두 원칙은 제1원칙을 제2원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2.2 『정의론』 해설

“나의 목적은 이를 테면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에게서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 계약의 이론을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원초적 계약을 어떤 사람이 특정 사회를 택하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핵심이 되는 생각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그 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 준다. 정의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협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 결의를 통해 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득의 분배를 정해줄 원칙들을 함께 채택한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상호 간에 상충하는 요구를 조정하는 방식과 그들 사회의 기본 현장이 무엇인가를 우선 정하게 된다. 각각의 사람은 합리적인 반성을 통해서 무엇이 자신의 선인지를, 다시 말하면 그가 추구할 합리적인 목적의 체계가 무엇인지를 결정 해야 하듯이 사람들의 집단은 그러한 목적 체계 가운데서 무엇이 정의와 부정의로 간주될 것인가를 한꺼번에 정하게 된다. 합리적인 인간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가상적인 상황에서 행하게 될 선택은 일단 이러한 선택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정의의 원칙들을 결정해 줄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의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있어서의 자연 상태에 해당한다. 이 원초적 입장을 역사상 실재했던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문화적 원시 상태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이 갖는 본질적 특성 중에는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

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 났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심지어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된다.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된다.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된다. 각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 있게 되는 원초적 입장의 여건들이 주어질 경우,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즉 자신의 목적과 정의감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합리적 존재로서의 개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최초의 상황이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원초적 입장이란 적절한 최초의 원상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거기에서 도달하게 된 기본적 합의는 공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말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의 원칙이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합의된 것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칭은 정의라는 개념과 공정이라는 개념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마치 은유로서의 시라는 구절이 시라는 개념과 윤유라는 개념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미 말했듯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람들이 함께 선택하게 될 가장 일반적인 것들 중의 하나로 시작된다. 즉 그것은 제도들에 관한 그 후의 모든 비판과 개혁을 규제하게 될 정의관의 제1원칙들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일단 정의관이 선택된 다음에는 그에 의해 헌법이 선택되고 입법 기관이 선택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미 처음에 합의된 원칙들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만일 이러한 일련의 가정적 합의에 의해서 우리의 사회적 상황을 규정해줄 규칙들의 일반 체계가 약정된다면, 그러한 우리의 사회적 상황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일단 원초적 입장에서 일련의 원칙들이 정해진다고 가정할 경우(즉 어떤 특정한 정의관이 선택될 경우), 사회 제도가 이 원칙들을 실현하고 있을 때에는 언제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서로 간의 관계가 공정한, 즉 자

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하게 될 조건으로 서로 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타협을 그들이 원칙의 선택에 있어 널리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제한 조건들을 구체화하는 최초의 상황에서 인정하게 될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일반적으로 주지시킴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정의의 원칙들을 공공적으로 승인 받게 될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물론 어떤 사회든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협동 체제란 있을 수 없다. 즉 각자는 이미 어떤 특정 사회의 특정 지위를 갖고 태어나게 되고, 이러한 지위의 성격은 그의 인생 전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는 가장 자발적인 체제에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사회는 공정한 여건 아래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하게 될 원칙들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사회의 성원들은 자발적이며, 그들이 받게 되는 책무는 스스로 부과한 것이 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갖는 하나의 특징은 최초의 상황의 당사자들을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이기주의자들, 즉 이른바 재산이나 특혜, 지배권 등 특정 종류의 관심만을 갖는 개인들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은 서로 타인의 이해관계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상이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목적이 서로 대립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나아가서 합리성이란 개념은, 경제 이론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주어진 목적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취한다는 뜻에서 가능한 한 좁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앞으로 설명이 있겠지만 나는 이 개념에 약간의 변경을 가해서 사용하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개념 속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윤리적 요소를 가미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최초의 상황이란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규정에 의해 특징지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전개하는 데 있어 분명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원초적 입장에서 어떠한 정의의 원칙들이 채택될 것인가를 결정하

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상황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 그것이 보여줄 선택의 문제를 주의 깊게 정리해야 한다. 바로 다음에 오는 장들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일단 정의의 원칙이 평등한 상황의 원초적 합의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해도, 공리의 원칙이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는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자기 자신들을 서로 자신들의 요구를 내세울 자격이 있는 평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이득의 보다 큰 총량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 보다 작은 인생 전망을 요구하는 원칙에 동의할 것같이 생각되지는 않는다. 각자는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중진시키고 자신의 이익과 능력을 보호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만족의 보다 큰 순수 잔여량을 가져오기 위해 자신에게 돌아올 손실을 말없이 참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끈질기고 강렬한 이타적 충동이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인간이란 자기 자신의 기본 권리와 이해관계에 미칠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이득의 산술적인 총량을 극대화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기본 구조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리의 원칙은 상호 이익을 위해 모인 평등한 사람들의 사회적 협동체라는 관념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개념 속에 내포된 호혜성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나는 그러한 사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와는 달리 내가 주장하려는 것은,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이한 두 원칙을 선택하리라는 것이다. 즉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반면에 두 번째 것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자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게 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소수자의 노고가 전체의 보다 큰 선에 의해 보상된다는 이유로 어떤 제도를 정당화하는 일을 배제한다. 다른 사람의 번영을 위해서 일부가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편리할지는 모르나 정의롭지는 않다. 그러나 불운한 사람의 처지가 그로 인해 더 향상된다면 소수

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고 해도 부정의 한 것은 아니다.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의 복지가 그들의 만족스런 삶에 필수적인 사회 협동 체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득의 분배는 가장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 사회에 가담하는 모든 사람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언급된 두 원칙은 공정한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누릴 만한 마땅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다 좋은 자질을 타고 났거나 운 좋게 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된 사람들은 어떤 훌륭한 체제가 모든 이의 복지를 위한 필수조건일 경우 다른 사람들의 자발적인 협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우리가 천부적 재질이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을 정치적 경제적 이득의 요구에 있어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무시하는 정의관을 찾고자 결정한 이상 우리는 그러한 원칙들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도덕적 견지에서 볼 때 그 원칙들은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임의적인 것이라 생각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도외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원칙의 선택 문제는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내가 제시하는 해답이 모든 사람에게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다른 계약론에서처럼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1) 최초의 상황 및 거기에서 생기는 선택의 문제에 대한 해명과 (2) 합의될 원칙들의 체계에 대한 논증이다. 우리들은 이 이론의 첫 번째 부분(아니면 약간의 변경을 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나 두 번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든가,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제시된 특정 원칙들은 거부될지라도 최초의 계약적 상황이라는 개념은 합당한 것으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한 구상이 이루어진다면 확실히 공리주의나 완전설과는 전혀 다른 정의의 원칙들에 이르게 될 것이며, 따라서 계약설은 이러한 견해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그러나 계약론적인 방법이 윤리설을 연구하고 여러 윤리설의 근본 가정을 밝혀주는 쓸모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주장은 반박될 수도 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내가 계약론이라고 부르는 것의 한 예이다. 계약이라는 말이나 그와 관련된 표현에 반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그것이 무리 없이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많은 낱말들에는 오해하기 쉬운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혼동을 일으킬 것 같기도 하다. 공리와 공리주의라는 용어도 분명히 예외는 아니다. 그 말들도 적대적인 비판자들이 선뜻 악용하게 될 불행한 암시들을 풍기고 있다. 그러나 그 말들도 공리주의적 학설을 연구할 뜻을 가진 사람에게는 충분히 명료한 것이다. 도덕 이론들에 적용될 계약이란 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관련된 합의의 내용은, 일정한 사회를 택하거나 특정 형태의 정부를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도덕 원칙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순수하게 가상적인 것으로서, 계약론적인 입장은 어떤 원칙들이 적절한 최초의 상황에서 채택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계약론적 설명 방식이 갖는 장점은 그것이 정의의 원칙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에 의해 선택되는 원칙들로 생각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정의관들이 설명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의론은 합리적 선택 이론의 일부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나아가서 정의의 원칙들은 사회적 협동에 의해 얻어진 이득에 대한 상충되는 요구들을 다루는 것으로서, 여러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관계에 적용된다. 계약이란 말은 바로 이러한 복수성을 암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득의 적절한 분배는 모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들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계약론적 설명 방식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공지성이라는 조건이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들이 합의의 결과인 이상, 시민들은 타인들도 그 원칙에 따르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원칙들이 갖는 공지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계약 이론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계약론은 오랜 전통을 이루며 이어져 왔다. 이러한 계통의 사상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은 생각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연스러

운 경건함에도 부합된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며, 적절한 주의만 기울인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마디 덧붙일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완전한 계약론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계약론적인 사상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윤리 체계의 선택에 까지, 다시 말하면 단지 정의뿐만 아니라 모든 덕목들에 관한 원칙도 포함하는 체계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정의의 원칙들이나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만을 고찰하게 될 것이며, 여러 덕목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제대로 성공하게 되면, 다음 단계에는 공정으로서의 정당성이라는 이름이 나타내는 보다 일반적인 입장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이 보다 광범위한 이론이 되더라도, 그것은 인간들의 관계만을 포함할 뿐 인간이 동물이나 여타의 자연과 가지게 될 관계는 논외로 하기 때문에, 모든 도덕적인 관련들을 포괄하지는 못하게 되는 셈이다. 나는 계약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일차적인 중요성을 갖는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할 방식을 제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문제들은 제외해 두고자 한다. 우리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그것을 본보기로 하는 일반적인 유형의 견해가 제한된 범위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한 여타의 문제들이 고려될 경우 우리의 결론이 어느 정도 수정되어야 할지는 미리 정해질 수 없을 것이다.” (『정의론』, 롤즈, 45-52)

## 2.3 『정의론』 상세 목차

### 제 1 부 윤리론

#### 1장 공정으로서의 정의

##### 1절 정의의 역할

- 2절 정의의 주제
- 3절 정의론의 요지
- 4절 원초적 입장과 정당화
- 5절 고전적 공리주의
- 6절 상호 비교 고찰
- 7절 직관주의
- 8절 우선성 문제
- 9절 도덕 이론에 관한 몇 가지 제언

## 2장 정의의 원칙

- 10절 제도와 형식적 정의
- 11절 정의의 두 원칙
- 12절 제2원칙에 대한 해석
- 13절 민주주의적 평등과 차등의 원칙
- 14절 공정한 기회균등과 순수 절차적 정의
- 15절 기대치의 근거로서의 사회적 기본가치
- 16절 적합한 사회적 지위
- 17절 평등에로의 경향
- 18절 개인에 대한 원칙 : 공정성의 원칙
- 19절 개인에 대한 원칙 : 자연적 의무

## 3장 원초적 입장

- 20절 정의관에 대한 논의의 성격
- 21절 대안의 제시
- 22절 정의의 여건
- 23절 정당성 개념의 형식적 제한 조건
- 24절 무지의 베일
- 25절 당사자의 합리성
- 26절 정의의 두 원칙에 이르는 추론
- 27절 평균 효용의 원칙에 이르는 추론

28절 평균 효용의 원칙의 몇 가지 난점

29절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몇 가지 주요 논거

30절 고전적 공리주의, 공평성과 이타심

## 제 2 부 제도론

### 4장 평등한 자유

31절 4단계 과정

32절 자유의 개념

33절 평등한 양심의 자유

34절 관용과 공의

35절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

36절 정치적 정의와 헌법

37절 참여 원칙의 한계

38절 법의 지배

39절 자유의 우선성에 대한 정의

40절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칸트적 해석

### 5장 궁지와 소심에 관하여

41절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의 정의의 개념

42절 경제 체제에 대한 논의

43절 분배적 정의의 배경적 제도

44절 세대들 간의 정의 문제

45절 시간에 대한 선호

46절 우선성에 관한 그 밖의 사례들

47절 정의에 대한 신조

48절 합법적 기대치와 도덕적 응분

49절 절충론과의 비교

50절 완전성의 원리

## 6장 의무와 책무

- 51절 자연적 의무의 원칙에 대한 논증
- 52절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논증
- 53절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
- 54절 다수결 원칙의 지위
- 55절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정의
- 56절 양심적 거부에 대한 정의
- 57절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 58절 양심적 거부의 정당화
- 59절 시민 불복종의 역할

## 제3부 목적론

### 7장 합리성으로서의 선

- 60절 선에 대한 이론의 필요성
- 61절 단순한 경우의 선에 대한 정의
- 62절 의미에 관한 주석
- 63절 인생 계획의 선에 대한 정의
- 64절 숙고된 합리성
- 65절 아리스토텔레스적 원칙
- 66절 인간에 적용되는 선에 대한 정의
- 67절 자존감, 탁월성, 수치심
- 68절 정당성과 선과의 몇 가지 대비

### 8장 정의감

- 69절 질서정연한 사회의 개념
- 70절 권위에 의한 도덕
- 71절 공동체에 의한 도덕
- 72절 원리에 의한 도덕
- 73절 도덕감의 특성

74절 도덕적 태도와 자연적 태도의 관계

75절 도덕 심리학의 원칙

76절 상대적인 안정성의 문제

77절 평등의 근거

## 9장 정의는 선인가

78절 자율성과 객관성

79절 사회적 연합의 관념

80절 시기심의 문제

81절 시기심과 평등

82절 자유의 우선성에 대한 근거

83절 행복과 지배적 목적

84절 행복과 지배적 목적

85절 자아의 동일성

86절 정의감은 선인가

87절 정당화에 대한 결어

## 2.4 주요 용어

### 2.4.1 정의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으로서 법이나 제도의 정당성을 평가해 주는 기준의 역할을 한다. 즉 정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정당하지 못한 법이나 제도가 효율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다할지라도, 인정될 수 없다. 롤즈는 이러한 정의를 사상 체계에서 진리와 비교하고 있다. 사상 체계에서 어떤 하나의 이론이 최고로 간결하고 선명한 이해를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또한 실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라면 인정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사회 제도가 정의롭

지 못하다면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일정한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정의에 의거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에 의거한 이러한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부당한 것으로 여긴다. 시민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설령 전체 사회의 복지를 보다 더 증진시키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침해는 부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에 입각한 시민적 자유는 불가침 입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적 목적, 즉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익에 의해서도 정의에 의해 이미 보장되고 있는 자유의 권리들은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의에 입각한 이러한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자유들의 상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 2.4.2 사회

사회란 그 구성원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구성한 협력 체계이다. 사회 안에서 그 구성원은 서로 구속하며, 이 때문에 서로 인정한 행동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은 이런 행동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 또한 하나의 사회는 어느 정도 자족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사회가 그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구성한 협력체이기는 하지만, 그 구성원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 사회는 이런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정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해관계가 상충할 뿐만 아니라, 서로 협동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일치된 이해관계가 사회를 구성하는 근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4.3 공리주의

최근까지 발전을 거듭해 온 공리주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

러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공리주의 모두를 상세하게 고찰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 여기서는 롤즈 자신이 주장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과 공리주의를 비교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목적에 필요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장 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의 논의로 충분하다. 이를 위해 롤즈가 『정의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리주의는 가장 명료하고 접근하기 쉽게 시지윅이 정식화한 고전적 공리주이다.

고전적 공리주의에 있어서, 한 사회의 중요한 제도가 정당하다는 것은 그 사회의 최대 만족을 가져오게끔 그 제도가 편성되는 경우이다. 즉 제도의 정당성은 그 사회의 최대 만족을 그 제도가 달성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고전적 공리주의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롤즈는 고전적 공리주의 장점으로 고전적 공리주의가 정의의 원칙들과 이 원칙에서 도출되는 권리의 상대적 우선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문제점으로는 공리주의는 소수가 불편하더라도 타인이 큰 이익의 총량을 누린다면, 정당하다고 말할 것인데, 타인이 누릴 보다 큰 이익의 총량에 의해 소수의 불편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 2.4.4 직관주의

직관주의는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는 다수의 제1원칙들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이런 원칙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이 원칙들보다 상위에 있는 공정하고 단일한 원칙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 원칙들 간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가장 공정한 방법은 숙고해서 원칙들 상호 간의 비중을 재서 결정하는 방법뿐이다.

직관주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특징은 상반되는 지침을 제공하는 상충하는 다양한 제1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둘째 특징은 이러한 원칙들의 순위를 가려줄 명확한 방법이나 상위의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상충하는 제1원칙들을 조정하기 위한 상위의 규

칙이 제시된다 할지라도, 그 규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변변치 못한 것이다.

롤즈가 이해하고 있는 직관주의는 다원주의이다. 즉 직관주의는 더 이상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제1원칙들로 이루어져 있다. 다원적이라고 해서 모두 다양한 원칙들의 우열을 가려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상충하는 원칙들의 우열을 가려주는 규칙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만 숙고된 판단에 의한 직접적인 호소를 통해 원칙들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는 직관주의를 다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 2.4.5 자유

자유는 모두 인간의 열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특히 인간의 기본적 자유로 간주되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시민적 자유는 정치적 문제에 의해 희생될 수 없다. 롤즈는 이러한 생각을 정의의 제1원칙에서 드러내며,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한다는 주장에 의해 확실하게 해 두고 있다.

자유에 대한 설명은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자유는 1) 자유로운 행위의 주체, 2) 그 주체에 제시되는 제한과 한계, 3) 자유로운 주체가 행해야 할 것과 행해서는 안 될 것과 관련해서 설명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사회의 기본적 자유는 평등해야 한다. 다만 평등한 자유가 제한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도 평등한 자유의 의미와 정의의 두 원칙이 갖는 축차적 서열에 의한 특정한 기준에 따라야만 한다. 이런 자유는 자유 그 자체만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즉 자유는 서로 상충하는 경우 그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위배되는 첫 번째 방식은 한 계층이 다른 계층의 사람보다

더 큰 자유를 갖는 경우이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위배되는 두 번째 방식은 당연히 주어져 있는 자유의 범위보다 훨씬 광범위한 경우가 있다. 이 두 경우에는 자유가 평등하지 않다.

#### 2.4.6 원초적 입장

롤즈는 자신이 생각한 정의의 두 원칙이 원초적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은 정의의 두 원칙의 발생 조건이면서, 정의의 두 원칙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초적 입장은 무지의 베일이라는 객관적 조건은, 그 조건에서 선택될 원칙들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일만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원초적 입장은 고전적 계약론의 자연 상태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무지의 베일이라는 조건에서는 자연 상태와 다르다. 또한 이런 원초적 입장이 인류의 역사과정에 실재했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원초적 입장이란 순전한 가상적 상황일 뿐이다. 원초적 입장이란 우리의 도덕 판단과 정의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일 뿐이다.

원초적 입장은 여러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원초적 입장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개념 장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는 정의의 원칙을 낳기 위한 여러 가정들이 필요하다. 우선 원초적 입장에서는 정의의 여건이 성립한다고 가정되어야 하며, 무지의 베일이 작동하고 있고,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시기심 없는 합리성을 가지며, 상호 무관심하다는 것이 가정되어 있다.

## 제 2 부 철학 지식지도

### 1. 철학자 지식지도

- 토픽명 : 룰즈
- 토픽 ID : mod\_rawls
- 상위 토픽명 : 서양현대철학자
- 상위 토픽 ID : con\_philosophers

내부 어커런스

원어 이름 : John Rawls

생애 요약 : 1부 1.1

외부 어커런스

생애 요약 : 1부 1.1

생애 해설 : 1부 1.2

인물 사진 :

영어 웹사이트 :

연관 관계

관계된 철학자 : 로크(mod\_locke)

관계된 철학자 : 벤담(mod\_bendam)

관계된 철학자 : 칸트(mod\_kant)

관계된 철학자 : 시지위(con\_sidgwick)

기여한 철학 분야 : 정치철학(con\_pol\_phil)

기여한 철학 분야 : 윤리학(con\_ethics)

기여한 철학 이론 : 직관주의(con\_intuitionism)  
주요 저작 : 정의론(con\_rawls\_justice)

##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 토픽명 : 정의론
- 토픽 ID : con\_rawls\_justice
- 상위 토픽명 : 서양현대철학문헌
- 상위 토픽 ID : con\_phil\_texts

### 내부 어커런스

원어 제목 : A Theory of Justice  
영어 제목 : A Theory of Justice  
원전 요약 : 1부 2.1  
원전 초판 출판 년도 : 1971

### 외부 어커런스

원전 요약 : 1부 2.1  
원전 해설 : 1부 2.2  
상세 목차 : 1부 2.3  
책표지 그림 :  
원어 디지털 텍스트 :  
영어 디지털 텍스트 :  
철학 문헌 내용 토픽맵 : con\_rawls\_justice\_km.xtm

### 연관 관계

저자 : 롤즈(con\_rawls)

관계된 철학자 : 로크(mod\_locke)

관계된 철학자 : 벤담(mod\_bendam)

관계된 철학자 : 칸트(mod\_kant)

관계된 철학자 : 시지윅(con\_sidgwick)

기여한 철학 분야 : 정치철학(con\_pol\_phil)

기여한 철학 분야 : 윤리학(con\_ethics)

###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 3.1 정의

• 토픽명 : 정의(정의)

• 토픽 ID : t1

• 상위 토픽명 : 정의

• 상위 토픽 ID : t\_con\_justice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justice

한자 표기 : 正義

용어 설명 : 1부 2.4.1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1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롤즈(con\_rawls)

사용한 철학 문헌 : 정의론(con\_rawls\_justice)

사용한 내용 토픽 : 정의(c1.1)

### 3.2 사회

• 토픽명 : 사회(사회)

• 토픽 ID : t2

• 상위 토픽명 : 사회

• 상위 토픽 ID : t\_con\_society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society

한자 표기 : 社會

용어 설명 : 1부 2.4.2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2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룰즈(con\_rawls)

사용한 철학 문헌 : 정의론(con\_rawls\_justice)

사용한 내용 토픽 : 사회(c1.1.1.3.1)

### 3.3 공리주의

• 토픽명 : 고전적 공리주의(고전적 공리주의)

- 토픽 ID : t3
- 상위 토픽명 : 공리주의
- 상위 토픽 ID : con\_utilitarian

####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classical utilitarianism

한자 표기 : 古典的功利主義

용어 설명 : 1부 2.4.3

####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3

####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룰즈(con\_rawls)

사용한 철학 문헌 : 정의론(con\_rawls\_justice)

사용한 내용 토픽 : 정의론의 대안으로서 고전적 공리주의(c1.1.3)

### 3.4 직관주의

- 토픽명 : 직관주의(직관주의)
- 토픽 ID : t4
- 상위 토픽명 : 직관주의
- 상위 토픽 ID : con\_intuitionism

####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intuitionism

한자 표기 : 直觀主義

용어 설명 : 1부 2.4.4

###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4

####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롤즈(con\_rawls)

사용한 철학 문헌 : 정의론(con\_rawls\_justice)

사용한 내용 토픽 : 직관주의(c1.1.4)

## 3.5 자유

• 토픽명 : 자유(자유)

• 토픽 ID : t5

• 상위 토픽명 : 자유

• 상위 토픽 ID : t\_con\_liberty

###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liberty

한자 표기 : 自由

용어 설명 : 1부 2.4.5

###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5

####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롤즈(con\_rawls)

사용한 철학 문헌 : 정의론(con\_rawls\_justice)

사용한 내용 토픽 : 자유(c1.1.6)

### 3.6 원초적 입장

- 토픽명 : 원초적 입장(원초적 입장)
- 토픽 ID : t6
- 상위 토픽명 : 자연상태
- 상위 토픽 ID : t\_mod\_natural\_state

####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original position

한자 표기 : 原初的 立場

용어 설명 : 1부 2.4.6

####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6

####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룰즈(con\_rawls)

사용한 철학 문헌 : 정의론(con\_rawls\_justice)

사용한 내용 토픽 : 원초적 입장(c1.1.5)

##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 1. 정의

1.1 공정으로서의 정의 (q1.1/q1.2)

1.1.1 정의의 역할

1.1.1.1 사회제도의 제1덕목으로서 정의 (e1.1.1.1/q1.1.1.2)

1.1.1.2 정의의 우위성 (e1.1.2.1/q1.1.2.2)

1.1.1.3 정의의 원칙들의 역할

1.1.1.3.1 사회 (e1.1.3.1.1/q1.1.3.1.2)

1.1.1.3.1.1 사회의 특징으로서 이해관계의 상충과 일치

(e1.1.3.1.1.1/q1.1.3.1.1.2)

1.1.1.3.1.1.1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이유

(e1.1.3.1.1.1.1/q1.1.3.1.1.1.2)

1.1.1.3.1.1.2 분배의 뜻을 결정해주는 사회 정의의 원칙

(e1.1.3.1.1.2.1/q1.1.3.1.1.2.2)

1.1.1.3.1.2 질서정연한 사회 (e1.1.3.1.2.1/q1.1.3.1.2.2)

1.1.1.3.1.2.1 질서정연한 사회의 조건

(e1.1.3.1.2.1.1/q1.1.3.1.2.1.2)

1.1.1.3.1.2.2 질서정연한 사회에서의 공공적인 정의관의 역할

(e1.1.3.1.2.2.1/q1.1.3.1.2.2.2)

1.1.1.3.2 상이한 원칙과 견해들의 공통적 역할로서 정의 개념

(e1.1.3.2.1/q1.1.3.2.2)

1.1.1.3.3 정의의 원칙의 합의 가능성 (e1.1.3.3.1/q1.1.3.3.2)

1.1.1.3.3.1 정의의 문제로서 조정, 효율, 안정

(e1.1.3.3.1.1/q1.1.3.3.1.2)

1.1.1.3.3.2 정의관이 갖는 역할 (e1.1.3.3.2.1-2)

1.1.1.4 형식적 정의 (e1.1.4.1/q1.1.4.2)

1.1.1.4.1 법과 제도의 평등한 적용을 요구하는 형식적 정의

(e1.1.4.1.1/ q1.1.4.1.2)

1.1.1.4.1.1 실질적 정의를 보장하지 못하는 형식적 정의

(e1.1.4.1.1.1/ q1.1.4.1.1.2)

1.1.1.4.1.2 큰 부정의를 해소할 수 있는 형식적 정의

(e1.1.4.1.2.1/q1.1. 4.1.2.2)

1.1.1.4.2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 정의를 보장한다는 한 견해

(e1.1.4.2.1/ q1.1.4.2.2)

1.1.1.5 정의의 두 원칙 (e1.1.5.1/q1.1.5.2-4)

1.1.1.5.1 정의의 두 원칙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

(e1.1.5.1.1/q1.1.5. 1.2)

1.1.1.5.2 제1원칙 (e1.1.5.2)

1.1.1.5.2.1 제1원칙의 평등한 자유의 의미

(e1.1.5.2.1.1/q1.1.5.2.1.2)

1.1.1.5.2.2 제1원칙의 우선성 (e1.1.5.2.2.1/q1.1.5.2.2.2)

1.1.1.5.2.3 기본적 자유의 제한 조건

(e1.1.5.2.3.1/q1.1.5.2.3.2)

1.1.1.5.2.4 기본적 자유들의 목록

(e1.1.5.2.4.1-2/q1.1.5.2.4.3)

1.1.1.5.3 제 2원칙 (e1.1.5.3.1-2)

1.1.1.5.3.1 제2원칙의 적용 (e1.1.5.3.1.1-2/q1.1.5.3.1.3)

1.1.1.5.3.2 제2원칙의 해석 (e1.1.5.3.2.1/q1.1.5.3.2.2-3)

1.1.1.5.3.2.1 제2원칙의 해석에 있어서 전제

(e1.1.5.3.2.1.1/q1.1.5.3.2.1.2)

1.1.1.5.3.2.2 제2원칙에 대한 자연적 자유체제의 입장

(e1.1.5.3.2.2.1/q1. 1.5.3.2.2.2)

1.1.1.5.3.2.2.1 자연적 자유체제에 있어서 최초의 분배

(e1.1.5.3.2.2.1.1/ q1.1.5.3.2.2.1.2)

1.1.1.5.3.2.2.2 자연적 자유체제에 있어서 최초의 분배에  
의한 부정의

(e1.1.5.3.2.2.2.1/q1.1.5.3.2.2.2.1)

1.1.1.5.3.2.3 제2원칙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

(e1.1.5.3.2.3.1/q1.1.5.3.2.3.2)

1.1.1.5.3.2.3.1 제2원칙에 대한 자유주의 해석의 사회적  
우연성 경감

(e1.1.5.3.2.3.1.1/q1.1.5.3.2.3.1.2)

1.1.1.5.3.2.3.2 제2원칙에 대한 자유주의 해석의 결점

(e1.1.5.3.2.3.2.1-3/q1.1.5.3.2.3.2.4)

1.1.1.5.3.2.4 제2원칙에 대한 자연적 귀족주의 입장

(e1.1.5.3.2.4.1/q1.1.5.3.2.4.2)

1.1.1.5.3.2.5 제2원칙에 대한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

(e1.1.5.3.2.5.1/q1.1.5.3.2.5.2)

1.1.1.5.3.3 효율성의 원칙 (e1.1.5.3.3.1-2/q1.1.5.3.3.3)

1.1.1.5.3.3.1 효율성 원칙의 도표 (q1.1.5.3.3.1.1-2)

1.1.1.5.3.3.2 효율성 원칙의 정의 원칙 필요성

(e1.1.5.3.3.2.1/q1.1.5.3.3.2.2)

1.1.1.5.3.3.2.1 서열을 매길 수 없는 효율적인 점들의 집합

(e1.1.5.3.3.2.1.1/q1.1.5.3.3.2.1.2-4)

1.1.1.5.3.3.2.2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한 효율적인 점들에  
대한 평가

(e1.1.5.3.3.2.2.1/q1.1.5.3.3.2.2.2/q1.1.5.3.3.2.1.2)

1.1.1.5.3.4 복지 함수의 무차별 곡선

(e1.1.5.3.4.1/q1.1.5.3.4.2-3)

1.1.1.5.3.5 공리주의자의 분배에 있어서 무차별 곡선과 최상의  
분배 (e1.1.5.3.5.1/q1.1.5.3.5.2-3)

1.1.1.5.3.6 차등의 원칙 (e1.1.5.3.6.1)

1.1.1.5.3.6.1 차등 원칙의 무차별 곡선

(e1.1.5.3.6.1.1/q1.1.5.3.6.1.2-3)

1.1.1.5.3.6.2 차등 원칙에 있어서 분배의 완전한 만족 상태

(e1.1.5.3.6.2. 1/q1.1.5.3.6.2.2-3)

1.1.1.5.3.6.3 차등 원칙에 있어서 기여 곡선의 전제 사항

(e1.1.5.3.6.3.1/ q1.1.5.3.6.3.2)

1.1.1.5.3.6.4 차등의 원칙에 따른 최초의 불평등 정당화

(e1.1.5.3.6.4.1/ q1.1.5.3.6.4.2)

1.1.1.5.3.6.5 차등의 원칙에 있어서 두 종류의 정의로운 체제

구분(e1.1. 5.3.6.5.1/q1.1.5.3.6.5.2)

1.1.1.5.3.6.5.1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e1.1.5.3.6.5.1.1)

1.1.1.5.3.6.5.2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

(e1.1.5.3.6.5.2.1/q1.1.5.3.6.5.2.2)

1.1.1.5.3.6.6 차등의 원칙과 효율성 원칙의 양립 가능성

(e1.1.5.3.6.6.1/q 1.1.5.3.6.6.2)

1.1.1.5.3.6.7 모든 사람에 이익이라는 차등의 원칙의 의미

(e1.1.5.3.6.7. 1/q1.1.5.3.6.7.2)

1.1.1.5.3.6.7.1 연쇄 관계를 통한 차등의 원칙의 만족의 의미

(e1.1.5.3.6.7.1.1/q1.1.5.3.6.7.1.2)

1.1.1.5.3.6.7.2 연쇄 관계 (q1.1.5.3.6.7.2.1-6)

1.1.1.5.3.6.7.3 최소 수혜자의 이익 향상에 의한 시민 전반의

이익 향상

(e1.1.5.3.6.7.3.1/q1.1.5.3.6.7.3.2)

1.1.1.5.3.6.8 축차적 차등의 원칙 (e1.1.5.3.6.8.1)

1.1.1.5.3.6.8.1 축차적 차등의 원칙이 요구되는 이유

(e1.1.5.3.6.8.1.1/q1. 1.5.3.6.8.1.2)

1.1.1.5.3.6.8.2 축차적 차등의 원칙의 내용

(e1.1.5.3.6.8.2.1/q 1.1.5.3.6.8. 2.2)

1.1.1.5.3.6.8.3 축차적 차등의 원칙의 실제적 적용의 부적합

(e1.1.5.3.6. 8.3.1/q1.1.5.3.6.8.3.2)

1.1.1.5.3.7 공정한 기회균등의 자유주의적 원칙으로서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

- (e1.1.5.3.7.1/q1.1.5.3.7.2)  
1.1.1.5.3.7.1 제2원칙에서 직위 개방을 요구하는 이유  
(e1.1.5.3.7.1.1/q1. 1.5.3.7.1.2)  
1.1.1.5.3.7.2 개방된 직위의 원칙이 표현하는 신념  
(e1.1.5.3.7.2.1/q1.1.5. 3.7.2.2)  
1.1.1.5.3.8 분배의 뜻을 결정하는 절차적 정의 (e1.1.5.3.8.1)  
1.1.1.5.3.8.1 완전한 절차적 정의  
(e1.1.5.3.8.1.1/q1.1.5.3.8.1.2)  
1.1.1.5.3.8.2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e1.1.5.3.8.2.1/q 1.1.5.3.8.2.2)  
1.1.1.5.3.8.3 순수한 절차적 정의  
(e1.1.5.3.8.3.1/q 1.1.5.3.8.3.2)  
1.1.1.5.3.8.3.1 순수 절차적 정의의 이점  
(e1.1.5.3.8.3.1.1/q1.1.5.3.8.3.1.2)  
1.1.1.5.3.8.3.2 협동 체제의 정의에 기초한 순수 절차적  
정의의 분배  
(e1.1.5.3.8.3.2.1/q1.1.5.3.8.3.2.2)  
1.1.1.5.4 제1원칙과 제 2원칙의 서열적 순서  
(e1.1.5.4.1/q1.1.5.4.2)  
1.1.1.5.5 기본적 자유에 속하지 않는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e1.1.5.5.1/ q1.1.5.5.2)  
1.1.1.5.6 일반적 정의관  
1.1.1.5.6.1 일반적 정의관의 내용 (e1.1.5.6.1.1/q1.1.5.6.1.2)  
1.1.1.5.6.2 일반적 정의관과 정의의 두 원칙의 차이점  
(e1.1.5.6.2.1/q1.1. 5.6.2.2)  
1.1.1.5.7 정의의 두 원칙을 확정해 주는 주요 논거 (e1.1.5.7.1)  
1.1.1.5.7.1 정의의 두 원칙을 확정해 부는 주요 논거로서  
공약의 부담 (e1.1.5.7.1.1/q1.1.5.7.1.2)  
1.1.1.5.7.1.1 공약의 부담의 입장에서 정의의 두 원칙의

장점(e1.1.5.7.1. 1.1/q1.1.5.7.1.1.2)

1.1.1.5.7.2 정의의 두 원칙을 확정해 주는 주요 논거로서  
합의의 제한 조건들 (e1.1.5.7.2.1/q1.1.5.7.2.2)

1.1.1.5.7.2.1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효용의 원칙(e1.1.5.7.2.1.1)

1.1.1.5.7.2.1.1 개인의 기대치를 희생시키는 효용의 원칙  
(e1.1.5.7.2.1.1. 1/q1.1.5.7.2.1.1.2)

1.1.1.5.7.2.1.2 원초적 입장에서의 효용의 원칙 거부  
(e1.1.5.7.2.1.2.1/q1. 1.5.7.2.1.2.2)

1.1.1.5.7.2.2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정의의 두 원칙  
(e1.1.5.7.2.2.1-2/ q1.1.5.7.2.2.3)

1.1.1.5.7.2.3 인간의 상호 존중을 표현하는 정의의 두 원칙  
(e1.1.5.7.2.3.1)

1.1.1.5.7.2.3.1 자존감을 증대시켜 주는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공공적인 인정

(e1.1.5.7.2.3.1.1/q1.1.5.7.2.3.1.2)

1.1.1.5.7.2.3.2 자존감에 의한 타인 존중  
(e1.1.5.7.2.3.2.1/q1.1.5.7.2.3.2.2)

1.1.1.5.7.2.3.3 평등한 자유와 차등의 원칙에 의한 인간의  
상호 존중

(e1.1.5.7.2.3.3.1/q1.1.5.7.2.3.3.2))

1.1.1.5.7.3 정의의 두 원칙에 함축된 칸트적 이념  
(e1.1.5.7.3.1/q1.1.5.7.3.2)

1.1.1.5.7.4 정의의 두 원칙이 합리적 이익을 보장한다는 논거  
(e1.1.5.7. 4.1/q1.1.5.7.4.2)

1.1.1.5.8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되는 방식

1.1.1.5.8.1 시민이 내리게 될 세 종류의 판단 (e1.1.5.8.1.1)

1.1.1.5.8.1.1 입법과 사회 정책의 정의 여부 판단  
(e1.1.5.8.1.1.1/q1.1.5. 8.1.1.2)

- 1.1.1.5.8.1.2 정의로운 입헌 체제에 대한 판단  
(e1.1.5.8.1.2.1/q1.1.5.8.1.2.2)
- 1.1.1.5.8.1.3 정치적 의무 및 책무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판단  
(e1.1.5.8. 1.3.1/q1.1.5.8.1.3.2)
- 1.1.1.5.8.2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되는 단계  
(e1.1.5.8.2.1/q1.1.5.8.2.2)
- 1.1.1.5.8.2.1.1 제헌 위원회의 단계  
(e1.1.5.8.2.1.1/q1.1.5.8.2.1.2)
- 1.1.1.5.8.2.1.1.1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로서 정의로운  
헌법 구성  
(e1.1.5.8.2.1.1.1/q1.1.5.8.2.1.1.2)
- 1.1.1.5.8.2.1.1.1.1 정의로운 절차로서 정치 체제의 시민의  
자유 구현 (e1.1.5.8.2.1.1.1.1  
/q1.1.5.8.2.1.1.1.2-3)
- 1.1.1.5.8.2.1.1.2 정의로운 법적 질서를 보장하는 절차적  
체계 선정 (e1.1.5.8.2.1.1.2.1  
/q1.1.5.8.2.1.1.2.2)
- 1.1.1.5.8.2.1.2 정의로운 헌법을 위한 독립적인 기준으로서  
정의의 두 원칙 (e1.1.5.8.2.1.2.1  
/q1.1.5.8.2.1.2.2)
- 1.1.1.5.8.2.1.3 제헌 위원회의 1차적 기준인 평등한 자유의  
제1원칙 (e1.1.5.8.2.1.3.1  
/q1.1.5.8.2.1.3.2)
- 1.1.1.5.8.2.2 입법의 단계 (e1.1.5.8.2.2.1/q1.1.5.8.2.2.2)
- 1.1.1.5.8.2.2.1 차등의 원칙 적용의 어려움  
(e1.1.5.8.2.2.1.1/q1.1.5.8.2.2.1.2)
- 1.1.1.5.8.2.2.2 입법의 단계에 적용되는 제2원칙  
(e1.1.5.8.2.2.2.1/q1.1.5. 8.2.2.2.2)
- 1.1.1.5.8.2.2.3 입법의 단계에 대한 제헌 위원회의 우선성

(e1.1.5.8.2.2. 3.1/q1.1.5.8.2.2.3.2)

1.1.1.5.8.2.3 법규 적용과 법규 준수의 단계

(e1.1.5.8.2.3.1/q1.1.5.8.2.3.2)

1.1.1.5.8.3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되는 각 단계에 있어서  
지식의 이용 가능성 (e1.1.5.8.3.1)

1.1.1.5.8.3.1 정의의 원칙의 적용 단계에서 이용될 수 있는 세  
종류의 지식 (e1.1.5.8.3.1.1/q1.1.5.8.3.1.2)

1.1.1.5.8.3.2 정의의 원칙의 적용 단계에서 이용될 수 있는  
지식 제한의 완화

(e1.1.5.8.3.2.1/q1.1.5.8.3.2.2)

1.1.2 정의의 주제 (e1.2.1/q1.2.2)

1.1.2.1 제도 (e1.2.1.1/q1.2.1.2)

1.1.2.1.1 제도의 두 측면 (e1.2.1.1.1/q1.2.1.1.2)

1.1.2.1.1.1 정의 여부와 관련한 제도의 두 측면  
(e1.2.1.1.1.1/q1.2.1.1.1.2)

1.1.2.1.1.2 제도의 존재 방식 (e1.2.1.1.2.1/q1.2.1.1.2.2)

1.1.2.1.2 주요 제도의 의미 (e1.2.1.2.1/q1.2.1.2.2)

1.1.2.1.3 구성적 규칙과 전략이나 대책 간의 구분  
(e1.2.1.3.1/q1.2.1.3.2)

1.1.2.1.3.1 합리적 대책이나 전략 (e1.2.1.3.1.1/q1.2.1.3.1.2)

1.1.2.1.3.2 제도에 관한 이론의 성격  
(e1.2.1.3.2.1/q1.2.1.3.2.2)

1.1.2.1.3.3 바람직한 목적을 통해 조정되는 개인의 이익 추구  
(q1.2.1.3.3.1)

1.1.2.1.4 단일한 규칙 및 제도와 전체로서 사회 제도의 기본  
구조 구분 (e1.2.1.4.1/q1.2.1.4.2)

1.1.2.1.4.1 단일한 규칙과 전체로서 사회 제도의 부정의와  
관련한 상호 영향 (e1.2.1.4.1.1/q1.2.1.4.1.2)

1.1.2.1.4.2 정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들

(e1.2.1.4.2.1/q1.2.1.4.2.2)

1.1.2.2 사회정의의 일차적 주제로서 사회의 기본 구조

(e1.2.2.1/q1.2.2.2-4)

1.1.2.2.1 한 제도의 규칙들이 갖는 공지성

(e1.2.2.1.1/q1.2.2.1.2)

1.1.2.2.2 공지성의 의의 (e1.2.2.2.1/q1.2.2.2.2)

1.1.2.3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 있는 뿌리 깊은 불평등

(e1.2.3.1/q1.2.3.2)

1.1.3 고전적 공리주의 (e1.3.1)

1.1.3.1 고전적 공리주의의 주요 사상 (e1.3.1.1/q1.3.1.2)

1.1.3.1.1 롤즈가 의미하는 고전적 공리주의

(e1.3.1.1.1/q1.3.1.1.2)

1.1.3.1.1.1 고전적 견해의 장점과 문제점

(e1.3.1.1.1.1/q1.3.1.1.1.2)

1.1.3.1.1.2 로크 계약론에 대한 흡의 논박 (q1.3.1.1.2.1)

1.1.3.1.1.2.1 흡이 의미하는 공리 개념 (q1.3.1.1.2.1.1)

1.1.3.1.1.2.2 흡의 공리주의와 로크 계약론의 양립 가능성

(q1.3.1.1.2.2.1)

1.1.3.1.2 윤리설의 구조를 결정하는 두 옳음과 좋음

(e1.3.1.2.1/q1.3.1.2.2)

1.1.3.1.3 목적론에 있어서 옳음과 좋음을 관련짓는 방식

(e1.3.1.3.1/q1.3.1.3.2)

1.1.3.1.3.1 목적론에서 좋음이 옳음과 상관없이 규정된다는

견해의 두 의미 (e1.3.1.3.1.1/q1.3.1.3.1.2)

1.1.3.1.3.2 선의 규정에 따른 목적론의 구분

(e1.3.1.3.2.1/q1.3.1.3.2.2)

1.1.3.1.4 합리성을 구현하는 목적론 (e1.3.1.4.1/q1.3.1.4.2)

1.1.3.2 공리주의적 정의관을 가장 합리적으로 보는 사회관

(e1.3.2.1/q1.3.2.2)

- 1.1.3.2.1 공리주의에서 최대의 만족과 옳은 분배  
(e1.3.2.1.1/q1.3.2.1.2)
- 1.1.3.2.2 정의에 대한 상식적인 신조와 공리주의 관점의 상충  
(e1.3.2.2. 1/q1.3.2.2.2)
- 1.1.3.2.3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확대로서 사회적 선택  
(e1.3.2.3.1)
- 1.1.3.2.3.1 개인에서 사회로 인도하는 지침으로서 공평한  
관망자와 공감적 동일시  
(e1.3.2.3.1.1/q1.3.2.3.1.2)
- 1.1.3.2.3.2 개인들의 차이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는 공리주의  
(e1.3.2.3.2. 1/q1.3.2.3.2.2)
- 1.1.3.3 공리주의적 정의관과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비교
- 1.1.3.3.1 공리주의적 정의관 (e1.3.3.1.1)
- 1.1.3.3.1.1 상식적 신념에 있어서 자유와 권리의 우선성  
(e1.3.3.1.1.1/ q1.3.3.1.1.2)
- 1.1.3.3.1.2 정의의 우선성에 대한 공리주의적 설명  
(e1.3.3.1.2.1/q1.3.3.1.2.2)
- 1.1.3.3.1.3 만족의 최대량과 사회의 복지  
(e1.3.3.1.3.1/q1.3.3.1.3.2)
- 1.1.3.3.2 계약론적 입장에서 사회적 선택 원칙  
(e1.3.3.2.1/q1.3.3.2.2)
- 1.1.3.3.2.1 계약론적 입장의 의무론적 특성  
(e1.3.3.2.1.1/q1.3.3.2.1.2)
- 1.1.3.3.2.1.1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의무론  
(e1.3.3.2.1.1.1/q1.3.3.2.1.1.2)
- 1.1.3.3.2.1.2 우연의 일치에 의한 정의의 최대선 산출  
(e1.3.3.2.1.2.1/q1. 3.3.2.1.2.2)
- 1.1.3.3.2.2 정의의 원칙으로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 도출  
(e1.3.3.2.2.1/ q1.3.3.2.2.2)

- 1.1.3.3.2.2.1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좋음에 선행하는  
옳음 (e1.3. 3.2.2.1.1/q1.3.3.2.2.1.2)
- 1.1.3.3.2.2.2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침해할 수 없는  
정의의 요구(e1.3.3.2.2.2.1/q1.3.3.2.2.2.2)
- 1.1.3.3.2.2.3 옳음의 우선성에 따른 사회의 기본 구조의 영향  
(e1.3.3.2. 2.3.1/q1.3.3.2.2.3.2)
- 1.1.3.3.3 공리 원칙과 대비되는 자연권적 입장  
(e1.3.3.3.1/q1.3.3.3.2)
- 1.1.3.3.4 고전적 공리주의와 공정으로서 정의의 사회관  
(e1.3.3.4.1/q1.3. 3.4.2)
- 1.1.4 직관주의 (e1.4.1/q1.4.2)
- 1.1.4.1 직관주의의 정의 (e1.4.1.1/q1.4.1.2)
- 1.1.4.2 직관주의의 두 가지 특징 (e1.4.2.1/q1.4.2.2)
- 1.1.4.3 다원주의적 직관주의 (e1.4.3.1/q1.4.3.2)
- 1.1.4.3.1 상식적인 직관주의 (e1.4.3.1.1)
- 1.1.4.3.2 정의의 문제와 관련한 상식적인 직관주의의 신조들  
(e1.4.3.2.1 /q1.4.3.2.2)
- 1.1.4.3.2.1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상식적 직관주의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 (e1.4.3.2.1.1/q1.4.3.2.1.2)
- 1.1.4.3.2.2 신조들의 우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e1.4.3.2.2.1/q1.4. 3.2.2.2)
- 1.1.4.3.3 신조들의 우열을 가려주지 못하는 일상적 정의관  
(e1.4.3.3.1/ q1.4.3.3.2)
- 1.1.4.4 사회적 목적들의 우선순위 결정 (e1.4.4.1/q1.4.4.2)
- 1.1.4.4.1 사회적 목적들의 우선순위 결정의 두 방법  
(e1.4.4.1.1/q1.4.4.1.2)
- 1.1.4.4.1.1 공리주의에 의한 사회적 목적들의 우선순위 결정  
(e1.4.4.1.1.1)
- 1.1.4.4.1.2 직관주의에 의한 사회적 목적들의 우선순위 결정

(e1.4.4.1.2.1)

1.1.4.4.2 사회적 목표 순위 결정의 직관주의적 특성으로서

평등성 증진 (e1.4.4.2.1/q1.4.4.2.2)

1.1.4.4.2.1 평등성 증진을 해명하는 경제학자의 방식

(e1.4.4.2.1.1/q1.4. 4.2.1.2)

1.1.4.4.2.1.1 평등성 증진을 해명하기 위한 무차별 곡선의 도  
식 (e1.4.4. 2.1.1.1/q1.4.4.2.1.1.2-3)

1.1.4.4.2.1.2 무차별 곡선을 통한 평등성 증진 해명

(q1.4.4.2.1.2.1/q1.4.4.2.1.1.3)

1.1.4.4.2.2 상이한 두 견해를 허용하는 무차별 곡선의 원칙

(e1.4.4.2.2.1 /q1.4.4.2.2.2/q1.4.4.2.1.1.3)

1.1.4.4.2.3 무차별 곡선과 관련한 직관주의의 이해

(q1.4.4.2.3.1)

1.1.5 원초적 입장 (e1.5.1/q1.5.2)

1.1.5.1 원초적 입장에서의 가정들 (e1.5.1.1)

1.1.5.1.1 정의의 여건이 성립한다는 가정

(e1.5.1.1.1/q1.5.1.1.2)

1.1.5.1.2 가족의 가장으로서 직계 후손의 복리 증진을

욕구한다는 가정 (e1.5.1.2.1/q1.5.1.2.2)

1.1.5.1.3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무관심하다는 가정

(e1.5.1.3.1/q1.5.1.3.2)

1.1.5.2 정의의 여건 (e1.5.2.1/q1.5.2.2)

1.1.5.2.1 정의의 객관적 여건 (e1.5.2.1.1/q1.5.2.1.2)

1.1.5.2.2 정의의 주관적 여건 (e1.5.2.2.1/q1.5.2.2.2)

1.1.5.2.3 룰즈의 정의의 여건과 흄의 정의의 여건의 유사성

(e1.5.2.3.1)

1.1.5.3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반영하는 형식적

제한 조건들(e1.5.3.1/q1.5.3.2)

1.1.5.3.1 원칙들의 형식적 조건의 적합성 여부의 근거

(e1.5.3.1.1/q1.5. 3.1.2)

1.1.5.3.2 원칙의 형식적 조건의 특성 (e1.5.3.2.1/q1.5.3.2.2)

1.1.5.3.2.1 원칙들의 일반성 (e1.5.3.2.1.1/q1.5.3.2.1.2)

1.1.5.3.2.1.1 원초적 상태에서 일반적 원칙의 도출

(e1.5.3.2.1.1.1/q1.5.3. 2.1.1.2)

1.1.5.3.2.1.2 원칙들의 일반성 조건이 합당한 이유

(e1.5.3.2.1.2.1/q1.5.3. 2.1.2.2)

1.1.5.3.2.2 원칙들의 보편성 (e1.5.3.2.2.1/q1.5.3.2.2.2)

1.1.5.3.2.3 원칙들의 공지성 (e1.5.3.2.3.1/q1.5.3.2.3.2)

1.1.5.3.2.3.1 원칙들의 공지성에 대한 칸트적 이해

(e1.5.3.2.3.1.1/q1.5.3. 2.3.1.2)

1.1.5.3.2.4 원칙들의 정당성 (q1.5.3.2.4.1)

1.1.5.3.2.5 원칙들의 최종성 (e1.5.3.2.5.1/q1.5.3.2.5.2)

1.1.5.3.3 형식적 조건들의 상호 관계와 그 함축 사항

1.1.5.3.3.1 원칙들의 일반성과 보편성의 상이함

(e1.5.3.3.1.1/q1.5.3.3.1.2)

1.1.5.3.3.2 원칙들의 공지성과 보편성의 상이함

(e1.5.3.3.2.1/q1.5.3.3.2.2)

1.1.5.3.3.3 원칙들의 형식적 조건에 의한 이기주의 배제

(e1.5.3.3.3.1/ q1.5.3.3.3.2)

1.1.5.4 무지의 베일 (e1.5.4.1)

1.1.5.4.1 공정한 절차 설정으로서 원초적 입장의 의의

(e1.5.4.1.1/q1.5. 4.1.2)

1.1.5.4.2 우연성의 결과를 무효화하는 조건으로서 무지의 베일

(e1.5.4. 2.1/q1.5.4.2.2)

1.1.5.4.3 무지의 베일의 내용 (e1.5.4.3.1)

1.1.5.4.3.1 무지의 베일에 의해 가려져야 하는 것들

(e1.5.4.3.1.1/q1.5.4. 3.1.2)

1.1.5.4.3.2 무지의 베일 속의 당사자들에게 알려져 있어야 하는

것들 (e1.5.4.3.2.1/q 1.5.4.3.2.2)

1.1.5.4.4 무지의 베일에 대한 옹호 논변

1.1.5.4.4.1 무지의 베일이 원초적 입장 파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에 대한 옹호 (e1.5.4.4.1.1/q1.5.4.4.1.2)

1.1.5.4.4.2 원초적 입장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한 옹호

(e1.5.4. 4.2.1/q1.5.4.4.2.2)

1.1.5.4.4.3 무지의 베일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에 대한 옹호

(e1.5.4.4.3.1/ q1.5.4.4.3.2)

1.1.5.4.5 원초적 입장에서 특정 지식에 대한 제한이 갖는

근본적 중요성 (e1.5.4.5.1/q1.5.4.5.2)

1.1.5.5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의 합리성

1.1.5.5.1 원초적 입장에 있어서 합의 당사자들의 조건

(e1.5.5.1.1/q1.5. 5.1.2)

1.1.5.5.1.1 합의 당사자들의 합리성

(e1.5.5.1.1.1/q1.5.5.1.1.2)

1.1.5.5.1.1.1 시기심 없는 합리성

(e1.5.5.1.1.1.1/q1.5.5.1.1.1.2)

1.1.5.5.1.1.2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

(e1.5.5.1.1.2.1/q1.5.5.1.1.2.2)

1.1.5.5.1.1.2.1 이기주의를 함축하지 않은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

(e1.5.5.1.1.2.1.1/q1.5.5.1.1.2.1.2)

1.1.5.5.1.1.2.2 상호 무관심과 무지의 베일의 결합에 의한 이타심 성취

(e1.5.5.1.1.2.2.1/q1.5.5.1.1.2.2.2)

1.1.5.5.1.2 정의감을 행사할 능력 (q1.5.5.1.2.1)

1.1.5.5.2 이론적으로 규정된 개인으로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

(e1.5. 5.2.1/q1.5.5.2.2)

1.1.5.6 원초적 입장에서의 정의의 두 원칙에 이르는 추론

1.1.5.6.1 평등한 분배의 원칙을 정의의 제1원칙으로 인정하는 과정 (e1. 5.6.1.1/q1.5.6.1.2)

1.1.5.6.2 차등의 원칙 도출

1.1.5.6.2.1 불평등 인정 가능성

(e1.5.6.2.1.1/q .5.6.2.1.2)

1.1.5.6.2.2 불평등을 허용하는 조건

(e1.5.6.2.2.1/q1.5.6.2.2.2)

1.1.5.6.3 제2원칙에 우선하는 제1원칙 (e1.5.6.3.1/q1.5.6.3.2)

1.1.5.6.3.1 자유의 우선성의 의미 (e1.5.6.3.1.1/q1.5.6.3.1.2)

1.1.5.6.3.2 자유의 권리가 제한되는 조건

(e1.5.6.3.2.1/q1.5.6.3.2.2)

1.1.5.6.4 최소 극대화 규칙 (e1.5.6.4.1-2/q1.5.6.4.3)

1.1.5.6.4.1 최소 극대화 규칙의 내용

(q1.5.6.4.1.1/q1.5.6.4.1.2)

1.1.5.6.4.2 정의의 두 원칙과 최소 극대화 규칙의 유사성

(e1.5.6.4.2.1/ q1.5.6.4.2.2)

1.1.5.6.4.3 최소 극대화 규칙의 적용 상황이 갖는 세 가지 주요 특징 (e1.5.6.4.3.1/q1.5.6.4.3.2)

1.1.5.6.4.3.1 상황 발생 확률 평가를 고려하지 않는 최소 극대화 규칙 (e1.5.6.4.3.1.1/q1.5.6.4.3.1.2)

1.1.5.6.4.3.2 최소한의 이득 이상에는 관심이 없는 최소 극대화 규칙의 선택자

(e1.5.6.4.3.2.1/q1.5.6.4.3.2.2)

1.1.5.6.4.3.3 최소 극대화 규칙에 대한 다른 대안들 배제

(e1.5.6.4.3.3.1/ q1.5.6.4.3.3.2)

1.1.5.6.4.4 원초적 입장의 성격과 관련한 최소 극대화 규칙의 세 특징 (e1.5.6.4.4.1-2)

1.1.5.6.4.4.1 무지의 베일에 의한 확률 계산 배제의 타당성

(e1.5.6.4.4.1. 1/q1.5.6.4.4.1.2)

- 1.1.5.6.4.4.2 원초적 입장에서의 최소한의 만족 보장  
(e1.5.6.4.4.2.1/q1.5. 6.4.4.2.2)
- 1.1.5.6.4.4.3 배제된 최소 극대화의 다른 대안들이 갖는 결과의 부당함  
(e1.5.6.4.4.3.1/q1.5.6.4.4.3.2)
- 1.1.5.6.5 차등의 원칙에 대한 반론 (e1.5.6.5.1/e1.5.6.5.2)
- 1.1.5.6.5.1 차등의 원칙에 대한 반론의 내용  
(e1.5.6.5.1.1/q1.5.6.5.1.2-4)
- 1.1.5.6.5.2 차등의 원칙에 대한 반론에 대한 롤즈의 답변  
(q1.5.6.5.2.1)
- 1.1.5.7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공리주의적 대안으로서 평균 효용의 원칙
- 1.1.5.7.1 효용의 의미에 대한 전통적인 가정들  
(e1.5.7.1.1/q1.5.7.1.2)
- 1.1.5.7.2 효용의 원칙의 두 형태 (e1.5.7.2.1)
- 1.1.5.7.2.1 효용의 고전적 원칙 (e1.5.7.2.1.1/q1.5.7.2.1.2)
- 1.1.5.7.2.1.1 인구의 무제한 증가 (q1.5.7.2.1.1.1-2)
- 1.1.5.7.2.1.2 인구수의 변동에 따른 고전적 원칙의 결과  
(e1.5.7.2.1.2.1/ q1.5.7.2.1.2.2)
- 1.1.5.7.2.2 평균 효용의 원칙 (e1.5.7.2.2.1/q1.5.7.2.2.2)
- 1.1.5.7.3 효용의 고전적 원칙과 평균 효용의 원칙의 비교  
(e1.5.7.3.1/q1. 5.7.3.2)
- 1.1.5.7.4 평균적 원칙에 도달하는 과정 (e1.5.7.4.1/q1.5.7.4.2)
- 1.1.5.7.4.1 사회와 개인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는 상태 (q1.5. 7.4.1.1)
- 1.1.5.7.4.2 자신의 재능으로 하게 될 역할이 불확실한 상태  
(e1.5.7.4.2.1 /q1.5.7.4.2.2)
- 1.1.5.7.4.3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  
(e1.5.7.4.3.1/ q1.5.7.4.3.2)

- 1.1.5.7.4.4 사회 성원이나 결정자의 특정 선호에 대해서 조차 모르는 상태 (e1.5.7.4.4.1/q1.5.7.4.4.2)
- 1.1.5.7.5 경제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무기력한 효용 관념 (e1.5.7.5.1/q1.5.7.5.2)
- 1.1.5.7.6 평균 효용의 원칙의 난점들
- 1.1.5.7.6.1 사회 구성원의 모험심을 전제하는 평균 효용의 원칙 (e1.5.7.6.1.1/q1.5.7.6.1.2)
- 1.1.5.7.6.1.1 노예와 노예 소유주의 논법을 통한 평균 효용의 원칙의 난점 (e1.5.7.6.1.1.1/q1.5.7.6.1.1.2)
- 1.1.5.7.6.1.2 노예 소유주의 논법에 대한 계약론적 타당성과 해결 방법 (e1.5.7.6.1.2.1/q1.5.7.6.1.2.2)
- 1.1.5.7.6.2 확률성의 평가하는 방식과 관련된 평균 효용의 원칙의 난점 (e1.5.7.6.2.1/q1.5.7.6.2.2)
- 1.1.5.7.6.3 확률의 합리적 판단의 객관적 근거와 관련된 효용의 원칙의 난점 (e1.5.7.6.3.1/q1.5.7.6.3.2)
- 1.1.5.7.6.4 추론의 기대치가 갖는 특유성과 관련된 효용 원칙의 난점 (q1.5.7.6.4.1)
- 1.1.5.7.6.5 평균 효용의 원칙의 결함에 대한 롤즈의 논변 (e1.5.7.6.5.1/q1.5.7.6.5.2)
- 1.1.6 자유 (e1.6.1/q1.6.2)
- 1.1.6.1 자유에 대한 세 주제 (e1.6.1.1/q1.6.1.2)
- 1.1.6.2 평등한 자유의 제한 (e1.6.2.1)
- 1.1.6.2.1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두 가지 방식 (e1.6.2.1.1/q1.6.2.1.2)
- 1.1.6.2.2 자유가 제한되는 두 가지 경우 (e1.6.2.2.1/q1.6.2.2.2)
- 1.1.6.2.2.1 덜 광범위한 자유와 관련된 자유의 제한 (e1.6.2.2.1.1/q1.6.2.2.1.2)
- 1.1.6.2.2.2 불평등한 자유와 관련된 자유의 제한

(e1.6.2.2.2.1/q1.6.2.2.2.2)

1.1.6.2.3 자유의 제한이 정당하게 변호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

1.1.6.2.3.1 자연적 제약이나 우연성에 의한 자유의 제한 상황

(e1.6.2.3. 1.1/q1.6.2.3.1.2)

1.1.6.2.3.2 기준에 존재하는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제한 사항

(e1.6.2. 3.2.1/q1.6.2.3.2.2)

1.1.6.2.4 자유의 제한과 관련된 부권주의

(e1.6.2.4.1/q1.6.2.4.2)

1.1.6.2.4.1 자기보호를 위한 규제원칙 채택

(e1.6.2.4.1.1/q1.6.2.4.1.2)

1.1.6.2.4.2 부권주의 권한이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

(e1.6.2.4.2.1/q1.6.2.4.2.2)

1.1.6.2.4.3 부권주의의 정당화 조건 (q1.6.2.4.3.1)

1.1.6.2.4.4 부권주의 해석의 한계 (e1.6.2.4.4.1/q1.6.2.4.4.2)

1.1.6.3 평등한 양심의 자유

1.1.6.3.1 원초적 입장에서 평등한 양심의 자유를 선택하는 개인들의 특성(e1.6.3.1.1/q1.6.3.1.2)

1.1.6.3.2 원초적 입장에서 평등한 양심의 자유 선택

(e1.6.3.2.1/q1.6.3.2.2)

1.1.6.3.3 양심의 자유 제한

1.1.6.3.3.1 제헌 위원회에서 양심의 자유 보장 (q1.6.3.3.1.1)

1.1.6.3.3.2 공동 이익을 위한 양심의 자유의 제한

1.1.6.3.3.2.1 양심의 자유와 공동 이익의 우선성 문제

(q1.6.3.3.2.1.1)

1.1.6.3.3.2.2 공공 질서에 대한 국가적 이익을 위한 양심의 자유 통제(q1.6.3.3.2.2.1)

1.1.6.4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e1.6.4.1)

1.1.6.4.1 불관용적인 종파의 불관용에 대한 불평의 권리  
(q1.6.4.1.1)

- 1.1.6.4.2 불관용적인 종파에 대한 관용적인 종파의 관용 거부 권한 (q1.6.4.2.1)
- 1.1.6.4.3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 거부의 시기와 목적 (q1.6.4.3.1)
- 1.1.6.4.4 타인에 위험을 주지 않는 불관용자를 구속할 권리의 존재 여부 (q1.6.4.4.1)
- 1.1.6.5 개정된 정의의 제1원칙 (e1.6.5.1/q1.6.5.2)
- 1.1.6.6 개정된 정의의 제1원칙에 부가되는 우선성 규칙 (e1.6.6.1/q1.6.6.2)
- 1.1.7 공정으로서 정의에 대한 칸트적 해석 (q1.7.1)
- 1.1.7.1 합리적 선택의 대상으로서의 칸트의 도덕 원칙 (q1.7.1.1)
- 1.1.7.2 인간의 자율적 행동에 대한 칸트 주장의 의미 (q1.7.2.1)
- 1.1.7.3 정의의 원칙과 정언 명령의 유사성 (q1.7.3.1)
- 1.1.7.4 칸트의 자율성 개념과 병행 가능한 상호 무관심성 (q1.7.4.1)
- 1.1.7.5 자율성 개념과 정언 명령에 대한 절차적 해석으로서 원초적 입장 (q1.7.5.1)
- 1.1.7.6 칸트의 견해와 차이를 보이는 롤즈의 두 가지 견해
- 1.1.7.6.1 사람의 선택을 집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의 차이점 (q1.7.6.1.1)
- 1.1.7.6.2 인간적 생활조건에 처해 있음을 안다는 가정에서의 차이점 (q1.7.6.2.1)
- 1.1.8 분배의 뜻
- 1.1.8.1 정치 경제학적 입장에서 정의의 두 원칙 (e1.8.1.1)
- 1.1.8.2 사회 체제의 역할 (e1.8.2.1/q1.8.2.2)
- 1.1.8.2.1 경제 체제의 의의 (e1.8.2.1.1/q1.8.2.1.2)
- 1.1.8.2.2 경제 체제에서의 제도 선택의 의의 (e1.8.2.2.1/q1.8.2.2.2)
- 1.1.8.2.3 경제 체제에 의해 규제되는 것

(e1.8.2.3.1/q1.8.2.3.2)

1.1.8.3 정치 경제학의 관심 대상 (e1.8.3.1/q1.8.3.2)

1.1.8.3.1 공공 부문의 두 측면 (e1.8.3.1.1)

1.1.8.3.1.1 생산 수단의 소유와 관련된 측면

(e1.8.3.1.1.1/q1.8.3.1.1.2)

1.1.8.3.1.2 공공선에 투여된 전체 사회 자원의 비율

(e1.8.3.1.2.1)

1.1.8.3.1.2.1 공공선의 두 특징으로서 불가분성과 공공성

(e1.8.3.1.2.1.1/q1.8.3.1.2.1.2)

1.1.8.3.1.2.1.1 공공선의 무임승차 문제

(e1.8.3.1.2.1.1.1/q1.8.3.1.2.1.1.2)

1.1.8.3.1.2.1.2 공공선을 위한 자금 조달 문제

(e1.8.3.1.2.1.2.1/q1.8.3.1.2.1.2.2)

1.1.8.3.1.2.1.3 공공선의 외부성

(e1.8.3.1.2.1.3.1/q1.8.3.1.2.1.3.2)

1.1.8.3.2 경제 체제가 의존하는 시장 체제

(e1.8.3.2.1/q1.8.3.2.2)

1.1.8.3.2.1 자유 시장 이용과 관련 없는 생산 수단의 사유

(e1.8.3.2.1.1/q1.8.3.2.1.2)

1.1.8.3.2.2 시장 체제의 이점으로서 효율성

(e1.8.3.2.2.1/q1.8.3.2.2.2)

1.1.8.3.2.3 평등한 자유 그리고 기회균등과 부합하는 시장 체제

(e1.8.3.2.3.1/q1.8.3.2.3.2)

1.1.8.3.2.4 가격의 할당적 기능과 분배적 기능의 구분

(e1.8.3.2.4.1/q1.8.3.2.4.2)

1.1.8.3.2.4.1 사회주의 체제와 시장 체제의 부합 가능성

(e1.8.3.2.4.1.1/q1.8.3.2.4.1.2)

1.1.8.3.2.4.2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가격의 분배적 기능 제한

(e1.8.3.2.4.2.1/q1.8.3.2.4.2.2)

#### 1.1.8.4 민주국가 제도의 양식

1.1.8.4.1 민주국가의 기본 구조 (q1.8.4.1)

1.1.8.4.2 민주국가 정부의 네 개의 부처 (q1.8.4.2.1)

1.1.8.4.2.1 민주국가 정부의 네 개의 부처 중 하나인 할당처  
(q1.8.4.2.1.1)

1.1.8.4.2.2 민주국가 정부의 네 개의 부처 중 하나인 안정처  
(q1.8.4.2.2.1)

1.1.8.4.2.3 민주국가 정부의 네 개의 부처 중 하나인 양도처  
(q1.8.4.2.3.1)

1.1.8.4.2.4 민주국가 정부의 네 개의 부처 중 하나인 분배처  
(q1.8.4.2.4.1)

1.1.8.4.2.4.1 분배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와 유산권  
제한 (q1.8.4.2.4.1.1)

1.1.8.4.2.4.2 분배처에 의한 세입의 증대를 위한 조세 체제  
(q1.8.4.2.4.2.1)

1.1.8.4.2.4.3 정의의 두 원칙에서의 분배처의 두 기능 도출  
(q1.8.4.2.4.3.1)

1.1.8.4.3 이해관계와 공공선에 대한 선호를 배려하는 교환처  
(q1.8.4.3.1)

1.1.8.4.3.1 효율성 원리를 활동 원리로 삼고 있는 교환처  
(q1.8.4.3.1.1)

1.1.8.4.3.2 이익의 원칙을 기초로 삼는 교환처 (q1.8.4.3.2.1)

1.1.8.5 세대들 간의 정의 (e1.8.5.1/q1.8.5.2)

1.1.8.5.1 타당한 수준의 사회적 최소치 (e1.8.5.1.1/q1.8.5.1.2)

1.1.8.5.1.1 평균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최소치 결정  
(e1.8.5.1.1.1)

1.1.8.5.1.2 관례적인 기대치에 의한 사회적 최소치 결정  
(e1.8.5.1.2.1)

1.1.8.5.1.3 차등의 원칙에 의한 사회적 최소치 결정

(e1.8.5.1.3.1)

1.1.8.5.1.3.1 차등의 원칙이 매우 높은 최소치를 요구한다는 주장의 오류 (e1.8.5.1.3.1.1/q1.8.5.1.3.1.2)

1.1.8.5.1.3.2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에 의한 차등 원칙의 사회적 최소치 결정

(e1.8.5.1.3.2.1/q1.8.5.1.3.2.2)

1.1.8.5.2 정의로운 저축 원칙의 발견 (e1.8.5.2.1/q1.8.5.2.2)

1.1.8.5.2.1 공리 원칙이 제시하는 그릇된 방향의 세대들 간의 정의 (e1.8.5.2.1.1/q1.8.5.2.1.2)

1.1.8.5.2.2 계약론에서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

1.1.8.5.2.2.1 계약론에서 저축 원칙 채택에 있어서 연대기적 불공정 (e1.8.5.2.2.1.1/q1.8.5.2.2.1.2)

1.1.8.5.2.2.1.1 연대기적 불공정의 정의의 문제 적용불가능 (e1.8.5.2.2.1.1.1/q1.8.5.2.2.1.1.2)

1.1.8.5.2.2.1.2 연대기적 불공정의 보상으로서 세대 간의 경제적 교환 (e1.8.5.2.2.1.2.1/q1.8.5.2.2.1.2.2)

1.1.8.5.2.2.2 원초적 입장에서의 저축의 원칙 합의 (e1.8.5.2.2.2.1/q1.8.5.2.2.2.2)

1.1.8.5.2.2.2.1 원초적 입장에서 저축의 원칙 합의를 위한 가정들

(e1.8.5.2.2.2.1.1/q1.8.5.2.2.2.1.2)

1.1.8.5.2.2.2.2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저축 원칙의 특성 (q1.8.5.2.2.2.2.1)

1.1.8.5.2.3 정의로운 저축 원칙에 대한 계약론적 방식의 특성

1.1.8.5.2.3.1 저축 원칙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채택해주는 원초적 입장 (q1.8.5.2.3.1.1)

1.1.8.5.2.3.2 저축의 전 과정으로서 정의로운 사회를 규정하는 계약론적 특성 (q1.8.5.2.3.2.1)

1.1.8.5.2.3.3 정의로운 제도와 평등한 자유를 구현하는 조건으로서 저축 원칙 (q1.8.5.2.3.3.1)

1.1.8.5.3 정의의 두 원칙과 정의로운 저축 원칙의 관계  
(e1.8.5.3.1-2)

1.1.8.5.3.1 정의로운 저축 원칙의 차등 원칙 제한  
(e1.8.5.3.1.1/q1.8.5.3.1.2)

1.1.8.5.3.2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  
(e1.8.5.3.2.1/q1.8.5.3.2.2)

1.1.8.5.4 정의로운 저축 원칙의 주요 특성 (q1.8.5.4.1)

## 제 3 부 『정의론』 내용 분석 연구

### 1. 공정으로서의 정의

(q1.1)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직관적인 생각은 그것이 정의의 제1 원칙 자체를 적절히 규정된 최초의 상황에서 이루어질 원초적 합의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합리적 인간들이 그들의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정하기 위해서 평등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될 원칙이다. [...] 우리는 당사자들과 그들의 지식, 소견, 이해관계 등의 여건을 생각할 때 이러한 원칙들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여러 대안에 비추어 각자가 그의 목적을 실현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확증해야만 한다.(173)

(q1.2) 어떤 상황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거나 더욱이 안정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상황이 정당하거나 정의롭다는 것은 아니다. [...] 분명히 중요와 적개심이 균형을 이룬 것도 안정된 평형 상태라 할 수 있으며, 각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사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 평형 상태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는 그 상태를 결정하는 배경적 여건에 달려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생각 속에는 도덕 이론의 특유한 특징들이 함축되어 있다. [...] 최초의 상황에 대한 철학적으로 유력한 해석은 원칙의 선택에 합당하게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 원초적 입장의 특징이 규정되면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도달된 어떤 합의도 공정한 것이 되는 그러한 어떤 상태가 된다. 그것은 그 속의 당사자들이 도덕적 인격으로서 평등하게 생각되고 그 결과가 임의적인 우연한 일이나 모든 사회적 세력의 상대적인 세력 균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처음부터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174-175)

## 1.1 정의의 역할

### 1.1.1 사회제도의 제1덕목으로서 정의

(e1.1.1.1)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으로서 법이나 제도의 정당성을 평가해 주는 기준의 역할을 한다. 즉 정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정당하지 못한 법이나 제도가 효율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정될 수 없다. 룰즈는 이러한 정의를 사상 체계에서 진리와 비교하고 있다. 사상 체계에서 어떤 하나의 이론이 최고로 간결하고 선명한 이해를 제공해 준다 할지라도, 즉 실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라면 인정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사회 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다.

(q1.1.1.2) 사상 체계의 제 1 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 1 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36)

### 1.1.2 정의의 우위성

(e1.1.2.1) 정의로운 사회는 일정한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정의에 의거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에 의거한 이러한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부당한 것으로 여긴다. 시민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설령 전체 사회의 복지를 보다 더 증진시키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침해는 부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에 입각한 시민적 자유는 불가침입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적 목적, 즉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익에 의해서도 정의에 의해 이미 보장되고 있는 자유의 권리들은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의에 입각한 이러한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자유들의 상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q1.1.2.2)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결합 있는 이론을 그나마 묵인하게 되는 것은 그보다 나은 이론이 없을 경우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부정의는 그보다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생활의 제1덕목으로서 진리와 정의는 지극히 준엄한 것이다.(36)

### 1.1.3 정의의 원칙들의 역할

#### 1.1.3.1 사회

(e1.1.3.1.1) 사회란 그 구성원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구성한 협력 체계이다. 사회 안에서 그 구성원은 서로 구속한다. 이 때문에 서로 인정한 행동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은 이런 행동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 또한 하나의 사회는 어느 정도 자족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q1.1.3.1.2) 사회란 그를 성원 상호간에 구속력을 갖는 어떤 행동 규칙을 인정하고 대부분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느 정도 자족적인 공동체라고 가정해 보자. [...] 사회 규칙은 그 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협동 체제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36-37)

#### 1.1.3.1.1 사회의 특징으로서 이해관계의 상충과 일치

(e1.1.3.1.1.1) 사회가 그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구성한 협력체이기는 하지만, 그 구성원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 사

회는 이런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정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해관계가 상충할 뿐만 아니라, 서로 협동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일치된 이해관계가 사회를 구성하는 근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ql.1.3.1.1.2) 사회란 비록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해관계의 일치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특성도 갖는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혼자만의 노력에 의해서 살기보다는 사회 협동체를 통해서 모두가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37)

#### 1.1.3.1.1.1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이유

(e1.1.3.1.1.1.1)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사회적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누리게 될 사회적 선에 큰 관심을 가지며, 결국 협동을 통해 얻게 된 사회적 선의 분배 방식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분배 방식을 통해, 더 많은 봉사를 원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된다.

(ql.1.3.1.1.1.2)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 산출될 보다 큰 이득의 분배 방식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적은 봉보다는 큰 봉을 원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된다.(37)

#### 1.1.3.1.1.2 분배의 봉을 결정해주는 사회 정의의 원칙

(e1.1.3.1.1.2.1)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협력을 통해 산출된 선의 분배 방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은 자신이 설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봉을 원하고 있으며, 그 분배 상식에

따라 자신에게 할당될 몫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한 어떤 사회 체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득의 분배 방식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 구성원들은 먼저 어떤 사회 체제를 선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회 체제 안에서 적절한 분배의 몫을 결정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원칙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자연스럽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이득과 부담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를 결정해 준다. 바로 이런 원칙이 사회 정의의 원칙이다.

(q1.1.3.1.1.2.2)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들의 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그것은 기본적인 사회 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 주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 준다.(37)

#### 1.1.3.1.2 질서정연한 사회

(e1.1.3.1.2.1) 질서 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해 주면서도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를 말한다. 그런데 어떤 사회든 질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어떤 사회가 정의롭지 않더라도, 그 사회는 존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 질서가 없다면, 그 사회는 이미 사회가 아니다. 즉 질서는 사회를 성립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렇다면 좋은 질서를 가진 사회라는 개념에는 좋은 질서가 이미 논리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셈이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정의로운 질서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q1.1.3.1.2.2) 성원들의 선을 증진해 줄 뿐만 아니라 공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경우, 그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한다.(37)

#### 1.1.3.1.2.1 질서정연한 사회의 조건

(e1.1.3.1.2.1.1) 질서 정연한 사회는 두 가지 조건을 갖는다. 첫째,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둘째, 그 사회의 모든 제도가 받아들여진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또한 서로 부합한다는 사실이 구성원들에게 알려져 있어야 한다.

(q1.1.3.1.2.1.2) (1) 다른 사람도 모두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모든 이가 인정하고 있고, (2) 사회의 기본 제도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 사실 또한 널리 주지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말한다.(37)

#### 1.1.3.1.2.2 질서정연한 사회에서의 공공적인 정의관의 역할

(e1.1.3.1.2.2.1) 룰즈는 우리가 이기적인 특성을 상당한 정도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이기적 특성을 가진 우리는, 서로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불가피한 일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요구를 판정해야 하며, 이런 요구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적인 정의가 필요하게 된다.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은 서로의 유대를 공고히 해주어 결합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적인 정의관이 질서 정연한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필연적 요소로, 그 공동체의 기본적 현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공공적인 정의관이 없이는 질서 정연한 사회는 불가능하다.

(q1.1.3.1.2.2.2) 사람들은 상호 간에 비록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될지도 모르나, 그 요구를 판정하게 될 공동의 입장은 인정하게 된다. 인간의 이기적인 경향성이 서로 간의 경계를 불가피하게 한다면 이러한 공공적인 정의감은 그들의 굳건한 결합을 가능하게 해준다. 각자 서로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진 개인들 간에 공유되는 정의관은 동료 시민으로서의 유대를 공고히 해주며, 정의에 대한 일반적 욕구가 다른 목적들의 추구에 한계를 정해 준다. 우리는 이러한 공공적인 정의관이 질서정연한 인간 공동체의

기본적인 현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37-38)

### 1.1.3.2 상이한 원칙과 견해들의 공통적 역할로서 정의 개념

(e1.1.3.2.1)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로서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말한다고 해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의 하나라고 말하거나, 이미 구성된 우리의 여러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질서 없이 사회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 사회가 성립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회가 가진 질서가 질서 정연하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연한 질서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정의관인데, 우리는 무엇이 정의이며, 부정의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즉 사회 구성원 각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관과 원칙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각자의 상이한 정의관과 원칙이 공통적으로 갖는 역할을 수행할 어떤 특정한 원칙들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는 기본적 권리와 의무,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특정한 원칙들의 체계에 대한 생각이 구성원 각자가 주장하는 상이한 원칙들에 공통적인 정의관이며, 이것은 구성원 각자의 다양한 정의관들과도 구별된다.

(q1.1.3.2.2) 기존 사회가 이런 식으로 질서 정연한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정의와 부정의가 무엇인가조차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해 줄 원칙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각자 그 나름의 정의관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에 대한 적절한 분배를 정해줄 어떤 특정한 원칙들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주장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정의관들과 구별되면서 그 상이한 원칙과 견해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역할을 나타내주는 정의의 개념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38)

### 1.1.3.3 정의의 원칙의 합의 가능성

(e1.1.3.3.1) 자신의 보다 더 큰 분배의 뜻에 관심을 갖는 사회의 구성원들은 상이한 정의관을 가지고, 이득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며, 따라서 요구들은 상충하게 된다. 상충하는 요구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정해 줄 제도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러한 필요성은 바로 상이한 정의관에 공통된 정의관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룰즈는 상충하는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규칙들이 정의로울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조건이 기본적 권리와 의무 할당에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룰즈가 공정으로서 정의로서 도출한 정의의 두 원칙 중 제1원칙의 우선성과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상충하는 요구를 조절해 주는 정의관은 이미 각자의 상이한 정의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당한 차별과 적절한 조정이라는 관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공통된 정의관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 이득과 부담의 분배를 적합하게 배분해 줄 수 있다.

(q1.1.3.3.2) 상이한 정의관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들 간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할당함에 있어 어떤 부당한 차별이 없을 경우, 사회생활의 이득에 대한 상충되는 요구를 적절하게 조정해 줄 규칙들이 있을 경우 제도가 정의롭다는 점에 합의할 수 있다. 사람들이 정의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당한 차별과 적절한 조정이라는 관념을 각자가 받아들이는 정의의 원칙들에 맞추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당한 제도에 대한 이러한 설명에 합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어 개인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중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구분해주며 이득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명시해 준다. 정의의 개념과 다양한 정의관을 이렇게 구분한다고 해서 어떤 종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사회 정의의 원칙들이 하게 되는 역할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38)

### 1.1.3.1 정의의 문제로서 조정, 효율, 안정

(e1.1.3.3.1.1) 사회의 기본적 문제 세 가지가 정의의 문제와 관련되

어 있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은 자신의 인생 계획에 있어서 서로 양립할 수 있고, 상호 융화되어 달성되어야 하며, 또한 타인들의 인생 계획과 상충되어 자신의 계획과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인생의 계획은 정의에 부합해야 하는 동시에 효율적이어야 한다. 정의에 부합하는 인생의 계획을 통해 사회적 목적의 달성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정의로운 협동 체제는 안정된 것이어야 한다. 즉 사회 구성원이 그 사회의 존립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야 하며, 그 사회의 기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어떤 일탈이 생기더라도, 또한 그 일탈에 의해 체제가 혼란되더라도, 그 혼란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그 체제를 복구하려는, 즉 그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

(q1.1.3.3.1.2) 사회에는 특히 조정, 효율, 안정 등의 기본적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개인들이 갖는 인생 계획이 상호 융화됨으로써 그들의 생활이 서로 양립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계획들이 모두 타인의 합당한 기대에 과히 어긋나지 않게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계획의 실현은 효율적이면서 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목적의 달성을 가져 와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사회 협동체제는 안정된 것이어야 하는데, 지속적인 호응을 받는 동시에 그 기본 규칙들은 기꺼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반이 생길 경우에는 더 이상의 탈선을 예방하고 그 체제를 복구하려는 안정 세력이 존재해야 한다.(39)

#### 1.1.3.3.2 정의관이 갖는 역할

(e1.1.3.3.2.1) 한 사회 체제에서 구성원의 계획을 조정하여 구성원의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구성원 상호 간의 불신과 원한, 의혹과 적개심은 시민으로서 융화를 해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는 것이 정의관의 역할이며, 이것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분배의 뜻을 분명하게 정해 주는 것이다.

(e1.1.3.3.2.2) 정의와 부정의에 대한 어떤 합의의 기준이 없을 경우, 서로 이익이 되는 체제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그들의 계획

을 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불신과 원한이 시민적 유대를 좀먹으며, 의혹과 적개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달리하면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행동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정의관이 갖는 뚜렷한 역할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고 적절한 배분의 루트를 정해주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방식은 효율이나 조정, 그리고 안정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39)

#### 1.1.4 형식적 정의

(e1.1.4.1) 한 사회의 기본 구조가 만족시키는 정의관이 있다고 하자. 이 정의관은 그 사회의 정의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들의 원칙을 정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의의 원칙이 실제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정의롭다고 생각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관은 그 사회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이익과 부담을 분배해 주며, 이 정의관에 의한 규칙들은 널리 받아들여져 수용되어 공정하고 일관되게 운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정의관이 널리 받아들여져 공정하고 일관되게 운영되는 것을 형식적 정의하고 한다. 말하자면 형식적 정의는 바로 어떤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든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q1.1.4.2) 이제 어떠한 기본 구조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규칙들은 어떠한 정의관을 만족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 규칙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들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체계에 있어서 그것들이 정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정의의 원칙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칙들은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할당해 주며 사회적 협동체로부터 얻은 이익의 분배를 결정해 준다. 또한 이러한 정의관이 대체로 그 사회에 받아들여지며 그 제도들이 재판관이나 다른 관리들에 의해 공평하고 일관되게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즉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취급되며 적합한 유사점이나 차이점은 현행 규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 보자. 제도에 의해 규정된 올바른 규칙이 정

상적으로 준수되며 관계 당국도 적절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원칙들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든 법과 제도가 이처럼 공정하고 일관되게 운용되는 것을 가리켜 형식적 정의formal justice라고 부른다. (102)

#### 1.1.4.1 법과 제도의 평등한 적용을 요구하는 형식적 정의

(e1.1.4.1.1) 형식적 정의는 그 정의의 내용과는 무관하다. 형식적 정의는 정의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그것이 운용되고 적용될 때, 편파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즉 형식적 정의는 그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에 있어서 무차별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형식적 정의는 법과 제도가 평등하게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일단 인정된 정의는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그가 누구이든 복종해야 하며, 받아들여진 이상 지켜져야 할 것이다.

(q1.1.4.1.2) 정의가 언제나 일종의 평등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면 형식적 정의는 법과 제도가 그 운용에 있어서 그것들[법과 제도]이 규정하고 있는 각 계층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즉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시지워크가 강조한 것처럼 이러한 유형의 평등은 일반 규칙들의 체계로 생각되며 법과 제도라는 바로 그 개념 속에 함축되어 있다. 형식적 정의는 원칙에의 고수이며 혹자가 말했듯이 체제에의 복종이다.(102-103)

#### 1.1.4.1.1 실질적 정의를 보장하지 못하는 형식적 정의

(e1.1.4.1.1.1) 형식적 정의는 정의의 내용을, 즉 실질적 정의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의 형평성만을 문제 삼는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정의롭다고 해도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예를 인정하는 규칙은 그 내용이 정의롭다고 할 수 없지만, 그 규칙이 일관되고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형식적으로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규칙이 실질적으로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식적 정의는 실질적 정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하지만 형식적 정의만으로도 엄청난 부정의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q1.1.4.1.1.2) 시지워크는 덧붙여 말하기를 분명히 법과 제도가 평등하게 집행될 수는 있으나 부정의한 것일 수 있다고 한다.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취급한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정의 substantive justice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보장은 기본 구조의 근거가 되는 원칙들에 달려 있다. 노예제 사회나 계급 사회 또는 가장 부당한 형태의 차별 대우를 허용하고 있는 사회가 드문 일이긴 하지만 공평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상상한다 해도 모순될 것은 없다.(103)

#### 1.1.4.1.2 큰 부정의를 해소할 수 있는 형식적 정의

(e1.1.4.1.2.1) 우리가 특정한 사례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부당한 개인적, 금전적 고려 사항에 영향을 받거나, 그 외의 다른 부당한 사항에 영향을 받는다면, 쉽게 부정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당한 고려 사항에 휘둘리지 않도록 특정한 한 제도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정의를 보장하는 길이며, 실질적인 부정의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커다란 부정의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한 제도가 공평하고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이 제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앞서서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제도가 제멋대로 적용된다면, 규칙대로 시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약간의 이익마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한 제도를 제멋대로 적용하게 되면, 더 큰 부정의가 생기게 된다.

(q1.1.4.1.2.2) 형식적 정의, 즉 규칙성 regularity으로서의 정의만 있어도 대단한 부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만약 제도들이 참으로 정의로운 것이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이 특정한 사례들을 처리함에 있어 개인적, 금전적 혹은 다른 부당한 고려 사항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법적 제도의 경우 형식적 정의는 합당한 기대치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법의 지배 rule of law 의 한 국면에 해당된다. 판정을 잘못 내리는 것도 부정의의 일종이지만, 요구를 결정함에 있어 비록 합당한 규칙이나 그것에 대한 해석일지라도

권력을 사용하여 이를 고수하려는 것도 또 하나의 부정의이다. 사람은 그 성격에서 경향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행위에의 성향을 갖는 그 만큼 부정의 한 것이다. 나아가서 법과 제도가 부정의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법에 따르는 사람들은 적어도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알게 되고, 따라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미 불리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규칙대로만 시행된다면 다소의 보장이라도 받게 될 특정 경우에 까지도 제멋대로 처우 받을 경우 더 큰 부정의가 생기게 된다. 한편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 규범들을 무시함으로써 불공정하게 처우 받는 사람들의 고난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보다 나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히 현행 제도에의 신뢰에 기초한 기대치를 무시하고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할지는 정치적 정의 political justice의 난해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형식적 정의나 체제에의 복종을 어느 정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지는 그 제도의 실질적 정의나 그 개혁 가능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이다.(103-104)

#### 1.1.4.2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 정의를 보장한다는 한 견해

(e1.1.4.2.1)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인 정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 정의와 형식적 정의는 병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부정의한 제도가 공평하고 일관되게 유지되는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어떤 정의롭지 못한 제도를 지지하고,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제도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 그리고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형식적 정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의 법이 일관되고 보편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자신의 이해관계가 손상되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관되고 보편적인 법의 지배에 의한 형식적 정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정의도 실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q1.1.4.2.2) 혹자는 실질적 정의와 형식적 정의는 사실상 병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어도 전체적으로 부정의한 제도가 공평하고 일관되게 운

용되는 일은 결코 없거나 거의 드물다고 주장한다. 부정의한 체제를 유지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경멸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은 법의 지배라는 생각으로 인해 특정 경우에 그들의 이해관계가 손상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다. 법 일반이 갖는 불가피한 이매성이나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해석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충실히 지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에 도달하는 데에 자의성이 조장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 정의, 법의 지배 그리고 적법한 기대치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실질적 정의 또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04)

### 1.1.5 정의의 두 원칙

(e1.1.5.1) 룰즈는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를 구성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제한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원칙은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사회 기본구조에 적용되어야 하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이며, 또한 이 원칙을 선택하는 합의 당사자들의 개인적 지위와 직위를 모르는 입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원칙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 원초적 입장이다. 룰즈는 원초적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의의 두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최소 극대화 원칙에 따라 선택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의의 두 원칙의 첫째 원칙은 권리와 의무, 즉 시민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둘째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이익의 할당, 즉 사회적, 경제적 불평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q1.1.5.2) 두 원칙에 대한 첫 번째 진술은 다음과 같다.

(q1.1.5.3) 첫째, 각자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q1.1.5.4)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

족시키도록, 즉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105)

#### 1.1.5.1 정의의 두 원칙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

(e1.1.5.1.1) 정의의 두 원칙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어, 사회 구성원의 의무와 권리의 할당,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 구조는 두 가지 상이한 부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한 부분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자유와 관련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다. 정의의 두 원칙에서 제1원칙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자유와 관련된 사회 구조에 적용되어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할 것을 규정한다. 또한 제2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된 사회 구조에 적용되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인정되는 조건을 규정한다.

(q1.1.5.1.2) [정의의] 원칙들은 이미 말했듯이 1차적으로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의무와 권리의 할당을 규제하고 사회적, 경제적 이익의 배분을 규제한다. 이와 같은 정식은 정의론의 목적상 사회 구조는 두 가지 다소 상이한 부분을 갖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제1원칙은 그 중 한 부분에 제2원칙은 다른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사회 체제의 측면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고 확립하는 사회의 체제의 측면을 구분하게 된다.(106)

#### 1.1.5.2 제1원칙

(e1.1.5.2)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될 정의의 두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정의의 원칙 중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자는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

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1원칙은 제2원칙에 우선한다. 즉 보다 큰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평등한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자유의 우선성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 1.1.5.2.1 제1원칙의 평등한 자유의 의미

(e1.1.5.2.1.1) 제1원칙은 자유 우선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원리는 사회 구성원의 자유가 서로 상충되지 않는 한 자유를 가장 광범위하게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말한다. 분배라는 측면에서 자유는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제1원칙이 말하고자 하는 특별한 점은 ‘동등한 자유’를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에 대한 보장에는 어떤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인데, 자유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라거나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위하여’라는 조건에 의해 제한하는 것보다는 제1원칙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 자유를 동등하게 갖는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사회 정의 원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법이 잘못될 수도 있고 국가의 질서와 안녕이라는 기준에는 너무도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q1.1.5.2.1.2) 제1원칙이 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는 종류의 규칙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은 모든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적 자유들을 제한하고 이를 협소하게 해도 좋은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들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109)

#### 1.1.5.2.2 제1원칙의 우선성

(e1.1.5.2.2.1) 정의의 두 원칙에서 제1원칙은 제2원칙에 우선한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이 자유를 우선한다는 것은 경제

적 복지의 향상을 위해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의 우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복지라는 미명 하에 불가침성을 갖는 기본적 자유가 해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보다 큰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익을 위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q1.1.5.2.2.2) 자유의 우선성은, 기본적 자유가 실질적으로 확립될 수 있을지라도, 경제적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적은 혹은 불평등한 자유가 교환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214)

#### 1.1.5.2.3 기본적 자유의 제한 조건

(e1.1.5.2.3.1) 롤즈는 무엇보다도 자유가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 자유는 제한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평등한 자유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자유의 제한은 평등한 자유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게 될 때를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따라서 자유의 제한은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전체적인 자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된다. 그렇지만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의 전체적인 보다 큰 선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보다 큰 선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q1.1.5.2.3.2) 사람들이 권리들의 제한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회적 여건이 이러한 제반 권리들의 효과적인 확립을 허용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제한은 그것들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을 때를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까지만 인정될 수 있다. 평등한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한 과정을 거쳐 그러한 자유가 향유될 수 있도록 문명의 수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옹호될 수 있다. 그래서 두 원칙의 서열적 순서를 택하는 데 당사자들은 그들 사회의 조건이, 그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평등한 자유의 실질적 실현을 허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214-215)

#### 1.1.5.2.4 기본적 자유들의 목록

(e1.1.5.2.4.1) 정의의 두 원칙 중 제1원칙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자유의 목록은 정치적 자유,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인신의 자유, 재산 소유의 자유,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등이다.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했을 때, 제1원칙의 자유 목록은 보통 소극적 권리라고 말하는 것들의 일종이다. 소극적 자유는 적극적 행동을 통해 자신이 얻어내는 권리와는 달리,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e1.1.5.2.4.2) 롤즈가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목록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권리를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정치적 정체의 성격을 드러내 준다. 즉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주의 체제에 가깝게 된다. 롤즈가 기본적 자유의 항목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권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특정하게 구성된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가 부정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자유를 그 사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로 남겨두고 있다.

(q1.1.5.2.4.3)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중대한 것은 기본적 자유들이 이런 장유들에 대한 목록으로 주어진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자유(투표의 자유와 공직을 가질 자유)와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심리적 억압과 신체적 폭행 및 절단을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인신의 온전성),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규정하는 이유 없는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와 같은 자유들은 제1원칙에 의거해서 평등해야 한다.(106)

#### 1.1.5.3 제2원칙

(e1.1.5.3.1)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절대적 평등은 비현실적이다. 실제로 한 사회는 그 구성원이 차지하는 지위, 능력과 활동에 따라 그 분배의 뜻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2원칙은 바로 ‘정당한 불평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 또는 ‘최소 극대화의 원칙’으로 불리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분배에 있어서 정당한 불평등의 기준을 밝히고 있다.

(e1.1.5.3.2) 롤즈는 제2원칙을 통해 불평등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롤즈가 제시하는 정당한 불평등한 조건은 제2원칙이 불평등을 인정하기 위해 제시하는 두 조건이다. 첫째, 그 불평등으로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이 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그 사회의 최고의 약자인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 둘째, 불평등한 분배를 인정하는 경우 한 사회의 특정한 지위나 직위는 여타의 직위보다 큰 뜻의 분배를 인정받게 되는데, 이러한 지위나 직위는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즉 불평등한 분배에서 큰 뜻의 권한을 갖는 지위나 직위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1.1.5.3.1 제2원칙의 적용

(e1.1.5.3.1.1) 제2원칙의 적용은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보장된다는 조건하에서 적용된다. 즉 제1원칙은 제2원칙보다 우선한다. 롤즈에게 있어서, 제2원칙의 적용은 항상 제1원칙이 적용되어, 실현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의 우선성이라는 이념이기도 하다. 제2원칙 적용은 한 사회의 지위와 직위의 구성 방법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제2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사회의 특정한 지위와 직위는 소득 및 재산의 분배와 권한, 책임 및 명령

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e1.1.5.3.1.2)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지위와 직위를 다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지위나 직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편성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불평등은 기본적 자유 그리고 기회의 평등과 양립 가능하게 된다. 즉 이러한 불평등은 정당한 불평등이다.

(q1.1.5.3.1.3) 제2원칙은 우선 소득 및 재산의 분배와 권한, 책임 및 명령 계통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조직들의 기획에 적용된다.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직위를 개방함으로써 제2원칙을 적용하게 되며 이러한 조건 아래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하게 된다. [...] 제2원칙과 관련하여, 부와 소득의 분배 그리고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직위들은 기본적 자유 및 기회의 평등 양자 모두와 양립 가능해야 한다.(106-107)

### 1.1.5.3.2 제2원칙의 해석

(e1.1.5.3.2.1) 제2원칙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제2원칙의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개방된”이라는 구절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구절은 ‘효율성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해석 가능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개방된”이라는 구절은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평등’과 ‘공정한 기회균등으로서의 평등’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상호 독립적이어서 네 가지 원칙을 가능하게 한다. ‘효율성 원칙’과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평등’이 만나서 ‘자연적 자유주의 체제’를, ‘효율성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으로서의 평등’이 만나서 ‘자유주의적 평등’을, ‘차등의 원칙’과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평등’이 만나서 ‘자연적 귀족주의’를,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으로서의 평등’이 만나서 ‘민주주의적 평등’을 형성한다.

(q1.1.5.3.2.2) 이미 언급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개방된”이라는 구절은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제2원칙의 두 부분은 자연히 각각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된다. 이를 의미는 상호 독립적인 까닭에 결국 이 원칙은 네 가지 가능한 의미를 갖게 된다. 평등한 자유에 대한 제1원칙이 일관되게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는 그 두 원칙에 대해 네 가지 해석을 갖게 되는 셈이다. 이를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q1.1.5.3.2.3) “모든 사람들의 이익” (111)

“평등하게 개방됨”	효율성 원칙	차등의 원칙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평등	자연적 자유주의체제	자연적 귀족주의
공정한 기회균등으로서의 평등	자유주의적 평등	민주주의적 평등

#### 1.1.5.3.2.1 제2원칙의 해석에 있어서 전제

(e1.1.5.3.2.1.1) 제2원칙 해석에 있어서 롤즈가 가정하는 것은 제1원칙이 말하고 있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충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2원칙에 대한 제1원칙의 우선성이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또한 롤즈가 제2원칙을 해석할 때 전제하는 경제 체제는 자유 시장 체제이다. 이것은 생산 수단의 사유 여부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자유 시장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q1.1.5.3.2.1.2) 해석에 있어서 내가 가정하는 것은 평등한 자유에 관한 제1원칙은 충족되고 있으며, 경제 체제는 생산 수단의 사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체로 자유 시장 체제라는 점이다.(112)

### 1.1.5.3.2.2 제2원칙에 대한 자연적 자유체제의 입장

(e1.1.5.3.2.2.1)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해석의 하나인 ‘효율성 원칙’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개방된”에 대한 해석의 하나인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평등’에 의해 자연적 자유체제가 구성된다. 이러한 체제에서 제2원칙의 첫 번째 부분은 효율성 원칙으로 이해되고, 두 번째 부분은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개방된 사회 체제로 이해된다. 따라서 자연적 자유체제에서는 효율성 원칙을 충족시키는 기본 구조가 있으며, 구성원의 능력에 따라 지위와 직위가 공개되어 있으면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자연적 자유체제에서는 이와 같은 분배가 초래한 결과가 어떠하든, 즉 얼마나 큰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든 그러한 분배는 정의롭다.

(q1.1.5.3.2.2.2) 자연적 자유체제에 관해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이러한 제안에 있어서 제2원칙의 첫 번째 부분은 제도나 혹은 이 경우에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도록 조정된 효율성의 원칙으로 이해되며, 두 번째 부분은 전통적 어법을 빌려서 말하자면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개방된 사회 체제로 이해된다. [...] 그렇다면 자연적 자유체제가 내세우는 것은 효율성 원칙을 충족시키는 기본 구조가 있으며 그 속에서 여러 직위들이 그것들에 대한 능력과 의욕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을 경우에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것은 이러한 할당이 초래할 결과에 상관없이 부와 소득, 권한과 책임을 공정하게 할당하는 체제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학설은 다른 해석들에도 관련된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112)

### 1.1.5.3.2.2.1 자연적 자유체제에 있어서 최초의 분배

(e1.1.5.3.2.2.1.1) 제2원칙의 모든 해석은 평등한 자유와 자유 시장 경제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자연적 자유체제에 있어서도 역시 평등한 자유와 자유 시장 경제가 유지될 것이다. 이 경우 특정한 분배가 보장되는 사회적 지위와 직위에 대한 형식적인 기회균등이 보장된다. 그런데 자연

적 자유체제에서 최초의 분배는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관념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자산 분배는 일정 기간 동안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즉 현재의 불평등한 소득과 부의 분배 상태는 천부적 재능과 능력이 일정기간 사회적 여건이나 운과 같은 우연과 상호 작용하여 유리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불리하게 사용되기도 함으로써 누적된 결과이다.

(q1.1.5.3.2.2.1.2) 자연적 자유체제에 있어서 최초의 분배는 (이미 규정된 대로)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관념 속에 암시되어 있는 체제에 의해 규제된다. 이러한 체제는 (제1원칙에 명시된) 평등한 자유의 배경과 자유 시장 경제를 전제하고 있다. 이들은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유리한 사회적 직위든 취할 수 있는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갖는 형식적 기회균등을 요구한다. 그러나 필요한 배경적 제도들을 보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여건의 평등 내지 유사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없기 때문에 최초의 자산 분배는 일정 기간 동안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혼존하는 소득과 부의 분배는 천부적 자산-즉 천부적 재능과 능력-의 선행적 분배가, 사회적 여건과 액운 혹은 행운 등 우연적 변수들에 의해 계발되거나 혹은 실현되지 못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이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사용됨으로써 누적된 결과인 것이다.(119)

#### 1.1.5.3.2.2.2 자연적 자유체제에 있어서 최초의 분배에 의한 부정의

(e1.1.5.3.2.2.2.1) 자연적 자유체제에서는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관념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초 분배는 일정 기간 동안 자연적, 사회적 우연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현재의 불평등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임의적인 요인들에 의해 분배가 결정되는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자연적 자유체제에서의 부정의는 임의적인 요인들에 의해 분배의 뜻이 부당하게 좌우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q1.1.5.3.2.2.2.1) 직감적으로 생각할 때 자연적 자유체제가 갖는 가장 뚜렷한 부정의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임의적인 이러한 요인

들로 인해서 배분의 뜻이 부당하게 좌우되는 것을 그것이 허용하고 있다 는 점이다.(119)

#### 1.1.5.3.2.3 제2원칙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

(e1.1.5.3.2.3.1)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해석의 하나인 ‘효율성 원칙’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개방된”에 대한 해석의 하나인 ‘공정한 기회균등으로서의 평등’이 만나서 ‘자유주의적 평등’ 체제가 구성된다. 자유주의 해석은 자연적 자유체제에서의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조건 대신에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조건을 채택하고 있다. 자유주의 체제가 채택하고 있는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조건은 지위와 직위가 단지 형식적으로만 개방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지위와 직위를 가질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것은 동일한 수준의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특정한 지위나 직위를 갖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사회 내의 최초의 지위에 관계없이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들이 가진 사회적 계급이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기대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q1.1.5.3.2.3.2) 내가 자유주의적 해석이라고 부르게 될 입장에서는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요구 조건에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조건을 부가시킴으로써 이러한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 주요 사상은 직위란 단지 형식적 의미에서만 개방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지만, 그러나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분명하게 말하면, 천부적 자산을 분배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것을 사용할 동일한 의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 체제 내에서의 그들의 최초의 지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성공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계층에 있어서 유사한 동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교양이나 기능에 대한 동등한 전망을 가져야 한다. 동일한 능력과 포부를 가진 사람들은 기대치가 그들

이 치한 사회적 계급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120)

#### 1.1.5.3.2.3.1 제2원칙에 대한 자유주의 해석의 사회적 우연성 경감

(e1.1.5.3.2.3.1.1) 사회적 우연성이나 천부적 운은 분배의 봇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연적 자유체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우연성이나 천부적 운에 의한 분배의 봇에 대한 영향을 방지함으로써 그 체제가 부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체제는 사회적 우연성이나 천부적 운명이 분배의 봇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유 시장 체제는 경제적 사태의 전반적인 추세를 규정하거나 공정한 기회균등을 위해 필요 한 정치적 법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낮은 것을 예로 든다면, 과도한 재산 축적 금지, 균등한 교육의 기회 보장 등이다.

(q1.1.5.3.2.3.1.2) 그 두 원칙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이 의도하는 것은 분배의 봇에 있어서 사회적 우연성이나 천부적 운명의 영향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조건들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자유 시장 체제는 경제적 사태의 전반적인 추세를 규정하거나 또는 공정한 기회균등을 위해서 불가결한 사회적 여건을 제공하는 정치적, 법적 제도 체계 내에 성립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의 요소들은 충분히 친숙하다. 하긴 재산의 과도한 축적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 등 그 중요성을 상기할 까닭이 있을 수 있지만, 문화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는 기회가 우리의 계급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 제도는 계급의 장벽을 철풀시키도록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120)

#### 1.1.5.3.2.3.2 제2원칙에 대한 자유주의 해석의 결점

(e1.1.5.3.2.3.2.1) 자연적 자유체제가 사회적 우연이나 천부적 운이 분배의 봇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여 부정의하게 되는 반면에, 자유주의 체제는 분배의 봇에 사회적 우연성이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려고 한다

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입장이 자연적 자유체제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유주의 체제가 이렇듯 사회적 우연성이 분배의 뜻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고는 있지만, 여전히 천부적 재능과 능력에 의해 부와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1.1.5.3.2.3.2.2) 사회적 우연에 의해 소득과 부의 분배가 결정되는 것이 허용할 이유가 없다면, 역시 천부적 운에 의해 소득과 부의 분배가 결정되는 것도 허용할 이유가 없다. 천부적인 운에 의해 분배의 뜻이 결정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자의적인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것은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나 천부적 능력은 사회적 여건과 계급에 의해 영향 받는다. 천부적 능력의 계발과 성취적 의욕은 가정의 조건과 사회적 여건에 의해 의존한다. 그렇다면 가족 제도가 존재하는 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완전하게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e1.1.5.3.2.3.2.3) 물론 자유주의 체제가 천부적 재능과 능력에 의한 자의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려고 시도하기는 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제2 원칙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을 거부하고 다른 해석을 찾아야 한다.

(q1.1.5.3.2.3.2.4) 자유주의적 입장이 분명히 자연적 자유체제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거기에도 아직 결점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그것이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한 가지 장점이긴 하지만 아직도 능력과 재능의 천부적 배분에 의해 부나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점은 허용하고 있다. 배경적 체제들이 허락하는 한계 내에서는 배분의 뜻이 천부적 운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결과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의적인 것이다. 소득과 부의 분배가 역사적, 사회적 행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부적 자산의 분배에 의하여 소득과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도 허용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기회균등의 원칙은 가족 제도가 존재하는 한 오직 불완전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천부적 능력이 계발되고 성숙하는 정도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여건과 계급 양태에 의해 영향 받는다. 노력하고 힘쓰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욕 그 자체까

지도 행복한 가정 및 사회적 여건에 의존한다. 실제에 있어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능과 교양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또한 천부적인 운수 자체가 갖는 자의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원칙을 채택하고자 한다. 자유주의적 입장이 이것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찾게 되는 것이다.(121)

#### 1.1.5.3.2.4 제2원칙에 대한 자연적 귀족주의 입장

(e1.1.5.3.2.4.1)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해석의 하나인 ‘차등의 원칙’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개방된”에 대한 해석의 하나인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식의 평등’이 만나서 ‘자연적 귀족주의’를 형성한다. 자연적 귀족주의는 사회적 우연이 분배의 뜻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배의 뜻 결정에 사회적 우연과 천부적 운수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분배가 도덕적 관점에서 자의적인 것이 되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q1.1.5.3.2.4.2) [자연적 귀족주의] 견해에 있어서는 형식적 기회균등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사회적 우연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큰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은 사회의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의 선을 증진시키는 것에 의해 제한된다. 귀족주의적 이념은 적어도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방된 체제에 적용되는 것이며, 상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적게 주어지면 하층에 있는 사람들도 보다 적게 가지게 될 경우에만 유리한 사람들의 보다 나은 처지가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귀족에게는 귀족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관념이 자연적 귀족주의 입장 속에 형성된다.(121-122)

#### 1.1.5.3.2.5 제2원칙에 대한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

(e1.1.5.3.2.5.1)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해석의 하나인 ‘차등의 원칙’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개방된”에 대한 해석의 하나인 ‘공정한 기회균등으로서의 평등’이 만나서 ‘민주주의적 평등’

을 형성한다. 민주주의적 평등 체제에서 불평등이 정당화 되는 조건은 그 불평등에 의해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이다. 즉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허용되는 것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ql.1.5.3.2.5.2) 민주주의적 평등democratic equality의 입장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원칙은 기본 구조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판정할 특정한 입장을 선정함으로써 효율성 원칙에 있어서의 불확정성을 배제한다. 만일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이 요구하는 제도의 체제를 가정할 경우에 처지가 나은 자들의 보다 높은 기대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the least advantaged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체제의 일부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직감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혜택 받은 사람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전망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도모되지 않는 한 사회 질서는 그러한 전망을 설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123)

### 1.1.5.3.3 효율성의 원칙

(e1.1.5.3.3.1) 제2원칙의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해석 원칙 중 하나는 ‘효율성 원칙’이다. 효율성 원칙이 말하는 효율성이란 분배에 있어서 그 분배의 방식을 변경시킴으로써 어떤 사람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일부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할 가능성이 더 이상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다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손해 보는 사람 없이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는 효율적이지 않다.

(e1.1.5.3.3.2) 효율성 원칙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손해 보는 사람 없이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없는 분배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효율성의 원칙을 상품 생산의 경우에 적용시켜보면, 다른 상품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그 상품들 이외에 또 다른 상품을 더 생산할 수 있다면, 그리고 부가적으로 생산된 상품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보다 낳게 만든다면, 이 경우는 비효율적이다. 더 이상 처지를 향상시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효율적이게 된다. 즉 한 쪽 사람을 불리하게 하지 않고는 다른 쪽 사람을 더 유리하게 할 분배 방법이 없는 경우, 그 분배 방법은 효율적인 분배 방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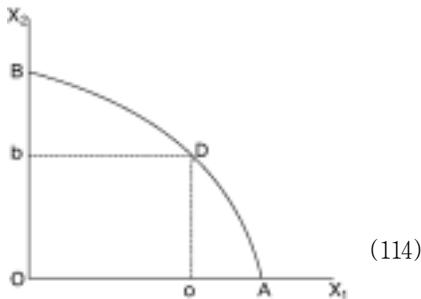
(q1.1.5.3.3.3) 이 원칙이 내세우는 것에 따르면 어떤 형태가 효율적이라고 할 경우는 그 형태를 변경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최소한 한 사람)을 빙곤하게 하지 않고 동시에 약간의 사람들(최소한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할 가능성이 더 이상 없을 때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량의 상품을 얼마간의 개인들에게 효율적으로 분배했다고 할 경우는 이들 상품을 다른 식으로 분배함으로써 그 사람들 중 다른 사람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사람의 처지라도 향상시켜 줄 길이 더 이상 없을 때라 할 수 있다. 또한 생산 조직이 효율적이라 함은 투입을 변경시킴으로써 다른 상품을 적게 생산하지 않고 어떤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경우를 말한다. 그 까닭은 다른 상품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어떤 상품을 더 생산할 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보다 많은 상품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고서 보다 나은 처지를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의 적용은 실제로 그것이 효율성의 원칙임을 보여준다. 재화의 분배나 생산의 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도 일부의 사람들을 유리하게 할 길이 아직 있을 경우에 비효율적이다. 나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체제의 효율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이 원칙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113-114)

#### 1.1.5.3.3.1 효율성 원칙의 도표

(q1.1.5.3.3.1.1)  $X_1$ 과  $X_2$ 에게 분배될 일정량의 재화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곡선 AB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점들을 나타내는 데, 즉 어떤 한 점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X_1$ 이 취하는 것이 결정될 경우 그 곡선이 가리키는 점 이상으로  $X_2$ 에게 보다 더 유리한 재화의 분배 방식이 없게 되는 그러한 점들로 이루어진다. 점 D=(a, b)를 생각해 보면 이 경우  $X_1$ 이 a 수준 만큼 취하면  $X_2$ 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은 b가 된다. 그럼 3에서 원점 0는 재화가 분배되기 이전의 상태를 나타낸다. AB곡선상의 점들은 효율적인 점이라 할 수 있다. AB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파페토의 기준을 만

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즉 달리 분배한다 해도 한쪽 사람을 더 불리하게 하지 않고 다른 쪽 사람을 더 유리하게 할 분배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AB곡선이 오른쪽 아래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재화가 일정량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많이 얻게 되면 상대방은 그만큼 얇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물론 사회의 기본 구조가 그 이상의 이익량을 산출하는 협동 체제인 경우에는 이러한 가정이 배제된다.) 보통 OAB영역은 볼록한 집합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그 집합 안에 어떤 두 점이 주어질 경우 그 두 점을 잇는 직선 위의 점들 또한 그 집합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 타원, 정사각형 등은 볼록 집합이다.(114-115)

(q1.1.5.3.3.1.2)



(114)

### 1.1.5.3.3.2 효율성 원칙의 정의 원칙 필요성

(e1.1.5.3.3.2.1) 효율성 원칙에 따르더라도, 효율적인 지점들이 많이 생겨난다. 즉 효율적인 분배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성 원칙은 다양한 효율적인 분배를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지 못한다. 다양한 효율적인 분배를 가운데 하나의 지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칙인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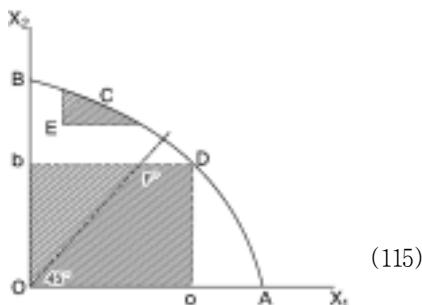
(q1.1.5.3.3.2.2) 사실상 AB곡선상의 모든 점들도 효율적인 점들임이 분명하다. 효율성 원칙은 그 원칙 자체 만으로서는 재화의 어떤 배분이

효율적인 것인가를 선정해 주지 않는다. 효율적인 배분 가운데서 어떤 지점을 선택하는 데는 또 다른 원칙, 즉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115)

#### 1.1.5.3.3.2.1 서열을 매길 수 없는 효율적인 점들의 집합

(e1.1.5.3.3.2.1.1) 효율성 원칙에 의한 효율적인 분배 지점은 여러 개다. 그럼 4에서 AB곡선 상의 모든 점은 효율적인 분배의 지점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지 않으면서 일부의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AB곡선 상의 점들은 효용의 원칙에 의해서는 서열을 매길 수 없다. 또한 효율적인 점들이라 할지라도 부정의 할 수 있다.

(q1.1.5.3.3.2.1.2)



(115)

(q1.1.5.3.3.2.1.3) 두 점 가운데 한 점이 다른 점의 북동쪽에 있다면 그 점은 효율성의 원칙에서 볼 때 보다 우월한 점이 된다. 북서쪽이나 남동쪽에 있는 점들은 비교될 수가 없다. 효율성 원칙에 의해 정해지는 서열은 부분적인 것에 국한된 서열이다. 그래서 그림4에 있어서 점C는 점E 보다 우월하고 점D는 점F보다 우월한 반면, AB상의 어떤 점도 상호간에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다. 효율적인 점들의 집합 간에는 서열이 매겨질 수가 없다. 비록 A, B와 같은 극단적이 점들의 경우도 AB선상의 다른 점들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이다.

(q1.1.5.3.3.2.1.4) AB선상의 어떤 점이든 OAB영역 내의 모든 점들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기로 하자. AB선상의 각 점은 그 남서쪽에 있는 OAB내부의 점들에 대해서만 우월하다. 그래서 점D는 D와 점 a, b를 잇는 접선에 의해 이루어진 직사각형 내부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우월하다. 점D는 점E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두 점의 서로 다른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C는 E보다 우월하며, E를 꼭지점으로 하는 조그마한 빗금 친 세모꼴에 속해 있는 AB선상의 모든 점들도 E보다 우월하다.(115-116)

#### 1.1.5.3.3.2.2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한 효율적인 점들에 대한 평가

(e1.1.5.3.3.2.2.1) 효율적인 점들은 다양하며, 또한 그 다양한 효율적인 점들은 부정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45도선이 평등한 분배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효율적인 점들 중에서 45도선에 가까운 점이 더 나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45도선에 가까운 지점과 X1축과 X2축을 연결한 사각형 속의 한 지점이 사각형에서 벗어난 지점보다 더 나은 분배 지점일 것이다.

(q1.1.5.3.3.2.2.2) 반면에 만일 우리가 45도선을 평등한 분배의 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경우(이것은 각 축에 대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수적 해석을 가정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는 추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것을 결정을 위한 부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점D는 C나 E 어느 것보다도 나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45도선에 훨씬 근접한 점이기 때문이다. F와 같이 내부에 있는 점도 효율점인 C보다 더 나은 것으로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상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정의의 원칙들이 효율성보다 우선적이며, 따라서 대체로 말하면 정의로운 분배들을 나타내는 내부의 점들은 부정의 한 분배를 나타내는 효율적인 지점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나은 것이라 할 수 있다.(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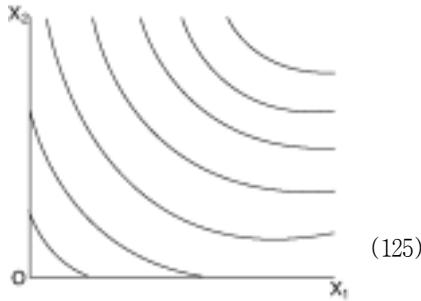
#### 1.1.5.3.4 복지 함수의 무차별 곡선

(e1.1.5.3.4.1) 차등의 원칙보다 평등주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의로운 분배의 곡선으로 좀 더 그럴듯한 견해로 생각되곤 하는 것이 복지함

수의 무차별 곡선이다. 한쪽 상대방이 더 이익을 얻는다면 다른 쪽 상대방의 이익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따라서 이 곡선은 원점에 볼록한 완만한 곡선으로 나타난다.

(q1.1.5.3.4.2) 차등의 원칙보다 덜 평등주의적이지만 얼핏 보아서 좀 더 그럴듯한 견해는,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혹은 모든 사항을 고려한) 무차별 곡선이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점을 향한 볼록한 완만한 곡선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적 복지 함수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은 때때로 이런 양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양식의 곡선이 나타내고 있는 사실은 두 사람 중 하나가 상대방과 비교해서 더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그가 얻은 그 이상의 이익의 증가량은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그만큼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125)

(q1.1.5.3.4.3)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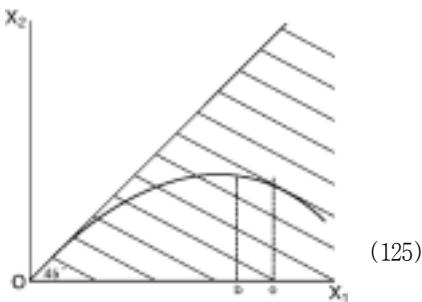


#### 1.1.5.3.5 공리주의자의 분배에 있어서 무차별 곡선과 최상의 분배

(e1.1.5.3.5.1) 공리주의자들은 이익의 총량이 큰 것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이익의 총량이 가장 큰 것들 중에서 어떤 분배에 의한 것이 더 나은지를 평가하게 된다. 즉 공리주의자는 분배의 방식보다 이익의 총량의 크기에 일차적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의 총량을 갖는 분배 방식 중에서 어떤 분배가 더 나은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공리주의자의 분배 지점은 최소 수혜자에 최대 이익이 되는 지점이 아닌 지점을 최상의 분배 지점으로 선택하게 된다.

(q1.1.5.3.5.2)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은 일정한 이익의 총량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있지 않다. 그들은 동일한 이득 총량들 가운데서 선택할 경우에 있어서만 평등에 관심을 가진다. 만일 두 사람이 있을 경우 그들 상호 간에 기수적 비교가 가능한 좌표축을 가정한다면 공리주의자들의 분배에 대한 무차별 곡선은 45도선에 대해 수직인 직선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X_1$ 과  $X_2$ 는 대표적인 사람들인 까닭에 그들의 이익은 그들이 대표하는 집단의 사람 수를 곱한 크기를 생각해야 한다.  $X_2$ 가 대표하는 사람의 수가  $X_1$ 이 대표하는 사람의 수 보다 많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좀 더 수평선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비수혜자 수에 대한 수혜자 수의 비율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결정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여도 곡선  $OP$ 를 그리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최상의 분배는 곡선  $OP$ 가 최대에 이르는 점  $b$ 를 넘어서는 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등의 원칙은 점  $b$ 를 택하게 되는데 점  $b$ 는 언제나 점  $a$ 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보다 큰 불평등을 허용하는 셈이다.(125-126)

(q1.1.5.3.5.3) 그림 8



### 1.1.5.3.6 차등의 원칙

(e1.1.5.3.6.1) 차등의 원칙은 평등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두 사람의 처지를 모두 더 낫게 해 줄 분배 방식이 없는 경우 평등한 분배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등의 원칙은

정의의 두 원칙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익”이라는 구절을 해석하는 원칙으로 제시된 것이며,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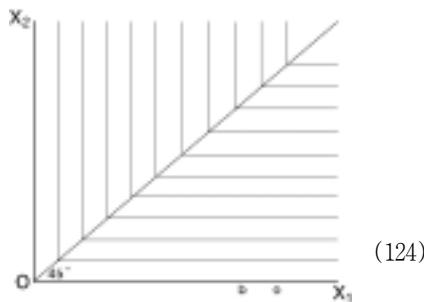
(q1.1.5.3.6.1) 똑같이 정의로운 것으로 판단되는 분배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을 가정해 보자. 그럴 경우 차등의 원칙은 만약 두 사람(간단히 두 사람의 경우만 국한할 경우)의 처지를 모두 낫게 해 줄 별다른 분배 방식이 없는 이상 평등한 분배가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강력한 평등주의적 입장을 취한다.(123)

#### 1.1.5.3.6.1 차등 원칙의 무차별 곡선

(e1.1.5.3.6.1.1) 무차별 곡선은 똑같이 정의로운 것으로 판단되는 분배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차등의 원칙에 있어서 무차별 곡선, 즉 똑같이 정의로운 것으로 판단되는 분배를 나타내는 곡선은 45도선에서 직각으로 교차하는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나타낸다. 차등의 원칙에서 무차별 곡선은 45도선에서 직각으로 교차하는 수직선과 수평선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처지가 아무리 많이 개선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처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차등의 원칙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점도 없게 된다.

(q1.1.5.3.6.1.2) 무차별 곡선은 그림 5에 나타난 형태를 갖게 된다. 이 곡선들이 실제로 45도선에서 직각으로 교차하는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되어 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처지가 아무리 개선되더라도 동시에 나머지 한 사람의 처지 또한 개선되지 않으면 차등의 원칙으로 보아서는 아무런 이점도 없는 것이 된다.(123)

(q1.1.5.3.6.1.3)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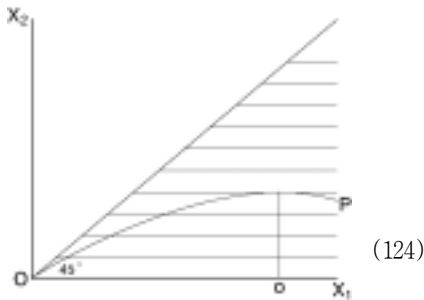


#### 1.1.5.3.6.2 차등 원칙에 있어서 분배의 완전한 만족 상태

(e1.1.5.3.6.2.1) 그림 6에서  $X_1$  축은 최대 수혜자의 대표를 나타내고,  $X_2$ 는 최소 수혜자의 대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최대 수혜자인  $X_1$ 의 기대치가 증가하면 최소 수혜자인  $X_2$ 의 기대치도 증가한다.  $OP$ 는 기여 곡선으로  $X_1$ 의 기대치 증가가 결과하는  $X_2$ 의 기대치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그림 6에서 기여 곡선  $OP$ 가 항상 45도선 아래에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X_1$ 이 항상  $X_2$ 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5도선 아래에 있는 기여곡선  $OP$ 가 무차별 곡선과 접점을 이루는 곳이 분배가 완전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된다. 기여곡선  $OP$ 와 무차별 곡선이 접점을 이루는 곳이 최고의 분배 지점이다. 그림 6에서는 그 지점이 점  $a$ 이다.

(q1.1.5.3.6.2.2)  $X_1$ 이 기본 구조에 있어서 최대 수혜자 대표라고 하자. 그러면  $X_1$ 의 기대치가 증대함에 따라 최소 수혜자인  $X_2$ 의 기대치도 증대한다. 그림 6에서 선  $OP$ 는  $X_1$ 의 기대치의 증대가 가져오는  $X_2$ 의 기대치에의 기여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원점0는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들이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가정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이때 곡선  $OP$ 가 언제나 45도선 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X_1$ 이 항상 보다 우월한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에 있어 관련된 부분도 45도선 아래가 되며 이 때문에 그림 6의 원편 위쪽 부분은 표시되지 않고 있다. 분명히 차등의 원칙은 곡선  $OP$ 가 그와 접하는 최상의 무차별 곡선과 접선을 이를 때 완전히 만족한 상태가 된다. 그림 6에서 점  $a$ 가 이 점에 해당된다.(123-124)

(q1.1.5.3.6.2.3) 그림 6



(124)

### 1.1.5.3.6.3 차등 원칙에 있어서 기여 곡선의 전제 사항

(e1.1.5.3.6.3.1) 차등의 원칙에서 기여곡선은 상호 이익이 되는 사회적 협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서로 돋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에서 차등의 원칙의 기여곡선이 의미를 갖는다. 또한 서로의 이익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더라도, 최소 수혜자의 합리적 선호가 결정되는 것만으로도 기여곡선 OP는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q1.1.5.3.6.3.2) 기여곡선 contribution curve OP는 기본 구조에 의해 규정된 사회적 협동이 상호 간에 이득이 된다고 가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는 고정된 재화를 할당하는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또한 사람들 상호 간에 정확한 이득의 비교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최소 수혜자가 확인되고 그의 합리적 선호가 결정되기만 하면 충분하다.(124)

### 1.1.5.3.6.4 차등의 원칙에 따른 최초의 불평등 정당화

(e1.1.5.3.6.4.1) 실제로 한 사회에서 존재하는 불평등은 그들의 기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층의 일원은 그렇지 못한 단순 노동자의 기대치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즉 출발에서부터의 불

평등은 그 이후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최초의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차등의 원칙이 기대치의 차등을 인정하는 경우는 단순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이다. 즉 불평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리고 그 불평등을 없애는 경우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감소한다면, 그 불평등은 정당화된다. 사회적 강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인정함으로써 이것이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기술혁신과 효율적 경제 운영이 이루어져 많은 이익이 생겨나서 사회적 약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 정당화된다.

(q1.1.5.3.6.4.2) 차등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 계층 간의 소득 분배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다양한 소득 계층들이 우리가 그 기대치에 의해서 분배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일례를 들면 재산을 소유하는 민주주의에서, 기업가 계층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미숙련 노동자의 계층으로 출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전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와 같은 생활 전망에 있어서 최초의 불평등을 정당화할 것인가?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그것이 정당화될 경우는 오직 기대치의 차등이 미숙련 노동자 대표의 경우와 같이 보다 불리한 처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경우이다. 기대치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그것을 감소시킬 때 노동자 계층의 처지가 더욱 악화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가령 제2원칙에 있어서 공개적 직위와 관련된 조항이나 자유의 원칙 일반이 전제될 경우, 기업가에게 허용된 보다 큰 기대치는 그들로 하여금 노동자 계층의 장기적인 전망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도록 고무하게 된다. 그들의 보다 나은 전망은 인센티브 incentive로 작용함으로써 경제 과정은 보다 효율적으로 되고 기술 혁신이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 이득이 생겨난다.(126)

#### 1.1.5.3.6.5 차등의 원칙에 있어서 두 종류의 정의로운 체제 구분

(e1.1.5.3.6.5.1) 차등의 원칙을 적용할 때 구분해야 할 두 경우가 있다. 첫째는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가 실제로 극대화된 경우로써, 이 경우에는 사회적 강자의 처지를 향상시켜도 사회적 약자의 처지는 더 이상 향상

되지 않는다. 이러한 체제가 최상의 정의로운 체제이다. 둘째는 사회적 강자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경우이다. 즉 사회적 강자의 처지를 향상시키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의 처지가 악화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체제는 최상의 정의로운 체제는 아니지만,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체제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최상의 정의로운 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이다.

(q1.1.5.3.6.5.2) 나는 이제 이 원칙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한다. 첫째로 이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경우는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가 실제로 극대화된 경우로서(물론 앞서 말한 제약 조건하에서),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변화시켜도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더 이상 향상될 수가 없을 때이다. 따라서 앞으로 내가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라고 부를 최상의 체제가 달성된다. 두 번째 경우는 나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치가 그보다 불리한 사람들의 복지가 더 이루어지도록 공헌할 경우이다.(126-127)

#### 1.1.5.3.6.5.1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

(e1.1.5.3.6.5.1.1) 롤즈는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와, 최선의 정의로운 체제는 아니지만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를 구분하고 있다.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는 최상의 체제로,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가 최대로 만족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향상 시킨다 할지라도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더 이상 향상되지 않는다.

#### 1.1.5.3.6.5.2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

(e1.1.5.3.6.5.2.1)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는 최대로 정의로운 체제는 아니지만,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체제이다. 롤즈는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란 사회적 강자에 대한 더 많은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익이 증가하는 체제라고 말한다. 즉 대체로 정의로운 체제란 롤즈의 용어로 최소 수혜자의 처지가 향상되는 경우에만 최대 수혜자의 보다 큰 이익을 보장하는 체제이다.

(q1.1.5.3.6.5.2.2)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기대치가 감소될 경우에는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최대치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증진시킬수록 그것이 최저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갖는다. 이러한 체제는 대체로 정의로운 것인 하지만 그러나 최선의 정의로운 체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한 체제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 이상의 보다 높은 기대치들의 정도가 과도한 경우이다. 이런 기대치들이 감소할 경우에는 최소 수혜자의 처지가 향상되게 된다.(127)

#### 1.1.5.3.6.6 차등의 원칙과 효율성 원칙의 양립 가능성

(e1.1.5.3.6.6.1) 차등의 원칙은 효율성 원칙과 양립할 수 있다. 차등의 원칙은 최대 수혜자의 처지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의 처지도 개선해야만 만족될 수 있다. 차등의 원칙과 효율성의 원칙이 완전히 만족될 경우에는 이 차등의 원칙과 효율성의 원칙은 합치한다. 그러나 사회 기본 구조가 정의롭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기대치를 감소시켜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성의 원칙은 기대치를 감소시키는 것은 결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기대치를 감소시키는 것은 효율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q1.1.5.3.6.6.2) 자연적인 자유체제와 자유주의적 입장은 어떤 배경적 제도들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순수 절차적 정의에 내맡김으로써 효율성의 원칙을 넘어서고자 한다. 민주주의적 입장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입장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순수 절차적 정의에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방식은 여전히 사회적, 자연적 우연성에 대해 너무 많은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차등의 원칙도 효율성의 원칙과 양립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차등의 원칙이 만족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 즉 우리가 그 기대치를 극대화시켜야 할 최소 수혜자 대표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고 어떤 대표적인 사람의 처지를 더 낫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의는 그 두 원칙이 완전히 만족될 경우

효율성과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진다. 물론 기본 구조가 정의롭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원칙들도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몇 사람의 기대치를 감소시키게 될 변화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의 원칙이 모든 이의 전망을 향상시키는 변화만이 허용됨을 의미한다고 생각될 경우에 민주주의적 입장은 효율성의 원칙과 상충하게 된다. 정의는 효율성에 우선하며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인 어떤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는 또한 효율적이다라는 것이다.(127-128)

#### 1.1.5.3.6.7 모든 사람에 이익이라는 차등의 원칙의 의미

(e1.1.5.3.6.7.1) 차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최소 수혜자의 최초의 처지에 비해 그 처지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면,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본다는 것은 최초의 그들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든 그 최초의 처지보다 더 나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소 수혜자의 현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를 극대화하면, 즉 차등의 원칙이 만족되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모든 사람의 처지가 평등한 최초의 처지보다 개선된다.

(q1.1.5.3.6.7.2) 차등의 원칙이 만족되면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된다는 한 가지 분명한 의미는 모든 사람의 처지가 평등한 최초의 체제에 비해 개선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차등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최초의 체제를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복한 처지에 있는가도 아무런 본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요구되는 제한 조건에 따라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만을 극대화하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하듯이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처지가 향상되는 한, 가상적 평등의 상황에서 추정되는 이익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확인될 수만 있다면 상관없는 것이다.(128)

#### 1.1.5.3.6.7.1 연쇄 관계를 통한 차등의 원칙의 만족의 의미

(e1.1.5.3.6.7.1.1) 기대치에 있어서 불평등이 연쇄 관계를 갖는 경우란, 최대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최대 수혜자와 최소 수혜자의 사이에 있는 모든 지위의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즉 사업가에게 이익이 커지면 단순 노동자에게 이익이 될 경우 사업가와 단순 노동자의 사이에 있는 기술적 노동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이익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연쇄 관계라고 한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이 만족되면 연쇄 관계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q1.1.5.3.6.7.1.2) 적어도 우리가 어떤 자연스러운 가정을 할 경우 차등의 원칙이 만족될 때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는 데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기대치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연쇄 관계를 갖는다 chain connected고 해보자. 다시 말해 어떤 이득이 최하위자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질 경우 그것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지위의 기대치도 또한 증가시킨다고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기업가의 기대치가 커지면 미숙련 노동자에게도 이익이 될 경우 그것은 준미숙련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주목할 것은 연쇄 관계는 최소 수혜자가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결과가 상호 관련되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나아가 기대치들이 서로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close-knit을 가정하기로 한다. 즉 어떤 대표적인 사람의 기대치를 증대하거나 감소시키게 되면 반드시 다른 대표적인 사람, 특히 최소 수혜자 대표의 기대치도 증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기대치가 상호 관련되는 방식에 어떠한 느슨한 연결점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들과 더불어 생각할 때 차등의 원칙이 만족될 경우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이 의미가 있게 된다. 왜냐하면 두 가지 비교 중 어떤 점에 있어서도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그에게 제시된 이익에 의해서 이득을 볼 것이며, 처지가 못한 자도 이러한 불평등이 주는 기여에 의해서 이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조건들이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그에게 제시된 이익에 의해서 이득을 볼 것이며, 처지가 못한 자도 이러한 불평등이 주는 기여에 의해서 이득을 보게 될 것이

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조건들이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자들은 최소 수혜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 경우에도 역시 우리는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를 극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128-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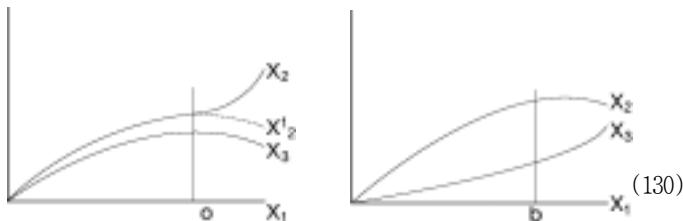
#### 1.1.5.3.6.7.2 연쇄 관계

(q1.1.5.3.6.7.2.1) 단순화를 위해서 3명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X_1$ 은 최대 수혜자,  $X_2$ 는 최소 수혜자,  $X_3$ 는 그 사이에 위치하는 사람이라고 하자.  $X_1$ 의 기대치는 수평축을 따라 표시되고  $X_2$ 와  $X_3$ 의 기대치는 수직축을 따라 표시된다고 하자. 다른 집단에 대한 최대 수혜 집단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곡선은 가상적인 평등한 입장을 나타내는 원점으로부터 시작된다. 나아가서 비록 차등의 원칙이 그것을 허용할지는 모르나 정치 체제에 있어서의 부정의한 결과라든가 자유의 우선성이 배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있게 되리라는 가정 아래서 최대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허용되어진다.(129-130)

(q1.1.5.3.6.7.2.2) 차등의 원칙은, 예를 들어 그림 9에 나타난 점 a와 같이  $X_3$ 에 대한 곡선이 그 최대치에 이르는 경우의 점을 선택한다.(130)

(q1.1.5.3.6.7.2.3) 연쇄 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그림 9나 10의 점 a와 b의 왼쪽에 있는 구간에서처럼, 곡선  $X_3$ 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 점에서나  $X_2$ 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연쇄 관계는 그림 9의 점 a의 오른쪽에 있는 구간에서처럼 곡선  $X_3$ 가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곡선  $X_2$ 는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점선  $X'_2$ 가 나타내고 있듯이) 있다. 연쇄 관계는 그림 10의 점 b 오른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130)

(q1.1.5.3.6.7.2.4) 그림 9, 그림 10



(q1.1.5.3.6.7.2.5) 곡선 X<sub>2</sub>와 X<sub>3</sub>가 모두 올라가는 구간은 지위 기여도의 구간을 규정한다. 오른쪽으로 더 가면 평균 기대치(효용이 기대치에 의해 측정되는 경우에는 평균 효용)가 상승하며 또한 변화의 규준으로서 효율성 원칙도 만족시킨다.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점들은 각자의 처지를 향상시킨다.(130)

(q1.1.5.3.6.7.2.6) 그림 9에서 평균 기대치는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점 a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는 여러 집단들의 비중에 달려 있다.) 차등의 원칙은 이러한 경우를 배제하며 점 a를 선정한다. 긴밀한 관련성이 의미하는 바는 X<sub>2</sub>와 X<sub>3</sub>에 관한 곡선은 평행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점에 있어서 어느 한 곡선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된다. 예시된 모든 곡선들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130-131)

### 1.1.5.3.6.7.3 최소 수혜자의 이익 향상에 의한 시민 전반의 이익 향상

(e1.1.5.3.6.7.3.1) 최대 수혜자에 더 많은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 사회 구조는 두 조건 즉 첫째,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이익을 공통적으로 제공하도록 설립되어야 하며, 둘째, 그 사회의 모든 직책과 직위는 개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 구조의 조건은 최대 수혜자의 처지를 향상시킨다면 그 사회의 대부분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면 입법자와 재판관에게 특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최소 수혜자의 처지가 개선된다면, 이것은 구성원 전체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q1.1.5.3.6.7.3.2)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보다 혜택 받은 지위의 기여가 사회의 특정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두루 미칠 경우에 최소 수혜자가 이득을 보면 그 사이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점이다. 나아가서 이득의 분산이 바람직한 것은 기본 구조가 예시한, 다음과 같은 제도의 두 가지 측면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첫째로 제도는 모든 사람에 공통되는 어떤 기본적 이익을 위해 설립되며, 둘째로

그 모든 직책과 직위는 개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입법자와 재판관이 갖는 특전과 권한이 보다 불리한 자의 처지를 향상시킨다면 그것은 시민 전반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된다. 다른 정의의 원칙들이 만족되는 경우라면 연쇄 관계도 가끔 합당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경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여도가 플러스(+)인 영역(혜택 받는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익이 최소 수혜자의 전망을 향상시키는 영역)내에서 완전히 정의로운 체제에로의 어떤 움직임은 모든 이의 기대치를 향상시켜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 아래서 차등의 원칙은 (만약 효용이 기본적 가치들에 의해 측정된다면) 효율성 원칙이나 평균효용의 원칙과 어느 정도 유사한 실제적 결과를 갖는다. 물론 연쇄 관계가 드물게 적용된다면, 이런 유사성은 대수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 체제 내에서는 이득의 일반적 분산이 종종 발생할 것이다.(131)

#### 1.1.5.3.6.8 축차적 차등의 원칙

(e1.1.5.3.6.8.1) 차등의 원칙은 최대 수혜자의 이익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경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지위의 이익도 향상시킨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모든 계층의 기대치들은 서로 관련되어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차등의 원칙이 기대치들이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전제하는 이유는, 긴밀한 관련성을 전제함으로써 차등의 원칙에 대해 보다 단순하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대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변화가 있는 경우, 다른 지위의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가져오면서도, 최소 수혜자의 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긴밀한 관련성은 들어맞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일반적인 원칙인 축차적 차등의 원칙이 요청된다. 그러나 보다 유리한 사람들에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경우, 불리한 사람의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축차적인 원칙이 필요치 않을 것이 확실하다. 또한 기본 구조의 제도들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법칙들은 축차적 차등의 원칙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1.1.5.3.6.8.1 축차적 차등의 원칙이 요구되는 이유

(e1.1.5.3.6.8.1.1) 연쇄 관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최대 수혜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되는 경우 이 이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는 있지만, 최소 수혜자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축차적 차등의 원칙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q1.1.5.3.6.8.1.2) 긴밀한 관련성을 가정하는 이유는 차등의 원칙에 대한 진술을 보다 단순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아무리 가능성이 있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최대 수혜자의 기대치를 변화시키면 이러한 변화가 다른 이들에게는 이익을 줄지 모르나 최소 수혜자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경우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긴밀한 관련성을 들어맞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원칙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우리는 이것을 축차적 차등의 원칙으로 생각할 수 있다.(131-132)

#### 1.1.5.3.6.8.2 축차적 차등의 원칙의 내용

(e1.1.5.3.6.8.2.1) 축차적 차등의 원칙은, 맨 먼저 가장 최소 수혜자인 사람의 복지를 극대화하고, 두 번째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가장 최소 수혜자인 사람의 복지와 같아지도록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여  $n-1$ 번째 최소 수혜자의 복지와 동등해 지도록 최대 수혜자의 복지를 극대화하라는 것이다.

(q1.1.5.3.6.8.2.2)  $n$ 개의 합당한 대표자들을 가진 기본 구조에 있어서 처음에는 최소 수혜자 대표의 복지를 극대화해주고, 두 번째는 최소 수혜자와 동등한 복지가 되도록 끝에서 두 번째 최소 수혜자 대표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드디어 마지막 경우에는 선행한  $n-1$ 의 모든 대표자들과 동등한 복지가 되도록 최대 수혜자의 복지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축차적 차등의 원칙으로 생각할 수 있다.(132)

#### 1.1.5.3.6.8.3 축차적 차등의 원칙의 실제적 적용의 부적합

(e1.1.5.3.6.8.3.1) 축차적 차등의 원칙은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보다 큰 이익이 불리한 사람들에 대한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우에 축차적 차등의 원칙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사회구조의 제도를 지배하는 일반적 법칙이 축차적 차등의 원칙을 요구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룰즈는 단순한 형식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q1.1.5.3.6.8.3.2) 나는 실제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축차적 차등의] 원칙이 적합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보다 유리한 사람들 the more advantaged에 대한 더욱 큰 잠재적 이익이 상당할 경우, 불리한 사람들 the less advantaged의 상황 또한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길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기본 구조의 제도들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법칙들은 축차적 원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보다 단순한 형식의 차등의 원칙을 사용할 것이다.(132)

### 1.1.5.3.7 공정한 기회균등의 자유주의적 원칙으로서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

(e1.1.5.3.7.1) 정의의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 즉 모든 사람들에게 직위와 직책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공정한 기회균등에 대한 자유주의적 원칙이다. 따라서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자연적 자유 체제의 입장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이 말하는 것은 업적주의 사회를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이 부분은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두 원칙 전체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과 혼동되어서도 안 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제2원칙 전체에 대한 입장은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이다.

(q1.1.5.3.7.2) 이제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데, 이는 앞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에 대한 자유주의적 원칙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 careers open to talents는 관념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우리는 이것이 차

등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결과들은 두 원칙 전체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과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133)

#### 1.1.5.3.7.1 제2원칙에서 직위 개방을 요구하는 이유

(e1.1.5.3.7.1.1) 제2원칙이 직위와 직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상 특정한 사람을 직위와 직책에서 배제함으로써 최대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어떤 특정한 계층의 우수한 사람에게만 직위와 직책을 개방함으로써 그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모든 사람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즉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2원칙은 이것이 정의롭지 않다는 이유에서 금지하고 있다. 즉 제2원칙은, 직위와 직책이 분배의 봇을 결정해 줄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기회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직위와 직책의 개방을 요구한다.

(q1.1.5.3.7.1.2) 그런데 먼저 내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직위의 개방을 요구하는 이유는 오로지, 심지어 근본적으로 효율성 때문은 아니라 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실제로 모든 이가 체제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직위가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집단을 직위로부터 제외시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직위에 어떤 권한과 이익을 할당함으로써 모든 이의 처지를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직위에의 접근이 제한되더라도 이러한 직책은 여전히 우수한 재능을 유치할 수 있으며 보다 훌륭한 임무 수행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방된 직위의 원칙은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다.(133-134)

#### 1.1.5.3.7.2 개방된 직위의 원칙이 표현하는 신념

(e1.1.5.3.7.2.1) 특정한 계층의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직위와 직책을 보장하거나 특정한 사람을 그 직위와 직책에서 배제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지라도, 직위와 직책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대우가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불평할 것이다. 이들의 불평

은 정당한 것인데, 그 이유는 부나 특전과 같은 외적인 보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에 있다.

(q1.1.5.3.7.2.2) 그것[개방된 직위의 원칙]이 표현하고 있는 신념은, 만일 어떤 직위가 공정한 기반 위에서 모든 이에게 개방되지 않을 경우에 는 제외된 자들이 비록 그 직위를 갖게 된 자들의 더 큰 노력에 의해 이 익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정의롭게 대우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불평이 정당한 이유는 단지 그들이 부富나 특전과 같이 어떤 직책이 주는 외적 보상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유능하고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데서 오는 자아실현의 경험을 저지당했다는 데에 있다.(134)

#### 1.1.5.3.8 분배의 뜻을 결정하는 절차적 정의

(e1.1.5.3.8.1) 롤즈는 절차적 정의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완전한 절차적 정의,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그리고 순수한 절차적 정의이다.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분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독립된 기준이 있으며, 동시에 공정한 분배를 결과로 절차도 있는 것이다.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은 있으나 이런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경우이다. 즉 올바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적용되는 절차가 그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해서 그릇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절차가 결과로 내용에 관계없이 그 결과를 공정하게 간주하는 경우이다. 롤즈는 분배의 뜻에 대한 문제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문제라고 말한다.

##### 1.1.5.3.8.1 완전한 절차적 정의

(e1.1.5.3.8.1.1)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공정한 분배에 대한 독립된 기준이 있어야 하며,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케이크를 여러 명이 똑같이 분배하고 싶은 경우, 한 사람에게 동등하게 자르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맨 마지막에 케이크 조각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똑같이 분배하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절차적 정의이다. 왜냐하면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를 실현시켜줄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케이크 조각을 똑같이 나눠 갖고 싶은 경우에, 올바른 분배에 대한 독립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맨 마지막에 선택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케이크를 갖게 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올바른 분배에 대한 독립된 기준을 보장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q1.1.5.3.8.1.2) 예로서 공정한 분할의 가장 간단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몇 사람이 케이크를 나눈다고 할 때 공정한 분할을 동등한 분할이라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절차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전문적인 방법을 제외하면 분명한 해결책은 어떤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보다 먼저 케이크를 똑같이 자를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도 가능한 최대의 뜻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완전한 절차적 정의가 갖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공정한 분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따르게 될 절차와는 상관없이 그것에 선행해서 정해진다는 것이다. 둘째, 분명히 그러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절차를 고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선정된 그 사람이 케이크를 똑같이 자를 수 있다든가, 자신이 가능한 한 가장 큰 것을 갖고 싶어 한다든가, 기타 등등과 같은 분명한 가정들이 전제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점들을 무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가 정의로운지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기준과 그러한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이다. 보다 실제적인 이해가 관련되는 경우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런 완전한 절차적 정의가 드물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135)

#### 1.1.5.3.8.2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e1.1.5.3.8.2.1)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지만, 이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형사 재판을 통해 잘 설명될 수 있다. 형사 재판에서는 올바른 결과는 죄를 지은 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 재판이 항상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법에 따라 심문하고 증거를 모두 검토한다고 하여도 죄 없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죄를 지은 범인이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형사 재판에서 사용되는 절차가 형사 재판의 올바른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q1.1.5.3.8.2.2)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예는 형사 재판에서 볼 수 있다. 바람직한 결과는 피고가 자신이 고발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재판 절차는 이러한 관점에 대한 진실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언제나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도록 법의 규칙들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재판에 관한 이론은 법의 다른 목적들과 더불어 이러한 의도를 가장 잘 달성해주리라고 생각되는 모든 절차와 증거의 규칙 등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나 적어도 대체로 상이한 여건 아래서는 상이한 심문 체제가 정당한 결과를 낳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재판은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한 예이다. 비록 법을 주의 깊게 따르고 절차를 그대로 공정하게 밟는다 해도 그릇된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죄 없는 사람이 유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고 범인이 풀려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그릇된 심판miscarriage of justice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부정의는 인간의 잘못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고 법적인 규칙의 의도를 그르치는 우연한 여건들의 결합에 의한 것이다.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두드러진 특징은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있으나 그것을 보장할 만한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135-136)

#### 1.1.5.3.8.3 순수한 절차적 정의

(e1.1.5.3.8.3.1) 순수 절차적 정의는 노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여

리 사람이 내기를 하고 그 과정이 공정했다면, 노름판이 끝난 후 돈의 소유 차이와는 관계없이 공정하다고, 적어도 불공정하지는 않다고 말할 것이다. 즉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이 없지만 공정하고 바른 절차가 있는 경우이다. 이 절차에 제대로 따를다면, 그 이후의 결과 내용과는 무관하게 그 결과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순수 절차적 정의이다. 어떤 절차에 따르는 경우 이 절차가 너무도 많은 여지를 허용한다면, 터무니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도 모두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q1.1.5.3.8.3.2) 순수 절차적 정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으며 그 대신에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공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노름gambling에서 볼 수 있다. 몇 사람이 일련의 공정한 내기에 가담했다면 마지막 판이 끝난 후의 현금 분배는 내용에 상관없이 공정하거나 적어도 불공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가정된 공정한 내기란 이득에 대한 영零의 기대치를 갖는 내기이며, 그 내기가 자발적으로 성립되고, 아무도 속이지 않는 것 등이다. 내기하는 절차는 공정하며 공정한 조건 아래서 자유롭게 가담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경적 여건들이 공정한 절차를 규정한다. 일련의 공정한 내기를 한 결과 모든 개인들이 처음 가졌던 현금 총액이 여러 가지 형태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 모든 특정한 분배들은 똑같이 공정한 것이 된다. 순수 절차적 정의가 갖는 독특한 측면은 정의로운 결과를 결정하는 절차가 실제로 수행된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결과가 정의로운 것임을 알기 위해 참조할 만한 독립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특정한 사태가 공정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도달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절차는 너무나 많은 여지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터무니없이 부정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한 내기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면 어떤 식의 재화의 분배도 거의 모두 정의롭거나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노름의 최종 결과가 공정한지 아니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일련의 공정한 판들을 벌인 끝에 생긴 결과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공

정한 절차는 그것이 실제로 진실 되게 수행되었을 경우에만 그 결과에 공정성을 부여하게 된다.(136-137)

#### 1.1.5.3.8.3.1 순수 절차적 정의의 이점

(e1.1.5.3.8.3.1.1) 통상적인 정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조건들과 변화하는 특정한 인간의 지위를 계속해서 추구해야만 한다. 이러한 추구는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순수 절차적 정의는 다양한 조건들과 변화하는 인간의 지위를 추구하지 않아도 정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순수 절차적 정의는 사회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잡다한 정보나 일상적인 문제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의의 두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사회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잡다한 정보나 복잡한 문제들을 무시하고 정의의 두 원칙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q1.1.5.3.8.3.1.2) 순수 절차적 정의가 갖는 실제적인 큰 이점은 정의의 요구를 만족시킴에 있어 무수하게 다양한 여건과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특정 인간의 지위를 계속 추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그 이점들 가운데 하나는 만일 이러한 세목들이 관련될 경우 생겨나는 지극히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할 원칙을 규정하는 문제를 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개인들의 지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분리되어 있어 단일한 사건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변화가 본질적으로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판단되어야 할 것은 기본 구조의 체제인데, 특히 그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특정 지위에 있는 적합한 대표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특정 지위에 있는 적합한 대표의 관점에서 보아 그 체제에 비판할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우리는 그 체제에 대해서 불평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두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회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잡다한 정보나 복잡한 일상사는 상관없는 것으로 무시한다는 데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137-138)

#### 1.1.5.3.8.3.2 협동 체제의 정의에 기초한 순수 절차적 정의의 분배

(e1.1.5.3.8.3.2.1) 순수 절차적 정의에 있어서 올바른 분배의 근거를 협동 체제의 정의에 두고 있으며, 이 협동 체제의 참여자들의 요구에 응하는데 기초하고 있다. 협동 체제는 분배의 원천이며, 협동 체제의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분배 봇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체제이다. 따라서 순수 절차적 정의에 있어서 분배는 이러한 협동 체제와 분리되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이와 별개의 것으로 평가되어서도 안 된다.

(q1.1.5.3.8.3.2.2) 순수 절차적 정의에 있어서는 이득의 분배가 일차적으로 알려진 개인들의 일정한 욕망 및 욕구에 소용되는 일정량의 이익을 앞에 두고 판정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된 품목의 할당은 공공적인 규칙의 체계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러한 체계는 생산의 내용과 정도 및 수단을 결정한다. 그것은 또한 그것에 따름으로써 결과적인 분배를 산출하게 되는 합당한 요구가 무엇인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절차적 정의에 있어서는 분배의 옳음이란 그 근거가 되는 협동 체제의 정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것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요구에 응하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분배의 원천이 되고, 그것에 의해 설정된 기대치에 대해 개인들이 신뢰감을 갖고서 살고 있는 그 체제와 분리시켜 분배 상태를 평가할 수는 없다. 일정한 요구와 선호를 가진 어떤 개인들에게 일정량의 물건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더 나은가를 추상적으로 묻는다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있을 수 없을 뿐이다. 정의의 두 원칙이 갖는 입장은 분배적 정의의 일차적 문제를 할당적 정의allocative justice의 문제로 해석하지 않는다.(138)

#### 1.1.5.4 제1원칙과 제 2원칙의 서열적 순서

(e1.1.5.4.1) 정의의 두 원칙은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서열에서 우선한다. 왜냐하면 제1원칙이 말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는 그 어떤 사회적, 경제적 이득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들의 침해가 보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등한 자유는 항상 우선하며, 기본적 자유들이 서로 상충할 때에만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을 뿐이다. 롤즈가 정의의 두 원

칙의 적용을 말할 때에 항상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q1.1.5.4.2) 이러한 원칙들은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하는 서열적 순서로 배열되어야 한다.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은 제1원칙이 요구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보다 큰 사회적, 경제적 이득에 의하여 정당화되거나 보상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자유들은 다른 기본적 자유들과 상충할 때에만 그 내부에서 제한되며 조정될 수 있는 중심적인 적용 범위를 지니고 있다. 이 자유들은 다른 자유들과 충돌할 때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유들 중 어느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106-107)

#### 1.1.5.5 기본적 자유에 속하지 않는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e1.1.5.5.1) 생산 수단의 소유의 권리를 인정하는가의 여부는 한 사회 체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말하자면 생산 수단의 소유의 권리를 기본적 자유로 인정하면, 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생산 수단의 소유가 기본적 자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회주의 체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롤즈는 생산 수단의 소유의 권리는 제1원칙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롤즈는 생산 수단의 소유의 권리를 기본적 자유로 인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각각의 공동체가 결정할 사항으로, 그 여지를 남김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로써 자유주의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모두 열어 두고 있다. 물론 롤즈는 자유주의 경제체제든 사회주의 경제체제든 시장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q1.1.5.5.2) 특정한 종류의 재산(가령 생산 수단)에 대한 권리나 자유 방임론에 의해 이해되는 계약의 자유는 기본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자유들은 제1원칙의 우선성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107)

#### 1.1.5.6 일반적 정의관

##### 1.1.5.6.1 일반적 정의관의 내용

(e1.1.5.6.1.1) 일반적 정의관에 따르면 불평등한 분배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낫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불평등한 분배가 허용된다. 이런 일반적인 정의관에서는 불평등에 대한 조건으로 오로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전제하기 때문에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q1.1.5.6.1.2) 모든 사회적 가치들 – 자유, 기획, 소득, 재산 및 자존감의 기반 – 은 이들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107)

#### 1.1.5.6.2 일반적 정의관과 정의의 두 원칙의 차이점

(e1.1.5.6.2.1) 일반적 정의관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면 모든 종류의 불평등을 인정하게 되어 평등한 자유의 권리도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 정의관은 불평등의 정도에 대한 제한 조건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이 충분히 주어지는 경우에 일반적 정의관은 이를 정의롭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두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인 제1원칙이 제2원칙에 항상 서열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보상이 주어진다고 해서 평등한 자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말할 가능성은 없다.

(q1.1.5.6.2.2)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약간의 기본적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경제적 이득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반적인 정의관은 어떤 종류의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않으며 다만 모든 사람의 처지가 개선될 것만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노예 상태를 용납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상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대신에 돌아오는 경제적 보상이 월등할 때, 사람들이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내버릴 수 있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두 원칙이 배제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거래이다. 그 원칙들은 서열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참작해야 할 여건들 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 자유와 경제적, 사회적 이득과의 교환을 허용하지 않는다.(108)

#### 1.1.5.7 정의의 두 원칙을 확정해 주는 주요 논거

(e1.1.5.7.1) 정의의 두 원칙은 두 가지 논거를 통해 확증할 수 있다. 그 논거 중 하나는 공약의 부담이며, 다른 하나는 합의의 제한 조건들이다. 합의의 제한 조건들은 효용의 원칙의 거부와 차등의 원칙 채택이며, 인간의 상호 존중, 두 원칙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 등이다.

##### 1.1.5.7.1 정의의 두 원칙을 확정해 부는 주요 논거로서 공약의 부담

(e1.1.5.7.1.1) 정의의 두 원칙은 두 가지 논거를 통해 확증해 볼 수 있다. 그 첫째가 공약의 부담의 부담이다. 공약의 부담이란 당사자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한 약속이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합의를 한 후 그 합의의 결과가 매우 나쁜 것일 가능성이 있다할지라도 그 합의 사항을 지켜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신뢰도 할 수 없을 것이며, 정의의 두 원칙은 지켜지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공약의 부담을 통하여 정의의 두 원칙을 확정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q1.1.5.7.1.2) 두 원칙을 확증해줄 첫 번째 논거는 내가 앞에서 공약의 부담strains of commitment이라고 말한 것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나는 당사자들은 자신의 약속이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정의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도덕 심리의 일반적 사실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고려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들은 서로를 믿고서 채택된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공약의 부담을 고려하게 된다. 그들은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갖게 될 그러한 사항에 합의할 수 없다. 그들은 준수하기 아주 어려운 것도 피하고자 한다. 원초적 합의는 최종적인 것이며 영구적인 까닭에 또 한번의 기회란 없다. 있을 수 있는 결과들의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공약의 부담이라는 문제는

심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 전망을 규제할 기준들을 한꺼번에 선택하게 된다.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합의를 할 경우 우리는 최악의 가능성의 나타날지라도 그 합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뢰 속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모든 경우에 그들의 약속 내용을 고수할 수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들은 나타날 인간 심리에 대한 일반적 지식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어떠한 정의관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를 가리기에 충분한 것이다.(244)

#### 1.1.5.7.1.1 공약의 부담의 입장에서 정의의 두 원칙의 장점

(e1.1.5.7.1.1.1) 공약의 부담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정의의 두 원칙이 갖는 장점은 정의의 두 원칙을 통해 기본권을 호호하고 최악의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 타인이 누릴 보다 더 큰 선을 위해 자신의 자유 상실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q1.1.5.7.1.1.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의의 두 원칙은 분명한 장점을 갖는다. 당사자들은 그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불상사에도 대비하게 된다. 그들은 일생 동안 타인이 누릴 보다 큰 선을 위해 자유의 상실을 감수해야 할 모험을 하지 않으며, 현실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러한 비현실적인 합의가 진실된 심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이다. 그런 유類의 약속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한다. 어떻게 당사자들이 그러한 합의 사항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해 충분한 확신을 가지겠는가? 분명히 그들의 확신은 도덕 심리에 대한 일반적 지식에 기초를 둔 것일 수가 없다. 확실히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원칙은 어떤 것이든 일부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희생을 요구한다.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수 없는 원칙에 기초를 둔) 명백히 부정의한 제도의 수익자들은 이루어져야 할 변동에 만족하기가 어려움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그들은 자신의 입장에 어떤 식으로도 견지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 이건, 정의의 두 원칙은 대안을 제시한다. 만일 모든 대안들이 모두 유사한 모험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공약이 갖는 부담 문제는 도외시될 수 있

다. 그러나 사정이 그러하지 않으면 이 점에 비추어 판단할 때 두 원칙은 단연 우세한 것이다.(244-245)

#### 1.1.5.7.2 정의의 두 원칙을 확정해 주는 주요 논거로서 합의의 제한 조건들

(e1.1.5.7.2.1) 정의의 두 원칙은 두 가지 논거를 통해 확증해 볼 수 있다. 그 두 번째가 합의의 제한 조건들이다. 이 논의는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심리적 안정성의 문제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지속적으로 어떤 원칙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 그 체제의 구성원들은 그 원칙이 말하고 있는 바에 따라 예측하고 행위 할 것이며, 그 원칙이 요구하는 바를 준수하게 될 것이다. 정의의 두 원칙에 있어서 합의의 제한 조건들은 바로 이 정의의 두 원칙이 사회 체제 속에 구현되어 있음을 공공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며, 여기에 상응하는 정의감은 안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q1.1.5.7.2.2) 두 번째 고려할 점은 공지성이란 조건뿐 아니라 합의에 대한 여러 제한 조건들과도 관련되어 있다. 나는 논의를 심리적 안정성의 문제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나는 그 자신의 정당 근거를 스스로 지니고 있는 정의관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였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상당 한 기간 동안 어떤 원칙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공공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 그 체제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원칙에 따라 행위하고 그 원칙을 기강으로 하는 제도 내에서 그들의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난다. 어떤 정의관이 사회 체제 속에 구현되었음이 공공적으로 인정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정의감이 생겨났을 경우 그러한 정의관은 안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의 발생 여부는 도덕 심리학의 법칙과 인간 동기의 유효성에 달려 있다.(245)

#### 1.1.5.7.2.1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효용의 원칙

(e1.1.5.7.2.1.1) 효율성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이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효율성의 원칙이 채택될 경우 모든 사람

이 혜택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효율성의 원칙이 실현되면, 전체적인 보다 큰 선을 위해 일부의 개인들의 이익이 무시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을 동일시하는 경우, 즉 자신의 이해관계와 전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강한 일체감을 갖는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체감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 1.1.5.7.2.1.1.1 개인의 기대치를 희생시키는 효용의 원칙

(e1.1.5.7.2.1.1.1) 효용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효용성 원칙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를 허용한다. 사회는 각자의 선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동 체제이다. 이러한 협동 체제에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감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해관계와 전체의 이해관계가 동일시되는 경우 타인을 위한 자신의 손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이것을 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타인의 큰 이익을 위해 개별자의 이익을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다.

(q1.1.5.7.2.1.1.2) 효용의 원칙이 실현될 경우에 모든 이가 혜택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사회 체제에 대한 충성으로 인해 전체의 보다 큰 선을 위해서 일부의 사람은 이득을 보류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희생당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보다 더 큰 이해관계에 대한 강한 일체감을 느끼지 않는 한 그 체제는 안정될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생기기란 쉽지 않다. 문제되는 희생은 공동선을 위해 대부분이 전력을 경주해야 할 사회적 위기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정의의 원칙들은 사회 체제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인생 전망을 결정하는 데 적용된다. 효용의 원칙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기대치의 희생이다. 심지어 우리가 적은 행운을 가졌을 때조차도 우리는 평생토록 타인들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보다 낮은 기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분명히 지나친 요구이다. 사실상 사회가 그 성원들의 선을 증

진시키기 위해 생겨난 협동 체제로 생각될 경우 정치적 원칙을 근거로 해서 일부의 시민이 타인을 위해 보다 낮은 생의 전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이 도덕 학습에 있어서 동정심 sympathy의 역할과 도덕적 덕목 가운데서 이타심benevolence이 중심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해 진다. 그들의 정의관은, 동정심과 이타심이 널리 그리고 강하게 개발되지 않는다면 불안정성으로 인해 위협을 받게 된다.(246)

#### 1.1.5.7.2.1.2 원초적 입장에서의 효용의 원칙 거부

(e1.1.5.7.2.1.2.1) 사회는 협력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된 협동 체제이다. 이러한 협동 체제 구성을 위한 합의의 조건으로서 원초적 입장에서 효용의 원칙은 거부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효용의 원칙은 전체의 큰 이익을 위해 개별자의 이익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은 전체의 보다 큰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희생을 요구할지도 모르는 원칙을 받아들이려하지 않은 것이다. 모든 합리적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의 당사자들은 효용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실제 생활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정서적 유대감에 의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이런 희생을 사회의 기본 구조가 요구해서는 안 된다.

(q1.1.5.7.2.1.2.2) 원초적 입장의 관점에서 이[개인의 기대치 희생] 문제를 보면 당사자들은 효용의 원칙을 거부할 것이며 사회 질서를 상호 이익이 되는 원칙 위에 세우는 더욱 현실성 있는 이념을 채택할 것이다. 물론 우리들은 가끔 애정과 정서적 유대에 의해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결코 서로를 위해 중요한 희생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의 문제로서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246-247)

#### 1.1.5.7.2.2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정의의 두 원칙

(e1.1.5.7.2.2.1) 정의의 두 원칙은 사회 협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이

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는 각자의 선이 인정되는 협동 체제이다. 정의의 두 원칙에 의해 사회의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고, 협동 체제 구성원 각자의 이익이 보장된다. 왜냐하면 차등의 원칙에 의해 모든 사람이 사회 협동체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e1.1.5.7.2.2.2) 효용의 원칙이 실현되기 어려운 타인의 이해관계와 자신의 이해관계를 동일시할 것을 요구하지만, 정의의 두 원칙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전체의 이해관계를 동일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고도의 자기와 타인의 동일화는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을 갖는 정의의 두 원칙이 더 안정적인 정의관임을 알 수 있다.

(q1.1.5.7.2.2.3) 당장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효용의 원칙은 정의의 두 원칙보다 타인의 이해관계에 대한 고도의 동일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동일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정의의 두 원칙이 더 안정된 정의관임이 나타날 것이다. 정의의 두 원칙이 실현될 경우 각자의 자유는 보장될 것이며 차등의 원칙이 의미를 갖게 되어 모든 사람이 사회 협동체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 체제 및 그것이 실현하고 있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란 자신의 선을 증진해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하고 애호하며 떠받드는 경향이 있다는 심리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각자의 선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든 이는 그러한 체제를 떠받들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245-246)

#### 1.1.5.7.2.3 인간의 상호 존중을 표현하는 정의의 두 원칙

(e1.1.5.7.2.3.1) 정의의 두 원칙을 공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보다 많이 지지해 주며, 그럼으로써 사회적 협동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한다. 자존감은 타인에 대한 존경에 의존하는데,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쉽게 된다. 왜냐하면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 타인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의 두 원칙은 인간의 상호 존중을 가져오게 된다.

### 1.1.5.7.2.3.1 자존감을 증대시켜 주는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공공적인 인정

(e1.1.5.7.2.3.1.1) 정의의 두 원칙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의 자존감을 받들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자존감에 의해 사회적 협동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이러한 자존감을 통해 자신의 계획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며, 이에 의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그 성취에 만족스러워 한다. 정의의 두 원칙이 공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람들의 자존감을 받들어 주게 된다.

(q1.1.5.7.2.3.1.2) 두 원칙에 대한 공공적인 인정은 사람들의 자존감 self-respect을 보다 많이 받들어주며 이는 다시 사회적 협동의 효율성을 증대해준다. 그 두 효과가 이러한 원칙을 택하는 이유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존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합리적이다. 사람들의 가치감은 자신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즐거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자존감은 어떤 합리적 인생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계획이 수행할 만한 가치를 가졌다는 생각이다. [이 부분은, 롤즈, 『정의론』(이학사)에는 “자존감은 자기 계획이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과 같이 어떤 합리적 인생 계획의 일부가 아니다”로 되어 있지만 “자존감은 어떤 합리적 인생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계획이 수행할 만한 가치를 가졌다는 생각이다”로 바꾸는 것이 이해하는 데 더 나은 표현일 듯하다.(247)]

### 1.1.5.7.2.3.2 자존감에 의한 타인 존중

(e1.1.5.7.2.3.2.1) 자존감은 정의의 두 원칙에 의해 보장되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인다. 그런데 이 자존감은 타인들의 존경에 의해서, 즉 자신이 타인들에 의해 존중됨을 느낌으로서 형성된다. 만약 타인에 의해 존중되지 않는다면, 그의 목적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자존을 위해서는 서로 친절하고 존중해주는 상호 존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게 되며,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도 존중하게 된다.

(q1.1.5.7.2.3.2.2) 우리의 자존감은 보통 타인들의 존경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노력이 타인들에 의해 존중됨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적이 실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견지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당사자들은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특히 타인들의 요구를 물리칠 때는 기꺼이 자기들의 행위의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상호 존경의 의무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도 쉽게 존중하게 되며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존중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멸감은 타인 멸시에로 이르게 되며 시기심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선을 해치게 된다. 자존감은 상호 간에 자긍적인 자세이다.(247)

#### 1.1.5.7.2.3.3 평등한 자유와 차등의 원칙에 의한 인간의 상호 존중

(e1.1.5.7.2.3.3.1) 평등한 자유와 차등의 원칙은 인간의 상호 존중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자존감도 받들어 주고 있다. 정의의 두 원칙은 천부적 능력에 있어서 혜택 받은 사람이 혜택 받지 못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만 천부적 능력에 있어서 혜택 받은 사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천부적 능력을 개인의 자산이 아닌 협동 체제 전체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자연적, 사회적 우연에 의한 혜택을 오로지 이기적으로 독차지 하지 못하도록 사회 구조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두 원칙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의 상호 존중이 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q1.1.5.7.2.3.3.2) 정의관의 바람직한 특징은 그것이 인간의 상호 존중을 공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감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정의의 두 원칙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해 준다. 왜냐하면 사회가 이를 원칙을 따를 경우 모든 이의 선이 상호 이익의 체계 속에 포함되고 그러한 체계 내에서 각자의 노력에 대한 공적인 인정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떠받쳐 주기 때문이다. 평등한 자유의 확립과 차등의 원칙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두 원칙은 타고난 천부적 능력을 전체의 자산으로 생각하여 혜택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만 이익을 볼 수 있음을 약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나는 당사자들이 이런 관념을 담은 윤

리적 규범에 의해 행위 한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원칙을 받아들일 여러 이유들이 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차등을 배정하고 평등한 자유체제 내에서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이기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은 그들 사회의 구조 속에서 상호 간의 존경심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감을 확보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247-248)

#### 1.1.5.7.3 정의의 두 원칙에 함축된 칸트적 이념

(e1.1.5.7.3.1) 칸트는 자신의 정언 명령으로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라고 말하고 있다. 롤즈에 의하면 정의의 두 원칙은 이러한 칸트적 이념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왜냐하면 정의의 두 원칙도 사람들이 서로를 단지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며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할 수 있는 사회 기본 구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두 원칙이 모든 사람을 단지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평등한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하게 될 원칙에 따라 서로를 대한다는 것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하게 될 원칙에 따라 대우한다는 것은 서로를 도덕적 인격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사람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는 것이다.

(q1.1.5.7.3.2) 정의의 두 원칙은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 사람들이 서로를 단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하려는 욕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사람들을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하며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는 관념은 분명히 설명을 필요로 한다. 어떻게 우리가 언제나 모든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그것이 결국 모든 사람을 동일한 일반 원칙에 따라서 대하라는 뜻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해석은 그 개념을 형식적 정의와 동일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계약론적인 해석에 의하면 사람들을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하라는 말은 적어도 그들이 평등한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하게 될 원칙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목적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인격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게 되며 그들이 받아들이는 원칙들은 그들의 인격이

요구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계약론적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단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248-249)

#### 1.1.5.7.4 정의의 두 원칙이 합리적 이익을 보장한다는 논거

(e1.1.5.7.4.1) 정의의 두 원칙에 있어서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하게 될 원칙에 따라 서로를 도덕적 인격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서로를 목적 그 자체로서 대우하게 되는데, 이렇게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한다는 것은 자신이 기여한 정도 이상의 봉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수단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은 다른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 줄 것이다.

(q1.1.5.7.4.2) 만일 당사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그들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 표현함으로써 자존감을 통한 각자의 합리적 이익을 확보하기를 바라는 경우에 과연 그들은 어떤 원칙을 택할 것인가? 그런데 정의의 두 원칙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해줄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자유를 가지며 차등의 원칙이 사람들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과 또한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것 사이의 구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서 사람들을 목적 그 자체로서 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대치에 기여하지 않는 그러한 이익은 취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사람들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타인의 보다 높은 기대치를 위해 보다 낮은 생의 전망을 서슴지 않고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차등의 원칙이 처음에는 다소 지나친 것으로 보이지만 정당한 해석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나아가서 만일 우리가 제도상에 나타난 대로 자신들과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협동체가 보다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것임을 가정한다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한에서 기대치의 일반적 수준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정의의 두 원칙이 실현되었을 때 더욱 높을 수 있을 것이다.(249)

#### 1.1.5.8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되는 방식

#### 1.1.5.8.1 시민이 내리게 될 세 종류의 판단

(e1.1.5.8.1.1) 정의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서는 먼저 한 시민이 내리게 되는 세 종류의 판단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시민은 입법과 사회 정책의 정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시민은 정의에 관한 상반되는 견해를 조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입헌 체제가 정의로운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3) 다수에 의한 입법이 어느 때 준수되어야 하고 어느 때 더 이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거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문제를 다루면서 정의의 원칙들이 여러 단계에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 1.1.5.8.1.1 입법과 사회 정책의 정의 여부 판단

(e1.1.5.8.1.1.1)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시민이 해야 할 판단은 세 종류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입법과 사회 정책의 정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다. 그러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입법과 사회 정책의 정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의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q1.1.5.8.1.1.2) 그는 입법과 사회 정책의 정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사람들의 판단이나 소견은 특히 그들의 이해관계가 관련되는 경우에 서로 다르기 마련이므로 자신의 의견이 타인의 의견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268)

##### 1.1.5.8.1.2 정의로운 입헌 체제에 대한 판단

(e1.1.5.8.1.2.1)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은 입법과 사회 정책의 정의 여부에 대한 일치하지 않는 판단을 갖게 된다. 이런 상반되는 판단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입헌 체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의롭다고 판단된 입헌 체제는 법과 정책을 평가해 줄 기준이 된다.

(q1.1.5.8.1.2.2) 그 시민은 정의에 관한 상반되는 견해를 조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입헌 제제가 정의로운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정치 과정을 하나의 기계[제도]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의원과 그들의 선거구민의 의견을 투입하게 되면 사회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시민은 이러한 기계[기구]를 설계하는 어떤 방식이 다른 것보다 더 정의롭다고 간주하게 된다. 그래서 완전한 정의관은 법과 정책을 평가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으로 제정될 어떤 정치적 견해를 선정하는 절차의 등급을 매겨 줄 수도 있는 것이다.(268)

#### 1.1.5.8.1.3 정치적 의무 및 책무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판단

(e1.1.5.8.1.3.1) 시민들은 특정한 헌법을 갖고,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 즉 다수결의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치과정은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수결의 절차에 의한 입법이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입법이 어느 때 준수되어야 하고, 거부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적 의무 및 책무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판단이다.

(q1.1.5.8.1.3.2) 그 시민은 특정한 헌법을 정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며 어떤 전통적인 절차, 예를 들면 적절한 제한을 가한 다수결의 절차가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 과정이란 기껏해야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하나인 까닭에 그는 다수에 의한 입법이 어느 때에 준수되어야 하고 어느 때에 더 이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거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그는 정치적 의무 및 책무의 근거와 한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268)

#### 1.1.5.8.2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되는 단계

(e1.1.5.8.2.1)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두 원칙이 채택되고 난 후, 합의 당사자들은 각자의 사회적 위치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요구를 정의의 두 원칙에 의해 판단해야 하게 된다. 이 때 몇 가지 중간 단계가 생겨나는데, 그 중간 단계는 4단계로, 1) 제헌 위원회 단계, 2) 입법의 단

계, 3) 법규 적용의 단계, 4) 법규 준수의 단계이다.

(q1.1.5.8.2.2) 나는 일단 정의의 원칙이 채택되어지면 당사자들은 각자의 사회적 위치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사회 체제에 대한 그들의 요구들을 이를 원칙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몇 가지 중간 단계가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러한 과정이 하나의 도식으로 제시됨으로써 당면하게 될 복잡한 점들을 구분해 주게 된다.(269)

#### 1.1.5.8.2.1 제헌 위원회의 단계

(e1.1.5.8.2.1.1) 원초적 상태에서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한 합의의 당사자들은 먼저 제헌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 형태의 정의를 결정하고 헌법을 선택하게 된다. 제헌 위원회에서는 헌법상의 권한과 시민의 기본권을 위한 체계가 구상되는데, 이것은 정의의 두 원칙이라는 조건에 따라야만 한다. 제헌 위원회에서는 원초적 상태에서와는 달리 무지의 베일이 부분적으로 걷히게 되는데, 사회 이론의 원칙들을 이해하고, 사회와 관련된 일반적 사실들로서 자연적 여건, 자원, 경제 발전 수준과 정치, 문화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한 개인들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 못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타고난 천부적 자질, 자신의 가치관 등을 알지 못한다. 제헌 위원회는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헌법을 만들게 되며, 이러한 헌법은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정의롭고 효율적인 입법을 보장하는 헌법이어야 한다.

(q1.1.5.8.2.1.2) 당사자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채택한 후에 그들은 제헌 위원회constitutional convention에 참가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들은 정치 형태의 정의正義를 결정하고 헌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들은 말하자면 그 위원회에 파견된 대표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미 채택된 정의의 원칙이 갖는 제한 조건 아래서 정부가 갖는 헌법상의 권한과 시민의 기본권을 위한 체계를 구상하게 된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다루게 될 절차의 정의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단계에서이다. 적당한 정의관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은 부분적으로 걷히게 된다. 물론 이 위원회의 성원들은 특정한 개인들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타고난 천부적 자질의 배경에 있어서의 위치 혹은 자신의 가치관 등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이론의 원칙들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이제는 그들 사회와 관련된 일반적 사실들, 즉 그 자연적 여건 및 자원, 그 경제 발전의 수준과 정치 및 문화 등을 알게 된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정의의 여건들에 내포된 지식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들이 이론적 지식이나 그들 사회에 관한 일반적 사실을 알고 있는 까닭에 그들은 가장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헌법, 즉 정의의 원칙들을 민족시키는 그리고 정의롭고 효율적인 입법을 가장 잘하도록 해주리라고 생각되는 헌법을 택하게 된다.(269-270)

#### 1.1.5.8.2.1.1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로서 정의로운 헌법 구성

(e1.1.5.8.2.1.1.1) 정의의 원칙은 정의로운 결과와 이 결과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절차에 대한 독립된 기준을 제공한다. 정의로운 헌법은 이러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과정을 통해 형성된 정의로운 절차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헌법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의로운 입법이라는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정의로운 절차로서 정의로운 헌법은 두 가지 문제를 포함해야 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정의로운 절차를 구상하는 일로서, 평등한 시민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러 절차적 체제 중에서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법적 질서를 놓을 가능성 이 가장 큰 것을 선정하는 일이다.

(q1.1.5.8.2.1.1.2) 정의로운 헌법이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도록 편 성된 정의로운 절차라 할 수 있다. 그 절차는 헌법에 의해 규제되는 정치 적 과정이며 그 결과는 제정된 입법의 체계일 것인데, 정의의 원칙들은 절차나 결과 양자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을 정해 줄 것이다.(270)

#### 1.1.5.8.2.1.1.1 정의로운 절차로서 정치 체제의 시민의 자유 구현

(e1.1.5.8.2.1.1.1.1) 순수한 절차적 정의에 있어서 이 이념이 추구되 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의로운 절차로서 헌법이 제시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평등한 시민의 자유가 분명하게 명

시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유가 구현되지 않는 입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형태라도 정의로운 절차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q1.1.5.8.2.1.1.1.2) 순수 절차적 정의의 이념을 추구하는데 있어 첫 번째 문제는 정의로운 절차를 구상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평등한 시민권의 자유들이 헌법에 명시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자유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동등한 정치적 권리들을 포함한다. 입헌 민주주의의 어떤 형태라고 생각되는 정치 체제가 이러한 자유들을 구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절차가 될 수 없을 것이다.

(q1.1.5.8.2.1.1.1.3) 물론 어떤 실체의 정치 과정이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사실상 정의롭지 못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절차상의 정치적 규칙의 체계란 없는 것이다. 입헌 체제나 혹은 어떤 정치 형태의 경우에 있어서도 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다. 달성될 수 있는 최선의 체제는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체제일 뿐이다. 그러나 어떤 체제는 다른 체제들 보다 정의롭지 못한 법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더욱 크다 할 수 있다.(270-271)

#### 1.1.5.8.2.1.1.2 정의로운 법적 질서를 보장하는 절차적 체계 선정

(e1.1.5.8.2.1.1.2.1) 절차적 체제로서 또 하나의 특성은 가장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법적 질서를 가져올 절차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질서를 가져올 절차적 체계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체제 내의 구성원들이 갖기 쉬운 신념과 이해관계를 알 필요가 있다. 물론 이때에도 특정한 개인들에 대한 지식은 가지지 않았다고 가정된다.

(q1.1.5.8.2.1.1.2.2) 두 번째 문제는 정의롭고도 현실성이 있는 절차적 체제 가운데서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법적 질서를 냉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을 선정하는 일이다. 이는 또한 이해관계의 인위적 동일화 artificial identification에 대한 벤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단지 공리의 원칙보다 정의의 원칙들에 부합할 듯한 입법(정의로운 결과)을 하기 위한 규칙들(정의로운 절차)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제 내의 성원들이 갖기 쉬운 신념과 이해관계를 알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주어진 여건 아래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될 정치적 전략에 대한 지식도 요구된다. 그래서 대표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고 가정된다. 만일 그들이 자신을 포함한 특정한 개인들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지 않다면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271)

#### 1.1.5.8.2.1.2 정의로운 헌법을 위한 독립적인 기준으로서 정의의 두 원칙

(e1.1.5.8.2.1.2.1) 정의의 두 원칙은 정의로운 헌법을 만드는 데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독립적인 기준이 된다. 따라서 제헌 위원회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 정의의 두 원칙이라는 제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q1.1.5.8.2.1.2.2) 정의로운 헌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가정하는 것은 이미 선택된 정의의 두 원칙이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을 정해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헌법 구상의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결정은 (사회이론에 입각해서 열거된) 가능한 정의로운 여러 헌법들을 모두 살펴보아 혼존하는 여건 아래서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 체제를 낳을 가능성성이 가장 큰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271)

#### 1.1.5.8.2.1.3 제헌 위원회의 1차적 기준인 평등한 자유의 제1원칙

(e1.1.5.8.2.1.3.1) 제헌 위원회가 정의로운 헌법을 제정할 때, 정의의 두 원칙은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정의의 두 원칙에서 우선성을 지니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인 제1원칙이 제헌 위원회의 1차적 기준이 된다. 따라서 헌법에 있어서도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양심 및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평등한 시민의 지위를 보장하고,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 양심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과정이 정의로운 절차여야만 한다.

(q1.1.5.8.2.1.3.2) 평등한 자유의 제1원칙은 제헌 위원회의 1차적인 기준인데 그 중요한 요구 조건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양심 및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전체로서의 정치 과정이 정의로운 절차여야 한다는 것이

다. 그래서 헌법은 평등한 시민의 공동적 지위를 확립하고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게 된다.(272)

#### 1.1.5.8.2.2 입법의 단계

(e1.1.5.8.2.2.1)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하고 난 후, 합의 당사자들은 제헌 위원회를 만들어 헌법을 그 절차적 체계로 구성한 후 입법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법규는 정의의 두 원칙뿐만 아니라 헌법의 제한 조건도 만족시켜야만 한다. 즉 정의의 두 원칙과 헌법은 법의 상위의 절차이다. 입법의 단계에서도 법을 제정할 때, 자신에 대한 특수한 사정은 몰라야 한다.

(q1.1.5.8.2.2.2) 법과 정책의 정의 여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제안된 법안은 언제나 자신에 대한 특수 사정을 모르고 있는 대표적인 입법자의 입장에서 판단된다. 법규는 정의의 원칙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제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헌 위원회의 단계와 입법의 단계를 오감으로써 최선의 헌법이 발견된다.(271)

##### 1.1.5.8.2.2.1 차등의 원칙 적용의 어려움

(e1.1.5.8.2.2.1.1) 차등의 원칙은 경제 및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입법의 단계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의 차등의 원칙 적용은 제1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지식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평등한 자유가 지켜지지 못할 경우는 매우 명백하고 분명한데 반하여 사회 및 경제 정책을 규제하는 차등의 원칙의 적용과 그 부정의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의 적용은 제1원칙의 적용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q1.1.5.8.2.2.1.2) 입법이 특히 경제 및 사회 정책과 관련해서 정의로운가 그렇지 못한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에 판단은 순이론적인 정치적, 경제적 학설과 사회이론 일반에 달려 있는 일이 혼하다. 때로는 법과 정책에 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적어도 그것이 분명히 부정의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차등의 원칙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지식이 요구되며, 언제나 제1원칙을 적용한 경우보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평등한 자유가 지켜지지 못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주 명백하고 확연하다. 이러한 위반은 부정의 할 뿐 아니라 그것이 부정의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그 부정의는 제도들의 공공적 구조 속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차등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 및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일이다.(271-272)

#### 1.1.5.8.2.2.2 입법의 단계에 적용되는 제2원칙

(e1.1.5.8.2.2.2.1) 입법의 단계에는 정의의 두 원칙 중 제2원칙이 적용된다. 물론 이때에도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즉 입법의 단계에서는 평등한 자유가 유지되는 가운데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조건 속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정책들이 이루어지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협동 체제인 사회 속에서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정책들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입법의 단계에서는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q1.1.5.8.2.2.2.2) 제2원칙은 입법의 단계에 작용하게 된다. 그것은 평등한 자유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회적, 경제적 정책들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최소 수혜자의 장기적인 기대를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한다. 이 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사실의 전 영역이 관련을 갖게 된다. 기본 구조의 두 번째 부분은 효율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사회 협동체를 위해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형태들의 차등 및 계층제를 내포하고 있다.(272)

#### 1.1.5.8.2.2.3 입법의 단계에 대한 제헌 위원회의 우선성

(e1.1.5.8.2.2.3.1) 제헌 위원회 단계에서는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작용하고, 정의의 제2원칙은 입법의 단계에서 작용한다. 그런데 제2원칙의 작용은 항상 제1원칙이 전제되고 있다. 즉 자유의 평등함이 전제 된 상태에서 불평등의 원리가 적용된다. 롤즈는 이것을 평등한 자유의 우선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제1원칙이 적용되는 제

헌 위원회는 제2원칙이 적용되는 입법의 단계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법 규는 정의의 원칙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제한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q1.1.5.8.2.2.3.2) 정의의 제1원칙이 제2원칙에 대해 갖는 우선성은 입법의 단계에 대한 제헌 위원회의 우선성 속에 반영되고 있다.(272)

### 1.1.5.8.2.3 법규 적용과 법규 준수의 단계

(e1.1.5.8.2.3.1) 정의의 두 원칙 적용의 마지막 단계는 법관과 행정 판에 의해 법규가 적용되는 단계와 일반 시민에 의해 법규가 준수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법규의 전 체계가 채택되어 있어야 하며, 개개인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지식이 알려져 있어야 한다. 즉 이제 어떠한 무지의 베일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q1.1.5.8.2.3.2) 법관과 행정판에 의한 법규의 적용과 시민 일반에 의 한 법규의 준수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들이 완전히 알려지게 된다. 법규의 전 체계가 채택되어 개개인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 적용되므로 지식에 대한 어떤 제한도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적 의무와 책무의 근거 및 한계를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아니다. 이러한 제3유형의 문제는 부분적 준수론에 속하며 그 원칙 들은 이상적인 이론의 원칙들이 채택된 후에 원초적 입장의 관점에서 논의된다. 일단 이러한 원칙들이 주어지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시민 불복종이나 양심적 거부의 경우에서와 같이 자신의 특수한 사정을 마지막 단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272-273)

### 1.1.5.8.3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되는 각 단계에 있어서 지식의 이용 가능성

(e1.1.5.8.3.1)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두 원칙을 채택한 합의 당사자들은 이후에 정의의 두 원칙을 정치 체제를 위해 적용하는 단계에 있게 되는데,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되는 각 단계는 그 사회나 구성원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그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즉 제헌 위원회 단계, 입법의 단계, 법규 적용과 법규 준수의 각 단계마다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의 정도가 다르다. 말하자면 정의의 두 원칙이 적용되는 각 단계마다 무지의 베일의 정도가 다르다.

#### 1.1.5.8.3.1 정의의 원칙의 적용 단계에서 이용될 수 있는 세 종류의 지식

(e1.1.5.8.3.1.1) 정의의 두 원칙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은 세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지식은 1) 사회이론의 제1원칙들과 그 결과들, 2) 사회의 규모 및 경제 발전의 수준, 그 제도적 구조와 자연적 여건 등과 같은 사회에 관한 일반적 사실들, 3) 개인들의 사회적 지위, 천부적 속성, 특정한 이해관계와 같은 개인들에 대한 특수한 사실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지식에 대한 이용은 각 적용 단계마다 다르다.

(q1.1.5.8.3.1.2) 세 종류의 사실들을 구분해 보면, 첫째 사회이론(그리고 관련된 다른 이론들)의 제1원칙들과 그 결과들, 둘째 사회의 규모 및 경제 발전의 수준, 그 제도적 구조와 자연적 여건 등등과 같은 사회에 관한 일반적 사실들, 그리고 끝으로 개인들의 사회적 지위, 천부적 속성 그리고 특유한 이해관계와 같은 개인들에 대한 특수한 사실들 등이다.(273)

#### 1.1.5.8.3.2 정의의 원칙의 적용 단계에서 이용될 수 있는 지식 제한의 완화

(e1.1.5.8.3.2.1)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에 의해 분배의 뜻에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거의 갖지 못한다. 다만 정의의 여건에서 추론될 수 있는 것들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의의 두 원칙의 적용 단계에 따라 무지의 베일은 서서히 걷히게 된다. 먼저, 제헌 위원회 단계에서 사회에 관한 일반적

사실은 이용 가능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조건들은 알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입법의 단계에서는 자신의 특수한 조건들이 일부 알려져 있게 되고, 마지막 단계인 법규 적용과 준수의 단계에서는 무지의 베일이 완전히 걷혀, 모든 제한 조건이 사라진다.

(q1.1.5.8.3.2.2) 원초적 입장에 있어서 당사자들에게 알려 질 수 있는 유일한 특수 사실은 정의의 여건들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들은 사회이론의 제1원칙들을 알고 있지만 역사의 전개 과정이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얼마나 자주 사회가 이러 저러한 형태를 취하며 현재는 어떤 종류의 사회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다음 단계들에서는 그들은 그들의 사회에 관한 일반적인 사실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그들 자신의 특수한 조건들은 이용할 수가 없다. 정의의 원칙들이 채택되었으므로 지식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 정보의 유입은 당면한 종류의 정의의 문제에 이러한 원칙들을 명석하게 적용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것에 따라 각 단계에서 결정되는 반면에 동시에 편견과 왜곡을 유발하고 사람들을 서로 불화하게 하는 모든 지식은 제외된다. 원칙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적용한다는 관념은 허용될 수 있는 지식의 종류를 결정한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분명히 어떤 형태의 무지의 베일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모든 제한 조건들이 제거된다.(273-274)

## 1.2 정의의 주제

(e1.2.1) 어떤 것이 정의롭다거나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의의 주제가 되는 대상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법, 제도, 사회 체제와 의사 결정, 판단 그리고 비난 등을 포함한 여러 특정 행위들이다. 또한 사람들의 태도와 성향에 대해서도 정의의 여부를 물을 수 있다.

(q1.2.2) 여러 가지 것들, 즉 법, 제도 그리고 사회 체제들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 판단, 비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특정 행위들이 정의롭다거나 부당하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는 사람이 갖는 태도나 성향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정의롭다거나 부당하다고 한다.(40)

### 1.2.1 제도

(e1.2.1.1) 롤즈는 제도를 공적인 체계로 여기며, 이러한 공적인 체계는 직책과 직위를 결정하고, 이 직책과 직위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 권한, 면제 등을 규정하는 규칙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규칙들은 허용하는 행위와 금지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위반하는 경우 형벌에 대한 조항도 가지고 있다.

(q1.2.1.2) 나는 여기에서 제도institution라는 것을 권리 및 의무, 권한 및 면제 등을 수반한 직책과 직위들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들의 공적인 체계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어떤 형태의 행동은 허용 가능한 것으로, 다른 형태의 행동은 금지되는 것으로 명시하며, 또한 이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형벌을 가하고 답변을 요구한다. 제도나 혹은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적 관행의 예로서는 경기, 의식, 재판, 의회, 시장 및 재산 체제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98)

#### 1.2.1.1 제도의 두 측면

(e1.2.1.1.1) 제도는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추상적인 대상으로서, 즉 규칙 체계가 허용하는 행동 형태와 다른 하나는 이 규칙이 명시하는 행위가 일정 장소와 일정 시간 동안 특정한 사람의 행위와 사유 속에 실현 된 것이다.

(q1.2.1.1.2) 제도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추상적인 대상으로서, 다시 말하면 규칙의 체계가 명시하는 가능한 행동 형태이며, 둘째로는 일정한 시간 및 장소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의 사고와 행위 가운데서 이들 규칙이 명시하고 있는 행위의 실현이라 할 것이다.(98)

##### 1.2.1.1.1 정의 여부와 관련한 제도의 두 측면

(e1.2.1.1.1.1) 실현된 제도와 추상적 대상으로서 제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정의로운가를 가려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실현된 그리고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관리된 제도가 정의롭거나 부정의하다고 말하는 것이 좋

을 듯하며, 추상적인 대상으로서 제도가 정의롭거나 정의롭지 않다고 말할 때에는 그 제도의 실현이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q1.2.1.1.1.2) 그런데 실현된 제도나 추상적으로서의 제도 가운데 어느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에 애매한 점이 있다. 정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실현된, 그리고 능률적이고 공평하게 관리된 제도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추상적인 대상으로서의 제도는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어 정의롭게 혹은 그렇지 않게 되었는가에 따라 그 정의 여부가 밝혀진다고 하겠다.(98)

#### 1.2.1.1.2 제도의 존재 방식

(e1.2.1.1.2.1) 제도는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에 존재한다. 그런데 하나의 제도가 특정 시간과 공간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제도가 명시하고 있는 행동이 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 체계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공적인 이해에 따라 규칙적으로 수행될 경우이다. 따라서 하나의 제도는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적합한 행동 방식을 요구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 규칙을 준수해야한다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이 제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q1.2.1.1.2.2) 하나의 제도는 그 제도가 명시하는 행동들이 그 제도를 규제하는 규칙의 체계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공공적 이해에 따라 규칙적으로 수행될 경우 일정한 시간과 장소 내에 존재한다. 그래서 의회 제도도 어떤 규칙들의 체계(혹은 변칙을 허용하는 그러한 일단의 체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이러한 규칙들에는 의회의 회기를 여는 것에서부터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것, 의사 진행에 관한 문제를 제안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동 형식들이 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일반적인 규범들이 하나의 일반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의회 제도는 어떤 사람들이 적합한 행동을 수행하며 요구되는 방식으로 이러한 행위들에 참여함에 있어, 그들의 행위가 당연히 준수해야 할 규칙들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서로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호 간에 인정하고 있을 경우 일정

한 시간과 장소 내에 존재한다.(98-99)

### 1.2.1.2 주요 제도의 의미

(e1.2.1.2.1) 정치의 기본법이나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체제는 한 사회의 주요 제도가 된다. 따라서 주요한 사회 제도의 예들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경쟁적 시장, 생산 수단의 사유 등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일부일처제 등이다. 이러한 사회의 주요 제도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주고, 삶에 영향을 미쳐 미래에 대한 자가 삶의 방향과 소망을 정해 준다.

(q1.2.1.2.2) 주요 제도란 정치의 기본법이나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체제를 말한다. 그래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경쟁적 시장, 생산 수단의 사유 등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일부일처제 등은 주요한 사회 제도의 예들이 된다. 이 모두를 하나의 체계로 생각할 때, 주요 제도는 인간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그들의 인생 전망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소망까지 정해 주게 된다.(40)

### 1.2.1.3 구성적 규칙과 전략이나 대책 간의 구분

(e1.2.1.3.1)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구성적인 규칙이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제도를 어떻게 최대한 이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은 전략이나 대책이다. 우리는 어떤 제도를 말함에 있어서 이러한 구성적 규칙과 전략이나 대책을 구분해야 한다.

(q1.2.1.3.2) 어떤 제도에 있어서 그 다양한 권리 및 의무를 설정하는 구성적인 constitutive 규칙들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제도를 어떻게 최대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나 대책 간의 구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100)

### 1.2.1.3.1 합리적 대책이나 전략

(e1.2.1.3.1.1) 이런 전략이나 대책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이익이나 신념 혹은 서로의 계획에 의해 허용 가능한 행위를 분석한 바탕위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q1.2.1.3.1.2) 합리적 대책이나 전략은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이익이나 신념 혹은 서로의 계획에 관한 추정 등에 비추어 결정하게 될 허용 가능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분석한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전략이나 대책들은 그 자체로서는 제도의 일부가 아니다.(100)

### 1.2.1.3.2 제도에 관한 이론의 성격

(e1.2.1.3.2.1) 전략이나 대책이 그 자체로 제도의 일부는 아니다. 전략이나 대책은 제도에 관한 이론이다. 전략과 대책은 이미 주어진 구성적 규칙들을 가지고 권한이 분배되는 방식, 또는 사회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유리하게 이용하는 방법 등을 해명한다.

(q1.2.1.3.2.2) 전략이나 대책들은 그 자체로는 제도의 일부가 아니다. 그보다도 그것은 제도에 관한 이론, 예를 들면 의회정치학의 이론에 속하는 것이다. 보통 제도에 관한 이론은 게임 이론theory of a game과 같이 구성적인 규칙들이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권한이 분배되는 방식을 분석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회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것인가를 해명한다.(100)

### 1.2.1.3.3 바람직한 목적을 통해 조정되는 개인의 이익 추구

(q1.2.1.3.3.1) 사회 체제를 기획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받았다는 계획 및 대책과, 장려하는 행동 양식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그 규칙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주된 이익을 쫓아 행동하면서도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각자의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각 개인의 행위는 비록 의도되었거나 설사 예견된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정coordination되어야 한다. 벤

남은 이 조정을 이해관계의 인위적인 동일화라 생각하였고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보았다. 그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인 입법자의 목표이고 또한 개혁을 주장하는 도덕가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개인들이 따르는 대책이나 전략이 제도를 평가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적인 규칙들의 체계의 일부는 아니다.(100-101)

#### 1.2.1.4 단일한 규칙 및 제도와 전체로서 사회 제도의 기본 구조 구분

(e1.2.1.4.1) 단일한 규칙 및 제도가 정의롭다는 것과 전체로서의 사회 제도의 기본 구조가 정의롭다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단일한 규칙 및 제도와 전체로서의 사회 제도의 기본 구조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전체적인 제도 자체는 정의롭지만, 이 전체적인 제도를 이루는 하나 혹은 여럿의 규칙이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즉 전체로서 사회는 부정의하지 않지만 하나의 제도가 부정의할 수는 있다. 물론 제도 전체는 그것이 부정의 한 부분을 하나라도 포함하게 되면 포함한 그만큼 부정의하게 된다. 또한 전체적인 제도 자체는 정의롭지 않지만, 그 전체적인 제도를 이루고 있는 많은 제도들이 정의로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정의로운 제도들이 단일한 체계로 결합하는 방식에서 부정의하게 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부분과 전체의 문제로 알려진 논의와 유사하다. 즉 훌륭한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자동차를 구성하는 몇몇 부속품은 훌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훌륭한 부속들로 구성된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차는 훌륭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q1.2.1.4.2) 우리는 단일한 규칙(또는 규칙들의 집합) 및 제도(또는 그 제도의 주요 부분)와 전체로서의 사회 제도의 기본 구조를 구분할 수 있다. 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제도 그 자체는 정의롭지만 어떤 체계의 하나 혹은 여러 개의 규칙이 정의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전체로서의 사회는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하나의 제도가 부정의 한 것일 수는 있다. [...] 이러한 구분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그것은 제도를 평

가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다 넓은 혹은 좁은 맥락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101)

#### 1.2.1.4.1 단일한 규칙과 전체로서 사회 제도의 부정의와 관련한 상호 영향

(e1.2.1.4.1.1) 우리가 통상 잘 알고 있는 부분과 전체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부분이 훌륭하다고 해서 전체가 반드시 훌륭한 것이 아니고, 전체가 훌륭하다고 해서 각 부분이 훌륭한 것이 아니듯이, 제도 자체는 정의롭지만 각각의 규칙은 정의롭지 않을 수 있으며, 각각의 제도는 정의롭지만 제도 자체는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제도 자체가 정의로운 경우라 할지라도, 그 안에 부정의 한 규칙을 포함하는 만큼 그 제도는 부정의하게 될 것이고, 제도 자체의 문제에 의해 부정의하지 않은 각각의 규칙들이 단일한 체계로 결합하는 방식에 의해 부정의 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q1.2.1.4.1.2) 제도 그 자체는 정의롭지만 어떤 체제의 하나 혹은 여러 개의 규칙이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 [...] 이와 유사하게 전체로서의 사회는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하나의 제도가 부정의 한 것일 수는 있다. 하나의 규칙이나 제도가 그 자체로서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제도의 구조나 사회 체제 내에서 하나의 명백한 부정의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다분히 있는 것이다. 전체는 그것이 부정의 한 부분을 하나라도 포함하게 되면 그만큼 더 부정의 한 것이 된다. 나아가서 하나의 사회 체제를 이루고 있는 제도 가운데 어느 것도 각각으로는 부정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의 사회 체제로서는 부정의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정의는 그들이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결합되는 방식에서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101)

#### 1.2.1.4.2 정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들

(e1.2.1.4.2.1) 어떤 제도들은 정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어떤 특정한 의식이나 관습 등은 정의롭거나 부정의하다는 평가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물론 모든 의식과 관습에 정의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의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며, 룰즈는 이러한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너무도 광범위한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q1.2.1.4.2.2) 정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제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의식儀式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의롭다든가 그렇지 않다든가를 말하지 않는다. 물론 장남이나 전재 포로들을 희생물로 바치는 경우에서와 같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정의에 관한 일반 이론에서는 보통 때는 정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 의식이나 다른 관습이 이런 식의 비판을 받게 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것들은 틀림없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 사이에 권리 및 가치를 할당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보다 광범위한 문제들을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사회의 기본 구조나 그 주요한 제도들로서 사회 정의의 전형적인 경우들에만 국한된다.(102)

### 1.2.2 사회정의의 일차적 주제로서 사회의 기본 구조

(e1.2.2.1) 사회의 기본 구조는 공공적인 규칙의 체계이다. 이런 공공적인 규칙 체계는 정의의 일차적 주제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권리와 의무의 배분, 협동에 의해 생긴 이익의 배분을 사회 제도가 규정하는데, 정의는 이러한 것을 일차적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정의는 사회 기본 구조를 일차적 주제로 삼고 있다.

(q1.2.2.2) 기본 구조란 사람들로 하여금 노력을 통해서 이익의 보다 큰 총량을 산출케 하고 그러한 성과에 있어 어떤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인정된 특정 권한을 각자에게 할당하는 행위의 개요를 규정하는 공공적인 규칙의 체계인 것이다. 어떤 사람이 행해야 할 것은 공공 규칙이 그의 권한entitled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달려 있고, 그의 권한은 그가 행하는 것에 달려 있다.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배는 이러한 합당한 기대치에 비추어서 사람들이 행해야 할 것에 따라 정해지는 요구들을 존중함으로써 달성된다.(134)

(q1.2.2.3) 우리가 논하려는 것은 사회정의인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 된다. [...] 기본 구조가 정의의 일차적 주제가 되는 이유는 그 영향력이 심대하고 또 그것이 근원적인 데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40)

(q1.2.2.4) 사회 정의에 관한 원칙들의 기본 주제는 주요한 사회 제도들을 하나의 협동 체제로 편성한 사회의 기본구조 basic structure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이 원칙들은 그러한 제도 속에서 권리 및 의무의 할당과 사회생활의 이득 및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규제하는 것이다. 제도 속에서의 정의의 원칙들은 특정한 여건 속에서의 개인들과 그들의 행위에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들과 혼동되어져서는 안 된다.(98)

### 1.2.2.1 한 제도의 규칙들이 갖는 공지성

(e1.2.2.1.1) 한 사회의 기본 구조는 규칙들의 공적인 체계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 사회의 기본 구조, 즉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제도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러한 규칙이 요구하는 바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사실을 타인이 알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으며, 그리고 그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타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한 제도의 규칙들이 갖는 공지성이다.

(q1.2.2.1.2) 하나의 제도, 다시 말하면 사회의 기본 구조가 규칙들의 공적인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원칙과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의 참여가 합의의 결과일 경우에 알아야 할 바를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그 규칙들이 그와 타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 까지도 알고 있다. 확실히 이러한 조건은 실제하는 제도의 경우에 있어서 언제나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단순화시킨 합당한 가정일 수는 있다.(99)

### 1.2.2.2 공지성의 의의

(e1.2.2.2.1) 한 제도의 규칙들이 공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허용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 준다. 이러한 공지성으로 인해서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 무엇이 정의롭고 정의롭지 못한지에 대한 공적인 합의가 가능하게 된다.

(q1.2.2.2.2) 정의의 원칙들은 이와 같은 공공적인 것으로 이해된 사회 체제에 적용되어진다. 어떤 제도의 하위 부분의 규칙들이 그것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을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속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목적을 달성해 주고 타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에서 그들 스스로 규칙들을 정할 수 있다는 데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한 제도의 규칙들이 갖는 공지성publicity이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제한이 가해지며, 어떤 종류의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상호간의 기대치를 결정해 줄 하나의 공통 기반이 있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질서 정연한 사회, 다시 말해 공통적인 정의관으로 유효하게 통제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공공적인 합의도 역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 나는 정의의 원칙들은 공공적이라는 것을 안다는 조건 아래 선택된 것이라고 가정할 것이다.(99-100)

### 1.2.3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 있는 뿌리 깊은 불평등

(e1.2.3.1)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존재하며, 이런 상이한 지위에 따라 이들의 기대치도 달라진다. 즉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유리한 출발점에 설 수도 있고, 불리한 출발점에 설 수도 있다. 이런 상이한 출발점은 인생의 최초의 기회를 좌우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매우 뿌리 깊다. 즉 이와 같은 불평등은 거의 불가피하다.

(q1.2.3.2) 기본 구조 속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속해 있다는 점과 서로 다른 지위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

회적 여건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해진 서로 상이한 기대를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사회 제도로 인해서 어떤 출발점에는 다른 출발점보다 유리한 조건이 부여된다. 이러한 것들은 특히 뿐만 깊은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지배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최초의 기회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 정의의 원칙들이 제일 먼저 적용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 있는 이와 같은 거의 불가피한 불평등인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원칙들은 정치 조직의 선택과 경제적, 사회적 중요 요인들을 규제하게 된다. 한 사회 체제의 정의 여부는 본질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할당되는 방식에 달려 있으며 사회의 여러 방면에 있어서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조건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40-41)

### 1.3 고전적 공리주의

(e1.3.1) 최근 까지 발전을 거듭해 온 공리주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공리주의 모두를 상세하게 고찰할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 여기서는 롤즈 자신이 주장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과 공리주의를 비교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목적에 필요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장 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의 논의로 충분하다. 이를 위해 롤즈가 정의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리주의는 가장 명료하고 접근하기 쉽게 시지윅이 정식화한 고전적 공리주의이다.

#### 1.3.1 고전적 공리주의의 주요 사상

(e1.3.1.1) 고전적 공리주의에 있어서, 한 사회의 중요한 제도가 정당하다는 것은 그 사회의 최대 만족을 가져오게끔 그 제도가 편성되는 경우이다. 즉 제도의 정당성은 그 사회의 최대 만족을 그 제도가 달성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q1.3.1.2) 한 사회의 중요 제도가 그에 속하는 모든 개인이 만족의 최대 순수 잔여량을 달성하도록 편성될 경우 그 사회는 정당한 질서를 갖춘 것이며 따라서 정의롭다.(59)

### 1.3.1.1 롤즈가 의미하는 고전적 공리주의

(e1.3.1.1.1) 롤즈는 공리주의를 공정으로서 정의와 대비하고 있다. 이때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공리주의는 벤담과 시지윅이 정식화한 고전적 공리주의이다. 그는 현대에 제시된 여러 다양한 형식의 공리주의는 논의의 편리함을 위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

(q1.3.1.1.2)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공리주의 간에 이상과 같은 대비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내가 염두에 두어온 것은 오직 고전적 이론뿐이었다. 이것은 벤담이나 시지위크의 입장이요, 공리주의적 경제학자인 에지워드나 피구의 견해이다.(71)

#### 1.3.1.1.1 고전적 견해의 장점과 문제점

(e1.3.1.1.1.1) 고전적 공리주의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롤즈는 고전적 공리주의 장점으로 고전적 공리주의가 정의의 원칙들과 이 원칙에서 도출되는 권리의 상대적 우선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문제점으로는 공리주의는 소수가 불편하더라도 타인이 큰 이익의 총량을 누린다면, 정당하다고 말할 것인데, 타인이 누릴 보다 큰 이익의 총량에 의해 소수의 불편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q1.3.1.1.1.2) 벤담, 에지워드, 시지위크 등에 의해 정식화된 고전적 견해가 갖는 한 가지 장점은, 정의의 원칙들과 이러한 원칙들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의 상대적 우선성이라는 중요한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소수에게 불편을 부과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누릴 더 큰 이익의 총량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며, 또한 정의의 중대성이 과연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자유를 요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허용할 만큼 대단한 것인지의 여부이다.(72)

### 1.3.1.1.2 로크 계약론에 대한 흄의 논박

(q1.3.1.1.2.1) 로크의 계약론에 대한 흄의 유명한 논박 중에서 그는 성실과 충성의 원칙들은 모두가 동일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적 의무의 바탕을 원초적 합의에 두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흄이 볼 때 로크의 학설은 불필요한 군더더기일 뿐이므로 우리는 곧 바로 공리에 의거해도 좋다는 것이다. (71)

### 1.3.1.1.2.1 흄이 의미하는 공리 개념

(q1.3.1.1.2.1.1) 흄이 의미하는 공리란 사회의 일반적인 이익과 필요라고 생각된다. 성실과 충성에의 원칙들이 공리에서 도출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들이 널리 준수되지 않고서는 사회 질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이다. 그런데 흄의 생각에 따르면 장기적인 이득으로 판단할 때 법과 정부가 공리에 입각한 신조를 따를 경우 각 개인은 이득을 보게끔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흄에게 있어서 공리란 일종의 공동선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며, 제도가 적어도 결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줄 경우 그 제도는 공리의 요구를 만족시키게 된다.(71)

### 1.3.1.1.2.2 흄의 공리주의와 로크 계약론의 양립 가능성

(q1.3.1.1.2.2.1) 흄에게 있어서 공리란 공동선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며, 제도가 적어도 결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줄 경우 그 제도는 공리의 요구를 만족시키게 된다. 만일 이러한 식으로 흄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면, 당장은 정의의 우선성과도 상충하지 않으며 로크의 계약론과도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로크에 있어서 평등권의 역할은 자연 상태로부터 떠나도 좋은 유일한 경우가 그러한 권리가 존중되고 공통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뿐임을 정확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로크가 시인한 자연 상태로부터의 모든 변화 형태는 이런한 조건을 충족시키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합리적 인간들이 평등한 상태에서 동의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흄은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제한 조건의 적합성을 반박하지 않는다. 로크의 계약론에 대한 그의 비판

은 결코 그 근본 주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71-72)

### 1.3.1.2 윤리설의 구조를 결정하는 두 옳음과 좋음

(e1.3.1.2.1) 윤리학에 있어서 두 기초 개념은 옳음과 좋음이다. 이 두 개념에서 모든 도덕적 가치 개념이 생겨난다. 그리고 윤리 이론은 이 두 개념 중 어떤 개념을 보다 기초적인 개념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공리주의는 좋음을 기초적인 것으로, 직관주의는 옳음을 기초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q1.3.1.2.2) 윤리학에 있어서 두 주요 개념은 옳음[정당성]the right과 좋음[선]good이며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인격이라는 개념도 이것들로부터 도출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윤리설의 구조는 대체로 이 두 가지 개념을 규정하고 관련짓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61)

### 1.3.1.3 목적론에 있어서 옳음과 좋음을 관련짓는 방식

(e1.3.1.3.1) 목적론은 좋음을 옳음보다 더 기초적인 개념으로 좋은은 옳음에 의해서 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와는 무관한 옳음보다 더 근본적인 개념이다. 오히려 목적론에 있어서는 옳음은 좋은에 의해 규정되는 2차적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제도나 행위가 옳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대안이 되는 제도나 행위보다 더 많은 선을 산출하는 것이어야만 하거나, 적어도 이 제도나 행위 보다 더 많은 선을 산출하는 대안이 되는 제도나 행위가 없어야 한다.

(q1.3.1.3.2) [옳음과 좋음]을 관련짓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는 목적론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선 좋은을 옳음과는 상관없이 규정하고 그리고 옳음은 그 좋은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옳은 제도나 행위란 쓸 만한 대안들 중에서 최대의 선[좋음]을 산출하는 것이든가 아니면 적어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른 제도나 행위만큼의 선[좋음]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칙이 필요한 것은 최

선의 대안이 하나가 아닐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61)

### 1.3.1.3.1 목적론에서 좋음이 옳음과 상관없이 규정된다는 견해의 두 의미

(e1.3.1.3.1.1) 목적론은 좋음을 옳음보다 더 기초적인 개념으로 여기며, 옳음을 빌어 좋음을 규정하지 않는다. 목적론의 이런 입장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목적론은 무엇을 선인가를 판단하면서 상식에 의한 직관에 의거한다. 그리고 이렇게 명시된 선을 극대화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한다. 둘째, 어떤 사물이 좋은 것인지를 판단할 때 옳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옳음이 좋음에 의존한다. 따라서 목적론에 있어서 좋음은 옳음과는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고서도 가치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 전통적인 목적론은 도덕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독립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규정들은 이 하나의 독립된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q1.3.1.3.1.2) 목적론에서는 좋음이 옳음과 상관없이 규정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그 이론은 무엇이 선이냐에 대한 우리의 숙고된 판단(우리의 가치 판단)을 상식에 의해 직관적으로 분간될 수 있는 판단들의 독립된 집합으로 설명하며, 옳음이란 이같이 이미 명시된 선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로 그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옳음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사물의 좋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만일 쾌락이 유일한 선이라고 할 수 있다면, 쾌락은 옳음의 어떤 척도나 혹은 통상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떤 척도도 상정하지 않는 기준에 의해서 인지될 수 있고, 그 가치의 우열이 평가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한편 여러 선을 분배하는 그 자체도 또 하나의 선으로, 어쩌면 보다 상위의 선으로 간주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이론이 우리들에게 (타인들에게 분배될 선을 포함해서) 최대의 선을 산출하도록 지시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목적론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없게 된다. 분배의 문제는 당장 직감적으로도 옳음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이러한 이론에는 선에 대한 독립적인 정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전통적인 목적론이 갖는 간단명료함은 대체로 그것이 우리의 도덕

판단을, 하나의 독립적인 규정을 갖는 것으로, 다른 하나는 극대화의 원칙에 의해 처음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62)

### 1.3.1.3.2 선의 규정에 따른 목적론의 구분

(e1.3.1.3.2.1) 목적론은 선을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목적론의 다양한 형태로 대표적인 것이 완전설과 쾌락주의이다. 완전설은 아리스토텔레스나 니체와 같은 사람에게 볼 수 있는데, 선을 문화의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서 인간의 탁월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견해이다. 쾌락주의는 선을 쾌락으로 규정하며, 고전적 형식의 공리주의가 취하는 입장이다. 고전적 공리주의의 공리의 원칙은 선을 합리적 요구의 만족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합리적 욕구들에 대한 최대 만족이 협동체의 적합한 조건으로 제시된다.

(q1.3.1.3.2.2) 목적론은 보다 분명히 말하면 구체적으로 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문화의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서 인간의 탁월성을 실현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설이라 불리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나 니체,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다. 만약 선을 쾌락으로 규정한다면 쾌락주의가 될 것이다. 나는 고전적인 형식에 있어서의 공리의 원칙은 선을 요구의 만족으로, 보다 좋게 말하면 합리적 욕구의 만족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려 한다. 이것은 그 견해의 모든 주요 핵심들과도 일치하며 그에 대한 공정한 해석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어떤 것이 사회 협동체의 적합한 조건인가는 그 여건 아래서 개인들의 합리적인 욕구들에 대한 만족의 최대 총량을 달성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의해 정해진다. 이러한 입장은 언뜻 보면 그럴듯하고 매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62-63)

### 1.3.1.4 합리성을 구현하는 목적론

(e1.3.1.4.1) 목적론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입장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목적론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

적론에 의해 사회를 편성한다면, 그 사회가 최대의 선을 산출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q1.3.1.4.2) 목적론은 합리성이라는 이상을 구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강한 직관적인 호소력을 갖는다. 합리성이란 어떤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도덕에 있어서 그것은 선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상 최대의 선을 도모하도록 사회가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하기 쉽다.(61)

### 1.3.2 공리주의적 정의관을 가장 합리적으로 보는 사회관

(e1.3.2.1) 공리주의 입장에 따른 정의관이 가장 합리적인 정의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개인은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최대 선을 성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문제를 사회에 확대하는 것은 매우 그럴듯하다. 왜냐하면 사회의 행복은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의 충족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집단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 구성원의 욕구 만족을 전체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어떤 사회 제도가 사회 전체의 만족을 극대화할 경우 그 사회가 바르게 구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q1.3.2.2) 각자는 자기의 이익을 달성함에 있어 자유로이 자신의 이익과 손실을 분명히 비교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생각해보자. 사람들이 적어도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최대의 선을 성취하고 가능한 한 자기의 합리적인 목적을 실현하도록 행동하리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사회라고 해서 집단에 적용된 똑같은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으며, 한 개인에게 합리적인 것이 개인들의 조직체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이유 또한 없는 것이다. 한 개인의 행복이 그의 인생 경로의 여러 순간에서 경험되는 일련의 만족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그와 똑같은 식으로 사회의 행복도 그에 속하는 많은 개인들의 욕구 체계의 충족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개인의 원칙이 그 자신의 복지와 욕망의 체계를 증진시켜 주는 것이듯이, 사회의 원칙도 가능한 한 집단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 성원의 욕구에 의해 구성

된 전체적인 욕구 체계를 실현시켜 주는 것이 된다. 한 개인이 현재와 미래의 이익 및 손실을 비교하듯이 사회는 여러 개인 간의 이익과 불만을 비교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리의 원칙에 도달하게 되며, 어떤 사회 제도가 만족의 순수 잔여량을 극대화시켜 줄 경우 그 사회는 올바르게 편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개인들의 조직체에 있어서 선택의 원칙은 한 개인에 있어서의 선택의 원칙의 확대로 해석되어 진다. 따라서 사회 정의란 집단의 복지라는 집합적 개념에 적용된 합리적 타산의 원칙인 것이다.(60)

### 1.3.2.1 공리주의에서 최대의 만족과 옳은 분배

(e1.3.2.1.1) 공리주의에 있어서 정의로운 분배는 최대의 만족이 산출되도록 하는 분배이다. 따라서 최대의 만족이 산출되는 분배가 옳은 분배이다. 권리와 의무, 지위와 특전, 재화 등은 전체적인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분배되어야 한다.

(q1.3.2.1.2) 공리주의 정의관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러한 만족의 총량이 개인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문제 삼으며, 한 개인이 자신의 만족을 시간적으로 어떻게 분배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최대의 만족만 산출한다면 옳은[정당한] 분배가 된다는 것이다. 사회는 권리와 의무, 지위와 특전, 그리고 여러 형태의 부 등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한 만족의 수단들을 가능한 한 최대치를 달성하도록 분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총량을 산출하는 때에만 보다 평등한 분배가 선택된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분배도 다른 분배 방식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 (63)

### 1.3.2.2 정의에 대한 상식적인 신조와 공리주의 관점의 상충

(e1.3.2.2.1) 공리주의에 있어서 정의롭고, 옳은 분배는 최대의 만족이 산출되도록 하는 분배이다. 그런데 정의에 대한 상식적인 견해는 이러한 공리주의 입장과 상충하는 듯이 보인다. 즉 자유와 권리의 보호,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 등에 관한 상식적인 견해는 공리주의 입장과 상충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정의에 대한 상식적인 견해는 지켜져야 할 것들이

라고 생각하지만, 공리주의는 이러한 것도 오로지 만족이 최대가 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공리주의는 만족이 최대가 되는 경우에는 소수의 구성원들로부터 자유를 박탈하거나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 이것은 정의에 관한 상식적인 견해가 반대하는 것이다.

(q1.3.2.2.2) 정의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신조들, 특히 자유 및 권리의 보호에 관련된 신조와 당연한 보답을 요구하는 신조는 이상과 같은 주장과 상충된다. 그런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신조와 그 엄정해 보이는 성격에 대한 설명은 그것들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신조이기는 하나 오직 이익의 총량이 극대화되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은 어겨질 수 있는 신조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신조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정의에 대한 신조들도 만족의 최대 잔여량을 달성하려는 한 가지 목적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보다 큰 이익이 다른 사람들의 보다 적은 손실을 보상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다수가 누리게 될 보다 큰 선에 의해서 정당화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전아래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발전된 문명의 단계에 있어서는 이익의 최대 총량이 이런 식으로 얻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정의에 대한 상식적인 신조가 갖는 엄정성은 부정의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성을 제한해 주는 어떤 효용성을 갖기는 한다. 하지만 공리주의자는 이러한 엄정성을 도덕의 제1원칙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자신의 욕구 체계의 충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회가 그 모든 구성원의 만족의 순수 잔여량을 극대화하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이다.(63-4)

### 1.3.2.3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확대로서 사회적 선택

(e1.3.2.3.1) 공리주의자에게 있어서 사회 협동체는 그 구성원 모두를 합친 결과에 불과하다. 또한 올바른 결정이란 본질적으로 효율적인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에 있어서 사회적인 합리적 선택이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즉 한 개인의 욕구 충족을 극대화하는 것이 개인에게 합리적인 선택이듯이, 모든 구성원의 욕구 충족

의 총합을 극대화 하는 것이 사회의 합리적 선택이다.

### 1.3.2.3.1 개인에서 사회로 인도하는 지침으로서 공평한 관망자와 공감적 동일시

(e1.3.2.3.1.1) 공리주의는 개인의 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리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과제는 개인의 선을 사회로 확대하는 일이다. 즉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원칙을 사회의 선택의 원칙으로 확대해야만 한다. 그런데 개인의 선택의 원칙을 사회의 선택 원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관망자라는 개념과 공감적 동일시가 우리의 상상력을 인도하는 지침으로 작용해야만 한다. 공평한 관망자는 모든 사람의 다양한 욕구들을 하나의 일관된 욕구 체계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공감적 동일시는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자신의 요구인 것처럼 경험하고 동일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q1.3.2.3.1.2) 공리주의에 도달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물론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개인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선택 원칙을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채택하는 것이다. 일단 이 사실만 수긍된다면 공리 사상사에 있어서 공평한 관망자impartial spectator의 지위와 동정심에 대한 강조를 저절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원칙이 사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평한 관망자라는 개념이나 공감적 동일시sympathetic identification가 우리의 상상력을 인도하는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관망자에 의해서 모든 이의 욕구들이 일관된 하나의 욕구 체계에로 조직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구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융합되어진다. 이상적인 동정심과 상상력을 갖춘 공평한 관망자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인 것처럼 경험하고 동일화할 수 있는 완전히 합리적인 개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러한 욕구들의 강도를 확인하고 하나의 욕구 체계 속에서 그 각각이 가져야 할 응분의 비중을 할당하게 되며, 이상적인 입법자는 사회 체계의 규칙들을 조정하여 그 욕구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힘쓰게 된다.(64)

### 1.3.2.3.2 개인들의 차이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는 공리주의

(e1.3.2.3.2.1) 공리주의는 개인들의 차이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는다 고 말할 수 있다. 공리주의 사회관은 개인들의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권리와 의무가 할당되고, 욕구 충족의 수단들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속에서 각각의 개인들은 자신의 욕구 만족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리주의에 있어서 이러한 개인들의 선택 원칙은 사회 선택 원칙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각각의 개인에게 최선의 분배를 결정하는 하나의 인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가 공평하고 동정심을 가진 관망자이다. 이 공평하고 동정심을 가진 관망자는 효율적인 결정을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공평하고 동정심을 가진 관망자는 타인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공리주의에 있어서 개인들의 차이는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q1.3.2.3.2.2) [공리주의] 사회관에 비추어 볼 때 각 개인들이란 욕구의 최대 만족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할당되고, 부족한 욕구 충족의 수단들이 배분되는 상이한 계열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입법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정의 성격은 갖가지 특정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기업가의 결정이나 특정 부류의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자기만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소비자의 결정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그 욕구 체계가 한정된 수단들에 대한 최선의 분배를 결정하는 단일한 한 인간이 있게 된다. 올바른 결정이란 본질적으로 효율적인 관리의 문제이다. 사회 협동체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대한 결과이며, 또한 이러한 확대가 제구실을 하도록 공평하고 동정심을 가진 관망자의 상상력의 작용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하나로 합친 결과이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개인들의 차이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게 되는 것이다. (64-5)

### 1.3.3 공리주의적 정의관과 공정으로서의 정의관 비교

### 1.3.3.1 공리주의적 정의관

(e1.3.3.1.1) 공리주의는 최대의 선을 산출하는 규칙과 제도가 정의롭다고 말할 것이다. 공리주의의 효율성 원리는 전체적인 총량의 최대치를 산출하는 규칙과 제도를 선택하도록 한다. 정의라는 것은 단지 최대의 전체적인 선을 산출하는 것이며, 총량의 최대치와 정의가 별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어떤 규칙과 제도가 정의롭기 때문에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과 제도가 전체적인 총량의 최대치를 갖기 때문에 선택되는 것이며, 정의로운 것이다.

#### 1.3.3.1.1 상식적 신념에 있어서 자유와 권리의 우선성

(e1.3.3.1.1.1) 많은 철학자들은 자유와 권리에 대한 주장을 전체적인 사회 복지를 중대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상식적 신념과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정의에 따른 침해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자유와 권리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서 박탈함으로써 다른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이익을 누리게 될지라도, 자유와 권리의 박탈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정의에 의해 보장된 자유와 권리의 정치적 흥정이나 사회적 이득에 의해 희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권리의 정치적 흥정이나 사회적 이득보다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q1.3.3.1.1.2) 우리가 한편으로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주장을,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사회 복지를 중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원칙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과, 전자에 대해서 절대적인 비중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우선성을 준다는 사실은,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생각되어왔고 상식적인 신념의 지지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각 구성원들은 정의에 입각한, 또는 어떤 사람들이 말했듯이 자연권에 입각한 불가침성 inviolability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사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것이다. 정의는 어떤 사람들의 자유의 상실이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을 부인한다. 상이한 개인들의 이익과 손실을 마치 그들이 한 사람인 것처럼 비교 평가하는

추론 방식은 배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에 있어서는 기본적 자유가 기정사실로 인정되며,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정치적 흥정이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 희생될 수 없는 것이다.(65)

#### 1.3.3.1.2 정의의 우선성에 대한 공리주의적 설명

(e1.3.3.1.2.1)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정의의 우선성을 상식적 신념으로 여기며,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원리의 일부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의 우선성은 공리주의적 입장과 상충된다. 물론 공리주의가 정의의 우선성의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의 우선성을 인정할 때조차도, 부분적인 타당성만을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사회적 유용성에 따른 규칙을 준수할 것이며, 상식적인 정의관에 따르는 것이 사회적 유용성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정의의 우선성은 대체로 타당한 신념으로 받아들이지만, 공리주의는 이것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착각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q1.3.3.1.2.2)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정의의 우선성 priority of justice에 대한 이러한 상식적인 신념을, 그것이 바로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원칙들의 결과임을 보여 줌으로써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판단은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인 선호와 원초적 평등을 반영한다. 엄밀히 말해서 공리주의자가 그의 학설이 이러한 정의감들과 상충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는 상식적인 정의관들과 자연권 관념들은 2차적인 규칙으로서 부분적인 타당성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즉 그것들은 문명화된 사회적 조건에서는 예외적인 여건 아래에서만 위반이 허용될 뿐, 대체로 그 것들을 따르는 경우에 큰 사회적 유용성이 있다는 사실에서 생겨난 규칙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신조들을 주장하게 되고 그러한 권리를 호소할 수 있게 되는 대단한 열성 그 자체까지도 어떤 유용성이 인정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용성의 측면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한 신조들을 깨뜨리려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견제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단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공리주의적 원칙과 정의에 대한 이러한 신조가 갖는 힘 사이의 명백한 대립은 더 이상 철학적인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론은 정의의 우선성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공리주의는 그것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착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65-66)

#### 1.3.3.1.3 만족의 최대량과 사회의 복지

(e1.3.3.1.3.1) 공리주의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명되어야 하는 본질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고의 만족값을 계산할 때는 이러한 본질적 가치는 단지 간접적으로만 관련될 뿐이다. 결국 공리주의에 있어서 제도는 최대의 만족이 이루어지도록 편성되는 것으로 족하며, 만족의 원천이나 성질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차별 대우를 하고,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최고의 만족을 얻는 방식의 사회 복지를 공리주의는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한 사회가 이러한 것을 인정한다면, 그 사회는 과괴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q1.3.3.1.3.2) 공리주의에서는 어떤 욕구의 만족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만 할 어떤 본질적 가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만족의 최대 잔여량을 계산하는 데 있어 오직 간접적으로만 그것이 무엇에 관한 욕구인가가 문제시된다[간접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이 무엇에 관한 욕구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만족의 최대 총량을 달성하도록 제도를 편성하면 되는 것이며, 만족의 원천이나 성질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단지 그 만족이 행복의 총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만 문제 삼는다. 사회의 복지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개인이 갖는 만족이나 불만의 정도에만 달려 있다.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서로 차별 대우를 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고양시키는 수단으로 타인들의 자유를 감소시킴으로써 어떤 쾌락을 얻는다면 이러한 욕구의 만족도 다른 욕구와 더불어 그것의 강도 등이 고려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사회가 그러한 욕구의 충족을 거부하거나 억제하려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러한 욕구가 사회적으로 과괴적인 경향을 띠고 있으며 다른 방식에 의해서 보다 큰 복지가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68-69)

### 1.3.3.2 계약론적 입장에서 사회적 선택 원칙

(e1.3.3.2.1) 공리주의의 사회 선택 원칙은 한 개인의 사회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계약론에 의거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공평한 관망자에 의해 욕구의 체계를 사회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선택의 원칙에 이를 수 있으며, 개인들의 상이함이나 특이성을 중시하지 않는 입장 그리고 사람들의 합의를 정의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부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원초적 합의의 대상으로서의 정의는 구성원 개개인들의 상이함과 특이성을 중시하고, 사람들의 합의를 정의의 기초로 인정하는 입장에서 성립되어야 한다.

(q1.3.3.2.2) 공리주의자는 한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대하는 반면 계약론의 입장에선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회적 선택의 원칙, 따라서 정의의 원칙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인간 조직체를 규율해야 할 원칙들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 원칙을 확대한 것으로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어떤 존재에 대한 올바른 규제 원칙이 그 존재의 성격에 달려 있고 각각의 목적 체계를 갖는 독립된 개인들의 복합체가 인간 사회의 본질적 면모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회적 선택의 원칙들을 공리주의적인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 계약론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합리적 타산의 원칙을 공평한 관망자에 의해 구성되는 욕구의 체계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선택의 원칙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개인들의 다수성이나 특이성을 중시하지 않고 정의의 기초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67)

### 1.3.3.2.1 계약론적 입장의 의무론적 특성

(e1.3.3.2.1.1) 목적론인 공리주의와는 달리,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의무론적인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무론적 이론은 옳음을 기초적인 개

념으로 설정하는 이론이다. 따라서 의무론적 이론에 있어서 옳음에 대한 규정은 두 가지 방식의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목적론과는 달리, 좋음을 빌어서 옳음을 정의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좋은의 극대화를 옳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 두 번째 방식의 의미에서 의무론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의 원칙과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도, 타당하고 올바른 규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q1.3.3.2.1.2) 공리주의는 목적론인데 반해 공정으로서 정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의定義상으로 보아서 후자는 의무론적인 이론으로서 좋은을 옳음과는 상관없이 규정하지 않거나 혹은 좋은을 좋은의 극 대화로 해석하지 않는 입장이다. [...]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두 번째 의미에 있어서의 의무론에 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선택하며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로 국한한다고 가정한다면, 선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로운 제도라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선이란 합리적 욕구의 만족으로 정의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공리주의와 마찬가지이다.) (68)

#### 1.3.3.2.1.1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의무론

(e1.3.3.2.1.1.1) 의무론이 목적론적인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제도와 행위의 결과와 그 제도와 행위의 옳고 그름이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모든 윤리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론도 제도와 행위의 옳고 그름을 말할 때, 그 제도와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고 있다.

(q1.3.3.2.1.1.2) 주의해야 할 것은 의무론이란 비목적론인 것으로 규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도들과 행위들의 옳음 여부를 그것들의 결과와 상관없이 규정짓는 그러한 입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는 모든 윤리설은 옳음 여부를 판단하

는 데 있어 결과를 고려하는 입장들이다. 그렇지 못한 학설은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68쪽)

#### 1.3.3.2.1.2 우연의 일치에 의한 정의의 최대선 산출

(e1.3.3.2.1.2.1)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정의는 정의의 원칙이 최대선을 산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원칙이 최대선을 산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단지 우연에 불과할 뿐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정의는 극대화 원칙과는 전혀 다르다.

(q1.3.3.2.1.2.2)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원칙에 의해] 최대의 선이 산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이다. 만족의 최대 순수 잔여량을 달성한다는 문제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으며, 이러한 극대화 원칙 같은 것은 전혀 소용이 없다.(68)

#### 1.3.3.2.2 정의의 원칙으로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 도출

(e1.3.3.2.2.1)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특정한 목적을 알지 못한 채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선택한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요구하는 바에 조화시킨다. 이것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데 합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구속해야 하는 경우, 자신의 즐거움을 요구할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만약 이 경우에 자신의 즐거움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것이다.

(q1.3.3.2.2.2)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먼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자신의 보다 특정한 목적들에 대한 지식 없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정의의 원칙들이 요구하는 것에 자신의 가치관을 순응시키고, 적어도 그 요구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주장을 고집하지 않으리라는 데에 암암리에 합의하게 된다. 자유를 구속당하는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개인은 자

신이 이러한 즐거움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도 없음을 알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손실에 대해 갖는 쾌락은 그 자체가 부당한 것이며, 이러한 만족은 그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의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69)

#### 1.3.3.2.2.1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좋음에 선행하는 옳음

(e1.3.3.2.2.1.1) 정의의 원칙들은 만족의 한계를 설정하고 제한을 부여해야 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도 만족의 한계와 제한을 해야 하는데,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경향성을 전제하고서 한계와 제한을 설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목적 체계가 목표하는 바의 한계를 밝히고 개인들의 욕구와 포부를 밝히고자 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이러한 특징은 옳음이 좋음에 선행한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q1.3.3.2.2.1.2) 옳음의 원칙들이나 정의의 원칙들은 가치 있는 만족의 한계를 설정하며, 무엇이 각자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가치관인가에 대한 제한을 부여한다. 계획을 짜고 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사람들은 이러한 제한 조건들을 고려하게 된다.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람들이 갖는 성향이나 경향성을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전제하고 그것들을 만족시킬 최상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사람들의 목적 체계가 준수해야 할 한계를 밝히는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그들의 욕구와 포부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는 옳음이라는 개념이 좋음이라는 개념에 선행한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69)

#### 1.3.3.2.2.2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침해할 수 없는 정의의 요구

(e1.3.3.2.2.2.1)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는 우선성을 가지며, 이 정의가 요구하는 바는 침해될 수 없다. 즉 특정한 합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정의의 요구는 침해될 수 없다. 롤즈는 정의의 요구가 침해 될 수 있는 조건을 동등한 정의의 요구들 간의 상충과 정의의 요구에 의해 너무나 큰 손실이 결과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듯하다.

(ql.3.3.2.2.2.2) 정의로운 사회 체계는 개인들이 각자의 목표를 펼쳐 나가야 할 범위를 규정하고, 그리고 그것은 그러한 목적들이 공정하게 추구될 수 있는 효용 내에서, 효용에 의해 권리와 기회의 형태 및 민족의 수단을 제공한다. 정의의 우선성이란 어떤 면에서는 정의의 위반을 요구하는 요구는 무가치 하다는 주장에 의해 설명되어진다. 일차적으로 합당한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한 이상, 그것들이 정의의 요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69-70)

### 1.3.3.2.2.3 옳음의 우선성에 따른 사회의 기본 구조의 영향

(e1.3.3.2.2.3.1)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 중심적인 특성은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으로, 이러한 특성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설정함에 있어서 규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설정된 사회의 기본 구조는 제도의 정당성을 최대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우선성에 의존할 것이다.

(ql.3.3.2.2.3.2) 좋음에 대한 옳음의 우선성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 중심적인 특성임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본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 어떤 규준을 제시해 주는데, 이러한 체제가 정의의 두 원칙(즉 애초부터 특정 내용을 갖는 어떤 원칙들)에 상반되는 성향과 태도를 산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그 체제는 정의로운 제도가 안정적임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선이 무엇이고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형태의 인격이 무엇이며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70)

### 1.3.3.3 공리 원칙과 대비되는 자연권적 입장

(e1.3.3.3.1) 공리 원칙은 만족의 양을 감소시키는 욕구와 성향을 배제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배제는 아주 형식적인 것으로, 배제되어야 할 욕구와 성향이 어떤 유형의 것인지에 대해 말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리 원칙에 따른다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배제 시켜야 할 욕구와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리 원칙에 의한 정의관은 자연적 사실

과 인간 생활의 우연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도덕적 이상으로서 윤리설의 제1원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권적 입장(계약론적 전통)에 의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공리의 원칙은 이러한 자연권적 입장과 대비된다.

(q1.3.3.3.2) 어떤 정의론이든 간에 이러한 종류의 어떤 한계, 즉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그 제1원칙들이 충족되어야 할 경우 요구되는 한계를 설정하게 될 것이다. 공리주의는 상황에 비추어 장려하거나 허용함으로써 만족의 순수 잔여량을 감소시키게 될 욕구와 성향들을 배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며, 또한 상황에 대한 아주 상세한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욕구와 성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지침을 주지 못하게 된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공리주의에 대한 반박이 되지 않는다. 단지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장려되어야 할 도덕적 성격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연적 사실들과 인간 생활의 우연성에 아주 심히 의존하고 있는 공리주의의 한 측면을 나타낼 뿐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갖는 도덕적 이상은 윤리설의 제 1원칙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공리 원칙과 대비되는 자연권적 입장(계약론적 전통)에 특징적인 것이다.(70-71)

#### 1.3.3.4 고전적 공리주의와 공정으로서 정의의 사회관

(e1.3.3.4.1) 고전적 공리주의와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그 윤리적 차이 점뿐만 아니라, 사회관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전적 공리주의의 사회관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요구 체계를 근본으로 하여 공평한 관망자가 구성한 욕구 체계를 최대로 만족시키도록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여긴다. 반면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공정한 최초의 상황인 원초적 입장에서 자신들이 선택하게 될 원칙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로 생각한다.

(q1.3.3.4.2) 고전적 공리주의와 공정으로서의 정의 간의 대비 속에는 암암리에 사회관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는 질서 정연한 사회를 후자에서는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하게 될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로 생각하며, 전자에서는 주어진 것으로 인정된 여러 개인들의 요구 체계로부터 공평한 관망자에 의해 구성된 하나의 욕구 체계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72)

## 1.4 직관주의

(e1.4.1) 직관주의는 정의의 원칙들과 관련해서 환원되지 않는 다수의 제1원칙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직관주의의 입장에서 제1원칙들이 서로 상충할 때, 이 원칙들의 우열을 가려줄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직관주의자들은 동일한 수준의 정의의 원칙들의 우열을 가려줄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며, 정의의 원칙들의 우열을 가려줄 그 원칙들보다 상위의 원칙들이 없다고 생각한다.

(q1.4.2) 우리가 일정한 수준의 일반성에 도달하게 되면, 정의의 대등한 원칙들 간에 적절하게 우열을 가려 줄, 보다 고차적인 구성적 기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직관주의자들은 주장한다. 도덕 현상의 복합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상이한 원칙들이 요구되므로, 그들을 설명하고 그 비중을 가려 줄 단일한 기준은 없다는 것이다.(73)

### 1.4.1 직관주의의 정의

(e1.4.1.1) 직관주의는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는 다수의 제1원칙들이 있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이런 원칙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이 원칙들보다 상위에 있는 공정하고 단일한 원칙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 원칙들 간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가장 공정한 방법은 숙고해서 원칙들 상호 간의 비중을 채서 결정하는 방법뿐이다. 롤즈는 정의론에서 직관주의의 이런 특징을 강조하며, 이것을 직관주의에 대한 정의로 삼고 있다.

(q1.4.1.2) 나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직관주의를 생각하고자 한

다. 즉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제1원칙들이 있으며, 그들 간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인지는 우리의 숙고된 판단에 비추어 상호 간의 비중을 짐으로써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학설로 보고자 한다.(72-73)

#### 1.4.2 직관주의의 두 가지 특징

(e1.4.2.1) 직관주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특징은 상반되는 지침을 제공하는 상충하는 다양한 제1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둘째 특징은 이러한 원칙들의 순위를 가려줄 명확한 방법이나 상위의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상충하는 제1원칙들을 조정하기 위한 상위의 규칙이 제시된다 할지라도, 그 규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변변치 못한 것이다.

(q1.4.2.2) 직관주의적 이론은 두 가지 입장을 갖는데, 첫째로 그 이론은 특정한 유형의 경우에 있어서 상반되는 지침을 주는 상충하는 제1원칙의 다원성으로 이루어지며, 둘째로 이러한 원칙들의 순위를 가려 줄 명확한 방법이나 우선성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직관에 의해서, 가장 그럴듯하게 옳다고 생각되는 것에 의해서 조정점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우선성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얼마간 변변찮은 것이어서 판단을 내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된다.(73)

#### 1.4.3 다원주의적 직관주의

(e1.4.3.1) 롤즈가 이해하고 있는 직관주의는 다원주의이다. 즉 직관주의는 더 이상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제1원칙들로 이루어져 있다. 다원적이라고 해서 모두 다양한 원칙들의 우열을 가려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상충하는 원칙들의 우열을 가려주는 규칙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만 숙고된 판단에 의한 직접적인 호소를 통해 원칙들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

서는 직관주의를 다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q1.4.3.2) 보다 넓은 의미의 직관주의는 다원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떤 정의관은 직관을 통해 그 원칙들의 우위를 가릴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다원적일 수 있다. 그것은 필요한 우선의 규칙들을 포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원칙들 간의 우선을 가리는 데 있어 우리의 숙고된 판단에의 직접적인 호소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직관주의를 이와 같이 보다 일반적인 양식에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입장이 어떤 인식론적인 이론과 어느 정도로 관련되어 있는지는 별개 문제이다.(74)

#### 1.4.3.1 상식적인 직관주의

(e1.4.3.1.1) 직관주의를 다원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경우 직관주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이다. 직관주의 형식이 다양한 것은 일상적인 관념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다. 철학적 관점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직관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다양한 직관주의 입장은 그 원칙들이 얼마나 일반적인가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성의 수준에 따른 하나의 직관주의를 상식적인 직관주이라 말할 수 있다.

#### 1.4.3.2 정의의 문제와 관련한 상식적인 직관주의의 신조들

(e1.4.3.2.1) 상식적인 직관주의는 정의의 특정 문제에 적용되는 조항들, 예를 들면 공정한 임금 문제, 과세 문제, 처벌 문제와 같은 조항들의 집합을 가지고 있다.

(q1.4.3.2.2) 상식적인 직관주의는 다소 특수한 신조들의 집합들이라는 형식을 갖게 되는데, 각 집합은 정의의 특정 문제에 적용되는 것이다. 공정한 임금 문제, 과세 문제 혹은 처벌 등의 문제에 적용되는 조항들의 집합이 각각 있다.(74)

#### 1.4.3.2.1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상식적 직관주의가 고려해야 할 사항

들

(e1.4.3.2.1.1) 상식적 직관주의는 특정한 문제에 적용되는 조항들을, 예를 들면 공정한 임금이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술, 숙련, 노력, 책임, 작업의 위험성 등과 같은 것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며, 기본 생활에 대한 수입도 고려해야 한다. 공정한 임금의 문제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고려 사항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

(q1.4.3.2.1.2) 공정한 임금에 대한 개념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경쟁적인 기준들, 예를 들면 기술, 숙련, 노력, 책임 그리고 작업의 위험성 등의 우선순위를 가려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 생활에 대한 급여액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아마 아무도 이러한 조항들 중 그 어떤 하나만으로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그것들 사이에서 어떤 조정점을 발견해야 만 한다. 기준 제도에 의한 임금의 결정 또한 결국 이러한 요구들의 우열에 대한 특정한 배려를 나타낸다.(74)

#### 1.4.3.2.2 신조들의 우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e1.4.3.2.2.1) 특정한 문제의 정의와 관련한 신조들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 받는다. 즉 정의로운 임금이 어떠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사회의 이해관계, 권력 및 영향력의 상대적 지위 등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임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런데 이런 결정은 개인적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은 자신에 이익이 되는 기준을 주장할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서로 다를 것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정의관은 자신의 처지, 관습 및 통념적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결국 관습과 기대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판단될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q1.4.3.2.2.2) 기준 제도에 의한 임금의 결정 또한 결국 이러한 요구들의 우열에 대한 특정한 배려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러한 배려는 보통 여러 가지 사회의 이해관계의 주장과 또한 권력 및 영향력의 상대적 지위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물론 그것은 공정한 임금에 대한 어떤 개인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이것이 사실일 수 있는 것은,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켜 줄 규준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나은 능력을 갖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기술과 숙련의 요구를 강조하기 쉬운 반면, 이러한 유리한 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요구를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 정의관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관습 및 통념적인 기대에 의해서도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관습 자체의 정당성이나 이러한 기대의 타당성은 어떤 규준에 의해 판단될 것인가?(74-75)

#### 1.4.3.3 신조들의 우열을 가려주지 못하는 일상적 정의관

(e1.4.3.3.1)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은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자신의 목적 추구에 도움이 되는 정의관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 정의관은 자신의 처지와 관습 및 통념적인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에 의해 자신의 처지에서의 주장, 관습과 기대에 의한 주장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대한 단순한 해결을 넘어서고, 기존 관습과 통념적인 기대에 의한 결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상적 정의관에서 좀 더 일반적인 체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일반적인 체계는 신조들 간의 우선성을 가려주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한해줄 수 있는 체계이어야 한다.

(q1.4.3.3.2) 우리의 일상적 정의관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관습 및 통념적인 기대에 의해서도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관습 자체의 정당성이나 이러한 기대의 타당성은 어떤 규준에 의해 판단될 것인가?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대한 단순한 사실적인 해결이나, 기존 관습과 통념적인 기대에의 의존을 넘어설 수 있는 이해와 합의에 어느 정도 이르기 위해서는, 신조들 간의 우선을 가려주거나 적어도 문제를 보다 좁은 범위로 제한해 줄 좀 더 일반적인 체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75)

#### 1.4.4 사회적 목적들의 우선순위 결정

(e1.4.4.1) 정의의 문제들은 사회 정책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사회 정책의 목표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는 경제적, 사회적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문제가 중요하다. 직관주의에 있어서 이러한 탐구는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는 그 사회적 목표들과 관련된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준다. 분배의 효율성, 완전 고용, 국가 수입의 증대, 그 국가 수입의 보다 평등한 분배 등의 사회적 목표들의 우선순위는 이 문제들과 관련한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준다. 예를 들면 사회적 목적들에 대한 직관주의에 의하면 는 공정한 임금의 문제는 그 임금에 의해 부과될 세금에 비추어서 그 타당성이 결정될 수 있다. 즉 특정한 신조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그 외는 다른 신조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의해 조정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우리의 정의관은 일관성을 갖게 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보다 넓은 입장에 서게 된다.

(q1.4.4.2) 우리는 정의의 문제들을 어떤 사회 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고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또한 직관에 의존할 것으로 보이는 데, 왜냐하면 그것은 보통 경제적, 사회적 목표들 간에 우선순위를 가리는 형식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분배의 효율성, 완전 고용, 국가 수입의 증대, 그 국가 수입의 보다 평등한 분배 등이 사회적 목표들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들 간에 우선순위가 바람직하게 가려지고 그에 대한 제도 조직이 존재할 경우, 공정한 임금이나 정당한 과세에 대한 조항이 응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보다 큰 효율성과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기본 욕구라는 조항을 다른 식으로, 즉 복지 이전welfare transfers에 의해 처리되도록 맡겨두고 임금의 지불에 있어서는 기술과 노력을 강조하는 결과를 갖는 정책에 따를 수도 있다. 사회적 목적들에 관한 직관주의는 공정한 임금의 결정이 부과될 세금에 비추어서 합당한가를 정해줄 기초를 제공해준다. 우리가 한 집합 내의 신조 사이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방법은 우리가 또 다른 신조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법에 맞추어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의에 관한 우리의

판단에 어떤 일관성을 도입하게 되고, 이해관계에 대한 좁은 사실적인 조정을 넘어 보다 넓은 입장으로 나아가게 된다. 물론 더욱 고차적인 정책 목표들 간의 우열을 가리는 데 있어서도 역시 직관에 호소하게 된다. 우선순위를 서로 달리 정한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심각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신념들과 흔히 관련된다.(75-76)

#### 1.4.4.1 사회적 목적들의 우선순위 결정의 두 방법

(e1.4.4.1.1) 철학적 입장에 따른 원칙들은 사회 정책의 목표를 설명하면서도, 목표들의 순위를 자신의 원칙이 가진 중요성에 비추어 결정해 준다. 철학적 입장에 따른 원칙은 목표들의 순위를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분배의 문제를 예를 들어 보자. 첫째는 최대의 선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평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첫째 원칙은 효율성을 척도로 하는 공리주의 원칙으로, 만족이 가능한 최대가 되도록 분배하라는 것이다. 둘째 원칙은 정의의 척도로서 이득의 분배를 고르게 하라는 원칙이다.

(q1.4.4.1.2) 철학적 입장의 원칙들은 가장 일반적인 종류라 할 수 있다. 그것들은 사회 정책의 목표들을 설명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원칙들에 주어진 비중에 따라 이러한 목표들의 순위를 정하고자 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총합-배분의 이분법에 기초한 아주 단순하고 친숙한 견해를 논의해 보자. 그것은 두 개의 원칙을 갖게 되는데, 사회의 기본 구조는 우선 만족의 최대 순수 잔여량이라는 의미에서 최대의 선을 산출하고, 다음에는 이러한 만족들을 평등하게 배분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두 원칙은 다른 사정이 같다면이라는 조건절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공리주의 원칙인 첫 번째 원칙은 효율성의 척도로 작용함으로써, 다른 사정이 같은 한 가능한 최대의 총량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인 반면, 두 번째 원칙은 정의의 척도로서 전체적인 행복의 추구를 제한하고 이득의 분배를 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76)

##### 1.4.4.1.1 공리주의에 의한 사회적 목적들의 우선순위 결정

(e1.4.4.1.1.1) 공리주의에 의하면, 사회적 목적들의 만족의 순수 잔여량이 최대가 되도록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만족의 순수 잔여량이 최대가 되는 방식으로 목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이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만족의 순수 잔여량이 최대가 되도록 목표의 순위를 정하라는 것은 공리주의 원칙인 효율성의 척도에 의한 것이다. 항상 가능한 최대의 총량을 산출하도록 해야 한다.

#### 1.4.4.1.2 직관주의에 의한 사회적 목적들의 우선순위 결정

(e1.4.4.1.2.1) 공리주의가 만족의 순수 잔여량이 최대가 되도록 사회적 목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직관주의는 이러한 만족들이 평등하게 배분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직관주의는 어떤 하나의 방식이 만족의 순수 잔여량이 최대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만족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주의 방식은 정의의 척도로서 전체적인 최대량의 행복 추구를 제한하며, 이득의 고르게 분배해 주는 역할을 한다.

#### 1.4.4.2 사회적 목표 순위 결정의 직관주의적 특성으로서 평등성 증진

(e1.4.4.2.1) 사회적 목표의 순위를 결정해 주는 공리 원칙에 의한 방법과 정의의 척도로 작용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이 더 우월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우선성 규칙이 없다. 따라서 이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직관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우선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전체적으로 큰 만족을 가져다주지만, 평등한 분배가 아닐 경우에는, 이 두 방식에 상이한 무게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전체적인 만족의 총량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보다는 평등하게 되는 데에 더 무게를 두게 될 것이다.

(q1.4.4.2.2) 이러한 입장은 두 원칙 상호 간의 비중을 가려 줄 어떤

우선성 규칙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직관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원칙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비중을 가리는 데 있어 아주 상이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그 우선순위를 가릴 것인가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해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첫째로는 만족의 총화와 평등의 정도가 달리 결합되었을 경우,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에 상이한 비중을 두게 된다. 예를 들면 만일 만족의 총화는 더 크지만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아마 커다란 전체적 행복이 어느 정도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보다 평등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76)

#### 1.4.4.2.1 평등성 증진을 해명하는 경제학자의 방식

(e1.4.4.2.1.1) 이미 만족의 양이 크게 증진되었지만 그 만족들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들은 만족의 전체적인 양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보다, 현 상태를 조정하여 평등을 증진시키려 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경제학자들은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도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q1.4.4.2.1.2) 만족의 총화는 더 크지만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아마 커다란 전체적 행복이 어느 정도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보다 평등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학자들의 무차별 곡선 indifference curve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보다 도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7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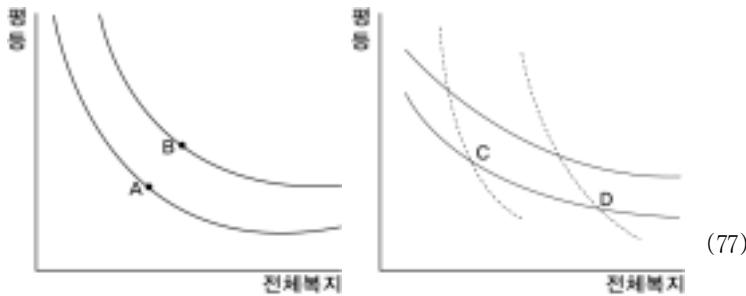
##### 1.4.4.2.1.1 평등성 증진을 해명하기 위한 무차별 곡선의 도식

(e1.4.4.2.1.1.1) 무차별 곡선은 분배의 현 상태가 크게 불평등한 경우, 그 불평등에 의해 생긴 이익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현 재의 불평등을 줄이려는 경향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선택한 설명 방식이다.

(q1.4.4.2.1.1.2) 만일 기본 구조의 특정 체계가 이러한 원칙들을 충족시키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서 만족의 총화를 X축 +단에, 평등을 Y축 +단에 표시해 보자. (Y축의 최상한선은 완전 평등이라 생각할

수 있다.) 기본 구조의 여러 체제가 어느 정도 이러한 원칙들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는 이 평면상의 한 점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77)

(q1.4.4.2.1.1.3) 그림 1, 그림 2



(77)

#### 1.4.4.2.1.2 무차별 곡선을 통한 평등성 증진 해명

(q1.4.4.2.1.2.1) 여기에서 분명히 보다 동북쪽에 있는 점이 보다 나은 체제를 나타내며, 그것은 두 가지 중 어느 면에 있어서나 우월한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림 1에서 점 B는 점 A보다 우월하다. 무차별 곡선은 동등하게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점들의 연결에 의해서 그어진다. 그래서 그림 1의 곡선 I은 그 선상에 놓인 점 A와 동등하게 평가되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곡선 II는 점 B와 동등하게 평가되는 점들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러한 곡선들이 오른쪽 아래로 경사져 있고 또한 교차하지 않으며, 교차한다면 그들이 나타내는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점에 있어서나 곡선의 경사도는 그 점이 나타내는 평등과 만족의 총화의 배합에 있어 각각이 갖는 상대적 비중을 나타낸다. 무차별 곡선을 따라 변하는 경사도는 그 원칙의 만족도에 따라 그들이 갖는 상대적 긴급성의 변화를 보여 준다. 그래서 그림 1에서 무차별 곡선의 움직임을 볼 때, 우리는 평등성이 감소함에 따라 그 계속적인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만족의 총량의 점차적인 증대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77-78)

#### 1.4.4.2.2 상이한 두 견해를 허용하는 무차별 곡선의 원칙

(e1.4.4.2.2.1) 그림 2는 다른 두 사람의 판단을 나타내고 있는 무차별 곡선이다. 실선은 평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며, 점선은 전체 복지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 평등에 큰 비중을 두는 사람은 점 C와 점 D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전체 복지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사람은 점 C보다는 점 D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q1.4.4.2.2.2) 그림 2는 다른 두 사람의 판단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보자. 실선은 평등에 비교적 강한 비중을 두는 사람의 판단을 나타내며, 점선은 전체 복지에 보다 강한 비중을 두는 사람의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전자는 체제 C와 D를 동등하게 보는 반면에, 후자는 D가 더 우월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정의관은 무엇이 올바른 배정 방식인가에 대해 어떤 제한도 가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원칙들에 대한 상이한 배정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78)

#### 1.4.4.2.3 무차별 곡선과 관련한 직관주의의 이해

(q1.4.4.2.3.1) 직관주의적 입장은 반성을 통한 우리의 숙고된 판단에 부합할 경우 결코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적어도 그것은 분명한 좌표축을 통해서 사회 정의에 대한 우리의 숙고된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선정해 준다. 직관주의자들이 바라는 것은, 일단 이러한 좌표축이나 원칙들이 확정되면, 사람들은 실제로, 적어도 그들이 공평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 다소간 유사한 방식으로 그 원칙들을 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설사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적어도 원칙들의 비중에 대한 배정을 하는 데 있어 어떤 조정안에 합의할 수는 있으리라는 것이다.(78)

### 1.5 원초적 입장

(e1.5.1) 롤즈는 자신이 생각한 정의의 두 원칙이 원초적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은 정의의 두 원칙의 발생 조건이면서, 정의의 두 원칙을 윤리적으로 정당화 해주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초적 입장의 무지의 베일이라는 조건은, 그 조건에서 선택될 원칙들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원초적 입장은 고전적 계약론의 자연 상태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무지의 베일이라는 조건에서는 자연 상태와 다르다. 또한 이런 원초적 입장이 인류의 역사 과정에 실재했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원초적 입장이란 순전한 가상적 상황일 뿐이다. 원초적 입장이란 우리의 도덕 판단과 정의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일 뿐이다.

(q1.5.2)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원초적 입장이란 순전히 가상적인 상황 hypothetical situation이라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그것이 나타내는 제한 조건들을 신중히 따름으로써 그 당사자들의 사려를 모방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유사한 어떤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필요는 없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을 빌려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려는 것은 오직 그것이

우리의 도덕 판단을 설명해주고 우리가 정의감을 갖는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반성적 평형 상태에 있어서 우리의 숙고된 판단들이 보여주는 우리의 도덕감에 관한 이론이다. 이러한 도덕감이 우리의 사고와 행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은 행위론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과 유사한 현실적 상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필요한 것은 거기서 받아들여지게 될 원칙들이 우리의 도덕적 추론과 행위에 요구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175-176)

### 1.5.1 원초적 입장에서의 가정들

(e1.5.1.1) 원초적 입장은 정의관관 관련된 여러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원초적 입장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개념 장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 대한 설명은 정의의 원칙을 넣기 위한 여러 가정들을 포함해야 한다. 우선 원초적 입장에서는 정의의 여건이 성립한다고 가정되어야 하며, 무지의 베일이 작동하고 있고,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시기심 없는 합리성을 가지며, 상호 무관심하다는 것이 가정되어 있다.

#### 1.5.1.1 정의의 여건이 성립한다는 가정

(e1.5.1.1.1) 원초적 입장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가상적 조건이기 때문에, 정의의 여건이 성립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정의의 여건이 필요 없을 만큼 풍족하거나, 결핍되어 있다면, 정의의 원칙은 도출되지 않을 것이며,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황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정의의 여건이 성립한다는 가정 이외에도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선을 증진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q1.5.1.1.2) 나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러한 정의의 여건이 성립함을 알고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사회의 여건에 대해서 이 정도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 이상의 가정

으로서는 그 당사자들이 가능한 한 그들이 선[가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그들은 지금까지의 도덕적인 유대 관계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184)

#### 1.5.1.2 가족의 가장으로서 직계 후손의 복리 증진을 욕구한다는 가정

(e1.5.1.2.1) 원초적 상태에 있는 합의의 당사자들은 각 가족의 가장들이며, 자신들의 직계 후손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합의의 당사자들은 모든 앞선 세대들도 똑같이 따랐을 법한 원칙을 갖고자 할 것이다. 각 세대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원칙에 합의하고자 할 것이다.

(q1.5.1.2.2)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3의 당사자들, 즉 그들의 직계 후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지의 문제가 일어난다. 그것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세대들 간의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목표는 정의의 책임과 의무를 다른 합당한 조건 아래서 도출하려는 것이기에, 가능하다면 이러한 해결책은 피해야만 한다. 우리에게 몇 가지 다른 선택지들이 있다. 우리는 동기 부여에 대한 가정을 채택하여 당사자들이 일련의 연속적인 요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그 당사자들이 각 가족의 가장들이며, 따라서 적어도 자신들의 직계 후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다고 전제할 수 있다. 혹은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하에 있는 원칙에 대해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즉 당사자들이 모든 선행 세대들도 똑같은 원칙을 따랐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런 규정들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나는 모든 세대가 다 함께 결속될 수 있으며, 각 세대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하는 원칙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만약 이것이 옳다면 우리는 합당한 조건들로부터 다른 세대들에 대한 의무를 도출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184-185)

#### 1.5.1.3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무관심하다는 가정

(e1.5.1.3.1) 원초적 상태에 있는 당사자들은 합의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무관심하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가정은 상대방에 대한 시기심을 배제

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와 동기를 배제하여, 최소극대화의 원칙에 따르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q1.5.1.3.2)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관심이 없다고 가정할 것이다. 즉 그들은 타인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정의가 문제되는 상황에 있어서 사람들의 행위와 동기를 나타내려는 데 있다.(186)

### 1.5.2 정의의 여건

(e1.5.2.1)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정의의 여건이라고 한다. 롤즈가 제시하는 정의의 여건은 1) 적절히 부족한 상태여야 하며, 2) 구성원들이 상충하는 요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히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도 풍족하여 협동 체제가 필요 없는 상태가 아니며, 너무도 궁핍하여 협동 체제가 붕괴될 정도의 상태가 아닌, 자신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협동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체제가 가능한 상태이다. 구성원들의 요구가 상충한다는 것은 완전히 풍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 상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적절히 부족한 상태에서 상호 무관심한 구성원들이 사회적 이익에 대해 상충하는 요구를 제시할 때 정의의 여건이 성립한다. 적절히 부족한 상태라는 것은 협동 체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풍족하지도, 협동 체제가 붕괴될 정도로 궁핍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한 체제가 생산한 이득이 모든 사람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체제의 실현이 가능하다. 이런 정의의 여건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의의 객관적 여건과 정의의 주관적 여건이다.

(q1.5.2.2) 정의의 여건circumstances of justice이란 그 아래에서 인간

의 협동 체제가 가능하고도 필요한 정상적인 조건들로 설명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사회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기는 하나 그것은 이해관계의 일치뿐만 아니라 그 상충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된다. 각자는 혼자만의 노력에 의해 사는 것보다 사회적인 협동을 통해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이해가 일치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작은 뜻보다는 큰 뜻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협동에 의해 산출된 보다 큰 이익의 분배 방식에 무관심하지 않으므로 이해의 상충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익의 분배를 규제할 다양한 사회의 체제들 중에서 선택을 하거나 적절한 분배의 뜻에 대한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원칙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 사상들이 정의의 역할을 규정한다. 이러한 필요성이 생기게 하는 배경적 조건들이 바로 정의의 여건이 된다. 이러한 조건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182-183)

#### 1.5.2.1 정의의 객관적 여건

(e1.5.2.1.1) 정의의 조건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데, 첫째가 객관적 여건으로 인간의 협동 체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으로는 1) 많은 개인이 일정한 영역 내에 거주, 2) 신체 및 정신적 능력에서 유사, 3) 개인으로서는 연약함, 4) 재화의 적절한 부족 상태 등이다.

(q1.5.2.1.2) 이러한 조건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인간의 협동 체제가 가능하고도 필요한 객관적인 여건이다. 그래서 많은 개인들이 동시에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 함께 거주한다. 이러한 개인들은 대체로 그 신체 및 정신적 능력에 있어서 유사하거나 아니면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가 타인 모두를 지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들의 능력은 대체로 유사한 것이다. 그들은 공격받기 쉬우며 타인들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 자신의 계획이 좌절될 수도 있다. 끝으로 넓은 범위의 여건에 걸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적절한 부족 상태라는 조건이 있다. 천연자원이나 기타 자원이 협동 체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풍족한 것도 아니며 보람 있는 협동체가 결렬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건이 궁핍한 것도 아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체제가 실현 가능한 동시에 그 체제가 산출하는 이득이 여러 사람이 내세우는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183)

### 1.5.2.2 정의의 주관적 여건

(e1.5.2.2.1) 정의의 주관적 여건은 협동하는 주체와 관련된 조건이다. 협동이 가능하기 위해서 개인들은 비슷한 욕구와 관심을 가지며, 또한 상호 보완적인 욕구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서로 상충되는 요구를 하면서도, 상충되는 요구가 가져올 어떤 이익이 자신의 인생 계획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또한 각 개인은 지식이나 사고, 판단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 이런 부족함은 협동을 통해 보완될 것이다.

(q1.5.2.2.2) 주관적 여건이란 협동의 주체들, 즉 협동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측면이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대체로 비슷한 욕구와 관심을 갖거나 혹은 여러 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욕구를 가짐으로써 그들 간에 서로에게 유익한 협동이 가능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의 인생 계획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계획, 즉 가치관으로 인해 그들은 서로 다른 목적과 목표를 갖게 되며 이용 가능한 천연자원이나 사회적 자원에 대해서도 상충되는 요구를 하게 된다. 나아가서 이러한 계획에 의해 증진되는 이익이 특정 개인의 이익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을지라도 이러한 계획은 그 가치관을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가정은 모든 사람이 지식이나 사고나 판단 등 여러 가지에서 부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지식은 반드시 불완전할 것이며 기억력, 주의력 등은 제한되어 있고 그들의 판단은 불안과 편견과 그들 자신의 일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기 쉬운 상태에 있다. 이러한 결점들 중 일부는 도덕적인 결함이나 이기심, 부주의에서 생겨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대체로 그것들은 인간의 천부적 여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서로 다른 인생 계획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철학적,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사회적 학설들도 존재하게 된다.(183-184)

### 1.5.2.3 롤즈의 정의의 여건과 흄의 정의의 여건의 유사성

(e1.5.2.3.1) 롤즈는 정의의 여건에 대한 자신의 설명은 대체로 흄의

설명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아마도 정의의 여건에 대한 흡의 설명이 매우 분명하고 상세한 것이어서 더 이상 중요한 것을 보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룰즈의 정의의 여건에 대한 설명은 정의의 여건에 대한 흡의 설명에서 보다, 객관적 여건으로서는 적절한 부족 상태 moderate scarcity라는 조건을 강조했으며, 주관적 여건으로서는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조건을 또한 강조했다. 이러한 두 강조 이외에는 룰즈의 정의의 여건에 대한 설명은 흡의 정의의 여건에 대한 설명과 별반 차이가 없다.(184)

### 1.5.3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반영하는 형식적 제한 조건들

(e1.5.3.1)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 형식적인 제한 조건의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될 원리들은 일반성, 보편성, 공지성, 정당성, 최종성 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 조건들에 의해 이기주의가 배제된다.

(q1.5.3.2)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몇 가지 제한 조건 constraints을 반영하고 있다. 그들에게 주어진 대안들이나 그들의 여건에 대한 지식은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을 정당성 개념의 제한 조건이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정의의 원칙만이 아니라 모든 윤리적 원칙들의 선택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다른 덕목들에 대한 원칙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에도 역시 이러한 제한 조건들이 적용될 것이다. [...] 당사자들에게 주어진 목록에 들어갈 여러 정의관에 마땅히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어떤 형식적 조건이 있다. 나는 이러한 조건이 정당성이라는 개념이나 더욱이 도덕성의 의미로부터 도출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187)

#### 1.5.3.1 원칙들의 형식적 조건의 적합성 여부의 근거

(e1.5.3.1.1)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원칙들은 몇 가지 형식적 조건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구성원들의 상충하는 요구조건을 조정해야 할

임무에 의해 생겨난다. 즉 원칙들이 이러한 형식적 조건을 가져야 구성원들의 상충하는 요구 조건을 조정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원칙들의 형식적 조건은 정의의 원칙이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그 이득을 비분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결국 원칙들의 형식적 조건의 적합성은 그 역할의 수행과 관련되어 있다.

(q1.5.3.1.2) 이러한 형식적 조건들의 적합성 여부는 사람들이 그들의 제도에 대해서나 상호 간에 하게 되는 요구들을 조정함에 있어 정당성의 원칙이 갖는 임무에서 도출된다. 만일 정의正義의 원칙이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이득을 배분하는 그 역할을 다한다면 이러한 요구 조건은 타당한 것이다. 그 각 조건들은 적절히 약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정의관들도 그것을 충족시키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음에 다시 주목하겠지만 이러한 조건들에 의해 이기주의의 여러 형태들은 제외될 것인데 그것은 아무런 도덕적인 힘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 더욱이 이로 인해서 그 조건들은 개념의 분석이나 정의定義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들을 부분으로 포함하는 이론의 타당성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188)

### 1.5.3.2 원칙의 형식적 조건의 특성

(e1.5.3.2.1)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 원칙의 형식적 조건들은 일반성, 보편성, 공지성, 정당성, 최종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될 원칙은 그 형식적 조건들이 갖는 특성에 의해 이기주의를 배제한다.

(q1.5.3.2.2) 정당성의 입장은 형식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적용에 있어서 보편적이며 도덕적 인간들의 상충하는 요구의 서열을 정해주는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것이 공공적으로 인정되는 원칙들의 체계이다. 정의의 원칙들은 그것들이 갖는 특수 기능과 그것들이 적용되는 대상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그런데 다섯 가지의 조건은 그 자체로서는 전통적인 정의관의 어떤 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목록에 나온 이기주의의 변형들을 배제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193-194)

### 1.5.3.2.1 원칙들의 일반성

(e1.5.3.2.1.1)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 원칙은 일반성이라는 형식적 조건을 갖는다. 이 원칙은 고유 명사나 특정한 설명을 하는 말을 사용하여 정식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 원칙들은 일반적 성질이나 관계로 표현되어야 한다.

(q1.5.3.2.1.2) 모든 원칙은 일반적 general이어야 한다. 즉 그 원칙은 고유 명사나 특정한 설명이 감추어진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서 정식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진술에 사용된 술어는 일반적 성질이나 관계를 표현해야만 한다. 불행히도 심각한 철학적 난점이 이러한 문제를 만족스럽게 설명하는데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188)

#### 1.5.3.2.1.1 원초적 상태에서 일반적 원칙의 도출

(e1.5.3.2.1.1.1) 원초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의 처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원칙을 만들 수 없다. 결국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될 원칙은 일반적인 원칙일 수밖에 없다.

(q1.5.3.2.1.1.2) 정의론을 제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 성질이나 관계를 정의하는 문제를 피하고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다. 나아가서 당사자들은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처지에 관해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서도 자기 자신들을 확인할 길이 없다. 비록 어떤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라도 그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원칙을 마련할 방도를 모른다. 여기서 나온 생각을 직감적으로 이해할 경우 당사자들은 쉽사리 일반적인 원칙을 고수하게끔 되어 있다.(188-189)

#### 1.5.3.2.1.2 원칙들의 일반성 조건이 합당한 이유

(e1.5.3.2.1.2.1)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될 원칙은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영속적인 공공 현장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성 조건을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은 무조건적으로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며, 어떤 세대의 모든 개인이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성의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다.

(q1.5.3.2.1.2.2) 이러한[일반성] 조건이 합당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제 1원칙이란 질서정연한 사회의 영속적인 공공 현장 노릇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것이므로 그것은 (정의의 여전 아래서는) 언제나 적용되며, 어떤 세대이든 간에 각 개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들을 이해하는 데 우연적인 특수 사정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서는 안 되며,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언급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알아보는 가장 분명한 시금석은 정당성이란 신의 의지와 일치하는 것이라는 관념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학설은 보통 일반 원칙들로부터의 논증에 의해 뒷받침된다. 예를 들어 로크는 도덕의 근본 원리를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만일 어떤 사람이 (신학적인 의미에서) 타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면 그 사람은 창조자가 그에게 제시한 신조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완전히 일반적이며, 세계의 본성이 로크의 견해에 따라 성립되었을 경우 그것은 신을 합당한 도덕적 권위로서 선정 할 것이다. 처음 언뜻 보아서는 일반성이라는 조건이 침해된 듯하나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189)

### 1.5.3.2.2 원칙들의 보편성

(e1.5.3.2.2.1)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 원칙들은 보편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 원칙들의 적용은 보편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들은 자기 모순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원리일 수는 없다.

(q1.5.3.2.2.2) 원칙들은 그 적용에 있어서 보편적universal이어야 한다. 원칙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도덕적인 존재라는 이유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각자가 이러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일의 분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 원칙에 있어서의 가능한 복잡도와 거기에서 나타나는 구분들의 종류나 수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한

다.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므로 자기 모순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원칙들은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원칙을 준수할 경우에만 합당하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원칙 또한 용납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그것에 따르게 되는 결과에 비추어서 그 원칙들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189-190)

#### 1.5.3.2.3 원칙들의 공지성

(e1.5.3.2.3.1)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하게 될 원칙들은 공지성이라는 조건도 가져야만 한다. 이 조건은 계약론적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공공적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선택한 원칙들에 대해 자신들이 알아야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

(q1.5.3.2.3.2) 공지성publicity이라는 것으로서 이는 계약론적인 입장으로부터 자연히 생겨난다.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공공적 정의관을 위한 원칙들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만일 그 원칙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의의 결과인 경우에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원칙들에 관해서 자신들이 알게 될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널리 알고 있음으로써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와야 하며, 사회 협동 체제의 안정을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190-191)

#### 1.5.3.2.3.1 원칙들의 공지성에 대한 칸트적 이해

(e1.5.3.2.3.1.1) 칸트의 정언 명령의 이론에도 공지성이라는 조건은 함축되어 있다. 왜냐하면 칸트의 정언 명령은 우리가 합리적 존재로서 목적의 왕국의 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q1.5.3.2.3.1.2) 공지성이라는 조건은 우리가 합리적 존재로서 목적의 왕국의 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원칙들에 따라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한에서 칸트의 정언 명령의 이론에 분명히 함축되어 있다. 그는 이러한 왕국

을 윤리적 공화국으로, 다시 말하면 이러한 도덕 원칙을 그 공공 현장으로 갖고 있는 공화국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191)

#### 1.5.3.2.4 원칙들의 정당성

(q1.5.3.2.4.1) 정당성의 개념이란 상충하는 요구들의 서열ordering을 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 조건은 정당성의 원칙의 역할이 대립적인 요구를 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바로 생겨난다. 그러나 순위를 매김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를 결정하는 데는 난점이 있다. 정의관이 완벽하여 있을 수 있는 모든 요구의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바람직하다(혹은 실제로 그럴 것 같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일은 이행적이라 할 수 있는데, 즉 만일 기본 구조의 제1체제가 제2체제보다 더 낫다고 평가되고 제2의 것은 제3의 것보다 더 정의로울 경우에 제1의 것은 제3의 것보다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조건을 만족시키기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판정 형식은 투쟁을 통한 시합에 의할 것인가? 결국 육체적인 충돌이나 무력에의 호소로도 순위가 결정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어떤 요구가 다른 요구를 능가할 수 있다. 이렇게 순위를 정하는데 대한 주된 반대는 그것이 비이행적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정당성이나 정의의 원칙을 채택함에 있어서는 완력이나 교지巧智에 호소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위협을 통해서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정의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는 요구되는 의미에 있어서의 서열, 즉 사람들이나 그들의 처지에 있어서의 어떤 적합한 측면을 근거로 한 서열을 정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그러한 측면이란 위협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191-192)

#### 1.5.3.2.5 원칙들의 최종성

(e1.5.3.2.5.1)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원칙은 최종적인 원칙이어야 한다. 선택된 원칙을 정당화해주는 그 원칙 이상의 고차적인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법이나 관습, 사회 규칙의 요구를 능가하는 최종적인 원칙이어야 한다.

(q1.5.3.2.5.2) 마지막 조건은 최종성finality이라는 조건이다. 당사자

들은 원칙들의 체계를 실생활의 판단에 있어서 최종적인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요구들을 뒷받침할 논증이 도입하게 될 더 이상의 고차적인 기준이란 없으며, 그러한 원칙들로부터 성공적으로 추론한 것이 결정적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모든 덕목들에 대한 원칙들을 가진, 충분히 일반적인 이론에 기초를 두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이론은 적절한 고려 사항들이나 그것들의 적합한 비중 일체를 명시해줄 것이며 이 요구 조건은 결정적인 것이다. 그것은 법이나 관습, 사회의 규칙 일반의 요구를 능가한다. [...] 전체 체계에 의거한 실제적인 추론 과정이 그 결론에 이를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에서 그 전체 체계는 최종적이다. 현존하는 사회 체제나 개인적인 이익에 대한 요구는 온당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두 번 고려할 수는 없는 일이다.(193)

### 1.5.3.3 형식적 조건들의 상호 관계와 그 함축 사항

#### 1.5.3.3.1 원칙들의 일반성과 보편성의 상이함

(e1.5.3.3.1.1)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될 원리들이 갖는 일반성과 보편성이라는 조건은 서로 다른 조건이다. 즉 어떤 원칙이 보편성은 만족시키면서도 일반성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일반적이지만 보편성을 만족 못 시키는 원칙들도 있다. 예를 들면 이기주의는 보편성은 만족시키지만 일반성은 만족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은 나, 폐리클레스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라는 일인칭 독재의 형식을 갖는 이기주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행동할 수는 있지만, 이 형식이 일반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학생은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와 같은 형식은 특정한 계층의 개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학생이라는 일반적 조건은 만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반성과 보편성이라는 조건은 상이한 조건이다.

(q1.5.3.3.1.2) 일반성과 보편성은 각기 다른 조건들이다. 예를 들어서 일인칭 독재라는 형식에 있어서의 이기주의(만인은 나의-폐리클레스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는 보편성은 만족시키지만 일반성은 만족시키지 못 한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으며 독재자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떤 경우에는 전혀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반면에 인정 대명사(혹은 명사)가 일반성이라는 첫 번째 조건을 어기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원칙이라 해도 보편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제한된 특정한 계층의 개인, 예를 들어 머리 색깔, 계급상의 지위 등 특수한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특성에 의해 선정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개인들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특수한 책무와 의무를 갖게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무와 책무는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만인에게 적용되는 원칙들의 결과이다. 이러한 요구 사항의 도출은 공통된 기반을 갖는다.(190)

#### 1.5.3.3.2 원칙들의 공지성과 보편성의 상이함

(e1.5.3.3.2.1) 원초적 상태에서 선택하게 될 원칙이 갖는 특징으로서 공지성과 보편성은 서로 상이한 것이다. 즉 어떤 원칙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지성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편성은 모든 사람이 이 원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따르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에 공지성은 이 원칙이 널리 알려져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하나의 원리를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따르면서도, 이 원칙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분명히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q1.5.3.3.2.2) 공지성이라는 조건과 보편성이라는 조건의 차이는 후자가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그 원칙에 지적인 이해를 갖고 규칙적으로 따르는가의 여부를 기초로 해서 원칙들을 평가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의 원칙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거나 분명히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다. 공지성이라는 조건의 요점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어떤 정의관을 공공적으로 인정되고 충분히 유효한 사회생활의 도덕적 현장으로서 평가하게 한다는 점이다.(191)

#### 1.5.3.3.3 원칙들의 형식적 조건에 의한 이기주의 배제

(e1.5.3.3.3.1)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원칙은 일반성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유한 이름이나 고유 명사 혹은 위장된 특징 진술 등은 이 원칙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원칙은 일인칭 독재나 무임 편승적 이기주의는 배제를 배제한다. 왜냐하면 일인칭 독재나 무임 편승적 이기주의를 말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이름이나 고유 명사 또는 위장된 특징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원칙이 갖는 일반성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라는” 일반적 이기주의를 배제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일반적 이기주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반적 이기주의는 상충하는 요구 간의 서열을 매기는 조건에 의해 배제된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목표를 증진할 권한이 인정되거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 이들의 상충하는 요구를 조정해 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q1.5.3.3.3.2) 일반성의 조건으로부터 일인칭 독재나 무임 편승적 이기주의의 형태는 제외된다. 왜냐하면 그 각 경우에 있어서 고유한 이름이나 고유 명사 혹은 위장된 특수한 기술 등이 독재자를 선정해내거나 무임 편승자를 규정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성이 일반적인 이기주의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가 판단하여 그 자신의 목적을 가장 잘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그 원칙은 완전히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현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일반적 이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서열을 매기는 조건 때문인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신의 목표를 증진할 권리가 있거나 모든 사람이 자신이 이익을 증진시키려 함이 마땅하다면 상충하는 요구 간의 서열을 매길 수 없으며 그 결과는 완력과 교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194)

#### 1.5.4 무지의 베일

(e1.5.4.1) 무지의 베일은 원초적 입장이 갖는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순수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계약 당사자들의 제약 조건이다. 즉 합의도 원칙이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원초적 입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무지의 베일은 합의 당사자들의 특수한 사정을 모르게 함으로써 사회적, 자연적 여건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무지의 베일은 원초적 입장의 인지적 조건이다.

#### 1.5.4.1 공정한 절차 설정으로서 원초적 입장의 의의

(e1.5.4.1.1) 롤즈가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을 제시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설정함으로써 그 속에서 형성된 원칙이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것은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관념을 이론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정한 절차, 즉 순수 절차적 정의는 사회적, 자연적 우연의 결과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원초적 입장은 사회적, 자연적 우연의 결과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무지의 베일을 인지적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

(q1.5.4.1.2)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거기에서 합의된 어떤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은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관념을 이론의 기초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어떻게든 우리는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고 그들의 사회적, 자연적 여건을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를 무효화시켜야 한다.(195)

#### 1.5.4.2 우연성의 결과를 무효화하는 조건으로서 무지의 베일

(e1.5.4.2.1)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되는 원칙은 공정한 절차로서, 순수 절차적 정의이다. 이러한 순수 절차적 정의는 사람들의 갈등과 반목을 중대시키는 특정한 우연의 결과를 무효화시켜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자연적 여건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순수 절차적 정의의 이런 특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무지의 베일이다.

(q1.5.4.2.2) 우리는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고 그들의 사회적, 자연적 여건을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를 무효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속에 있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여러 대안들이 그들의 특정한 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그들이 몰라야 하며 일반적인 고려 사항만을 기초로 해서 원칙들을 평가해야만 한다.(195)

#### 1.5.4.3 무지의 베일의 내용

(e1.5.4.3.1) 무지의 베일은 순수 절차적 정의로, 사람들의 다툼을 중대시키는 특정한 우연의 결과를 무효화 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자연적 여건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잘 수행해 내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과 알려져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

##### 1.5.4.3.1 무지의 베일에 의해 가려져야 하는 것들

(e1.5.4.3.1.1) 무지의 베일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들은 당사자들의 특정한 사실들이다. 즉 합의 당사자의 지위나 계층, 천부적 자산과 능력, 지능과 체력, 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합리적 인생 계획, 자신의 성향이 합의 당사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당사자들이 속한 사회의 특수한 사정 등도 알려져 있어서는 안 된다. 즉 사회적, 경제적 상황, 문명이나 문화의 수준, 또는 자신이 어떤 세대에 속하는지도 몰라야 한다.

(q1.5.4.3.1.2) 그래서 당사자들은 어떤 종류의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된다. 무엇보다도 각자는 사회에 있어서 자기의 지위나 계층을 모르며, 천부적 자산과 능력, 지능과 체력, 기타 등을 어떻게 타고나는지 자신의 운수를 모른다. 또한 누구든지 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합리적 인생 계획의 세목을 알지 못하며, 또는 심지어 모험을 뽑시 싫어 한다든가 비관적, 혹은 낙관적인 경향과 같은 자기 심리적인 특성까지도

모르고 있다. 또한 나는 당사자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의 특수 사정도 모른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나 그것이 지금까지 이룩해 온 문명이나 문화의 수준도 모르고 있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세대에 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지식에 대한 이러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합당한 것은 한편으로 사회 정의의 문제가 한 세대 내에서만이 아니라 세대들 간에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본 절약의 타당한 정도나 천연자원이나 자연적 여건의 보호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여하튼 이론상으로는 합당한 유전적 정책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여류 경우들에 있어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은 그들의 의견을 대립시키게 될 어떤 우연한 일도 알아서는 안 된다. 결국 그들이 어떤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든 간에 그 결과를 감당할 각오를 가지고 원칙을 선택해야만 한다.(195-196)

#### 1.5.4.3.2 무지의 베일 속의 당사자들에게 알려져 있어야 하는 것들

(e1.5.4.3.2.1) 무지의 베일 속에서도 당사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특수 사정은 그 사회가 정의의 여건 하에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특수한 지식은 그 사회가 정의의 여건하기 있다는 특수한 사실뿐이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정치 현상이나 경제 이론들을 이해하고 사회 조직의 기초와 인간 심리 법칙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 사실들은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q1.5.4.3.2.2) 그런데 가능한 한, 그 당사자들이 아는 유일한 특수 사정은 그들의 사회가 그 내용이야 어떠하든 정의의 여건 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들은 알고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정치 현상이나 경제 이론의 원칙들을 이해하며 사회적 조직의 기초와 인간 심리의 법칙들도 알고 있다. 또한 당사자들은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줄 모든 일반적 사실들을 안다고 가정된다. 일반적인 정보, 즉 일반 법칙이나 이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데, 그것은 모든 정의관들이란 그것들이 규제할 사회적 협동 체제의 특성들에 부합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정의관에 있어서 비록 사회 체제가 그것을 민족시킨다 할지라도 도덕 심리의 법칙들에 비추어 보아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 행위 하려는 욕구를 갖지 않을 경우, 그것은 그 정의관에 대해 부정적인 고려 사항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사회적 협동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난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관이 자기 스스로를 지지하는 근거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은 정의관의 중요한 특징이다. 정의의 원칙은 그것이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 실현될 경우 사람들이 그에 해당하는 정의감 sense of justice을 갖고자 하고,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를 개발하는 그런 것임에 틀림없다. 이 경우에 정의감은 안정된 것이다. 이런 유類의 일반적인 지식은 원초적 입장 속에 용납할 수 있는 것이다.(196-197)

#### 1.5.4.4 무지의 베일에 대한 옹호 논변

##### 1.5.4.4.1 무지의 베일이 원초적 입장 파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에 대한 옹호

(e1.5.4.4.1.1)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에 의해 거의 모든 특수한 지식을 배제해 버리면,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원초적 입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절적한 제한 조건에 따라 단순히 추리함으로써 원초적 입장에 들어서게 되거나, 이런 가정적 상황에서의 숙고와 유사한 숙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무지의 베일에 의해 배제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우리가 숙고한 것들이 합리적인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선호하도록 하는 어떤 숙고도 제시될 수 없다.

(q1.5.4.4.1.2)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어떤 사람은 거의 모든 특수 지식을 제거시키게 되면 원초적 입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반대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적합한 제한 조건에 따라 추리하기만 하면 언제든 이러한 입장을 취할 수가 있거나 혹은 이러한 가정적 상황에서 하게 되는 숙고를 모방할 수 있게 되리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정의관에 대한 논의에 있어 우리는 그것이 허용된 대안들

중의 하나인지 그리고 규정된 형식적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외된 그러한 종류의 지식을 우리가 갖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합리적인 것으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유리한 고려 사항도 제시될 수 없다. 원칙들은 모든 사람이 그것들을 준수하게 될 경우 이러한 공공적 승인과 보편적 적용이 가져오는 결과들에 의해서 그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원초적 입장에서 어떤 정의관이 선택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조건과 제한을 만족시키는 합리적 숙고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보다 형식을 갖추어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줄곧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더 간편하고 암시적이며 그것이 아니고는 쉽게 지나쳐 버릴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나타내주고 있다.(197)

#### 1.5.4.4.2 원초적 입장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한 옹호

(e1.5.4.4.2.1) 원초적 입장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초적 입장은 과거에 우리가 처했던 입장이 아니며, 사람들이 언젠가는 처하게 될 입장도 아니다. 즉 원초적 입장은 과거와 미래에 걸쳐 현실적인 입장이 아니다. 원초적 입장은 단지 우리가 언제든지 그 관점을 취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원초적 입장을 이해해야만 직관을 이끌어 줄 자연스러운 지침을 낼 수 있을 것이다.

(q1.5.4.4.2.2) 이상의 이야기로부터 원초적 입장이란 앞으로 언젠가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포함하는 일반적 집합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과거에 언젠가 살았던 모든 사람의 집합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현실적이거나 가능한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원초적 입장을 파악한다면, 이런 파악은 더 이상 직관을 이끌어 줄 자연스러운 지침이 될 수 없을 것이며 명확한 의미 역시 결여하게 될 것이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원초적 입장이란 우리가 언제든지 그 관점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언제 우리가 이러한 견지를 택할 것인지 누가 그러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단지 그러한 제한 조건으로 인해서 언제나 동일한 원칙들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지의 베일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판건이 되는 조건이다. 그것은 이용될 수 있는 정보가 적절하다는 것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언제나 동일하리라는 것까지를 보장한다.(198)

#### 1.5.4.4.3 무지의 베일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에 대한 응호

(e1.5.4.4.3.1) 우리가 선택해야 할 원칙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지식에 의거해서 선택되어야 한다는 무지의 베일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즉 무지의 베일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특수한 지식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원칙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만장일치의 합의가 가능하다. 즉 만장일치에 의한 정의의 원칙의 선택이 가능한 것은 바로 무지의 베일 때문이다.

(q1.5.4.4.3.2) 무지의 베일이라는 조건은 불합리하다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원칙들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식에 비추어서 선택되어져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다. 여기에서 나는 단지 우리가 어떤 이론을 갖게 되는 경우에 필요한 단순화 작업을 강조해야 된다는 대답만을 간단히 논하기로 한다. 우선 분명한 것은 당사자들 간의 차이점이 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모두가 똑같이 합리적이고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한 논의를 수긍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를 아무렇게나 선정된 한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어느 정도의 숙고만 하면 누구나 특정한 어떤 정의관을 택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택할 것이고 따라서 만장일치의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어떤 심판관을 중개자로 하여 대화하기로 되어 있고, 그들에게 어떤 대안이 제안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는 어떤 상황을 상상해 보기로 하자. 심판관은 결탁하려는 시도를 금지하고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했을 때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 준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심판관은 당사자들의 사고방식이 유사함을 가정한다면 불필요한 것이다.(198-199)

#### 1.5.4.5 원초적 입장에서 특정 지식에 대한 제한이 갖는 근본적 중요성

(e1.5.4.5.1) 원초적 입장에 있어서 무지의 베일에 의해 특정한 정의관에 대한 만장일치의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무지의 베일에 의한 구성원에 대한 특수한 지식에 제한이 없다면, 정의 원칙에 대한 합의는 매우 복잡한 것이며, 따라서 만장일치에 의한 정의의 원칙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이 무지의 베일이 갖는 근본적인 중요성이다.

(q1.5.4.5.2) 원초적 입장에 있어서 특정 지식에 대한 제한은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한 제한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어떤 일정한 정의론을 성립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정의란 단지 합의된 어떤 것일 뿐 합의 그 자체의 실질적 내용은 말할 수 없다는 애매한 진술 형식으로만족해야만 할 것이다. 원칙들에 직접 적용될 정당성의 개념이 갖는 형식적 제한 조건만으로는 우리의 목적에 충분하지 못하다. 무지의 베일은 특정한 정의관에 대한 만장일치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지식에 대한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면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문제는 터무니없이 복잡하게 될 것이다. 비록 이론상으로는 해결책이 있을지 모르나 당장에 쉽사리 그것을 정할 수 없을 것이다.(200)

## 1.5.5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의 합리성

### 1.5.5.1 원초적 입장에 있어서 합의 당사자들의 조건

(e1.5.5.1.1) 원초적 입장에 있어서 합의 당사자들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인지적 조건으로 무지의 베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조건에 의해 계약 당사자들은 인간 사회에 관한 일반적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자신의 천부적 재능, 사회적 지위, 인생 계획,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속한 세대 등 자신과 관련한 특수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동기적 조건으로 합의 당사자들은 합리적 존재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며, 타인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심하여 서로에 대해 시기심도, 동정적 태도도 갖지 않는다.

(q1.5.5.1.2) 나는 지금까지 원초적 입장에 있는 자들이 합리적 rational이라는 가정을 해 왔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가정은 당사자들은 그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이는 그들이 합리적인 인생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계획의 세목, 그것이 증진시키리라고 생각되는 특정한 목적과 이익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정의관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우리는 그들이 단지 무턱대고 추측만 하게 되리라고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앞 장에서 취급된 선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나는 가정한다. 즉 그들은 적은 것보다는 보다 많은 사회적 가치[선]를 택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일단 무지의 베일이 걷어지게 되면 어떤 당사자들은 종교적 이유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이러한 보다 많은 가치를 원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초적 입장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당사자들은 보다 많은 뜻을 원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이든 그들은 원치 않는다면 보다 많은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큰 자유 때문에 고통 받게 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그들의 특정 목적에 대한 지식을 박탈당했다 할지라도 그 대안들의 우열을 가리기에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자유를 지키며 기회의 폭을 넓히고 내용에 상관없이 그들의 목적을 실현해줄 수단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가치론[선에 관한 이론]과 도덕 심리의 일반적 사실들에 의거함으로써 그들의 숙고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추측은 아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202-203)

#### 1.5.5.1.1 합의 당사자들의 합리성

(e1.5.5.1.1.1)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는 당사자들은 합리적 인간 인간이다. 합리적 인간이라는 것은 시기심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인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보다 많다 할지라도, 이에 실망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

(q1.5.5.1.1.2)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인간은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에

대한 일관된 선호의 체계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는 이러한 선택지들을 자신의 목적을 증진시켜주는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며 자신의 욕구를 보다 많이 만족시켜주고 보다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줄 가능성이 큰 계획을 추구하게 된다. 내가 택한 특수한 가정은 합리적 인간이란 시기심envy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만 입힌다면 자신의 손실도 선뜻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자가 아니다. 그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다 많은 지수index의 기본 가치를 가진 것을 알거나 눈치 채더라도 실망하지 않는다. 아니면 적어도 자신과 타인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를 능가하지 않으면, 협준하는 불평등이 부정의에 근거해 있거나 어떤 보상적인 사회적 목표과도 무관하게 우연성에 의해 생겨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03-204)

#### 1.5.5.1.1.1 시기심 없는 합리성

(e1.5.5.1.1.1.1)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리적 당사자들은 모든 사람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시기심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사람의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적을 포기하려는 의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q1.5.5.1.1.1.2) 시기심이란 모든 사람의 처지를 보다 악화시키는 경향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다. 시기심이 없음을 가정하는 것은 결국 원칙을 선택함에 있어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그 자체로서 충분한 그들 자신의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에 대해 확신감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을 더 작게 갖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적을 포기할 의사는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어떠한 결과가 생겨날지 알아보기 위해 이러한 규정 아래 정의관을 전개해보고자 한다. 결국에 가서 나는 채택된 원칙이 실제로 실현되었을 경우 그것은 시기심이나 다른 과과적 감정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사회 체제에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정의관은 과과적 태도를 유발하는 조건들을 제거시킨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본질상 안정된 것이다.(204-205)

#### 1.5.5.1.1.2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

(e1.5.5.1.1.2.1)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은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갖는다.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은 상호 간에 이익을 주거나 손상을 주려하지 않으며, 애정이나 중오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서로를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얻으려하지 않으며, 질투하거나 잘난 체 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상대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자들의 이익을 줄이려 하지도 않는다. 단지 이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관련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할 뿐이다.

(q1.5.5.1.1.2.2)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 *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이라는 가정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뜻이 된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자신들의 목적 체계를 증진시켜주는 원칙들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를 위해서 가장 높은 지수의 사회적 기본 가치를 스스로 얻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내용에 상관없이 그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상호 간에 이익을 주려고 하거나 손상을 끼치려 하지도 않으며, 그들은 애정이나 중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는다. 또한 그들은 서로를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않으며 질투를 하거나 잘난 체하지도 않는다. 경기로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은 가능한 한 높은 점수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상대편 때문에 높거나 낮은 점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편과의 승점 차이를 극대화 혹은 극소화하려는 것도 아니다. 경기라는 관념은 실상 적합하지가 못하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승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목적 체계로 판단해서 가능한 한 많은 점수를 따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205)

#### 1.5.5.1.1.2.1 이기주의를 함축하지 않은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

(e1.5.5.1.1.2.1.1)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의 당사자가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이기주의 이론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이 상호 무관심하

다고 해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의 개인들이 서로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즉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의 동기와 이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동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이기주의를 함축한다는 비판은 이 두 동기를 혼동해서 생긴 결과이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이 상호 무관심하다는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에서 그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상호 무관심하다는 사실은 도출되지 않는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기주의의 이론이 아니다.

(q1.5.5.1.1.2.1.2)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무관심하다고 생각되는 까닭에 (비록 그들이 제3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그 자체가 이기주의적 이론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형태의 이기주의에 들어 가지는 않지만 쇼펜하우어Schopenhauer가 칸트의 학설을 그렇게 생각하듯이 어쨌든 그것도 이기주의적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원초적 입장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상호 무관심하다는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로부터 합의된 원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이나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무관심하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분명히 정의의 두 원칙과 책무 및 자연적 의무의 원칙은 우리에게 타인의 권리와 권한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정의감은 보통 이러한 제한 조건에 따르고자 하는 유효한 욕구이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동기는 정의의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대응하는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동기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실생활에 있어서 개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원하기만 하면 그 우연성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의 정의감으로 인해 만일 그가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될 정당성의 원칙에 따라 행위 하게 된다면 그의 욕구나 목적은 이기적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209)

### 1.5.5.1.1.2.2 상호 무관심과 무지의 베일의 결합에 의한 이타심 성취

(e1.5.5.1.1.2.2.1)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기주의 이론이라는 생각은 원초적 입장의 한 가지 요소, 즉 상호 무관심이라는 요소에만 주목하여

나온 착각에 불과하다. 이런 상호 무관심과 무지의 베일이 결합하면,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타인의 선을 고려하게 된다. 원초적 상태에서 상호 무관심과 무지의 베일이 결합함으로써 이타심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

(q1.5.5.1.1.2.2.2) 일단 우리가 계약론이란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당사자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관심을 갖거나 이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원칙들이 생겨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폐리는 정당한 기준과 결단이란 공평심과 선의지가 생기게 하는 여건 아래서 반성적 합의에 의해 도달한 목적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상호 무관심과 무지의 베일이 결합되면 이타심과 동일한 의도를 성취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조건들을 결합시키면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각기 타인들의 선을 고려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공동으로 작용함으로써 선의지가 갖는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정의판이 이기주의적이라는 생각은 원초적 입장의 오직 한 요인에만 주목함으로써 생겨나는 착각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몇 가지 가정적 조건들은 이타심과 지식의 결합에서 생겨나는 것을 크게 능가하는 장점을 갖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타심과 지식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게 되어 어떤 확장적인 이론도 전혀 성립될 수가 없다. 지나치게 많은 지식에 의해 생기는 복잡성을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관한 가정이 애매하여 해명을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타적인 욕구의 상대적인 강도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의 해명이 요구된다. 간단히 말하면 상호 무관심성과 무지의 베일이 결합하게 되면 단순성, 명료성의 장점을 갖게 되는 동시에 언뜻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보다 매력적인 가정이라 생각되는 결과까지도 보장해 준다.(210)

### 1.5.5.1.2 정의감을 행사할 능력

(q1.5.5.1.2.1) 철저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가정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은 정의감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되며 바로 이러한 사실이 그들 간에도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정은 원초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완전무결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

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그들의 숙고 과정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정의관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기에 대한 가정의 핵심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의미는 당사자들이 서로 믿고서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되는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일단 원칙이 받아들여지면 당사자들은 서로 믿고서 그 원칙에 따를 수 있다. 그래서 합의에 도달함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즉 정의감sense of justice에 대한 능력은 선택된 원칙이 준수될 것임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 위의 가정이 뜻하는 바는 오직 순수하게 형식적인 의미에서 당사자들은 정의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도덕 심리의 일반 사실을 포함한 모든 것을 고려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최종적으로 선택된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지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서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그러한 것에 합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다른 고려 사항과 더불어 그들은 공약이 주는 구속력을 중요시 한다. 그래서 정의관을 평가함에 있어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택한 것이 철저히 준수되리라고 생각한다.(205-206)

#### 1.5.5.2 이론적으로 규정된 개인으로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

(e1.5.5.2.1) 원초적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당사자들은 이상적인 상황에 있는 이론적인 개인들이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 있는 개인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일상적인 생활에 있는 어떤 것을 추론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원초적 입장에서의 그 추론에 일상생활에서의 특수한 경향이나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q1.5.5.2.2) 무엇보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이론적으로 규정된 개인들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합의하게 되는 근거는 계약적 상황과 기본적 가치에 대한 그들의 선호를 서술함으로써 설명된다. 그래서 정의의 원칙들이 채택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설명이 서술하는 방식으로 마음이 움직여 결정하게 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원초적 입장의 모방을 시도하려 할 때, 즉 우리가 도덕적 논의에 있어 그 요구 조건대로 행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숙고나 판단이 우리의 특수한 경향이나 태도에 좌우된

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확실히 이렇게 이상화된 상황의 조건을 지키고자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애착이나 반감을 교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입증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초적 입장에서 그러한 특성을 지닌 합리적 인간이 어떤 결정을 내리리라는 주장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제안은 정의의 이론에 속하는 것이다. 인간들이 자신의 실생활의 추론을 규제함에 있어 이러한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208-209)

### 1.5.6 원초적 입장에서의 정의의 두 원칙에 이르는 추론

#### 1.5.6.1 평등한 분배의 원칙을 정의의 제1원칙으로 인정하는 과정

(e1.5.6.1.1)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 때문에 자신에 대한 특정한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특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 없다. 또한 자신의 손해도 인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평등한 분배의 원칙을 정의의 제1원칙으로 채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소득과 부의 평등한 분배의 원칙을 갖게 될 것이다.

(q1.5.6.1.2)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의 관점을 고려해 볼 때, 그가 자신을 위해 특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반면에 또한 그는 특수한 손해를 그대로 묵과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가 사회적 가치들의 분배에 있어서 동등한 몫 이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동등한 몫보다 적은 것에 동의한다는 것도 불합리한 까닭에, 그가 택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은 평등한 분배equal distribution를 요구하는 원칙을 정의의 제1원칙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사실 이러한 원칙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우리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금방 떠오르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기회균등을 포함한 만인에 대한 평등한 자유와 더불어 소득과 부의 평등한 분배를 확립해줄 원칙에서부터 시작한다.(122)

#### 1.5.6.2 차등의 원칙 도출

#### 1.5.6.2.1 불평등 인정 가능성

(e1.5.6.2.1.1) 원초적 입장에서 평등한 분배의 원칙을 제1원칙으로 갖는다 할지라도, 소득과 부의 불평등과 권위와 책임의 차등이 모든 사람의 처지를 향상시킨다면, 이러한 불평등과 차등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는 경제적 효율성과 조직 및 기술의 요구 사항이 가져올 이익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초적 상태의 합의 당사자들은 타인의 이익에 관심을 갖지 않는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q1.5.6.2.1.2) 심지어 기본적 자유와 기회의 공정한 평등의 우선성을 확고히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초의 인정이 최종적인 것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사회는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조직 및 기술의 제반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만 한다. 만일 소득과 부에서의 불평등들이 있고, 권위와 책임의 정도에 있어서 차등이 존재함으로써 그것이 최초의 평등이라는 기준점과 비교해서 모든 사람의 처지를 향상시키도록 작용한다면, 왜 이러한 불평등과 차등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상적으로 각 개인들이 상호 봉사하기를 원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타인의 이익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전제되므로, 그들이 이러한 경제적, 제도적 불평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의의 여전 속에서 인간이 위치한 대립 관계를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은 타인의 동기에 대해 불평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만일 당사자들이 타인들이 더 나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단지 알게 되거나 감지함으로써 낙담할 경우에만, 이런 차이들에 대해 합의할 것이다.(212-213)

#### 1.5.6.2.2 불평등을 허용하는 조건

(e1.5.6.2.2.1) 원초적 상태의 합의 당사자들은 불평등을 허용할 것인데, 그 허용 조건은 그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처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 수혜자는 이런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q1.5.6.2.2.2) 나는 당사자들이 시기심에 좌우되지 않고서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들이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와 일관된다는 조건하에서 최소 수혜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한, 기본 구조는 이러한 불평등들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들의 평등한 분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들은 말하자면 거부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차등의 원칙에 도달한다. 평등을 비교의 근거로 간주한다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가장 적게 얻는 사람들에게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에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213)

### 1.5.6.3 제2원칙에 우선하는 제1원칙

(e1.5.6.3.1) 큰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위해 당사자들이 위태롭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기본적 자유를 보장받고 싶어 한다. 원초적 상태의 합의 당사자들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정의의 제1원칙을 경제적, 사회적 이득과 관련한 제2원칙보다 더 우선하는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q1.5.6.3.2) 당사자들은 사회 기본 구조의 구도와 관련하여 서로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궁극적인 목적과 이해 관심을 가진 자유로운 인격체로 간주한다. 종교적인 이해 관심은 잘 알려진 역사적 예나, 인격의 온전성integrity에 대한 이해 관심은 별개의 사례이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은 이러한 이해 관심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이해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자유들은 제1원칙에 의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당사자들은 이런 이해 관심들을 확고히 해두어야 하기 때문에 제2원칙보다 제1원칙을 우선시한다. [...] 자유로운 인격체들은 스스로를 자신들의 최종 목적을 수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에서 자신들의 자유를 보존하는 데에 일차적 우선성을 부여하는 존재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원칙적으로 추구 혹은 거부할 자유가 있는 궁극적 목적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들에 대한 그들의 최초의 충성과 계속되는 헌신은 자유로운 조건하에서 형성되고 긍정되어야 한다.(213-214)

### 1.5.6.3.1 자유의 우선성의 의미

(e1.5.6.3.1.1)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이 자유를 우선한다는 것은 경제적 복지의 향상을 위해 기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의 우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복지라는 미명 하에 불가침성을 갖는 기본적 자유가 해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침해는 사회적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q1.5.6.3.1.2) 자유의 우선성은, 기본적 자유가 실질적으로 확립될 수 있을지도, 경제적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적은 혹은 불평등한 자유가 교환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214)

### 1.5.6.3.2 자유의 권리가 제한되는 조건

(e1.5.6.3.2.1) 롤즈는 자유의 우선성을 주장하며, 자유의 권리는 사회의 전체적인 보다 큰 선을 위해서도 침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유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는데, 이런 제한은 평등한 자유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게 될 때를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따라서 자유의 제한은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전체적인 자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된다.

(q1.5.6.3.2.2) 사람들이 권리들의 제한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회적 여건이 이러한 제반 권리들의 효과적인 확립을 허용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제한은 그것들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을 때를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까지만 인정될 수 있다. 평등한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한 과정을 거쳐 그러한 자유가 향유될 수 있도록 문명의 수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옹호될 수 있다. 그래서 두 원칙의 서열적 순서를 택하는데 당사자들은 그들 사회의 조건이, 그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평등한 자유의 실질적 실현을 허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214-215)

#### 1.5.6.4 최소 극대화 규칙

(e1.5.6.4.1) 최소 극대화의 규칙은 최악의 것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는 원칙이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선택지들 중에서 어떤 선택은 상황에 따라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선택은 상황의 변화에 크게 영향 받지 않아 최악이라 할지라도 견딜 만한 결과이며, 최선의 결과라 할지라도 큰 이점을 주지 않는 것일 수 있다.

(e1.5.6.4.2) 최소 극대화의 규칙은 바로 이러한 선택 상황에서 후자, 즉 최선일 때에 큰 이점은 없다 할지라도, 최악일 때 견딜 만한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확실하지도 않은 큰 이익을 위해, 자신의 삶의 계획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최소 극대화의 규칙이 의미를 갖는 것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최소 극대화의 규칙에 따라 선택한다는 것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최소 극대화의 규칙에 따라 선택한 것이 정의의 두 원칙이다.

(q1.5.6.4.3) 그 두 원칙을 사회 정의의 문제에 대한 최소 극대화의 해결책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발견의 방법으로 쓸모가 있다. 그 두 원칙과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선택을 위한 최소 극대화의 규칙maximin rule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215)

#### 1.5.6.4.1 최소 극대화 규칙의 내용

(q1.5.6.4.1.1) 다음의 손익표를 생각해 보자. 그것은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게임이 아닌 상황에 있어서 손실과 이득을 나타낸다. 어떤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대신에 달성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가능한 여러 상황들이 제시되어 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선택자의 결정 내용에 달려 있거나 혹은 그가 사전에 자신의 처신을 미리 알리느냐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 표에 나타난 수치

는 최초의 상황과 비교된 금전상의 액수(100달러가 한 단위)를 의미한다. 이득(g)은 개인의 결정(d)과 상황(c)에 달려 있다. 따라서  $g=f(d,c)$ 가 된다.

(q1.5.6.4.1.2) 만일 가능한 결정의 수가 셋이고 가능한 상황의 수도 셋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손익표를 갖게 된다.

		상황		
결정	C1	C2	C3	
d1	-7	8	12	
d2	-8	7	14	
d3	5	6	8	

최소 극대화의 규칙은 우리가 세 번째의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500달러의 이익을 갖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다른 식으로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일어나는 최악의 것보다 나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다른 결정 중 하나를 택했을 경우 우리는 800달러나 700달러의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d3을 선택하는 것이  $f(d,c)$ 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이때 c의 값은 결정 d를 취할 때 f가 최소되게 하는 경우이다. “최소 극대화maximin”라는 말은 최소중의 최대maximum minimorum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규칙이 주는 지침은 제시된 행동 과정을 취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에 주목하고 그에 비추어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216의 각주19)

#### 1.5.6.4.2 정의의 두 원칙과 최소 극대화 규칙의 유사성

(e1.5.6.4.2.1) 최소 극대화의 규칙은, 자신에게 발생할 상황에 대한 기댓값을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때, 하나의 선택이 최선일 때는 큰 이점이 있지만, 최악일 때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큰 손해가 가는 경우와 최선일 때에도 큰 이점이 없지만, 최악일 때에서 큰 손해가 아닌 선택이 있는 경우, 후자를 선택할 것이고 말한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불확실한 경우에, 큰 이익을 위해, 자신의 삶의 계획을 위험에 빠뜨

리는 모험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로서 선택한 정의의 두 원칙이 바로 이런 극대화의 규칙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최악의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생 계획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받고자 할 것이고, 정의의 두 원칙이 이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q1.5.6.4.2.2) 최소 극대화의 규칙에 의하면 여러 대안들의 우열을 그들이 가져 올 가능한 최악의 결과에 따라 가리는 것이다. 즉 우리는 어떤 대안의 최악의 결과[최소]가 다른 대안들이 갖는 최악의 결과에 비해 가장 우월할 경우[극대화]에 그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최초의 사회적 지위를 악의를 가진 적대자가 결정해주리라고 가정한다. [...] 당사자들이 그러한 우연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만 할 경우에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하게 되리라는 것은 그러한 원칙의 입장이 최소 극대화의 해결책이라는 의미를 설명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성이 암시하는 것은 원초적 입장의 성격상 이러한 규칙에 표현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경우 그러한 원칙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논증이 확실히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216-217)

#### 1.5.6.4.3 최소 극대화 규칙의 적용 상황이 갖는 세 가지 주요 특징

(e1.5.6.4.3.1) 최소 극대화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가 발생할 상황들에 대한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이런 확률 평가가 가능하지도 않아야 한다. 둘째, 선택하는 개인들은 최소한의 이득 이상에는 관심이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배제된 다른 대안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들이다. 최소 극대화의 규칙이 가장 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세 특징이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즉 이 세 특징이 실현되어 있을 경우에 최소 극대화의 규칙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다.

(q1.5.6.4.3.2) 이러한 특이한 규칙[최소 극대화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갖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러한 특징들은 서로 결합됨으로써 그 효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 최소 극대화에 따르게 되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이러한 모든 특징이 최고도로 실현되었을 경우이다.(218)

#### 1.5.6.4.3.1 상황 발생 확률 평가를 고려하지 않는 최소 극대화 규칙

(e1.5.6.4.3.1.1) 최소 극대화의 규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확률 계산이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확률 평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않고, 즉 확률 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여야 한다. 만약 어떤 결과를 갖는 상황이 얼마의 가능성률을 가지고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확률 평가가 가능하여, 알려져 있다면, 최소 극대화의 규칙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확률에 따라 가장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q1.5.6.4.3.1.2) 그 규칙은 가능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확률 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석에서 생각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 규칙은 각 결정이 가져올 금전상의 이득에 대한 기대치를 비교해보고 가장 높은 전망이 있는 행동 과정을 채택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이러한 기대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즉  $g_{ij}$ 가 손익표상의 수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i$ 는 행의 지수이고  $j$ 는 열의 지수라고 해보자. 그리고  $p_j$ ,  $j=1,2,3$ 은  $\sum p_j=1$ 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i$ 번째의 결정에 대한 기대치는  $\sum p_j g_{ij}$ 와 같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 상황들은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을 알 수 없거나 기껏해야 극히 불확실한 것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에 다른 해결책이 없는 한, 그리고 특히 그 결정이 타인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근본적인 것이라면 확률적 계산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217-218)

#### 1.5.6.4.3.2 최소한의 이득 이상에는 관심이 없는 최소 극대화 규칙의 선택자

(e1.5.6.4.3.2.1) 최소 극대화의 규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개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수준 이상으로 얻게 될 이득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가치관을 가졌다는 조건이다. 만약 선택하는 개인이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보다는, 더 많은 이익에 더 큰 관심을 가진 모험을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 극대화의 규칙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q1.5.6.4.3.2.2) 선택하는 사람은 그 최소 극대화의 규칙에 따름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수준 이상으로 얻게 될 이득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연히 보다 큰 이득을 갖게 될지도 모르나 그의 소중한 많은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를 그런 모험을 택하는 것은 그에게 무가치하다고 생각된다.(218)

#### 1.5.6.4.3.3 최소 극대화 규칙에 대한 다른 대안들 배제

(e1.5.6.4.3.3.1) 최소 극대화의 규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제외된 다른 대안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갖는 것들이라는 조건이다. 배제된 다른 대안들을 선택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다. 배제된 대안들로는 공리의 원칙을 들 수 있다.

(q1.5.6.4.3.3.2) 제외된 다른 대안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경우는 심각한 모험을 내포하고 있다.(218)

#### 1.5.6.4.4 원초적 입장의 성격과 관련한 최소 극대화 규칙의 세 특징

(e1.5.6.4.4.1) 최소 극대화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세 가지 특징과 관련해서 원초적 입장의 성격을 드러내 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된 정의의 원칙은 최소 극대화의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소 극대화의 규칙의 적용 조건으로서 원초적 입장의 성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 극대화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첫째, 발생할 상황들에 대한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이런 확률 평가가 가능하지도 않아야 한다. 둘째, 선택하는 개인들은 최소한의 이득 이상에는 관심이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배제된 다른 대안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들이다.

(e1.5.6.4.4.2) 원초적 입장에서는 무지의 베일에 의해 확률 계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배제된다. 따라서 확률을 계산할 아무런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평등한 자유의 우선성에 의해 개인들에게 최소한의 이득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들을 방지하고 있다.

#### 1.5.6.4.4.1 무지의 베일에 의한 확률 계산 배제의 타당성

(e1.5.6.4.4.1.1) 최소 극대화의 규칙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확률의 계산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원초적 입장에서도 무지의 베일에 의해 확률 계산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배제된다. 확률을 계산할 아무런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능한 여러 상황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없으며, 그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은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막연한 상태에 있다.

(q1.5.6.4.4.1.2) 우선 무지의 베일에 의해 확률에 대한 모든 지식은 배제된다. 당사자들은 그들 사회의 가능성 성격이나 그 사회 속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 따라서 그들은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원칙 선택이 다른 사람들, 특히 그 선택에 따라 그 권리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될 후손들에게 합당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만 한다. 이상과 같은 고려 사항들은 당사자들이 사회의 가능 상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더 강화된다. 그들은 있을 수 있는 여러 상황의 가능성은 추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며, 나아가 그들은 있을 수 있는 각 가능성의 결과를 열거하거나 예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정하는 사람들은 숫자로 된 표가 예시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막연한 상태에 처해 있다.(218-219)

#### 1.5.6.4.4.2 원초적 입장에서의 최소한의 만족 보장

(e1.5.6.4.4.2.1) 최소 극대화의 규칙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수준 이상으로 얻게 될 이득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의의 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우선함으로써, 평등한 자유를 희생하여 얻을 수 있는 큰 이득을 욕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즉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의 당사자들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희생하여 큰 이익을 얻으려하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의 당사자들이 큰 이익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에 다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q1.5.6.4.4.2.2)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여러 종류의 논의들은 두 번째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만일 이를 원칙이 사회 정의에 대한 쓸 만한 이론을 제시하며, 효율성의 합당한 요구와도 양립한다고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정의관은 최소한의 만족을 보장하게 된다. 깊이 생각해봐서 달리 더 잘해보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제2부의 대부분의 논의는 그 두 원칙을 사회 정의의 중요 문제에 적용해봄으로써 두 원칙이 만족스러운 입장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목들도 철학적인 의도를 갖는다. 나아가서 이런 식의 생각은 자유의 우선성과 두 원칙의 축차적 서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결정적으로 유력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선성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평등한 자유

를 회생하여 보다 큰 이득을 얻으려는 욕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축차적 서열로 된 두 원칙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것은 보다 큰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위해 당사자들이 위태롭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219)

#### 1.5.6.4.4.3 배제된 최소 극대화의 다른 대안들이 갖는 결과의 부당함

(e1.5.6.4.4.3.1) 최소 극대화의 규칙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외된 다른 대안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갖는다는 조건을 가져야 한다. 최소 극대화의 다른 대안으로 공리의 원칙을 제시해 볼 수 있는데, 이 공리의 원칙은 보다 큰 사회적 이익을 위해 상당한 자유의 침해도 정당하다는 입장을 가진다. 이런 주장은 노예제도에 근접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원칙이 아니다.

(q1.5.6.4.4.3.2) 다른 정의관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견디기 어려운 제도가 생겨날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 번째의 특징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어떤 조건 아래에서는 (어떤 형식이든) 공리 원칙은 보다 큰 사회적 이득을 위해서 노예 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상당한 정도의 자유의 침해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때때로 주장되어 왔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주장의 진리 여부나 이러한 어떤 경우가 생길 가능성에 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당장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단지 이러한 정의관들은 당사자가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허용할 수도 있음을 예증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만족을 보장하는 정의의 두 원칙이라는 손쉬운 대안을 갖고서도 이러한 결과마저도 실현되지 않을 경우를 택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는 않지만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된다.(219)

#### 1.5.6.5 차등의 원칙에 대한 반론

(e1.5.6.5.1) 차등의 원칙은 보다 유리한 사람의 기대치의 증가가 정의로운지는 보다 불리한 사람의 기대치의 증감에 의해 의존한다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에 의하면 최소 수혜자의 부나 소득의 기대치가 약간이라도 증가한다면, 커다란 불균형을 허용하게 된다. 또한 최소 수혜자에

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대우는 금지된다. 차등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 최소 수혜자에게 1원의 이익만 주어져도 사회적으로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엄청난 이익이 정당하게 되고 만다. 그러나 롤즈는 이러한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특히 평등한 자유와 개방된 직위의 원칙은 이러한 경우의 발생을 막아 준다고 말하고 있다.

(e1.5.6.5.2) 롤즈는 차등의 원리가 이런 추상적인 가능성을 갖는 사실들에 적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즉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례들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정의의 두 원칙이 말하는 평등한 자유와 개방적 직위의 원칙은 이러한 사례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 준다. 결국 보다 유리한 사람의 기대치를 상승하는 방법은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 1.5.6.5.1 차등의 원칙에 대한 반론의 내용

(e1.5.6.5.1.1)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최대 수혜자의 기대치 증가의 정의 여부는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의 증가에 의존한다. 즉 최소 수혜자의 부나 소득의 기대치가 조금이라도 증가한다면, 최대 수혜자의 보다 큰 기대치가 허용되어, 부나 소득의 엄청난 불균형을 허용하게 된다. 또한 최소 수혜자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최대 수혜자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대우는 금지된다. 차등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 최소 수혜자에게 1원의 이익만 주어져도 사회적으로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엄청난 이익이 정당하게 되고 만다. 이러한 지적은 차등의 원칙은 불합리하다는 반론이 된다.

(q1.5.6.5.1.2) 반론의 내용은, 우리는 최소 수혜자의 전망을 극대화해야 되므로 (보통의 제한 조건에 의해) 보다 유리한 사람의 기대치에 있어 보다 큰 증감이 정의로운지의 여부가 보다 불리한 사람의 기대치에 의해서 의 사소한 변화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부나 소득에 있어서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가 아무리 적게라도 향상만 된다

면, 부나 소득의 엄청난 불균형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보다 혜택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마찬가지의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조금의 손해만 주어도 금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처지가 보다 나은 사람의 기대치가 100억 달러가 증가하는 것의 정의 여부가 최소 수혜자의 전망에 있어 1페니가 증가하는 데 좌우된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된다. 이러한 반론은 최소 극대화의 규칙에 있어서의 다음과 같은 난점과 유사하다.

(q1.5.6.5.1.3) 일련의 손익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0	n
1/n	1

(q1.5.6.5.1.4) 모든 자연수 $n$ 에 있어서, 적은 수치일 경우에는 두 번째 행을 택하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일련의 계열을 따라서 올라가면 어느 지점에 가서는 최소 극대화의 규칙과는 달리 첫 번째 행을 택하지 않으면 불합리하게 된다.(220-221)

### 1.5.6.5.2 차등의 원칙에 대한 반론에 대한 롤즈의 답변

(q1.5.6.5.2.1) 차등의 원칙은 이러한 추상적 가능성에 적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약간의 해답이 주어진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의 정의의 문제는 금전이나 재산 등 여러 가지 양을 일정한 개인에게 임으로 분배하는 문제는 아니다. 또한 어떤 내용물에 대한 기대치가 대표적인 사람들 사이에 각양각색으로 교환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위의 반론이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들은 실제로 일어날 수가 없으며, 현실성 있는 경우란 아주 제한되어 있어서 그러한 가능성들도 제외된다. 그 이유는 두 원칙이란 전체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는 하나의 정의관으로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등한 자유와 개방된 직위의 원칙들은 이러한 우연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준다. 보다 유리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상승하는 것은 오직 최소 수혜자의 처지가 향상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방법뿐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보다 유리한 사람들의 보다 큰 기대치는 숙련 비용을 부담하거나 조직화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전체의 이득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불평등이 더 심해질지도 모르지만 교육받은 인재의 이용도가 증가하고 점차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그들이 평등하게 되는 지속적인 경향성이 있게 된다. 다른 원칙들에 의해 설정된 조건들에

비해 여기서 일어날 것 같은 불균형은 사람들이 과거에 가끔 참아왔던 차등보다 훨씬 적을 것임이 분명하다.(221)

### 1.5.7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공리주의적 대안으로서 평균 효용의 원칙

#### 1.5.7.1 효용의 의미에 대한 전통적인 가정들

(e1.5.7.1.1) 전통적인 의미의 효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가정하고 있다. 1) 욕구의 만족으로 이해되며, 2) 개인 간의 비교를 허용하고, 3) 만족의 수준들 간의 서열화를 통해 측정된다.

(q1.5.7.1.2) 효용은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욕구의 만족으로 이해된다. 또한 효용은 적어도 최소한으로나마 합산 가능한 개인 간 비교를 허용한다. 또한 나는 위험과 관련된 선택들과는 독립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 가령 만족 수준들 간의 차이를 서열화하는 능력을 가정함으로써 효용이 측정된다고 가정한다.(225)

#### 1.5.7.2 효용의 원칙의 두 형태

(e1.5.7.2.1) 효용의 원칙은 두 형태로 구분된다. 하나가 효용의 고전적 원칙이며, 다른 하나는 평균 효용의 원칙이다.

#### 1.5.7.2.1 효용의 고전적 원칙

(e1.5.7.2.1.1) 효용의 고전적 원칙은 절대 가중 총량을 최대화하는 제도를 선택하도록 한다. 절대 가중 총량은 각자의 기대치에 그 사람의 수를 곱한 값이 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대치를 갖는다고 가정할 경우, 절대 가중 총량은 그 기대치를 갖는 사람의 수에 따라 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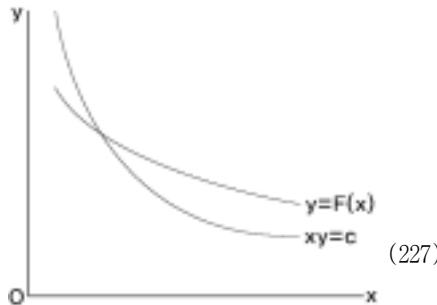
(q1.5.7.2.1.2) 기본 구조에 관련시켜 볼 때 고전적 원칙은 제도가 합당한 대표적인 사람들의 기대치의 절대 가중 총량the absolute weighted

sum을 최대화하도록 편성되기를 요구한다. 이 총량은 각 기대치에 그 해당 지위에 있는 사람 수를 곱하여 모두 합함으로써 산출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회의 성원 수가 2배가 되면 효용도 2배로 커진다.(225)

#### 1.5.7.2.1.1 인구의 무제한 증가

(q1.5.7.2.1.1.1) 형식상으로는 무한한 인구 증가의 조건이란,  $y$ 는 1인당 평균치이고  $x$ 는 인구수인  $y=F(x)$ 곡선이  $xy=c$ 인 직각 곡선보다 더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xy$ 는 전체 효용과 동등하며 그 전체를 표현하는 사각형의 영역은  $y=F(x)$ 곡선이  $xy=c$ 보다 수평적인 경우에는 언제나  $x$ 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다.(227)

(q1.5.7.2.1.1.2)



#### 1.5.7.2.1.2 인구수의 변동에 따른 고전적 원칙의 결과

(e1.5.7.2.1.2.1) 효용의 고전적 원칙에 의하면, 효용의 증가가 인구의 수에 의해 증가된다. 따라서 인구는 무한히 증가되도록 권장된다. 그런데 인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평균 효용은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 결국 고전적 원칙에 따르게 되면, 매우 낮은 수준의 복지를 인정해야 한다.

(q1.5.7.2.1.2.2) 고전적 원칙이 요구하는 것은 제도가 가족 수나 결혼 연령 등을 좌우할 수 있는 한 그 제도는 전체 효용의 최대치가 달성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나타나는 결과는 개인들의 총수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평균 효용이 아주 서서히 감소한다면, 그 평균 효용이

아무리 저하된다 할지라도 인구는 무한히 증가되도록 권장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인구수의 증대에 의해 늘어나는 효용은 1인당 분배량의 감소를 보상할 만큼 충분히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로서 매우 낮은 수준의 복지가 요구될 수도 있다.(226-227)

#### 1.5.7.2.2 평균 효용의 원칙

(e1.5.7.2.2.1) 평균 효용의 원칙은, 효용의 고전적 원칙이 전체 효용을 도모하는 것과는 달리, 평균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평균 효용의 극대화는 백분비 가중 총량의 최대화를 말하는 것이다. 백분비 가중 총량은 기대치를 각 사람에 곱하고, 그 기대치를 갖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차지하는 각각의 비율을 곱해서 모두 합하게 되면, 얻을 수 있다. 평균 효용의 원칙에 있어서는 인구수가 2배가 되어도 효용은 2배가 되지 않는다. 어떤 기대치를 갖는 어떤 지위에 있는 인구수가 늘어났느냐에 따라 효용의 값이 달라진다.

(q1.5.7.2.2.2) 평균 효용의 원칙은 사회로 하여금 전체 효용이 아니라 (1인당) 평균 효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게 한다. 이는 보다 현대적인 입장으로 생각되는데 밀이나 웨크셀Wecksell에 의해 주장되었고 최근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한 새로운 기초를 제공했다. 이러한 입장을 기본 구조에 적용해보면 제도는 대표적인 개인들의 기대치에 대한 백분비 가중 총량을 최대화하도록 설정된다. 이 총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 기대치와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 전체에서의 비율을 곱해서 이를 모두 합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사회의 인구수가 2배로 되면 효용도 마찬가지로 2배가 된다는 것이 더 이상 들어맞지 않게 된다. 이와는 달리 여러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이 변하지 않는 한 효용은 동일한 것으로 남게 된다.(225-226)

#### 1.5.7.3 효용의 고전적 원칙과 평균 효용의 원칙의 비교

(e1.5.7.3.1) 효용의 고전적 원칙과 평균 효용의 원칙을 비교해 보면, 효용의 고전적 원칙이 무한히 인구수를 증가시키도록 요구하며, 이에 따

라 매우 낫은 수준의 복지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평균 효용의 원칙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 전체적인 만족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이익 증진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 복지를 유지해줄 어떤 하한선에 합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효용의 고전적 원칙보다는 평균 효용의 원칙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

(q1.5.7.3.2) 이러한 고전적 원칙의 결과를 두고 볼 때 당사자들은 평균 효용의 원칙이 더 낫다고 생각하므로 고전적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균적인 복지가 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속도로 (어느 지점 이상으로) 하강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그 두 원칙은 동일하게 될 것이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평균적인 복지를 유지해줄 어떤 하한선에 합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당사자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려 하는 까닭에 만족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보다 그럴듯한 공리주의적 대안은 고전적 원칙이 아니고 평균적 원칙이다.(227-228)

#### 1.5.7.4 평균적 원칙에 도달하는 과정

(e1.5.7.4.1) 평균적 원칙에 도달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즉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동일한 선호를 가졌다는 것, 사회 구성원의 선호는 기수적 효용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 개인은 상이한 소득을 가지며, 소유의 불평등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재분배 정책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경우와 유사하도록 조건을 부여할 것이며, 단계가 지속되면서 원초적 입장에 보다 가까운 상황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험을 싫어하지 않으며 불충분한 이유의 원칙에 따르는 합리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최초의 상황이라는 관념은 평균적 원칙을 끌어 들이게 될 것이다. 이로써 자신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치를 극대화하게 된다.

(q1.5.7.4.2) 만일 효용에 대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 문제를 잠시 덮어두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모험을 싫어하지 않으며 가능성을 헤아림에 있어 불충분한 이유의 원칙principle of insufficient reason(사전에 이후 러지는 확률적 계산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따르는 합리적인 개인들이라고 생각할 경우 최초의 상황이라는 관념은 자연히 평균적 원칙에로 나아가게 된다. 그 원칙을 택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이런 입장에서 보여 진 대로 그들의 기대 복지를 극대화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형식의 계약론은 고전적 입장보다 평균적 입장에 보다 유리한 논증의 길을 제시한다. 사실 이와 달리 어떻게 평균의 원칙이 설명되어야 [할] 것인가? 결국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고전적 견해와 같은 목적론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은 선의 극대화라는 관념이 갖는 그런 유의 칙감적 호소력이 없다. 평균적 원칙을 주장하는 자는 적어도 이 점에 이르기까지는 계약이론에 의거하고자 할 것이다.(230)

#### 1.5.7.4.1 사회와 개인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는 상태

(q1.5.7.4.1.1) 사회에서 각기 다른 정책이 수행된다고 가정할 때 각 개인들은 어느 사회에 소속되기를 결심할 것인가? 만일 자신의 능력과 이해관계를 자세하게 알고 이들 사회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그가 각 사회에서 누리게 될 복지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이를 기초로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는 어떤 확률적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228)

#### 1.5.7.4.2 자신의 재능으로 하게 될 역할이 불확실한 상태

(e1.5.7.4.2.1)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하게 될 역할이 불확실한 경우, 자신의 선호가 다른 사람의 선호와 동일하다고 생각해 보자. 자신의 기대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사회의 어떤 지위가 갖는 효용을 추측하고서 그 지위를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 값은 개인들의 가중된 효용 총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가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지위의 대표자가 갖는 효용을 곱한 것이다. 그는 최고의 기대치를 가져오는 사회를 택할 것이다.

(q1.5.7.4.2.2) 우리는 가정상의 가담자가 여러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하게 될 역할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해 보자. 만일 그의 선호가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의 기대 복지를 극대화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는 특정 사회에 대한 자신의 전망을 계산함에 있어 그 사회의 대표 성원들의 효용을 대안적 효용으로 생각하고 각 지위에 대한 가능성을 알기 위해 자신이 그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그의 기대치는 대표적인 개인들의 기중된 효용 총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sum p_i u_i$ 에 표현된 것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  $p_i$ 는 그가  $i$ 번째의 지위를 얻게 될 가능성이고  $u_i$ 는 그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효용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최고의 기대치를 주는 사회를 택하게 된다.(228-229)

#### 1.5.7.4.3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

(e1.5.7.4.3.1)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하게 될 역할이 불확실한 경우에다 몇 가지 조건, 즉 자신이 갖게 될 능력이나 지위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해 보자. 물론 이 경우에도 자신의 선호는 다른 사람의 선호와 동일하다. 이 사회에서 그의 기대치는 평균 효용과 동일하다.

(q1.5.7.4.3.2) 여기에서 다시 몇 가지 변경을 가하면 원초적 입장에 보다 가까운 상황이 나타난다. 가정상의 가담자가 각 사회에서 그가 갖게 될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나 아직도 그의 선호는 이 사회의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는 어떤 개인이든 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확률적인 방식에 따라 계속 추리해간다고 가정해 보자. (즉 그가 어떤 대표에 소속될 기회는 사회 전체에 대한 그 대표의 비율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 그의 기대치는 각 사회에 있어서의 평균 효용과 동일하다. 이러한 변경은 드디어 각 사회에 대한 그의 기대 이익을 그 평균적 복지의 수준과 동일하게 해 준다.(229)

#### 1.5.7.4.4 사회 성원이나 결정자의 특정 선호에 대해서조차 모르는 상태

(e1.5.7.4.4.1)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하게 될 역할이 불확실 하며, 자신이 갖게 될 능력이나 지위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해 보자. 더구나 자신의 선호가 다른 사람의 선호와 동일한지의 여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자. 사회 성원이나 결정자의 특정 선호에 대해서도 모르고, 더구나 사회 구조에 대한 지식도 없다고 생각해 보자. 즉 완전한 무지의 베일의 조건에 있다고 해보자. 이런 조건에서도 그는 자신의 선호, 능력,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갖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의 평균 효용을 갖는 사회에서 그의 기대치가 최대가 된다. 즉 그의 기대치는 평균 효용과 동일하다.

(q1.5.7.4.4.2)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동일한 사회에 속 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선호를 가진다고 가정해 왔다. 그들의 가치관은 대체로 동일한 것이었다. 일단 이와 같이 지극히 제한된 가정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게 되고 최초의 상황에 대한 한 형태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회의 성원이나 결정자의 특정 선호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아무것도 없게 된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이들 사회의 구조에 대한 지식까지도 배제된다. 이제 무지의 베일은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가정상의 참여자는 이전과 똑같이 추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결국 어떤 선호, 능력,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갖춘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모두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도 다시 한 번 최대의 평균 효용을 갖춘 사회에 대해서 그의 전망이 최대가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사회성원의 수를  $n$ 이라하고 복지의 수준을  $u_1, u_2, u_3, \dots, u_n$ 이라 해보자. 그러면 전체 효용은  $\sum ui$ 이고 평균 효용은  $\sum ui/n$ 이 된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 될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기대치는  $1/n u_1 + 1/n u_2 + \dots + 1/n u_n$ , 즉  $\sum ui/n$ 이 된다. 그래서 기대치는 평균 효용과 동일하다.(229-230)

### 1.5.7.5 경제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무기력한 효용 관념

(e1.5.7.5.1) 최근 경제학 이론에서도 효용 관념은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효용의 관념은 너무 막연하여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q1.5.7.5.2) 효용 관념은 최근 몇십 년간의 경제학 이론에서는 대체로 폐기되고 있으며, 또한 이런 관념은 너무나도 막연하여 경제적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제 효용은 만족의 척도가 아니라 경제 주체의 선택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재 인정되고 있는 주요한 종류의 기수적 효용은 노이만-모르겐슈테른Neuman-Morgenstern의 정식화에서 유래한 것이며, 이것은 위험과 관련된 전망들 중에서 선택하는 일에 기초하고 있다.(230-231)

#### 1.5.7.6 평균 효용의 원칙의 난점들

##### 1.5.7.6.1 사회 구성원의 모험심을 전제하는 평균 효용의 원칙

(e1.5.7.6.1.1) 평균 효용의 원칙은 자신의 기대치를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고자 할 때 규범으로 채택될 수 있다. 그런데 평균 효용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모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험을 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 효용 원칙은 부당하다.

(q1.5.7.6.1.2) [평균 효용의] 원칙은 어떤 합리적 개인이 최초의 상황의 관점에서 보아 그의 기대치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회이든지 포착하고자 할 때 그의 규범으로 생각될 수가 있다. (만일 확률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을 경우 그 기대치는 불충분한 이유의 원칙에 의해 선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대해 그것은 모든 사회의 성원이 실제로 똑같이 모험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반론을 전개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동일한 모험을 갖기로 합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원칙은 부당하다.(232)

##### 1.5.7.6.1.1 노예와 노예 소유주의 논법을 통한 평균 효용의 원칙의 난점

(e1.5.7.6.1.1.1) 평균 효용의 원칙은 노예 소유주의 논변을 정당화해 주는 문제점이 있다. 노예 소유주가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노예 제도가 평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고 해보자. 실제로 평균 효용의 원칙에 의하면, 자신이 나중에 노예가 될 수 있을지라도, 평균적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러한 모험을 하는 선택을 타당하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q1.5.7.6.1.1.2)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하나 생각해 보자. 즉 노예 소유주가 그의 노예들과 대립되어 있을 경우 그들에게 그의 치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첫째로 그들의 사회의 형편으로 봐서 노예 제도란 사실상 최대의 평균 복지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주장하고, 둘째로 최초의 계약적인 상황에서 그가 나중에 정당하게 노예로 소유될 입장에 있을 모험을 무릅쓰고라도 평균적 원칙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보자. 우선 당장 우리는 노예 소유주의 논법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논점이 어긋난 것으로 거부하려 할 것이다. 개인들이 실제로 정말 모험성이 있는 정의관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이 요구 조건에 얹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232-233)

#### 1.5.7.6.1.2 노예 소유주의 논법에 대한 계약론적 타당성과 해결 방법

(e1.5.7.6.1.2.1) 그들의 사회의 형편으로 봐서 노예 제도란 사실상 최대의 평균 복지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주장하고, 둘째로 최초의 계약적인 상황에서 그가 나중에 정당하게 노예로 소유될 입장에 있을 모험을 무릅쓰고라도 평균적 원칙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보자. 이러한 주장을 옹호하는 원칙이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된다면, 이 원칙은 정당한 원칙이 된다. 따라서 원칙이 선택된 후에 이 원칙이 부당하다고 반박하는 것은 받아들여 질 수 없다. 노예 소유주의 논변을 반박하는 것은 노예 소유주의 의거하는 원칙이 원초적 입장에서 거부될 것임을 증명하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원초적 입장에서는 자신의 특수한 사실에 대해 알 수 없는 무지의 베일 상태에 있게 된다. 원초적 입장

에서는 전혀 확률을 평가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률적 평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확률적 평가에 의존하는 평균 효용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수 없다.

(q1.5.7.6.1.2.2) 계약론의 입장에서 볼 때 노예 소유자가 제시한 논증의 일반 형식은 옳은 것이다. 사태의 결과에 대해서 쌍방이 똑같이 모험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는 실제로 없으므로 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노예들이 반박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계약 이론은 순전히 가정적인 것으로서 원초적 입장에서 어떤 정의관이 합의된다면 그 원칙들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원칙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합의는 일어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은 반론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설명해주기 위한 적합한 합의가 현실적으로 생겨나지 않을 경우 정의론을 가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으며, 우리가 원치 않는 정의의 원칙들을 배척하기 위해 모험성이 있는 실제적인 상황만을 내세우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노예주의 논증을 반박하는 길은 그가 의거하는 원칙이 원초적 입장에서 거부될 것임을 증명하는 일이다. 여러 가지 이유들에 비추어볼 때 정의의 두 원칙이 유력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유력한 해석에 대한) 이러한 최초의 상황이 갖는 측면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233)

#### 1.5.7.6.2 확률성의 평가하는 방식과 관련된 평균 효용의 원칙의 난점

(e1.5.7.6.2.1) 합리적 개인이 확률성을 평가하는 방식과 관련된 평균 효용 원칙에 대한 난점이 있다. 왜냐하면 원초적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원초적 입장에서는 자신의 특수한 사실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혀 확률을 평가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확률적 평가는 불가능하다. 결국 확률적 평가에 의존하는 평균 효용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수 없다.

(q1.5.7.6.2.2) 평균적 원칙에 있어서 첫 번째 난점은 [...] 합리적 개인이 확률성을 평가하는 방식에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까닭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 똑같은 가능성을 가졌다  
고 생각할 객관적 근거가 최초의 상황에는 없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가  
정은 우리 사회에 대해 알려진 특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평  
균적 원칙에 이르는 논증의 초기 단계에서 가정상의 참여자는 자신의 능  
력과 그가 속하고자 선택하게 될 사회의 구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 그의 가증성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정의의 여건이 의미하는 사정을 제외한)  
특수 사정에 관해서 완전히 무지한 상태가 된다. 이 단계에서 개인의 기  
대치는 불충분한 이유의 원칙에만 의존해서 형성된다.(233-234)

#### 1.5.7.6.3 확률의 합리적 판단의 객관적 근거와 관련된 효용의 원칙의 난점

(e1.5.7.6.3.1) 확률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 판단의 근거가 되려면, 확  
률에 대한 판단은 특정 사실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확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경향들의 상대적 강도를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런데 원초적 입장에서는 당사자들  
이 특정한 사실에 지지되지 않은 확률 평가를 무시한다. 그러나 대부분  
의 경우 확률 평가는 특정한 사실에 의해 평가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직  
관적이고 부정확한 근거에 의해 이루어진다.

(q1.5.7.6.3.2) 둘째로 나는 오직 확률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 판단의 근  
거가 될 경우 그것은 개관적 근거, 즉 특정 사실에 대한 지식(혹은 타당한  
신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는 상대적 빈  
도에 대한 보고의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으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향들의 상대적 강도를 평가하는 근거는 제공해야만 한다.(239)

#### 1.5.7.6.4 추론의 기대치가 갖는 특유성과 관련된 효용 원칙의 난점

(q1.5.7.6.4.1) 마지막 난점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 문제는 평  
균적 원칙에 대한 추론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대치가 갖는 특유성 때문에  
생긴다. 기대치가 정상적으로 계산될 경우에는 대안들의 효용( $\sum p_i u_i$ 라는  
표현 속의  $u_i$ )은 단일한 선호의 체계로부터, 즉 선택을 하는 개인의 선호  
로부터 이루어진다. 효용은 이 사람의 가치 체계에 의해 평가된 대안들의

기대치를 나타낸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에는 각 효용이 서로 다른 사람의 선호에 기초해 있다. 효용들이 있는 그만큼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추론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를 전제함은 분명하다. [...] 그 개인은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간주하는 목적이라고는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이다. 그는 각자의 목적 체계, 능력,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갖춘 많은 사람들 중의 어떤 사람이 될 모험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대치가 의미 있는 것일지를 의심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는 어떤 선호 체계가 없는 까닭에 그것은 필요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40)

#### 1.5.7.6.5 평균 효용의 원칙의 결함에 대한 롤즈의 논변

(e1.5.7.6.5.1) 롤즈는 평균 효용의 원칙을 옹호하는 추론의 난점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원초적 입장에서는 확률에 의한 분배를 인정할 만한 어떤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확률 평가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평가는 단지 불확실한 이유에 근거한 유사성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효용의 원칙을 선택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공리주의 논변이 당사자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가진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당사자들이 특정한 이해관계나 가치관을 가진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효용의 원칙이 가진 두 결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공리주의 추론은 기대치에 대한 적절한 의미는 갖지 못한 단지 형식적인 표현만 가지고 있을 뿐임을 알게 된다.

(q1.5.7.6.5.2) 나는 평균 효용의 원칙을 옹호하는 추론이 의존하고 있는 기대치가 두 가지 점에서 결함이 있다는 점을 논증했다. 첫째, 원초적 입장에서는 평등한 유사성 혹은 정확히 말해 다른 어떤 확률 분배를 수락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유사성은 가설적인 확률들 as-if probabilities에 불과하다. 이런 유사성들은 오로지 불충분한 이유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며, 효용의 원칙을 수락할 만한 독자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 그 대신 이런 유사성에 호소하는 것은 결국, 같은 원칙을 규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이다. 둘째, 공리주의적 논변은 당사자들이 그들이 애써 보호하고자 하는 특정한 성격 혹은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즉 그들이 특정한 궁극적 이해 관심이나 특수한 가치관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점을 함께

고려해보면, 공리주의적 추론은 기대치에 대해 적절한 의미를 결여한 채 순수하게 형식적인 표현에 이른다. 이것은 원초적 입장이라는 여건을 통해 그 정당한 사용 조건이 배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적 논변과 개인 간 비교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243)

## 1.6 자유

(e1.6.1) 자유는 모두 인간의 열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특히 인간의 기본적 자유로 간주되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시민적 자유는 정치적 문제에 의해 희생될 수 없다. 르즈는 이러한 생각을 정의의 제1원칙에서 드러내며,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한다는 주장에 의해 확실하게 해 두고 있다.

(q1.6.2) 어떤 쪽의 자유이든 그것은 모두가 인간의 열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지만,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시민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 즉 정치적 문제에 동등하게 참여할 자유로 인해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275)

### 1.6.1 자유에 대한 세 주제

(e1.6.1.1) 자유에 대한 설명은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자유는 1) 자유로운 행위의 주체, 2) 그 주체에 제시되는 제한과 한계, 3) 자유로운 주체가 행해야 할 것과 행해서는 안 될 것과 관련해서 설명된다.

(q1.6.1.2) 어떤 자유라도 다음 세 가지 항목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유로운 행위의 주체, 이 주체가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제한이나 한계, 그리고 주체가 자유롭게 행하거나 혹은 행하지 않는 것

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자유가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이들 세 가지에 관한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275-276)

### 1.6.2 평등한 자유의 제한

(e1.6.2.1)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사회의 기본적 자유는 평등해야 한다. 다만 평등한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도 평등한 자유의 의미와 정의의 두 원칙이 갖는 축차적 서열에 의한 특정한 기준에 따라야만 한다. 이런 자유는 자유 그 자체만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즉 자유는 서로 상충하는 경우 그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 1.6.2.1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두 가지 방식

(e1.6.2.1.1)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위배되는 첫 번째 방식은 한 계층이 다른 계층의 사람보다 더 큰 자유를 갖는 경우이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위배되는 두 번째 방식은 당연히 주어져 있는 자유의 범위보다 덜 광범위한 경우가 있다. 이 두 경우에는 자유가 평등하지 않다.

(q1.6.2.1.2) 우선 제1원칙에 위배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큰 자유를 가질 경우나 혹은 자유가 당연히 그래야 할 것보다 덜 광범위한 경우, 자유는 평등한 것이 되지 못한다.(278)

#### 1.6.2.2 자유가 제한되는 두 가지 경우

(e1.6.2.2.1)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오직 자유 자체만을 위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러한 제한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자유가 평등하기는 하지만 덜 광범위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가 불평등한 경우

이다. 자유가 제한되는 두 경우는 각각 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유가 덜 광범위한 경우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자유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경우는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될 때이다.

(q1.6.2.2.2) 자유란 자유 그 자체만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본적 자유들은 평등하기는 하지만 덜 광범위할 수 있다든가 불평등할 수 있다. 자유가 덜 광범위한 경우는 대표적인 시민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이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이며, 자유가 불평등해도 좋은 경우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지게 될 사람들의 자유가 그로 인해 더욱 잘 보장될 수 있을 때이다.(329-330)

#### 1.6.2.2.1 덜 광범위한 자유와 관련된 자유의 제한

(e1.6.2.2.1.1)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위배되는 경우로는 당연히 주어져 있는 자유의 범위보다 덜 광범위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공공질서를 위해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간 생활의 존속을 위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정도에 대한 제한은 자유 그 자체를 위한 것이며, 이러한 제한에 의해 자유의 정도는 작아지지만 자유의 평등함은 유지된다.

(q1.6.2.2.1.2) 앞에 나온 사례 중 몇 가지는 덜 광범위한 자유와 관련된 것인데 공공질서를 위한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제한 사상은 인간 생활의 항구적인 조건에서 생겨나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들은 비이상적인 이론 가운데서 자연적 제약을 처리하는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정의를 내포하기 때문에 불관용자의 자유를 억제하고 경쟁하는 파벌의 폭력을 제지하는 두 가지 사례는 비이상적인 이론 중 부분적 준수론에 속한다.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경우 각각에 있어서 논의는 대표적인 시민의 관점에서 전개된다. 축차적 서열의 관념에 따를 때 자유의 정도에 대한 제한은 자유 그 자체를 위해서 이루어지며 자유는 보다 작아지지만 평등한 자유를 낳는다.(333)

### 1.6.2.2.2 불평등한 자유와 관련된 자유의 제한

(e1.6.2.2.2.1) 자유의 제한이 가능한 경우는 자유가 불평등하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불평등한 자유와 관련된 경우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역사적으로 자유가 불평등하게 주어져 있는 경우가 정당하게 간주되는 많은 상황이 있었다. 이러한 불행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자유의 제한이 요구될 수 있다.

(q1.6.2.2.2.2) 만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보다 많은 투표권을 가진다면 정치적 자유는 불평등하다. 그리고 일부의 투표권에 더 큰 비중이 주어지거나 사회의 일부 계층이 선거권을 함께 갖지 못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상 많은 상황에 있어서 보다 작은 정치적 자유가 정당화되어 왔다. 아마도 선거에 대한 버크Burke의 비현실적인 설명은 18세기 사회의 상황에서는 타당한 요소를 가질 것이다. 그러한 경우 그것은 여러 가지 자유가 모두 동등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불평등한 정치적 자유가 역사적 제약에 의 가능한 적응 방식으로 생각될 수 있었던 반면에 농노 및 노예제 그리고 종교적 불관용은 분명히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양심의 자유의 상실과 개인의 통합성을 규정해주는 권리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어떤 정치적 자유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권리에 대한 경우는 덜 심각하다. 앞에서 주목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자유 중 일부를 유보하는 것은, 이것이 다소 불행한 사회를 모든 기본적 자유들이 충분히 향유될 수 있는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요구될 때 필요할지도 모른다.(333-334)

### 1.6.2.3 자유의 제한이 정당하게 변호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

#### 1.6.2.3.1 자연적 제약이나 우연성에 의한 자유의 제한 상황

(e1.6.2.3.1.1) 자유의 제한이 정당하게 변호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연적 제약이나 인간 생활의 우연 그리고 역사적 또는 사회적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러한 사항에 의한 자유의 제한은

그 정의에 대한 물음은 생겨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소 영구적인 정치 생활의 조건에 의한 것이며,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적은 자유가 허용되는데, 이것은 인간 상황의 자연적 특성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자유의 제한은 정당하게 변호 될 수 있을 것이다.

(q1.6.2.3.1.2) 자연적 제약이나 인간 생활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 혹은 역사적 우연성으로부터 제한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의 정의 여부에 관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리한 여건 아래의 질서정연한 사회에 있어서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합당한 통제를 받게 되며 참여의 원칙도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제한 조건들은 다소 영구적인 정치 생활의 조건들로부터 생겨나며 다른 사항들은 어린이의 자유가 보다 적다는 것과 더불어 인간 상황의 자연적 특성에 대한 적응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어진 일정한 제약을 충족시킬 정의로운 방도를 발견하는 일이다.(330)

#### 1.6.2.3.2 기준에 존재하는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제한 사항

(e1.6.2.3.2.1) 자유의 제한이 정당하게 변호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자연적 제한이나 인간 생활의 우연 그리고 역사적 또는 사회적 우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준의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서 생겨난다. 즉 사회 체제나 개인의 행위에 부정의가 이미 존재한다면, 이러한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질서 정연한 사회는 인간이 갖는 부정의하려는 성향을 제거하거나 제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q1.6.2.3.2.2) 두 번째 종류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 체제나 개인의 행위에 있어서 부정의가 이미 존재한다. 여기에 있어서 문제는 이 부정의에 대처하는 정의로운 방식이 무엇인가이다. 물론 이러한 부정의도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며, 부정의하게 행위하는 자도 때로는 보다 높은 명분을 추구한다는 신념으로 인해서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한다.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파벌의 사례들이 이러한 가능성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갖는 부정의에로의 경향성은 공동생활의 항구적인 측면은 아니며 그것은 대체로 어느 정도는 사회 제도, 특히 그 제도의 정의 여부에 달려 있다. 질서정연한 사회는 인간이 갖는 부정의에로의 성향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제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일단 이러한 사회가 성립되면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분파들이란 존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위험 요소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부정의를 처리함에 있어 정의가 요구하는 방식은 불가피한 제약이나 인간 생활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은 최선으로 처리하는 방식과는 아주 다른 문제이다.(330-331)

#### 1.6.2.4 자유의 제한과 관련된 부권주의

(e1.6.2.4.1) 부권주의의 문제는 평등한 자유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부권주의는 특정인의 자유의 통제를 인정하는 반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얼핏 이 두 원리는 서로 상충하는 듯하다. 따라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부권주의가 부합하는 정도와 부권주의의 적용의 한계 등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q1.6.2.4.2) 부권주의 paternalism의 문제도 여기서 다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등한 자유에 관한 논의에서도 언급되었고 보다 작은 자유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335)

#### 1.6.2.4.1 자기보호를 위한 규제원칙 채택

(e1.6.2.4.1.1)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원칙을 채택할 것이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처음엔 자신에게 부여될 의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부여될 의무들은 자신의 선을 증진에 방해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완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 심한 상처나 정신적 장애와 같은 불행이나 우연에 의해 야기될 손해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비합리적 성향에 의한 처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선 증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규제 원칙, 즉 의무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ql.6.2.4.1.2)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은 그들이 사회 속에서 그들 자신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선을 증진하는 데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이상적인 원칙의 단계가 채택되고 나면 그들은 아이들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들의 능력이 개발되지 못하고 그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도모하지 못할 가능성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를 원할 것이며, 혹은 심한 상처를 가졌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와 같이 어떤 불행이나 우연에 의해 그들이 그들의 선을 위해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어질 가능성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를 원할 것이다. 또한 그들이 그들 자신의 비합리적인 경향성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리석은 행동을 피하게 할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는 형별 제도에 합의하고 그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가져올 불행한 결과를 보상하도록 마련된 어떤 부담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다. 그러한 경우들을 위해서 당사자들은 타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소망을 짓밟을 권한을 가질 경우 이를 규제할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때로는 그들의 선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위 할 그들의 능력이 그릇될 수 있거나 혹은 완전히 결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335)

#### 1.6.2.4.2 부권주의 권한이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

(e1.6.2.4.2.1)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성과 의지가 연약하며, 그 불확실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야기할 수도 있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권주의의 원칙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권주의의 권한은 자신의 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권주의의 권한은 자신에게 할 것과 같은 행위를 해야 하며, 그가 원하는 것과는 달리 그에게 필요한 것을 갖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ql.6.2.4.2.2) 부권주의의 원칙들은 당사자들이 사회 속에서 그들의 이성과 의지가 갖는 연약함과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원초적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타인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 행위하고 우리가 합리적이라면 우리 자신을 위해 하게 될 것을 행할 권리가 있고 때로는 그러한 요청을 받게 되는

데, 그러한 권한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스스로의 선을 돌볼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이다. 부권주의적 결정은 개인 자신의 정해진 선호들과 관심들이 합리적인 한 그것들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그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선에 대한 이론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 원초적 입장에서 보아 우리 자신을 위해 행위하게 될 바와 같이 행위하게 된다. 우리는 그가 다른 어떤 것을 원하는 간에 그에게 필요하게 될 것을 그가 갖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문제되고 있는 그 개인이 자신의 합리적인 능력을 개발시키고 회복하게 되면 그를 위한 우리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와 합의하리라는 것을 논증할 수 있어야만 한다.(336)

#### 1.6.2.4.3 부권주의의 정당화 조건

(q1.6.2.4.3.1) 부권주의적 간섭은 이성과 의지의 명백한 부족이나 결여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은 정의의 원칙과 그 주체가 갖는 보다 항구적인 목적과 선호에 관해 알려진 것에 의해, 곧 기본적인 선에 대한 해명에 의해 지침이 주어져야 한다. 부권주의적인 방법의 출발점과 방향에 대한 이러한 제한들은 원초적 입장의 가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337)

#### 1.6.2.4.4 부권주의 해석의 한계

(e1.6.2.4.4.1)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각자가 다양하게 최종 목표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목표와 신념이 자신의 인격과 더불어 침해 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부권주의의 원칙을 받아들일 것인데, 그 이유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불합리로 인한 손실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부권주의의 원칙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자신의 신념이나 인격에 대한 횡포를 일삼을 수 있는 수단을 행사하도록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q1.6.2.4.4.2)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인격과 그들이 갖는 초종 목표와 신념이 어떤 것이든 간에 침해받지 않기를 바란다. 부권주의적 원칙은 우

리 자신의 불합리성을 막기 위한 것이며 나중에 합의를 얻게 될 전망만 보인다면 어떤 수단을 써서든 사람의 신념이나 인격에 대한 횡포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337)

### 1.6.3 평등한 양심의 자유

#### 1.6.3.1 원초적 입장에서 평등한 양심의 자유를 선택하는 개인들의 특성

(e1.6.3.1.1)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성원들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다음 세대들의 성원들과도 관련을 맺고 있는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 또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 가능한 한 보호해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

(q1.6.3.1.2)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고립된 단일한 개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와는 달리 그들은 자신들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그것과 비슷한 요구를 하게 될 다음 세대의 어떤 성원과 자신들이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281)

#### 1.6.3.2 원초적 입장에서 평등한 양심의 자유 선택

(e1.6.3.2.1)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신과 관련된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종교적 또는 도덕적 교설이 다른 교설을 제멋대로 박해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것은 자유에 모험을 거는 것이며,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신이 어느 교설에 속하게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자신의 입장이 지배적인 교설에 속하게 될 확률이 높다 할지라도, 이런 도박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은 신중하게 다루지 않은 것이며, 자유를 귀중하게 평가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으로 원초적 입장의 당

사자들은 보다 큰 사회적 이득을 위해 가해지는 자유의 제한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q1.6.3.2.2) 양심의 자유를 주목해 볼 때 분명해 보이는 사실은 당사자들이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자유의 온전함을 보장해줄 원칙을 틀림없이 선택하리라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신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책무에 대해 그들 나름으로 해석하게 될 특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이러한 책무를 가진 사람들로 그들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모른다. [...] 나아가서 당사자들은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견해가 그 사회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예를 들면 다수의 입장인지 소수의 입장인지를 모른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책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전부이다. [...] 평등한 양심의 자유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은 어떤 지배적인 종교적 혹은 도덕적 교설이 제멋대로 다른 교설을 박해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그들의 자유에 모험을 걸 수는 없을 것이다. 설사 그들이 (다수 집단이 존재할 경우) 다수자에 속하게 될 확률이 있다는 것을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도박을 건다는 것은 자기 자신들의 종교적, 도덕적 신념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거나 혹은 그 믿음을 성찰할 자유를 귀중하게 평가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한편 당사자들은 공리의 원칙에도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들의 자유는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 맡겨질 거서이며 만족의 보다 큰 순수 잔여량을 낳는 경우라면 자유의 제한도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그들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 보다 큰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 보다 덜 평등한 자유를 받아들이는 데 대한 충분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281-283)

### 1.6.3.3 양심의 자유 제한

#### 1.6.3.3.1 제헌 위원회에서 양심의 자유 보장

(q1.6.3.3.1.1) 제헌 위원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논증으로 인해 도덕적인 자유와 사상, 신앙 및 종교적 관행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체제

를 선택하게 되는데, 물론 이러한 자유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공공질서와 안녕이라는 국가적 이익에 의해 규제되기는 한다. 국가는 특정한 종교를 선호할 수 없으며 어떤 종교에 가입하거나 탈퇴한다고 해서 별금이나 근신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국가라는 관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와는 달리 특정 단체들은 그 구성원들의 희망에 따라 자유로이 조직될 수 있으며, 그 구성원들이 그 단체들에 대한 계속적인 참여 여부를 선택한다는 제한 조건 아래 그 자체의 내부 생활과 규율을 가질 수가 있다. 법은 한 종교에 대한 배교뿐만 아니라 전혀 종교를 갖지 않는 것까지도 법률상의 죄로 인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종교상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는 도덕적, 종교적 자유를 지지하게 된다.(288-289)

#### 1.6.3.3.2 공동 이익을 위한 양심의 자유의 제한

##### 1.6.3.3.2.1 양심의 자유와 공동 이익의 우선성 문제

(q1.6.3.3.2.1.1) 공공질서나 안녕에 대한 공동의 이익common interest에 비추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자체는 계약론적 관점으로부터 쉽사리 도출될 수 있다. 우선 이러한 제한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 종교적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으며, 또한 그것은 정부가 종교적인 문제를 관심 밖으로 여긴다든가 어떤 철학적 신념이 국사와 상충한다고 해서 그것을 탄압할 권리를 주장하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정부는 어떤 단체를 합법화시키거나 불법화할 권한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예술이나 과학에 관해서도 그러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289)

##### 1.6.3.3.2.2 공공질서에 대한 국가적 이익을 위한 양심의 자유 통제

(q1.6.3.3.2.2.1) 공공질서에 대한 국가적 이익의 테두리에서 양심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 다시 말하면 대표적인 평등한 시민의 이익이라는 원칙에서 도출되는 제한이라 할 수 있다. 공공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권한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각자 나름대로 이해한 자신의 의무에 따라 사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들을 공평하게 뒷받침해주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가져야만 할 권한 부여적 권리enabling right라 할 수 있다.(290)

#### 1.6.4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

(e1.6.4.1)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의 문제는 두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안정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롤즈는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의 문제에 대해 종교적인 관용과 관련시켜 논의하고 있다.

##### 1.6.4.1 불관용적인 종파의 불관용에 대한 불평의 권한

(q1.6.4.1.1) 불관용하는 종파가 자기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명분이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 불관용적인 종파는 자기에게 평등한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평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타인들의 행위에 반대할 명분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비슷한 여건 속에서 우리의 행위를 타인들에게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게 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이 상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어떤 사람의 불평권은 그 자신이 인정하는 원칙들이 위반되었을 경우에 국한된다. 불평이란 성실성에 입각해서 타인들에게 제시되는 항의이다. 그것은 쌍방이 받아들이는 어떤 원칙의 위반을 주장한다. 그런데 물론 불관용자도 자신은 성실하게 행위하며 타인에게 거부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295)

##### 1.6.4.2 불관용적인 종파에 대한 관용적인 종파의 관용 거부 권리

(q1.6.4.2.1) 어떤 조건 아래에서 관용적인 종파가 불관용적인 종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 그러면 불관용적인 종파는 관용을 베풀지 않은 데 대해 불평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고 해서 관용적인 종파들이 그들을 탄압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는 타인들은 불평할 권리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권리를 갖는 것은 불관용자에 대한 불평권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정의의 원칙이 어겨지는 경우에 반대한다는 권리로서이다. 왜냐하면 충분한 이유 없이 평등한 자유가 부인될 경우에는 언제나 정의가 침해되기 때문이다.(295-297)

#### 1.6.4.3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 거부의 시기와 목적

(q1.6.4.3.1) 언제 그들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권리를 가질 것이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러한 권리가 행사되어야 할 것인가이다. [...] 문제는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의 여부이다.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관용적인 종파들은 적어도 한 가지 경우에 있어서, 즉 그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서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이 그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불관용자들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해보자. 이러한 권리는 저절로 도출되는데, 그 이유는 원초적 입장이 그렇게 규정되듯이 각자는 자기 보존self-preservation의 권리에 합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는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 기반을 타인들이 파괴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수수방관해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정의로운 헌법이 갖는 내적인 안정성을 알 경우 질서 정연한 사회의 성원들은 평등한 자유 그 자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 확신을 갖고서 불관용자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295-299)

#### 1.6.4.4 타인에 위험을 주지 않는 불관용자를 구속할 권리의 존재 여부

(q1.6.4.4.1) 일반적인 관점에 비추어 보아도 자기 보존의 권리 없이 지낸다는 것은 인간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될 수 없는 까닭에, 유일한 문제는 불관용자들이 타인들의 평등한 자유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지 않을 경우에 관용자들이 불관용자들을 구속할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 자신들이 그 불관용적인 종파의 구성원들을 억압할 경우 그들이 불평할 수 없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 종파를 억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정의로운 헌법이 존재하는 까닭에 모든 시민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정의의 자연적 의무를 갖게 된다. 타인들이 부정의하게 행위 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다 엄중한 조건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우리들 자신의 합리적인 이해관계에 어떤 상당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로운 시민들은 자유 그 자체와 그들 자신의 자유가 위협당하지 않는 한 모든 평등한 자유와 더불어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들은 불관용자로 하여금 타

인의 자유를 존중하도록 강권하는 것이 옳은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가 원초적 입장에서 인정하게 될 원칙들에 확립되어 있는 권리들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 그 자체에 위험이 없을 경우에는 불관용자에게 자유를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297-298)

#### 1.6.5 개정된 정의의 제1원칙

(e1.6.5.1)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영향력은 1)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2) 자유의 우선성이라는 두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이 두 요구 사항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직관주의나 공리주의와 구별해 준다. 이와 관련해서 제1원칙의 형식을 재구성하고 이에 대해 우선성 규칙을 부여해 볼 수 있다. 재구성된 제1원칙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개개인은 모든 사람이 갖는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q1.6.5.2) 제1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적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337)

#### 1.6.6 개정된 정의의 제1원칙에 부가되는 우선성 규칙

(e1.6.6.1)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영향력은 1)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2) 자유의 우선성이라는 두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이 두 요구 사항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직관주의나 공리주의와 구별해 준다. 이와 관련해서 제1원칙의 형식을 재구성하고 이에 대해 우선성 규칙을 부여해 볼 수 있다. 재구성된 제1원칙에 부가되는 우선성 규칙은 자유의 제한의 조건을 말해 주고 있다. 자유의 제한 조건이 정당할 수 있는 것은 1) 공유된 자유의 전체적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2) 작은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q1.6.6.2) 우선성 규칙

정의의 원칙들은 축차적 서열로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a) 덜 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이에 의해 공유된 자유의 전체적 체계를 강화해야만 하고 (b) 덜 평등한 자유는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그러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만 한다.(337-338)

## 1.7 공정으로서 정의에 대한 칸트적 해석

(q1.7.1) 이러한 원칙이 도출되는 바탕인 정의관에 대한 칸트적 해석 Kantian interpretation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해석은 자율성 autonomy에 대한 칸트의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338)

### 1.7.1 합리적 선택의 대상으로서의 칸트의 도덕 원칙

(q1.7.1.1) 그[칸트]는 도덕 원칙들이란 합리적 선택의 대상이라는 관념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 원칙들은 사람들이 윤리적 공화국 ethical commonwealth 내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다스리기 위해 합리적으로 바랄 수 있는 도덕 법칙을 정해준다. 도덕 철학은 적절히 규정된 합리적 결정의 개념과 그 결과에 관한 연구가 된다. 이러한 관념에서부터 직접적인 결과들이 생겨난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도덕 원칙들을 목적 왕국을 위한 입법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러한 원칙들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공공적인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끝으로 칸트가 가정하는 것은 이러한 도덕적 입법이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존재로서 특징짓는 조건들 아래서 합의되어질 것이라는 점이다.(339)

### 1.7.2 인간의 자율적 행동에 대한 칸트 주장의 의미

(q1.7.2.1) 내 생각에 칸트의 주장은 인간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란 그 행위의 원칙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존재로서 그의 본성을 가능한 한 가장 적합하게 표현해주는 것으로서 그에 의해 선택될 때라는 것이다. 인간 행위의 기준이 되는 원칙은 그의 사회적 지위나 천부적 자질로 인해서 채택되어서는 안 되며, 혹은 그가 살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사회나 우연히 그가 원하게 되는 특정한 사물에 비추어서 선택되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채택된 원칙에 의거한 행위는 타율적인 행위이다. 그런데 무지의 베일로 인해서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로 하여금 타율적인 원칙을 선택하게 하는 지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는 그러한 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아는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인간들로서 함께 그들의 선택에 임하게 된다.(340)

### 1.7.3 정의의 원칙과 정언 명령의 유사성

(q1.7.3.1) 정의의 원칙은 또한 [칸트가 말한] 정언 명령categorical imperatives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칸트는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존재로서의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적용되는 행위의 원칙을 정언 명령에 의해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 원칙이 타당하기 위해서 사람이 특정한 욕구나 목적을 가진 전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 명령에서는 그러한 것을 가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어떤 방도를 취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것이다. 그 욕구가 특정한 것에 관한 것이든 보다 일반적인 것, 즉 합당한 감각이나 쾌락의 어떤 종류에 관한 것이든 간에 그에 상응하는 명령은 개인적인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합리적인 인간 개체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가질 필요가 없는 목적을 가질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다.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논증은 당사자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질 것을 가정하지 않으며 단지 그들이 어떤 기본적 가치[선]들을 욕구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것들은 다른 무엇을 원하든 간에 그것을 원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그것들을 원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며, 각자는 어떤 가치[선]관을 갖고 있다고 가정되기는 하지만 그의 최종 목적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기본 가치[선]에 대한 선호는 합리성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가정과 인간 생활의 조건들로부터 도출된다.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행위 한다는 것은 우리의 특유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그 원칙이 우리에게 적용 된다는 의미에서 정언 명령에 따라서 행위 한다는 것을 뜻한다.(341)

#### 1.7.4 칸트의 자율성 개념과 병행 가능한 상호 무관심성

(q1.7.4.1)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호 무관심성이라는 동기에 대한 가정은 칸트의 자율성의 개념과 병행하며 그러한 조건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해 준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 가정은 정의의 여건들을 특징짓고 당사자들의 추론을 이끌어 줄 분명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또한 우리가 보아왔듯이 2차적인 욕구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이타심이라는 개념은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호 무관심성이 최종 목적의 체계를 선택함에 있어 자유를 허용한다는 말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가치관을 채택함에 있어서의 자유란 그러한 관점들에 대해 어떠한 선행적인 제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 학설에서 도출되는 원칙들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원초적 입장에 있어서의 상호 무관심성을 가정하게 되면 그러한 이념을 수행하는 셈이다. 우리는 당사자들이 적절히 일반적인 의미에서 대립적인 요구들을 갖는다고 전제한다. 만일 그들의 목적이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된다면 이는 처음부터 자유에 대한 임의적인 제한으로 보일 것이다. 나아가서 만일 당사자들을 이타주의자들로 생각하거나 혹은 특정한 궤적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생각한다면, 논의를 통해 밝혀질 바와 같이 선택된 원칙들은 그들 자유가 이타주의나 궤적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선택에 국한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듯이 정의의 원칙은 그 내용이야 어떤 것이든 합리적인 인생 계획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를 원칙들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가치관에 대한 제한은 사람들이 욕구하는 내용에 대한 선행적인 제한을 가하지 않는 계약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호 무관심성이라는 동기를 전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다. 그 전제는 단지 정의의 여건들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문제이거나 이론을 손쉽게 해주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도한 자율성이라는 칸트의 관념과도 관련되어 있다.(342)

### 1.7.5 자율성 개념과 정언 명령에 대한 절차적 해석으로서 원초적 입장

(q1.7.5.1) 원초적 입장은 경험적 이론의 틀 안에서 칸트의 자율성 개념과 정언 명령에 대한 절차적 해석procedural interpretation으로 볼 수도 있다. 목적의 왕국을 규제하는 원칙은 이 입장에서 채택될 원칙들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서술로 인해서 우리는 이를 원칙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이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인격으로서의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 준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념들은 더 이상 순수히 선협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 행위와의 설명 가능한 관련을 잊지 않게 되는데, 왜냐하면 원초적 입장에 대한 절차적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관련을 짓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345-346)

### 1.7.6 칸트의 견해와 차이를 보이는 롤즈의 두 가지 견해

#### 1.7.6.1 사람의 선택을 집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의 차이점

(q1.7.6.1.1) 나는 본체적 자아로서의 사람의 선택이 집단적인 것이라고 가정해 왔다. 자아의 평등함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선택된 원칙이 다른 자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유사하게 자유롭고 합리적인 까닭에 각자는 윤리적 공화국의 공곡 원칙을 채택함에 있어 동등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이는 본체적 자아들로서 모든 사람이 이 원칙들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악한의 원칙들이 합의되지 않을 것이라면 개별적 자아로서는 아무리 그것들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러한 자유 선택을 표현해 줄 수가 없다. 나중에 나는 이러한 만장일치의 합의가 개별적 자아의 본성까지도 가장 잘 나타내 준다는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결코 선택의 집단적인 성격이 함축한다고 여겨지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346)

#### 1.7.6.2 인간적 생활조건에 처해 있음을 안다는 가정에서의 차이점

(q1.7.6.2.1) 나는 지금까지 줄곧 당사자들은 그들이 인간적 생활 조건에 처해 있음을 안다고 가정해 왔다. 정의의 여건에 처해 있음으로써 그들은 적절한 부족과 경쟁적 요구라는 제한에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타인들과 더불어 존재하는 세계에 처해 있다. 인간의 자유는 이러한 자연적

제약에 비추어서 채택될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인간적인 정의에 대한 이론이며, 그 전체들 가운데는 인간들과 자연에 있어서 인간들의 위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에 구속되지 않는 순수 지성(신과 천사들)의 자유는 이론의 범위를 넘어선다. 칸트가 자신의 학설을 모든 이성적인 존재 그 자체에 적용하고자 했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세계 내에서의 인간들의 사회적 상황은 정의의 제1원칙을 결정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칸트의 이론 간에 있게 될 또 다른 차이이다.(346)

## 1.8 분배의 둘

### 1.8.1 정치 경제학적 입장에서 정의의 두 원칙

(e1.8.1.1)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입장은 정의의 두 원칙이 경제 체제 및 정책, 그리고 그 배경적 제도를 평가해 줄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 1.8.2 사회 체제의 역할

(e1.8.2.1) 사회 체제는 그 사회 체제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욕구와 열망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형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시민의 현실적 인간의 모습을 결정하며, 미래의 바라는 인간의 모습을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q1.8.2.2) 사회 체제는 그 시민들이 갖게 될 욕구와 열망의 형태를 형성해 준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시민들의 현실적 인간상뿐만 아니라, 되고자 희망하는 인간상까지도 결정한다.(350)

### 1.8.2.1 경제 체제의 의의

(e1.8.2.1.1) 사회 체제의 일부로서 경제 체제는 욕망과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되며, 이것은 또한 미래의 욕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현재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방식은 미래의 욕구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종류에 영향을 미친다.

(q1.8.2.1.2) 경제 체제는 단순히 기존의 욕망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도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의 욕구를 창조하고 형성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지금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현재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방식은 나중에 그들이 갖게 될 욕구와 그들이 어떠한 종류의 인간이 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350)

### 1.8.2.2 경제 체제에서의 제도 선택의 의의

(e1.8.2.2.1) 경제 체제는 현재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미래의 욕구를 형성하며, 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제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인간의 선에 대한 입장을 가지는 것이며, 그 선을 실현해줄 제도에 대한 입장을 가지는 것이다. 즉 경제 체제의 선택은 경제적 이유와 더불어 도덕적, 정치적 이유도 함께 가지고 있다.

(q1.8.2.2.2) 경제 체제는 이상과 같은 결과를 갖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러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제도의 선택은 인간의 선과 그것을 실현해줄 제도의 설계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은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이유에서도 이루어진다.(350)

### 1.8.2.3 경제 체제에 의해 규제되는 것

(e1.8.2.3.1) 경제 체제는 1) 재화가 생산 되는 수단, 2) 재화를 대가로 받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지, 3) 사회적 자원의 저축 비율과 공공선을 위한 투여 비율 등을 규제한다.

(q1.8.2.3.2) 경제 체제에 의해 규제되는 것은 어떤 재화가 어떤 수단에 의해 생산되며 누가 그 재화를 어떤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되고,

어느 정도 비율의 사회적 자원이 저축과 공공선의 제공에 투여되고 있는 가 등이다.(357)

### 1.8.3 정치 경제학의 관심 대상

(e1.8.3.1) 정치 경제학의 주요 관심사는 공공 부문이나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배경적 제도의 고유한 형태이다. 즉 과세, 재산권, 시장의 구조 등이 정치 경제학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q1.8.3.2) 정치 경제학은 공공 부문이나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배경적 제도의 고유한 형태, 즉 과세 및 재산권 그리고 시장의 구조 등을 중요한 관심사로 한다.(357)

#### 1.8.3.1 공공 부문의 두 측면

(e1.8.3.1.1) 공공 부문은 생산 수단의 소유와 관련된 측면과 공공선에 투여된 전체 사회 자원의 비율의 측면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두 측면을 구별하는 것이 사유 재산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1.8.3.1.1 생산 수단의 소유와 관련된 측면

(e1.8.3.1.1.1) 생산 수단의 소유와 관련해서 사회주의에서의 공공 부문의 규모가 사유 재산 경제 체제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크다. 사유 재산 경제 체제에서의 공공 부문의 규모는 매우 작아서 어떤 경우에는 공공시설이나 교통수단에 한정되기도 한다.

(q1.8.3.1.1.2) 첫 번째 측면은 생산 수단의 소유와 관련된 것이다. 고전적인 구분에 의하면 (국가 소유의 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국가 공무원이나 노동자 협회에 의해 관리되는 산출 총량의 비율에 의해 측정된바) 사회주의에서의 공공 부문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사유 재산 경

제 체제에 있어서는 아마 공유된 기업의 숫자가 적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공공시설이나 교통수단과 같은 것에 국한되기도 한다.(358)

#### 1.8.3.1.2 공공선에 투여된 전체 사회 자원의 비율

(e1.8.3.1.2.1) 공공선은 전체 사회 자원이 공공선에 투여되는 비율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이 공공선의 두 번째 측면이다.

#### 1.8.3.1.2.1 공공선의 두 특징으로서 불가분성과 공공성

(e1.8.3.1.2.1.1) 사적인 선과 공공선을 구분해 주는 공공선의 두 특징은 불가분성과 공공성이다. 불가분성은 공공선이 사적인 선처럼 분할되지 않는 불가분성을 갖기 때문에 많게 가질 수도 적게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선의 공공성은 많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공공선은 그 종류에 따라 불가분성과 공공성은 그 정도와 규모가 다를 수 있다. 국가의 방위는 완전한 불가분성과 완전한 공공성을 갖는 공공선이다.

(q1.8.3.1.2.1.2) 공공선과 사적인 선의 구분은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점을 유발하나, 요지는 공공선은 불가분성indivisibility과 공공성publicness이라는 두 가지 특징적인 측면을 갖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공중이라는 많은 개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소간 이러한 공공선을 원하기는 하지만 만일 그들이 그것을 향유하게 된다면 각자는 동일한 양을 향유해야 한다. 산출된 양은 사적인 선에서처럼 분할될 수 없으며, 개인들이 자기의 선호에 따라 많은 혹은 적게 구매할 수도 없다. 불가분성의 정도나 관련된 공중의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공공선이 있다. 공공선의 극단적인 경우는 전체 사회에 걸친 완전한 불가분성이다. 대표적인 예는 (부당한) 외침에 대한 국가의 방위이다. 모든 시민들은 동일한 양으로 이러한 선의 혜택을 받아야 하며 그들의 소망에 따라 여러 가지의 보호가 주어질 수는 없다. 이를 경우에 있어서 불가분성과 공공성의 결과는 공공선의 공급이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고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산출된 양과 그 자금 조달은 입법에 의해서 확립될

필요가 있다.(358-359)

#### 1.8.3.1.2.1.1 공공선의 무임승차 문제

(e1.8.3.1.2.1.1.1) 공공선이 갖는 불가분성과 공공성이라는 특징에 의해 무임 편승자 문제가 생긴다. 즉 공공성이 완벽하여 많은 개인들이 속해 있으면, 공공선을 위한 부담을 회피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실제로 공중의 규모가 너무 커서 몇몇 사람의 회피는 공공선의 산출된 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공선을 위한 부담을 회피한 사람은 공공선 산출의 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공공선은 계속해서 향유하게 된다. 이것이 공공선의 무임승차 문제이다.

(q1.8.3.1.2.1.1.2) 무임 편승자free rider의 문제가 있다. 공중의 규모가 커서 많은 개인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자신의 본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게 된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 전체 산출된 양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 한 사람은 타인들의 집단적인 행위를 어떻게든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공공선이 산출된다면 자기가 기여한 것이 없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자신의 향유가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산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본분을 행한다는 것에 상관없이 외침으로부터 똑같은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태협이나 자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가 없다.(359)

#### 1.8.3.1.2.1.2 공공선을 위한 자금 조달 문제

(e1.8.3.1.2.1.2.1) 공공선이 가진 무임 편승자 문제 때문에 공공선 배정과 자금 조달은 국가가 맡아야 하며, 납부를 요구하는 강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모든 사람들은 공공선을 위한 비용 지불은 타인들도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 지불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공공선을 위한 비용을 함께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이 합의의 구속력을 인정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대다수의 타인이 임무를 다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행이 법규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q1.8.3.1.2.1.2.2) 공공선을 배정하고 그 자금을 조달하는 일은 국가가 맡아야 하며 납부를 요구하는 규제 원칙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비록 모든 시민들이 그들의 뜻을 지불하려는 의지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마 타인들도 그들의 본분을 다하리라는 확신이 설 경우에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타인들의 행위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고립된 개인들로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함께 행위 하기로 합의하게 된다 해도 그 합의가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의감으로 인해 우리는 정의로운 체계를 발전시키게 되고 타인들이나 혹은 그들 대다수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리라고 믿을 경우, 정의의 체계 내에서 우리의 임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속력 있는 규칙이 시행될 때만 이에 대한 합당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공공선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모두가 그것을 배정하는 데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강제의 사용은 각자의 관점에서 보아 완전히 합리적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부가 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한 이런 식으로 해명될 수가 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의감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가에 의해 법규가 시행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주요 공공선이 갖는 독특한 특성은 집단적 합의를 필요로 하며, 그 합의가 준수되리라는 강한 확신은 모두에게 주어져야만 한다.(359-360)

#### 1.8.3.1.2.1.3 공공선의 외부성

(e1.8.3.1.2.1.3.1) 공공성의 외부성은 공공선이 공공적이고 불가분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타인들에게 손해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을 말한다. 철저한 불가분성과 완벽한 공공성을 갖는 공공선의 경우는 그 비용을 일부의 사람이 부담하더라도 그 혜택은 사회 전체가 누리게 된다. 전염병 예방 접종은 부분적인 불가분성을 갖고 공공성도 소규모이지만,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타인들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q1.8.3.1.2.1.3.2) 공공선의 경우가 갖는 다른 한 측면은 외부성 externality이라는 것이다. 어떤 선이 공공적이고 불가분적일 경우 그 선의 산출은 그것을 배정하고 그것을 산출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고려에

넣지 않는 타인들에게도 손해나 이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 공공선에 대한 경비를 오직 일부의 시민들이 부담하게 한다 할지라도 전체 사회가 제공된 품목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에 합의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결과들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공공 비용의 총액은 아마도 모든 손익이 고려되었을 경우의 액수와는 다를 것이다. 일상적인 경우에는 불가분성이 부분적이고, 공공성이 보다 소규모적이다. 전염병 예방 접종을 한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돋는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를 하는 것이 그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되지 않을지 모르나 모든 이점을 종합하게 되면 지역 사회에 있어서는 그것이 값진 것이 된다. 그런데 물론 산업이 자연 환경을 오염, 침식할 경우와 같이 공해가 현저한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시장에 의해 고려되지 않으며 따라서 산출된 재화는 그 것에 드는 한계적,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낮은 값에 매매된다.(360-361)

#### 1.8.3.2 경제 체제가 의존하는 시장 체제

(e1.8.3.2.1) 경제 체제가 시장 체제,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체제에 의존하는 정도도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문제이다. 통상 모든 경제 체제는 시장을 통해 생산품을 공급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배급과 같은 방법에 의해 생산품을 공급하기도 한다. 자유 시장 체제에서는 재화의 종류와 생산량이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결정된다. 즉 이윤이 남는 한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한 생산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계획자에 의해 생산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직업과 직장의 선택은 사유재산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 모두에서 자유롭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유 시장 체제는 제품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시장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며, 사회주의 체제는 자유 시장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에 의존하는 정도가 작다.

(q1.8.3.2.2) 모든 체제는 일반적으로 시장을 이용해서 실제로 생산된 소비품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 자유 시장 체제에서는 재화의 산출 또한 그 종류나 양에 있어서 시장의 구매에서 나타난 가격들의 선호에 의해 지시를 받게 된다. 정상 이윤 이상을 가져오는 재화는 그 초과분이 줄어들 때까지 보다 많은 양이 생산될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흔히

계획자의 선호나 전체의 결정이 생산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보다 큰 역할을 한다. 자유 재산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 둘 다 직업과 직장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 보통이다.(363)

#### 1.8.3.2.1 자유 시장 관련 없는 생산 수단의 자유

(e1.8.3.2.1.1) 생산 수단의 자유를 인정하는 체제만 자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산 수단의 자유를 인정하는 체제가 자유 시장에 관해 더 많은 관련을 맺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은 단지 역사적 우연에 의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시장 체제의 이점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q1.8.3.2.1.2) 자유 시장을 이용하는 것과 생산 수단의 자유 사이에 본질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정상적인 조건 아래서의 경쟁 가격이 정의롭다거나 공정하다는 관념은 적어도 중세에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장 경제가 어떤 의미에서 최선의 체제라는 관념은 소위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에 의해 가장 주의 깊게 탐구되었는데, 이러한 관계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도 그 자체가 그러한 체제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상의 우연에 불과한 것이다.(364)

#### 1.8.3.2.2 시장 체제의 이점으로서 효율성

(e1.8.3.2.2.1) 기업은 시장을 통한 가격 경쟁을 통해 생산 방식을 선택하고, 이런 방식으로 재화를 분배하며, 그 재화 생산에 대한 자원 할당도 가격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효율성은 시장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이다.

(q1.8.3.2.2.2) [시장 체제의] 이점 중의 하나는 효율성이다. 어떤 조건 아래서는 경쟁 가격이 기업에 의한 생산 방식의 선택에 있어서나 가계의 구매에서 생기는 재화의 분배에 있어 더 이상 개선할 방도가 없게끔 재화를 선정해 주고 그것의 생산에 자원을 할당해 준다.(364)

### 1.8.3.2.3 평등한 자유 그리고 기회균등과 부합하는 시장 체제

(e1.8.3.2.3.1) 시장 체제의 가장 중요한 이점으로 그 배경적 제도가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말하는 평등한 자유와 기회균등과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은 시장 안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 받는다. 노동 시장에서 강제적 통제는 없으며, 자유롭게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의 운영을 위해 선출된 관리자들은 투자와 생산의 가격을 비교하여 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한다. 정부는 경제 전반에 걸쳐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전체적인 투자량, 이윤율, 통화량과 같은 요소들을 조정함으로써 경제 풍토를 간접적으로 규제 할 뿐이다. 즉 소비자도 기업도 경제의 일반 조건에 따라서 자신의 독립적인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q1.8.3.2.3.2) 시장 체제가 갖는 그 이상의 이점은 필요한 배경적 제도가 있을 경우 그것이 평등한 자유와 기회균등과도 부합한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직업과 직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노동에 대한 강제적인 중앙 통제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사실상 경쟁 체제 내에서 생기는 소득에 어떤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어쨌든 일상적인 여건 아래서 자유와 부합되지 않는 명령적인 사회의 어떤 측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어렵다. 나아가서 시장 체제는 경제력 행사를 분산시킨다. 기업의 내적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즉 그것이 사유이든 국유이든 혹은 사업가에 의해 운영되든 노동자들이 선출한 관리자에 의해 운영되든 간에 기업들은 투자와 산출의 가격을 취해서 거기에 따라 그들의 계획을 짠다. 시장이 진정으로 경쟁적인 경우에는 기업들은 가격 전쟁이나 시장세를 잡기 위한 다른 경쟁에 가담하지 않는다. 민주적으로 도달된 정치적 결정에 부합해서 정부는 전체적인 투자량, 이윤율, 통화량 등 그의 통제 속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조정함으로써 경제 풍토를 규제하게 된다. 전체적인 직접적 계획을 할 필요성은 없다. 개개의 가계들이나 기업들은 경제의 일반적 조건에 의거해서 독립적으로 그들의 결정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365-366)

### 1.8.3.2.4 가격의 할당적 기능과 분배적 기능의 구분

(e1.8.3.2.4.1) 시장 체제는 사유 재산 체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제

도에도 잘 부합한다. 이러한 점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시장에서의 가격의 할당적 기능과 분배적 기능을 구분해 보는 것이 좋다. 가격의 할당적 기능은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가격의 분배적 기능은 개인들의 기여의 대가로 받게 될 소득의 가격 결정과 관련되어 있다. 사유 재산 체제에서는 가격의 두 기능을 여러 가지로 이용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가격의 분배적 기능은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는 생산 수단과 천연자원이 공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q1.8.3.2.4.2) 시장 체제가 사회주의적 제도와 부합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가격의 할당적 기능과 분배적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는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이용과 관련되어 있고, 후자는 개인들이 그들이 기여한 대가로서 받게 될 소득을 가격이 결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366)

#### 1.8.3.2.4.1 사회주의 체제와 시장 체제의 부합 가능성

(e1.8.3.2.4.1.1) 사회주의 체제와 시장 체제는 부합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제도는 사유 재산 체제에서도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토지 및 임야, 천연자원 등이 공유물이라고 간주되지만, 이들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시장 체제의 요소, 즉 이윤율 또는 임대료 등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상품에 대해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 행위의 효율적 체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에서의 이런 가격이 사적인 개인들에게 지불되는 소득과는 다르다. 천부적 자원에 의한 소득은 국가의 이익일 될 뿐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가격의 분배적 기능은 없다.

(q1.8.3.2.4.1.2) 사회주의 체제가 투자 계획 속에 자원을 할당하기 위해 이윤율을 설정하고 토지 및 임야와 같은 부족한 자연재와 자본을 사용하는 데 대한 임대료를 개량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사실상 그와 같은 생산 수단이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그러한 재원들이 인간의 노력 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요인들과 결합되면 더 큰 산출이 생겨난다는 의미에서 그것들은 생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러한 재원들의 소유주들로서 그러한 평가들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사적인 개인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렇게 계산된 가격은 경제 행위의 효율적인 체제를 설계하기 위한 지표가 된다. 모든 종류의 작업의 경우를 제외하고서 사회주의에서의 가격은 사적인 개인들에게 지불되는 소득과는 상관이 없다. 그 대신에 집단의 천부적인 자산에 의해 생겨나는 소득은 국가의 이익이 되며, 따라서那样的 가격은 분배적 기능을 갖지 않게 된다.(366-367)

#### 1.8.3.2.4.2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가격의 분배적 기능 제한

(e1.8.3.2.4.2.1) 사회주의 체제와 시장 체제가 부합할 수 있다. 사회주의가 공적인 자산으로 여기는 천부적인 자산의 경우에도 가격에 의한 할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런 공적인 자산에 가격이 형성될 수 있지만, 이 가격은 개인들에게 지불되는 소득과는 관계가 없다. 이 소득은 국가의 이익이 될 뿐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에서 가격은 분배적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반면에 사유 재산 체제에서는 가격의 할당적 기능과 분배적 기능을 이용한다.

(q1.8.3.2.4.2.2) 사회주의 아래서는 생산 수단과 천연자원이 공유된 것이므로 분배적 기능이 상당히 제한되는 반면에, 사유 재산 체제에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가격을 여러 가지로 이용한다.(367)

#### 1.8.4 민주국가 제도의 양식

##### 1.8.4.1 민주국가의 기본 구조

(q1.8.4.1) 우선 내가 가정하는 것은 기본 구조는 평등한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헌법에 의해 규제된다는 점이다.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인정되고 있으며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가 유지되고 있다. 상황이 허락하는 한 정치 과정은 정부를 선택하고 정의로운 입법을 하기 위한 정의로운 절차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내가 가정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과 대립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기회균등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부는 일반적인 종류의 사회적 공통 자본을 보존함과 더불어 사립학교를 보조하고 공립학교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비슷한 재능과 의욕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교양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또한 경제 활동과 자유로운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을 실시하고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기업과 사립 단체의 행동 방침을 정하여 보다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독점적인 제약이나 방해물을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끝으로 정부는 가족 수당 및 질병이나 고용에 대한 특별한 급여에 의해서나 아니면 보다 조직적으로 등급별 보조(소위 네거티브 소득세)와 같은 방도에 의해서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하게 된다.(369)

#### 1.8.4.2 민주국가 정부의 네 개의 부처

(q1.8.4.2.1) [사회적] 배경적 제도를 확립함에 있어서 정부는 네 개의 부처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각 부처는 일정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유지하는 임무를 떤 여러 기관 및 그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분은 일반적인 정부의 조직과 합치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396)

##### 1.8.4.2.1 민주국가 정부의 네 개의 부처 중 하나인 할당처

(q1.8.4.2.1.1) 할당처 allocation branch는 가격 체제가 제대로 경쟁적 이도록 유지하고 불합리한 시장세의 형성을 막는 것이다. 이러한 세력은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요구 조건과 지리적 사실들과 가계들의 선호에 맞추어서 그 이상 경쟁적인 것으로 될 수 없는 한 존재하지 않는다. 할당처는 또한 이른바 적절한 세금과 보조금으로써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가격이 정확히 사회적 이득과 경비를 측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효율성으로부터의 보다 명백한 이탈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책임을 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세금과 보조금이 이용될 수 있으며 혹은 재산권의 범위와 규정이 수정될 수 있다.(369-370)

#### 1.8.4.2.2 민주국가 정부의 네 개의 부처 중 하나인 안정처

(q1.8.4.2.2.1) 안정처stabilization branch는 합당하게 충분한 고용 상태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일하기를 원하는 자는 일자리를 발견할 수 있고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과 재정의 융통이 강력한 효율적 요구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두 부처가 함께 시장 경제 체제 일반의 효율성을 유지하게 된다.(370)

#### 1.8.4.2.3 민주국가 정부의 네 개의 부처 중 하나인 양도처

(q1.8.4.2.3.1) 사회적 최소치는 양도처transfer branch의 책임에 속한다. 나중에 나는 어떠한 수준에서 최소치가 설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지만 우선 당장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이야기로 족할 것이다. 핵심은 이 부처의 임무가 필요를 고려하여 다른 요구들에 비추어서 그것에 적합한 비중을 부여하는 것이다. 경쟁적인 가격 체제는 필요를 고려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분배의 유일한 방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정의의 상식적인 신조에 부응함에 있어서는 사회 체제의 부문 간에 임무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상이한 제도는 상이한 요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적절하게 규제된 경쟁적인 시장 그 자체는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가계들의 재화를 할당해주게 된다. 그것은 임금과 소득에 관련된 전통적인 신조에 역점을 두며, 반면에 양도처는 어떤 수준의 복리를 보장하고 필요에 대한 요구를 존중한다.(370)

#### 1.8.4.2.4 민주국가 정부의 네 개의 부처 중 하나인 분배처

(q1.8.4.2.4.1) 끝으로 분배처distributive branch가 있다. 그 임무는 과세와, 재산권의 필요한 조정을 통해서 분배의 몫distributive shares에 있어서의 근사적 정의를 유지하는 일이다. 이 부처가 갖는 두 가지 측면이 구별될 수 있다.(372)

#### 1.8.4.2.4.1 분배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와 유산권 제한

(q1.8.4.2.4.1.1) 그것은 여러 가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고 유산권에 제한을 가한다. 이러한 정세와 규제의 목적은 세입(정부에 양도한 재원)을 증대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 계속적으로 부의 분배를 바로잡고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와 공정한 기회균등 등을 해치는 힘의 집중을 막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누진세율progressive의 원칙은 수익자의 목적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등한 자유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생각되는 재산의 광범위한 분산을 장려하게 될 것이다. 부의 불평등한 상속은 지능의 불평등한 상속에 비해 본질적으로 더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아마도 전자는 더 쉽게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측에 바탕을 둔 불평등이든 간에 그것이 가능한 한 차등의 원칙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상속은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불평등이 가장 불운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고 자유 및 기회균등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가 있다. 앞에서 규정한 대로 기회균등은 비슷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교육과 교양에 대한 유사한 기회를 보장해주고, 적절한 의무와 임무에 합당하게 관련된 자질과 노력에 근거해서 직책과 직위를 모든 이에게 개방시켜주는 일련의 제도를 의미한다. 부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의 한도를 넘어섰을 경우에 위험에 빠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제도들이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도 마찬가지로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경향을 갖게 되고 대의 정부는 외형상으로만 그럴듯한 경향을 갖게 된다. 분배처의 과세나 입법은 그러한 제한을 초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1.8.4.2.4.2 분배처에 의한 세입의 증대를 위한 조세 체제

(q1.8.4.2.4.2.1) 분배처의 두 번째 부분은 정의가 요구하는 세입의 증대를 위한 조세 체제이다. 사회적 자원도 공공선을 위해 제공될 수 있고 차등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양도액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이 문제가 분배처에 속하게 되는 이유는 조세의 부담이 정의롭게 나누어져야 하고 그 목적이 정의로운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여러 복잡한 문제를 접어두고 볼 때 비례적인 소비세proportional expenditure tax가 최선의 세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것은 정의에 대한 상식적인 신조의 수준에서 볼 때 (어떤 종류이든) 소득세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공통의 재화 총량으로부터 얼마나 취하는가에 따라서 징세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얼마나 기여하는가(여기서 소득도 공정하게 취득된다고 가정함)에 따라 징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372-373)

#### 1.8.4.2.4.3 정의의 두 원칙에서의 분배처의 두 기능 도출

(q1.8.4.2.4.3.1) 분배처의 두 부분은 정의의 두 원칙에서 도출된다. 누진률로 상속과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재산권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유 재산제적 민주 체제에서 평등한 자유의 제도와 그것이 규정하는 권리들의 공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비례적인 소비세(혹은 소득 세)는 공공선, 양도처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확립 등을 위한 세입을 제공함으로써 제2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받은 이익이나 지불 능력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과세 기준 외에 어떤 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준들의 적용 범위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제된다. 일단 분배의 둘에 대한 문제가 배경적 제도를 설계하는 문제로 인정이 되면 전통적인 원칙은 비로 그것이 어떤 한계가 정해진 경우에는 적합하다 할지라도 독립적인 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백한 사실은 분배처의 기획은 개인의 효용에 대한 공리주의자의 표준적 가정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누진적 소득세는 개인들이 한계 효용의 체감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유사한 효용 함수를 갖는다는 관념 속에 나타나 있다. 물론 분배처의 목적은 만족의 순수 잔여량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배경적 제도를 확립하는 데 있다.(474)

#### 1.8.4.3 이해관계와 공공선에 대한 선호를 배려하는 교환처

(q1.8.4.3.1) 충분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공공선의 한계 이익이 시장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이익보자 크다고 생각할 경우 당연히 정부가 그것을 공급 할 방도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소득과 재산의 분배가 정의롭다고 가정되므로 지도 원리가 변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의 제5부터인 교환처exchange branch가 있게 되며 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해관계와 공공선에 대한 그들의 선호를 배려하는 특수한 대표 기관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것은 정의가 요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정부 활동을 규정하는 법안만을 고려하는 헌법에

의해 주어지며, 그러한 법안은 웍셀의 만장일치의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에  
는 입법화된다.(377)

#### 1.8.4.3.1 효율성 원리를 활동 원리로 삼고 있는 교환처

(q1.8.4.3.1.1) 교환처는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활동하며 결국 시장 체제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선과 공공 봉사를 조정해 줄 특수한 거래 기관을 세우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념을 수행하는 데는 매우 실제적인 난점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덧붙여야겠다. 그리고 표결 전략이나 선호의 은폐는 접어두고라도 협상력, 소득 효과 등에 있어서의 차이로 인해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378)

#### 1.8.4.3.2 이익의 원칙을 기초로 삼는 교환처

(q1.8.4.3.2.1) 교환처는 별개의 대표기관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이 체제의 기초가 이익의 원칙이지 정의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배경적 제도라는 관념은 우리들이 정의에 대한 우리의 숙고된 판단들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무지의 베일은 입법 단계에 적용되어야 한다. 교환처는 단지 거래 체제에 불과하다. (그 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임무를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정보에 아무런 제약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시민들이 공공선이나 사적인 선에 대한 그들自身의 상대적인 평가를 아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환처에서는 대표자들(그리고 그들의 대표자들을 통한 시민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의 지도를 제대로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부처를 설명하는 경우에서와는 달리 우리는 정의의 원칙들이 오직 일반적인 지식을 기초로 해서만 제도에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환처의 이념은 4단계 과정의 일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부 활동과 공공 지출 및 이득의 원칙으로부터 생기는 것과 혼동하기 쉽다.(379)

#### 1.8.5 세대들 간의 정의

(e1.8.5.1)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는 세대들 간의 정의 문제를 논의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세대들 간의 정의에 대한 논의 없이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공정으로서 정의에 있어서 세대들 간의 정의 문제는, 이것이 정의의 두 원칙에 만족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적 최소치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지, 즉 현 세대가 후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q1.8.5.2) 이제 우리는 세대들 간의 정의 문제 justice between generations를 고찰해야만 한다. 이 문제가 야기하는 난점을 강조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윤리론이든 견뎌낼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는 불완전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맥락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전체로서의 사회 체제나 적절한 일련의 배경적 제도에 의해 이루어진 경쟁적 경제 체제가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해답은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적 최소치가 설정되는 수준에 달려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현 세대가 그 후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존중해야 하는가에 관련되어 있다.(380)

### 1.8.5.1 타당한 수준의 사회적 최소치

(e1.8.5.1.1) 사회적 최소치를 결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룰즈는 최소치를 결정하는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1) 평균치가 증가에 따라 최소치를 점점 더 크게 결정하는 방법, 2) 관례적인 기대치에 의해 최소치를 결정하는 방법, 3) 차등의 원칙에 의해 최소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차등의 원칙에 의한 최소치 결정은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을 이용하여 사회적 최소치를 결정한다.

(q1.8.5.1.2) 지금까지 나는 사회적 최소치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타당한 수준이란 그 나

라의 평균적 부에 달려 있으며 다른 사정이 같을 경우 그 최소치는 평균치가 증가할 때 보다 커져야 한다고 말하는 데 상식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적절한 수준은 관례적인 기대치에 의해 정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가 정확하지 못한 이유는 거기에서는 최소치가 평균적 부에 의존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고 분배와 같은 관련된 다른 측면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편 두 번째 이야기는 관례적 기대치 자체가 타당한 경우를 말해줄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차등의 원칙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임금을 고려해서 최소 수혜자 집단의 기대치를 극대화하는 점에서 사회의 최소치가 설정된다. 양도액(예를 들어 보상적인 소득 지불액의 크기)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불리한 사람들의 전망과 그들의 (임금과 양도액의 합계로 측정된) 기본 가치의 지수를 증감함으로써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380)

#### 1.8.5.1.1 평균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최소치 결정

(e1.8.5.1.1.1) 평균치 증가에 따라 사회적 최소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상식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방식이다. 사회적 최소치의 타당한 수준이 그 나라의 평균적 부에 의존하는 것으로, 평균치가 증가함에 따라 최소치도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왜 최소치가 평균적 부에 의존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며, 분배와 같은 다른 관련된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평균치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 최소치가 증가해야한다는 주장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 1.8.5.1.2 관례적인 기대치에 의한 사회적 최소치 결정

(e1.8.5.1.2.1)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최소치가 관례적인 기대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관례적인 기대치가 언제 합리적인지를 결정해줄 어떤 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관례적인 기대치에 의해 사회적 최소치를 결정하는 것은 관례적인 기대치를 합당하게 만들어줄 또 다른 정의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례적인 기대치에 의해 사회적 최소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족스럽지 못하

다.

#### 1.8.5.1.3 차등의 원칙에 의한 사회적 최소치 결정

(e1.8.5.1.3.1) 차등의 원칙에 의한 방식은 임금과 관련하여 최소 수혜자 집단의 기대치를 극대화하는 점에서 최소치를 결정한다. 양도액을 조정하게 되면, 최소 수혜자의 전망과 이들의 기본 가치의 지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최소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1.8.5.1.3.1 차등의 원칙이 매우 높은 최소치를 요구한다는 주장의 오류

(e1.8.5.1.3.1.1) 차등의 원칙에 의해 사회적 최소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차등의 원칙은 너무 높은 수준의 최소치를 요구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많은 최소치에 의해 부유한 사람들의 부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입을 갖게 될 때까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차등의 원칙에 의한 적절한 기대치는 미래의 세대들에 까지 확장하여 최소 수혜자의 장기적인 전망에서의 기대치이다. 이런 기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문명의 장점의 보존의 문제, 정의로운 제도들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양의 자본 축적의 문제, 기계나 다른 생산 수단에 대한 순투자 문제, 교육과 학문에 대한 투자의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고려는 차등의 원칙이 매우 높은 최소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 줄 것이다. 따라서 차등의 원칙이 매우 높은 수준의 최소치를 요구하여 모든 사람의 부가 동등하게 된다는 생각은, 특수한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잘못된 것이다.

(q1.8.5.1.3.1.2) 그런데 우선 당장에 차등의 원칙은 매우 높은 최소치를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우리는 당연히 보다 부유한 사람들 의 보다 큰 부가 감소되어 결국은 모든 사람이 거의 동일한 소득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특수한 예전에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그릇된 생각이다.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세대에까지 걸친 최소 수혜자의 장기적인 전망과 관련된 것이다. 각 세대들은 문화와 문명의 장점들을 보존하고 이미 세워진 정의로운 제도들을 해치지 않고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각 시기 동안에 적절한 양의 실질적인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 이러한 저축은 기계나 다른 생산 수단에 대한 순투자에서부터 학문과 교육에 있어서의 투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

#### 1.8.5.1.3.2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에 의한 차등 원칙의 사회적 최소치 결정

(e1.8.5.1.3.2.1) 사회적 최소치의 수준은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최소치가 비례적인 소비세(또는 소득세)에 의한 세금(양도금)에 의해 조정된다면, 최소치의 상승은 소비세(소득세)의 비율에 의존하게 된다. 세금의 비율이 높아지면, 어느 지점에서 1) 저축이 불가능해지거나, 2) 최소 수혜자의 전망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최소 수혜자의 전망이 하락하는 것은 고율의 세금이 경제적 효율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이 차등의 원칙이 만족된, 적합한 최소치의 지점이다.

(q1.8.5.1.3.2.2)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말해줄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 just savings principle이 이용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사회적 최소치의 수준이 정해지게 된다.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 최소치는 비례적인 소비세(또는 소득세)에 따라 납부된 양도금에 의해 조정된다고 생각해 보자. 이러한 경우에 최소치가 상승하게 되면 반드시 소비(또는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비율도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즉 더 이상 나아가면 적합한 저축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든지, 보다 고율의 세금과 경제적 효율성의 심한 침해로 인해 현 세대에 있어 최소 수혜자의 전망이 더 이상 향상되지 않고 하락하기 시작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적합한 최소치에 이미 도달한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이미 만족되었으며 더 이상의

증대는 요구되지 않는다.(381)

### 1.8.5.2 정의로운 저축 원칙의 발견

(e1.8.5.2.1) 세대들 간의 정의 문제를 위해서는 사회적 최소치의 수준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최소치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회적 최소치는 정의로운 저축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결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의로운 저축 원칙을 발견하는 문제는 세대들 간의 정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q1.8.5.2.2) 정의로운 저축 원칙을 발견하는 일은 이 문제[세대들 간의 정의 문제]의 한 측면이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저축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한계를 규정하는 일을 현재로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자본 축적을 부담하는 일과 문명과 문화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이 세대들 간에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미 있는 윤리적 제한이 설정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381-382)

### 1.8.5.2.1 공리 원칙이 제시하는 그릇된 방향의 세대들 간의 정의

(e1.8.5.2.1.1) 공리 원칙은 세대들 간의 정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세 가지의 가정을 한다. 1) 인구수는 변수이며, 2) 자본은 고도의 한계 생산성을 갖고, 3) 시간의 한계가 매우 멀다. 이러한 세 가지를 가정하게 되면, 공리 원칙이 효용의 총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율의 과도한 축적을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공리 원칙은 미래 세대에게 주어질 보다 큰 이익을 위해 현재의 희생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게 한다. 즉 나중에 보다 큰 이득을 누리며 잘 살 세대를 위해 현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리 원칙은 세대들 간의 정의 문제에서 그릇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ql.8.5.2.1.2) 고전적인 공리의 원칙이 세대들 간의 정의 문제에 대해 그릇된 방향 제시를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만일 인구수를 변수로 간주하고 자본이 고도의 한계 생산성을 갖고 있으며 시간 한계가 매우 떨다고 가정할 경우 효용 총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과도한 고율의 축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순수한 시간 선호에 의거해서 미래의 복지를 소홀히 할 근거가 없는 까닭에 미래의 세대에게 보다 큰 이득은 거의 모든 현재의 희생보다 중대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다 많은 자본과 보다 나은 기술을 통해서 아주 많은 인구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공리주의가 제시하는 것에 따르면 우리는 나중에 훨씬 더 잘살 세대들의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손실과 타인들의 이익을 비교하는 이와 같은 이득의 계산은 당대인들 사이에서보다 세대들의 경우에 정당화하기가 더욱 어렵다. 비록 우리가 정의로운 저축 원칙을 정착하는 규정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위에서 나온 그러한 종류의 극단을 피할 수 있어야만 한다.(382-383)

### 1.8.5.2.2 계약론에서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

#### 1.8.5.2.2.1 계약론에서 저축 원칙 채택에 있어서 연대기적 불공정

(e1.8.5.2.2.1.1) 세대들 간의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연대기적 불공정이 존재한다. 연대기적 불공정은 후속 세대들이 선행 세대들로부터 이득을 보는 반면에, 선행 세대들은 후속 세대들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후속 세대는 선행 세대에 자신의 일정한 뜻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에, 선행하는 세대들은 후속 세대들을 위해 자신의 일정함 뜻을 부담한다. 결국 마지막 세대는 이러한 선행 세대들이 남겨놓은 이득을 향유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칸트도 기이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q1.8.5.2.2.1.2) 어떤 사람들은 세대들마다 각기 다른 행운들이 주어지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헤르첸Herzen의 말처럼, 인간의 발전은 일종의 연대기적인 불공정인데 왜냐하면 후속 세대 사람들은 동일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선행 세대들의 노동으로부터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칸트도 기이하게 생각했던 것은 선행하는 세대들은 후속 세대들만을 위해서 그들의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직 마지막 세대만을 완성된 건물 속에 거주하게 될 행운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감정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그릇된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각 세대들 간의 관계가 특수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해결될 수 없는 난점을 제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383-384)

#### 1.8.5.2.2.1.1 연대기적 불공정의 정의의 문제 적용불가능

(e1.8.5.2.2.1.1.1) 연대기적 불공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즉 경제적인 이득이 후속 세대로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변경될 수도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의의 문제는 자연적인 한계들을 다루는 방식으로서의 제도와 역사적인 가능성을 이용하기 위해 설정되는 제도의 양식들에 적용된다. 그러나 연대기적 불공정은 매우 자연스러우며, 변경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의 문제가 적용될 수 없다.

(q1.8.5.2.2.1.1.2) 세대들이 시간상으로 널리 펴져 있고 실제적인 경제적 이득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정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것은 제도가 이런 자연적인 한계들을 다루는 방식이며 역사적인 가능성들을 이용하기 위해 제도들이 설정되는 양식이다.(384)

#### 1.8.5.2.2.1.2 연대기적 불공정의 보상으로서 세대 간의 경제적 교환

(e1.8.5.2.2.1.2.1) 각 세대들이 선행 세대로부터 일정한 봉을 받고 후속 세대에게 공정한 봉을 남기도록 한다면, 이러한 저축의 원칙이 적

용되는 최초의 세대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틀림없이 저축의 원칙에 합의할 것이다. 이러한 세대들 간의 경제적 교환은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이 채택되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다.

(q1.8.5.2.2.1.2.2) 모든 세대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면, 당사자들은 각 세대들이 자신들의 선행 세대들로부터 적정 봉사를 받고 후속 세대들을 위해 그 공정한 본분을 하도록 보증하는 저축 원칙에 합의할 것임에 틀림없다. 세대들 간의 유일한 경제적 교환은, 말하자면 가상적인 것, 다시 말해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로운 저축 원칙이 채택될 때 가능한 보상적 조정인 것이다.(384)

#### 1.8.5.2.2.2 원초적 입장에서의 저축의 원칙 합의

(e1.8.5.2.2.2.1) 저축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것이다. 즉 자신이 어떤 세대에 속하는지, 사회 문명의 수준이 어떠한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제적 수준, 산업의 수준이 어떠한지 모르는 무지의 베일에 있다면, 저축의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이다. 선행 세대들이 저축을 해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q1.8.5.2.2.2.2) 그들은 자신들이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혹은 결국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들 사회의 문명의 수준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사회가 빈곤한지 아니면 비교적 부유한지, 대체로 농업 사회인지 아니면 산업화된 사회인지 등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무지의 베일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원초적 입장에 등장하는 시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그들이 동시대인임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가정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떤 저축에도 합의할 이유가 없다. 앞선 세대들이 저축을 해왔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전혀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384)

#### 1.8.5.2.2.2.1 원초적 입장에서 저축의 원칙 합의를 위한 가정들

(e1.8.5.2.2.2.1.1) 합의하는 당사자들이 오로지 동시대인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저축의 원칙에 합의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서 저축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1) 당사자들은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바로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 모든 선행하는 세대들이 따랐을 법한 원칙을 채택한다. 저축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대든 모든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증되어야만 한다.

(q1.8.5.2.2.2.1.2) 합당한 당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당사자들은, 말하자면 적어도 그들의 보다 근접한 후속 세대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로서 가족의 계통을 대표한다. 둘째, 채택된 원칙은 모든 선행 세대들에 대해 그들이 따랐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원칙이어야 한다.(384-385)

### 1.8.5.2.2.2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저축 원칙의 특성

(q1.8.5.2.2.2.1) 정의로운 저축 원칙(또는 보다 적합하게 표현하면, 그러한 원칙들에 대한 한계들)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은 다른 모든 세대들이 동일한 기준에 맞추어 저축해왔거나 저축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발전의 각 수준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양을 기꺼이 저축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자문해볼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제안하는 비율이 축적의 전체 규모를 규정하리라는 것을 이해하는 동시에 문명 발전의 어떤 임의의 단계에서 저축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고려하고자 할 것이다.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저축 원칙이 각각의 발전 수준에 적합한 비율(또는 비율의 폭)을 할당하는 규칙, 다시 말해서 비율의 계획을 결정하는 규칙이라는 점이다. 아마도 발전 단계가 다르면 비율 역시 달라질 것이다. 국민이 가난하고 저축이 어려우면 낮은 저축률이 요구되어야 하며, 반면 보다 부유한 사회에서는 저축의 실제 부담이 적을 것으로 더 많은 저축이 합당하게 기대될 것이다. 결국 일단 정의로운 제도가 굳건히 확립되고 모든 기본적 자유가 실질적으로 실현된다면, 요구되는 순수한 축적은 영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시점에서 사회는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그 물질적인 기초를 보존함으로써 그 정의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정의로운 저축 원칙이란 정의의 문제로서 한 사회가 얼마만큼 저축해야 하는가에 적용되

는 것이다. 만약 그 시민이 다른 목적을 위해 저축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된다.(386)

#### 1.8.5.2.3 정의로운 저축 원칙에 대한 계약론적 방식의 특성

##### 1.8.5.2.3.1 저축 원칙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채택해주는 원초적 입장

(q1.8.5.2.3.1.1)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은 문자 그대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긴 하지만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은 그와 동일한 결과를 달성해 준다. 아무도 자기가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를 모르는 까닭에 각 세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는 하지만 채택된 원칙은 공정한 조정을 나타내게 된다. 언제나 동일한 원칙이 선택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실제로 원초적 입장 속에 대변되고 있다. 이상적으로 민주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각 세대의 요구들을 공정히 조정한 것이요, 따라서 모든 이에게 관계되는 것은 모든 이의 관심사라는 신조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나아가서 합당한 저축률이 유지될 경우 최초의 세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세대가 이득을 보게 된다. 저축의 과정은 일단 시작되어 계속되기만 하면 모든 후속 세대들에게 좋은 것이다. 각 세대는 정의로운 저축 원칙이 규정한 대로 실질 자본에 있어서 공정한 동등치를 다음 세대에 넘겨준다. [...] 이러한 동등치는 앞선 세대들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이로 인해 후속 세대들은 보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보다 나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386-387)

##### 1.8.5.2.3.2 저축의 전 과정으로서 정의로운 사회를 규정하는 계약론적 특성

(q1.8.5.2.3.2.1) 계약론은 또한 저축의 전체 과정이 목표로 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규정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정의로운 기본 구조에 대한 이상적인 관념이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된 원칙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도출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공리주의적 입장과 대조된다. 정의로운 저축이란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부담에 있어서 각자의 공정한 뜻을 이해하자는 세대들 간의 합의로 간주될 수 있다. 저축 과정의 목표는 비록 그 일반적인 윤곽만이 가려질 수 있기는 하나 미리 설정된다. 때가 되어서 특수한 여건들이 생기게

되면 보다 상세한 측면들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무제한적인 극대화로 나아가야 할 필요는 없다. 사실상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비록 저축 원칙이 차등의 원칙을 규제하기는 하지만 그 원칙에 대한 합의는 제도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 다음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들 원칙들은 우리가 추구할 것을 말해 준다. 저축 원칙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앞서 받아들여진 자연적 의무에 대해서 원초적 입장에서 나온 해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윤리적 문제는 사회 역사의 전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세대들을 정의롭게 대우할, 전 시간에 걸친 방도에 대한 합의의 문제이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보이는 것은 다른 경우에서도 같이 이 경우에서도 정의를 규정해 준다.(387-388)

#### 1.8.5.2.3.3 정의로운 제도와 평등한 자유를 구현하는 조건으로서 저축 원칙

(q1.8.5.2.3.3.1) 저축이 목표로 하는 마지막 단계가 엄청난 단계는 아니다. [...] 이에 대한 고찰은 약간 강조해둘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부가 필요할지도 모르며 사실상 절대적으로 말해서 평균 소득이 그리 높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단지 다음에 올 세대들을 보다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앞선 세대들이 저축하는 것은 정의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저축은 정의로운 제도와 평등한 자유들을 충실히 구현하는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추가되는 저축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에서이다. 정의롭고 가치 있는 사회는 고도의 물질적인 행활 수준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타인들과의 자유로운 결사를 통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단체들은 정의로운 기본 구조의 체계 내에서 그들의 상호 관계를 규제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대단한 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가 넘게 되면 부는 오히려 적극적인 방해물이 되고 방종이나 허황된 것에 대한 유혹물이 아니면 기껏해야 무의미한 여흥에 지나지 않는다.(389)

#### 1.8.5.3 정의의 두 원칙과 정의로운 저축 원칙의 관계

(e1.8.5.3.1) 저축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입장에서 규정되기 때문

예,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정의의 두 원칙을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저축의 원칙을 말한다는 것은 차등의 원칙의 적용에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조건 하에서 기대치는 각 세대에서 극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의 제1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선행하는 것이듯이, 저축의 원칙도 세대들 간에서 차등의 원칙에 선행하는 것이다.

(e1.8.5.3.2) 어떤 체제가 최소 수혜자의 시인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듯이, 저축에 필요한 체제도 역시 최소 수혜자의 시인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아마도 최소 수혜자에게도 저축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축은 다른 세대의 최소 수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 1.8.5.3.1 정의로운 저축 원칙의 차등 원칙 제한

(e1.8.5.3.1.1) 정의로운 저축 원칙은 차등의 원칙 적용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차등의 원칙은 저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조건 하에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축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에 대한 하나의 제한 사항이다. 따라서 정의의 제1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선행하며, 우선성을 갖듯이, 저축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에 우선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q1.8.5.3.1.2) 이제 우리는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정의의 두 원칙을 관련지어야 한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저축의 원칙이 각 세대의 최소 수혜자의 입장에서 규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저축률을 명시하게 될 사람들은 모든 시간에 걸쳐 있는 이러한 집단에서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결국 차등의 원칙의 적용을 규제하게 된다. 어떤 세대에 있어서나 그들의 기대치는 채택될 저축을 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완전히 서술하게 되면 거기에는 저축의 원칙도 하나의 제한 사항으로 포함되게 된다. 정의의 제1원칙이나 공정한 기회의 원칙이 세대들 내에서 차등의

원칙에 선행하는 것이라면 저축의 원칙도 세대들 간에서 그 원칙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389)

#### 1.8.5.3.2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

(e1.8.5.3.2.1) 정의로운 저축의 원칙 적용은 최소 수혜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저축은 다른 세대의 최소 수혜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치적 판단이며, 현재의 이득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최소 수혜자에게도 저축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저축에 필요한 체제도 역시 최소 수혜자의 시인에 의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q1.8.5.3.2.2) 물론 혜택을 덜 받은 사람들에게까지 투자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저축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보통 적합한 저축을 위해 필요한 경제 체제 혹은 여타의 체제를 그들이 시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저축은 다른 세대의 최소 수혜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책들을 정치적 판단으로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이용 가능한 당장의 이득을 자제함으로써 달성된다. 이러한 체제를 지지함으로써 요구되는 저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떤 세대들의 최소 수혜자 대표 중 그 누구도 타인들이 그들의 몫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수 없을 것이다.(389)

#### 1.8.5.4 정의로운 저축 원칙의 주요 특성

(q1.8.5.4.1)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상이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동시대인들에 있어서와 같이 서로 간에 의무와 책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현 세대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 간의 정의를 규정하기 위해서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될 원칙의 구속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인간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자연적인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해서는 문명이 어느 수준까지 향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무와 책무의 도출은 처음 보기에는 계약론을 어느 정도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원초적 입장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며 따라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그 기본 이념

에 어떤 변경도 없이 이러한 문제들에 적용될 것이다.(389-390)



## 참 고 문 헌

1. 『정의론』, 롤즈, 이학사(2004)
2. 『정치적 자유주의』, 존 롤즈, 동명사(2003)
3.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황경식, 문학과 지성사(1996)
4.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황경식, 철학과현실사(1997)
5. 『롤즈의 민주적 자유주의』, 염수균, 천지(2002)
6.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스테판뮐러외, 학울아카데미(2004)



## 『철학사상』 별책 2권

- 제 1a 호 철학의 주요 개념 1·2 / 백종현
- 제 2 호 『밀린다 광하』 / 서정형
- 제 3 호 데카르트 『방법서설』 / 윤선구
- 제 4 호 로크 『통치론』 / 정윤석
- 제 5 호 루소 『사회계약론』 / 진병운
- 제 6 호 칸트 『실천이성비판』 / 박정하
- 제 7 호 헤겔 『법철학』 / 강성화
- 제 8 호 벤담 『도덕 및 입법의 원리』서설 / 정원규
- 제 9 호 밀 『공리주의』 / 김영정 · 정원규
- 제 10 호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백승영
- 제 11 호 마르크스 『독일이데올로기』 / 손철성
- 제 12 호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 이선일
- 제 13 호 프레게 『산구의 기초』 / 최 훈
- 제 14 호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 박정일

## 『철학사상』 별책 3권

- 제 1a 호 『대학』 / 박성규
- 제 2 호 맹자 『맹자』 / 이해경
- 제 3 호 나가르주나 『중론』 / 서정형
- 제 4 호 조선전기 이기론 / 허남진
- 제 5 호 조선전기 수양론 / 정원재
- 제 6 호 조선전기 심성론 / 김영우
- 제 7 호 조선전기 경세론과 불교비판 / 강중기

- 제 8 호 플라톤 『국가』 / 김인곤
- 제 9 호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나코스 윤리학』 /  
김남두 · 김재홍 · 강상진 · 이창우
- 제 10 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 박경숙
- 제 11 호 테카르트 『성찰』 / 윤선구
- 제 12 호 로크 『인간지성론』 / 김상현
- 제 13 호 라이프니츠 『단자론』 / 윤선구
- 제 14 호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 진병운
- 제 15 호 흄 『인설론』 / 장동익
- 제 16 호 칸트 『순수이성비판』 / 김재호
- 제 17 호 헤겔 『정신현상학』 / 강성화
- 제 18 호 마르크스 『자본론』 / 손철성
- 제 19 호 제임스 『실용주의』 / 정원규
- 제 20 호 니체 『유고(1885년 가을-1887년 가을)』  
·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 『유고(1888년 초-1889년 1월 초)』 / 백승영
- 제 21 호 후설 『유럽학문의 위기』 / 정은해
- 제 22 호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 신상규
- 제 23 호 하이데거 『언어로의 도상』 / 이선일
- 제 24 호 쿤 『과학혁명의 구조』 / 박은진
- 제 25 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 /  
최병일 · 이태수 · 심재룡 · 김영정

##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14호

---

발행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신56-1

E-mail: philinst@plaza.snu.ac.kr

전화: 02) 880-6223

팩스: 02) 874-0126

발행일 2005년 4월 28일

인쇄일 2005년 4월 30일

출판 도서출판 관악 02) 871-2118

---



9 788991 280281

ISBN 89-91280-28-5

94100